

# 韓國書院學報

제  
20  
호

韓國書院學會  
2025.6





## 목차

### ■ 기획논문 :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 연구의 새로운 모색

한강학(寒岡學)의 호서 확장과 지식문화적 환류(還流)  
 - 공촌동약(孔村洞約)과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 김학수。 7

17세기 전반 대구지역 교육기구의 재건과 운영  
 - 관학과 사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 ..... 김정운。 47

18세기 京華士族의 塾師 교육  
 - 서울·경기 지역 사족의 교육 실태와 사회적 의미 - .... 김충현。 85

조선후기 사육신 서원의 정치적 기능과 위상  
 - 건립과 사액, 치제 활동을 중심으로 - ..... 이경동。 113

18~19세기 永川 龍溪書院과 生六臣 追崇 ..... 이광우。 149

### ■ 일반논문

중종 후반기 『주자대전』 간행과 주자의 서원론 활용 ..... 최민규。 189

숙종·영조대의 서원·사우 휘철 ..... 홍제연·고수연。 227

영조와 정조의 서원 賜祭와 도산서원 ..... 이재현。 263

## ■ 후보

- 연혁·활동 | 297
- 회칙 | 303
- 편집 규정 | 310
- 논문투고 규정 | 314
- 원고작성 규정 | 320
- 연구윤리 규정 | 324
- 임원 및 편집위원 | 327

## ■ 기획논문 :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 연구의 새로운 모색

- ▣ 한강학(寒岡學)의 호서 확장과 지식문화적 환류(還流)
  - 공촌동약(孔村洞約)과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 17세기 전반 대구지역 교육기구의 재건과 운영
  - 관학과 사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
- ▣ 18세기 京華士族의 塾師 교육
  - 서울·경기 지역 사족의 교육 실태와 사회적 의미 -
- ▣ 조선후기 사육신 서원의 정치적 기능과 위상
  - 건립과 사액, 치제 활동을 중심으로 -
- ▣ 18~19세기 永川 龍溪書院과 生六臣 追崇



# 한강학(寒岡學)의 호서 확장과 지식문화적 환류(還流)

—공촌동약(孔村洞約)과 죽림서원(竹林書院)을 중심으로—\*

김 학 수\*\*

- I. 머리말
- II. 한강학의 교육 및 교화론적 수용과 환류: '공촌동약(孔村洞約)'
- III. 한강학의 지식문화적 영역의 확장과 죽림서원(竹林書院):  
원향론(院享論)에 나타난 퇴계·한강 서원론의 적용 양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강학의 호서권 확장 양상을 목천현의 공촌동약(孔村洞約)과 죽림서원(竹林書院:道東書院)을 통해 검토한 것이다. 전자는 정구의 교육·교화론의 환류성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회연초당(檜淵草堂)에서 설계·적용한 '월삭강계(月朔講契:1583)'가 목천 출신의 한강문인 황종해(黃宗海)에 의해 '공촌동약(孔村洞約:1641)'으로 응용되고, 이것이 다시 진주권 한강문인 박민(朴敏)의 증손 박태무(朴泰茂)에 의해 '내동동약(奈洞洞約:1730)'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안정복의 '경안동약(慶安洞約:1756)'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논증한 것은 한강학의 환류성을 포착하는 단서가 된다.

후자는 한강학의 호서권 거점으로서의 죽림서원의 건립 및 원향론의 방향성을 추

\* 이 논문은 2025년 4월 한국서원학회와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사연구회, 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 공동 주최한 연합학술대회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 연구의 새로운 모색”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한국사학전공 부교수,  
ksoya@aks.ac.kr

적,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죽림서원은 정구의 뜻에 따라 주희(朱熹) 및 김일손(金駟孫)의 제형처로 구성된 서원이었다. 그러나 정구 사후 황종해 등 한강문인들은 그 위치에 있어 김일손보다 정구를 우위에 두려는 인식이 강고했는데, 그 이론적 근거가 '도학위주론(道學爲主論)'이었다. 이후 황종해의 추배를 통해 죽림서원은 호서권 한강문파의 거점 서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지만, 이로써 도학지상주의가 휩쓸고 간 조선의 학술문화 지형에 대한 비판적 진단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주제어 : 정구, 김일손, 황종해, 한강학, 공촌동약, 죽림서원, 내동동약

## I. 머리말

영남학(滎南學/南冥學)의 근기남인학(星湖學)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양대 종사(宗師)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정구(鄭述, 1543~1620)와 허목(許穆)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틀은 18세기 성호학(星湖學)의 연원을 해명하는 논리로도 적용되어 학계의 통념으로 굳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한강학의 공간적 확장과 관련하여 목천(木川) 출신의 한강문인 황종해(黃宗海, 1579~1642)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한 바 있고, 그 결과로서 영외(嶺外) 확장이 1600년대 초반 호서의 목천을 거점으로 이루어졌음을 논증할 수 있었다.<sup>1)</sup> 이는 1617년(광해군 9) 근친행(觀親行) 때 한강 문하에 입문한 것으로 파악되는 허목보다 약 15년 선행하는 것이다. 특히 황종해는 한강학의 핵심 텍스트인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의 편찬에 기여했고, 영남 외부 인사로는 드물게 허목과 함께 『한강언행록(寒岡言行錄)』

1) 김학수, 「寒岡學의 湖西 확장과 黃宗海의 계승의식」, 『영남학』 8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이 글에서는 황종해의 정구와의 사승 및 한강문인들과의 교유관계, 연원의식의 확대 및 강화라는 측면에서 퇴계학에 대한 衛道意識을 '정인홍의 晦學辨斥과 그 대응으로서의 晦學辨疏', '퇴계학 文獻의 玩味와 發揮', '퇴계·한강 폼파 및 謬認論에 대한 변론으로서의 金長生과의 논변'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의 차기(節記) 제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더라도 목천과 황중해는 호서권 한강학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인간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본고는 전고(前稿)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론의 성격을 가지며, 한강학의 교육 및 교화론적 확산 과정을 ‘공촌동약(孔村洞約)’을 통해 규명하고, 호서권 한강학 거점의 성립 과정을 죽림서원(竹林書院) 원향론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죽림서원 원향론은 이황→정구로 이어지는 도학적 가치의 채택과 적용이라는 점에서 한강학의 확장 및 수용성을 진단하는 세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본다.

## II. 한강학의 교육 및 교화론적 수용과 환류 : ‘공촌동약(孔村洞約)’

### 1. 공촌동약 : ‘회연월삭강계(檜淵月朔講契)’의 교화론적 변용

황중해가 추구했던 지식인으로서의 행동 양식의 비중은 ‘처(處)’에 있었지만 그것이 세상과의 단절이나 현실로부터의 이탈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배움(學)의 사회적 적용을 염두했고, 그러한 의지의 ‘실천 공간’이 자신의 주거지 충청도 목천현 세성면(細城面) 공촌(孔村)이었다.

1778년(정조2) 목천현감 퇴임을 앞둔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황중해에 대한 ‘존현예법(尊賢禮法)’을 행한 바 있다. 예법은 묘전(墓前) 치제로 표현되었다. 제문에서 안정복은 황중해의 사(士) 그리고 학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예(禮)와 시(詩)로써 몸을 가다듬고 문규(門規)를 지어 종족을 화목하게 하였으며 동약(洞約)을 지어 시속의 법이 되게 하였으니, 선생의 체(體)에 밝고 용(用)에 적합한 학문,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는 도(道)가 이에 갖추어진 것입니다.<sup>2)</sup>

안정복은 황중해의 학문을 ‘체에 밝고, 쓰임(用)에 적합한 학문[明體適用之學]’으로 규정하고 있다.<sup>3)</sup> ‘본체를 밝게 아는 것[明體]’은 학문의 영역이고, ‘실용에 적합하게 하는 것[適用]’은 시무(時務), 즉 치인(治人)의 영역에 속한다. 황중해는 관료로서 국가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지만 안정복이 그를 학문과 시무의 역량을 아우른 학인으로 평가하게 된 주된 근거는 ‘동약(洞約)’이었다.

또한 안정복은 제문에서 자신과 황중해의 학문적 ‘동류화(同流化)’를 시도하고 있다. 그 동류성은 이황에서 발원하여 정구를 통해 집합되는 ‘한강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후천행장’을 찬술한 허목과 정구와의 사계관계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 보인다.

선생은 한강 정선생(鄭遜)의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정선생은 퇴계 이선생(李滉)에게 수업하였는데, 이것은 미수 허선생(許穆)이 선생의 묘갈문을 지으면서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연원(淵源)의 유래가 저와 같고 학술의 바름이 또 이와 같으니, 후학의 존경과 사모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sup>4)</sup>

다만, 안정복은 황중해를 근기지역(畿湖地域) 한강문인의 ‘최선진(最先進)’ 또는 ‘고제(高弟)’로 평가하는 데에는 인색하다. 이는 이황⇨정구⇨허목⇨이익으로 정착되어 가던 근기남인[또는 畿湖南人]의 학통 구조 속에서 허목의

2) 安鼎福, 『順菴集』 卷20, 〈祭朽淺黃公宗海墓文(戊戌)〉.

3) ‘明體適用의 학자’라는 평가는 조선시대 학자·관료에게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찬사에 속한다. 16세기 이후로는 李廷龜가 李珣에 대해, 宋時烈이 朴淳에 대해, 숙종이 鄭經世에 대해, 宋相琦가 송시열에 대해, 李健命이 朴世采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 바 있다(李廷龜, 『月沙集』 卷49, 〈右贊成贈領議政諡文成公栗谷李先生墓表〉 “既養深積厚 精詣力踐 充而爲德行 發而爲事業者 皆明體適用之學” ; 宋時烈, 『宋子大全』 卷155, 〈思菴朴公神道碑銘 并序〉 “於惟栗翁 尊尙文純 明體適用 實儒之眞” ;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12, 〈賜祭文(德林書院宣額時)〉 “明體適用 道則不苟” ; 宋相琦, 『玉吾齋集』 卷16, 〈代司馬所祭尤庵先生文〉 “明體適用 內聖外王 浩然其氣 斐然其章” ; 李健命, 『寒圃齋集』 卷10, 〈平山先正臣朴世采書院賜額致祭文〉 “博文約禮 明體適用”).

4) 安鼎福, 『順菴集』 卷20, 〈祭朽淺黃公宗海墓文(戊戌)〉.

위치를 의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안정복은 향촌교회론의 영역에서만큼은 황중해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하며 계승의식을 표명한다. 그는 1756년(영조 32)에 제정한 ‘경안동약(廣州府慶安面二里洞約)’에서 주자학적 향촌 교화 및 교육 시스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 선배들이 이 고장에 살고 이 동네에 살면서 이를 모방하여 행한 자가 많았으니, 이를테면 퇴계(退溪)의 예안향약(禮安鄉約; 鄉立約條), 울곡(栗谷)의 사창향약(社倉鄉約; 社倉契約束), 한강(寒岡)의 월삭강계(月朔講契), 황후천(黃朽淺; 黃宗海)의 목천동약(木川洞約; 孔村洞約) 등이 모두 이것이다. 지금 여씨의 본조(本條)를 위주로 하되, 우리나라 현인들의 의론을 참고하고 오늘날의 시속 가운데 적절한 사례를 참작하여, 대략 위와 같이 부조(附條)를 만들었다.<sup>5)</sup>

안정복은 ‘경안동약’이 주희를 비롯하여 이황·이이·정구 및 황중해가 설계·운영했던 제 장치들을 참용(參用)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정구의 ‘월삭강계’(1583)와 황중해의 ‘목천동약(木川洞約; 孔村洞約)’(1641)이다.

‘월삭강계’는 1583년(선조 16) 정구가 회연(檜淵)에서 문인들을 위해 고안한 교육프로그램인데,<sup>6)</sup> 황중해에 이것을 ‘동약’<sup>7)</sup>으로 확대, 응용한 것이다. 전자는 사자(士子) 교육에, 후자는 마을공동체의 운영에 주안점이 있지만 주자학적 교화·교육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 안정복이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강학맥이었던 진주 태안박씨 집안에서 운영했던 ‘내동동약(柰洞洞約)’(1730)은 ‘공촌동약’의 18세기적 재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계승성이 강했고, ‘경안동약(慶安洞約)’(1756)보다 한 세대 앞서 운영된

5) 安鼎福, 『順菴集』 卷15, 〈廣州府慶安面二里洞約〉.

6) 鄭述, 『寒岡全書』(下), 「年譜」, 〈癸未〉(1583) “移居檜淵 構草堂 階下種梅百株 號百梅園 約諸友率門徒 爲月朔講會而立約會儀”

7) 안정복이 언급한 ‘木川洞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 본고에서는 황중해가 거주한 里名을 적용하여 ‘孔村洞約’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이었다.<sup>8)</sup>

조선시대 주요 향촌교화 장치 : 鄉約·洞約

呂氏鄉約(朱子增損)



禮安鄉約(李滉)



社倉鄉約(李珥)



月朔講契(鄭述\_1583)



木川洞約(孔村洞約;黃宗海\_1641)



柰洞洞約(朴泰茂\_1730)



慶安洞約(安鼎福\_1756)

月朔講契의 제 규정<sup>9)</sup>

- 契會立議 : 계획 운영의 총괄 규범
  - 입회 자격 및 절차
  - 敎科 및 학업의 점검
  - 喪助의 방식과 절차
  - 聖人·賢人을 추구하며 이해에 함몰되지 않는 儒者意識의 경계 및 촉구
- 月朔約會儀
  - 좌차 등 약회 때의 예의 규범
  - 선행·약행에 대한 推重과 糾戒
  - 酒宴 예법

8) ‘孔村洞約’(1641)이 ‘柰洞洞約’(1730)과 ‘慶安洞約’(1756)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通讀會儀
  - 통독의 방식과 절차
  - 학업 미달자에 대한 정책 규정
- 講法
  - 입회 절차 및 방식
  - 失儀者 및 학업 미달자에 대한 정책 규정
  - 교과목 및 독서 차례 : 과거공부는 교과에서 제외
  - 강회 일자 : 매월 망일
  - 축출된 회원에 대한 사후 조치 : 명단 게시 및 士林會合 불허

정구가 ‘월삭강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것은 1583년이였다. 이 시기는 정구가 사도(師道)를 표방하며 후진을 양성하던 초기로서 문인의 증가에 따른 체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절실했다.

물론 ‘월삭강계’는 그 대상을 성주(星州)의 사자(士子)로 한정하는 대신 상호(相助)·책선(責善)·징벌(懲罰) 기능까지를 포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향촌 교회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월삭강계’는 후일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이 조선시대의 각종 ‘육영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장치로 평가했을만큼<sup>10)</sup> 교육적 효율성이 높았던 것 같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구가 1587년(선조20) 함안군수 재직 때 사자 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sup>11)</sup> 강안권 문도들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게 되었는데, 그 흐름을 주도한 것은 창녕지역 한강문과의 핵심층이었던 노극홍(盧克弘;鄭述의 甥姪) 일가였다.<sup>12)</sup>

정구는 임진왜란 이후 ‘월삭강계’를 재가동하였는데, 이 무렵 최대의 수혜자

9) 鄭述, 『寒岡集』 卷9, 〈契會立議〉, 〈月朝約會儀〉; 續集 卷4, 〈通讀會儀〉, 〈講法〉.

1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叢稿』, 「人事篇」, 〈習六藝育英才辨證說〉 “我東儒賢鄭寒岡述月朔講會之契約 實爲今世之最切者”

11) 趙亨道, 『東溪集』 卷5, 附錄 〈行狀〉 “丁亥歸咸安 時寒岡鄭先生知郡事 選鄉之秀士 每月朔講學試藝 公輒居前列 鄭先生大加獎許 因而往遊門下 多有授受之訣”

12) 張福樞, 『四末軒集』 卷11, 〈四梅堂盧公行錄〉 “冠山卽公先齋也 設月朔講, 陪季父月村公 勸獎後進”; 盧相稷, 『小訥集』 卷42, 〈風軒盧公墓表〉 “時月村公守冠山齋 行月朔講 又方新建寒岡祠宇 遠方士子頻集 公觀感而興起焉”

가운데 한 사람이 만년 고제로 일컬어지는 배상룡(裴尙龍)이었다.<sup>13)</sup> 이후 이 프로그램은 도성유(都聖俞; 대구) 권도(權壽; 단성), 김시성(金是聲; 청도), 노사계(盧士儼; 함양) 등 정구의 사위·문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17세기 중반에는 박인(朴縑; 함천)·임진부(林眞愆; 삼가) 등 강우학인들이 이를 수용하였으며,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영남 전역은 물론 근기지역으로까지 전파되었다. 근기지역으로의 유입 현상은 안정복의 ‘덕곡서재월삭강회약(德谷書齋月朔講會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sup>14)</sup> 제명(題名)에 이미 수용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황중해의 ‘공촌동약’은 정구의 교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영남→근기지역으로의 확산 과정에서 양성된 한강학적 요소로 규정할 수 있다. 더구나 ‘공촌동약’은 박태무(朴泰茂, 1677-1756)의 ‘내동동약(奈洞洞約)’, 안정복의 ‘경안동약(慶安洞約)’의 표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강학의 환류(還流)’로 규정할 수 있고, 동시에 이것은 한강학의 활발성(活潑性)을 설명하는 명확한 사례가 된다.

조선시대 木川縣 孔村의 사족 현황 : 『大麓誌』(安鼎福)

- 회덕황씨 : 黃尙文家 \_15세기 중엽 입향
- 평산한씨 : 韓世塘家 \_16세기 중엽 입향
- 함양여씨 : 呂復吉家 \_17세기 초반 입향
- 순흥안씨 : 安진家 \_17세기 초반 입향
- 평산한씨 : 韓命祚家 \_18세기 중엽 입향
- 여흥민씨 : 閔德顯家 \_18세기 중엽 입향
- 의령남씨 : 南亮采家
- 남양홍씨 : 洪義載家
- 경주이씨 : 李億虞家
- 안동권씨 : 權禮謙家

13) 裴尙龍, 『藤庵集』, 「年譜」, 〈丙午〉(1606) “五月與弟愧齋公 往拜師門 參通讀而還 師門於亂離之後 憂鄉子弟失學 設通讀之規 月朔講會 先生兄弟往參講席 師門召愧齋公 而前曰是裴子章之弟乎 令講大學 句讀分明 字響清亮 師門謂先生曰公有賢弟”

14) 安鼎福, 『順菴集』 卷14, 〈德谷書齋月朔講會約〉.

‘공촌동약(孔村洞約)’의 시행 공간은 목천현 세성면(細城面)에 소재한 마을이다. 안정복의 『대록지(大麓誌)』에 따르면, 공촌에는 15세기 중엽 회덕황씨가 회덕에서 이거한 이후 17세기 초반까지 평산한씨·함양여씨·순흥안씨가 입거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했다. 이후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여흥민씨·령남씨·남양홍씨·경주이씨·안동권씨 등이 입거하여 마을의 규모가 보다 확대되었다.

‘공촌동약’의 제정 연대가 1641년(인조19)임을 고려할 때, 동약 초기 마을의 주요 시족은 회덕황씨·평산한씨·함양여씨·순흥안씨 등에 한정된다. 공촌 마을 또한 ‘반상합거촌(班常合居村)’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상(常)’의 실체는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

‘공촌동약’은 ‘인리상구(隣里相救)’의 정신에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 운영 조직이었다. 황중해가 ‘동내입의서(洞內立議序)’ 및 ‘동규(洞規)’에서 ‘종전입조(從前立條)’, ‘아동고규(我洞古規)’를 언급한 것에서 ‘공촌동약’에 선행하는 마을규약이 존재하였으며, 그 시점은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촌동약’은 완전한 창안이기보다는 고규(古規)를 17세기의 환경 및 조건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수정 및 보완을 황중해가 전담했다는 점에서 그의 향촌교회론이 집약된 결과임은 부인할 수 없다.

‘공촌동약’은 크게 ‘서문(序文)’과 ‘동규(洞規)’로 구성되어 있다.<sup>15)</sup> ‘서문’은 동약 설립의 취지와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동규’는 범례 및 4대 강령을 합해 총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중해의 서문에서 드러나는 ‘공촌동약’의 기본 정신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상자성(相資性)’이다.<sup>16)</sup> 이것은 생활의 영역에서 물질적 상호(相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책선과 권면을 통해 주자학적 가치에 부합하는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목표로 했다. 그는 덕교(德教)의 붕괴가 ‘반(班士大夫)의 도덕적 타

15) 黃宗海, 『朽淺集』 卷7, 〈洞內立議序〉, 〈洞規凡例四十六條〉.

16) 黃宗海, 『朽淺集』 卷7, 〈洞內立議序〉 “隣保之間 所貴乎相資者 不過曰德欲其勸 患欲其救 交必以禮而已 斯實本天理緣人情 而不容已焉者也”

락', '상(常)의 준법정신의 해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고,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동약의 제정과 운영 또한 도성미속(陶成美俗)을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음을 자술하고 있다.<sup>17)</sup> 이런 회의론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촌의 '인리화(仁里化)'에 부심했고, '법으로써 사람을 이끄는 것(作法導人)'의 한계를 절감하고 여씨향약(呂氏鄉約) 등의 역사적 경험을 차용하게 된 것이다.<sup>18)</sup>

孔村洞約의 구성 : 총 46조항

- 凡例 : 8조항
- 德業相勸 : 5조항
- 過失相規 : 11조항
- 禮俗相交 : 8조항
- 患難相恤 : 14조항

'공촌동약은 양반과 상인이 공동 유사를 맡는 '반상공임(班常共任)', 치부(置簿)를 통한 약중(約中) 사무 및 기물(器物)의 문서화,<sup>19)</sup> 회원 가입의 의무화를 표방했다. 특히 회원 가입에 있어서는 혼취(婚娶)에 따른 분가자의 독자적 가입, 마을에 정거(定居) 기반을 마련한 신주민(新住民)의 입회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sup>20)</sup> 신입 주민의 경우 가입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재·수재 때

17) 黃宗海, 『朽淺集』 卷7, 〈洞內立議序〉 “然則今日之爲此者 實我洞陶成美俗之一機關也”

18) 黃宗海, 『朽淺集』 卷7, 〈洞內立議序〉 “噫 作法導人 其事至重 不依先正訓辭 則亦且鄙俚無稽 而不可爲來世之準의 故洞規綱領 全用呂約四條 仍錄本文於逐條前面 一如古經篇題之例 使後生有志者得有所據 以爲觀感力行之基本焉”

19)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 “每年定有司兩班二員 下人二名 使主掌約中之事 及秋講信時相遞 而所掌文書器用等物 計數傳與 無得疏漏”

20)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 “洞內上下人既婚娶各居者 卽許入約中新入洞內 數年作農 因爲定居者 許入隨行 洞內上下人皆入約中 其或有不肯隨參者 諄諄曉諭 使之隨參 而終不隨參 則其無知異衆甚矣 水火不相資 農役不相通 患難不相救 以待回悟 至於終不入約 然後杖之 杖之而亦不從則出洞”

상자(相資)하지 않고, 농역(農役)을 상통(相通)하지 않으며, 환난을 상구(相救)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했고, 끝내 가입을 거부하면 출동(出洞) 조치했다. 일면 전체주의적 강제성이 작동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지만 마을공동체의 상구(相求) 및 상자(相資)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파악된다.

‘덕업상권’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부모·형제에 대한 효화(孝和)였고,<sup>21)</sup> 그 외 ‘제사를 잘 받드는 일’, ‘자제를 잘 교육하는 일’, ‘어른을 잘 섬기는 일’, ‘처첩을 잘 대우하는 일’, ‘이웃 사람들과 친화하는 일’, ‘붕우를 잘 응접하는 일’, ‘친척들과 화목하는 일’을 의미하는 7사(七事) 또한 효화에 준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sup>22)</sup> 나아가 3년상을 행한 효행이 현저한 하인,<sup>23)</sup> 양반가 충노(忠奴)에 대해 논상 및 선영(報官) 및 聞官하는 규정은 ‘공촌동약’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sup>24)</sup> 특히 ‘하인의 3년상’에 대한 특별한 가치 부여는 황중해가 예를 사(士)의 전유로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과실상규’에서는 ‘소장(少長)·적서(嫡庶)·반상(班常)’의 질서와 명분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도 양반의 하향적 도리 또한 특별히 강조한다. 양반 상호간의 다툼 과정에서 오래전의 과실(過失)이나 문지(門地)의 우열을 들먹이는 태도를 엄격하게 규제했고,<sup>25)</sup> 익명서 등의 부당한 문서 행위, 동중(洞中)의 과실을 다른 마을 또는 다른 고을로 전파하는 행위 또한 엄단했다.<sup>26)</sup> 특

21)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凡人第一善行 莫大於孝父母和兄弟”

22)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孝父母和兄弟外 能奉祭犯 能教子弟 能事長老 能待妻妾 能親隣里 能接朋友 能睦親戚 茲七者莫非日用人事之當行者也”

23)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下人中有能行三年喪者 會集日相議論賞 且其孝行實出至誠 人所共知者 則上下人共舉 上其事於縣官”

24)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兩班家奴婢有盡忠者 會集日招致論賞 且有至誠盡忠 終始不變者 則相議聞官”

25)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今人有因事相詰者 不能相下 或舉久遠過失 或論門地優劣 至於不忍其忿 極口罵辱 又從而歐擊之 此豈兩班之美行耶”

26)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誣人過惡 以無爲有 以小爲大者 或作嘲詠匿名等文書者 或喜談人舊過者 或以洞內人及親戚過失 傳播於他縣他洞者 皆非美行 竝勿論上下 酌輕重致罰”

히 장자(長者)·적자(嫡子)·양반(兩班)이 소자(少者)·서자(庶子)·하인(下人)을 강제(強制)하는 행위, 나아가 '젊은 사람이 장자를, 서자가 적자를, 하인이 양반을 업신여기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패리(悖理)로 규정하여 엄단했던 것이다.<sup>27)</sup> 즉, '공촌동약의 '과실상규'가 지향했던 것은 비리(非理)·패행(悖行)의 규정적 단속 이전에 상층부[長者·嫡子·兩班]의 도리의식에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데 있었다.

'과실상규'의 마지막 조항은 공촌의 현실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요소를 담고 있다. 상조(喪助)와 관련하여 수조(受助)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일부 동원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다. 연상(連喪)을 당해 두 번 또는 세 번에 걸쳐 수조(受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그 시혜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 불만은 당연히 후자에게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황중해의 해명과 조처는 간명했다. 예컨대, 마을 사람들이 윤회(輪回)의 방식으로 사망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불균형은 해소될 수 없다고 언명한 다음 남의 이른 죽음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오래 사는 것을 한탄하는 듯한 세태를 경책(警責)하며 일각의 불평을 일축했다.<sup>28)</sup>

'예속상교'에서 주목할 첫 장면은 세배문화(歲拜文化)에 대한 규정이다. 종래 신정(新正)·동지(冬至)·4명삭(四孟朔)에 존장에게 세배하던 관행을 신정으로 한정하되 엄수를 규정화 했던 것이다.<sup>29)</sup> 하인이 양반의 집 앞에서 말을

27) 黃宗海, 『朽淺集』卷7, 〈洞規凡例四十六條〉“長者之於少者 嫡之於庶 兩班之於下人 各盡其道以待之 如或以非理劫制 而怒其不如意 乃諉以少 凌長庶凌嫡 下人凌兩班 而強欲科罪 則亦甚悖理 不可不戒”

28) 黃宗海, 『朽淺集』卷7, 〈洞規凡例四十六條〉“洞內或有一種議論 以爲某也再度遭喪 而受助於洞內 某也三度遭喪而受助於洞內 而吾則未嘗遭喪 一未受助 徒用力於他人之喪 以此至發怨言 不欲隨參 是則必使洞內人輪回死亡 然後方可平均受助矣 古今天下 安有如此道理 況連遭死喪 實爲不幸 久享壽福 人間大慶 而今反怨吾之久生 羨人之速死 豈非可笑之甚耶 此議一切勿施 且是非利害 自有僉議 不可以一人偏滯之見而有所牽掣也 凡有違衆不順理者 不可不罰”

29) 黃宗海, 『朽淺集』卷7, 〈洞規凡例四十六條〉“古人遇新正冬至四孟月朔 少者幼者 於尊者長者 皆有謁見之禮 令人雖不能一從此禮 如正朝例有謁見之規 而上下人中或多

탈 수 없음은 물론 하인 상호간에도 연소자의 하마(下馬)를 규정하여 경장(敬長) 의식의 신분적 보편성을 추구했다.<sup>30)</sup> 세배는 친족 예법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장예법(敬長禮法)이었던 것이다.

‘예속상교’의 또 다른 주안점은 조상(弔喪)의 신분적 상통성이다. 황중해 또한 양반이 하인을 조상하는 관례(慣例)는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예가 없다고 해서 사상(死喪)이라는 인사의 대변(大變)에 직면하여 상하 간의 정이가 차단되는 것은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동약을 제정한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sup>31)</sup> 조상의 방식을 구체화하는 대신 사람을 보내거나(使人) 혹은 서로 만났을 때 편의에 따라 조위(弔慰)의 뜻을 표할 것을 권유하는 형식의 소극적 대안을 제시한 것은 양반층의 저항과 일정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상하 간 조위의 필요성을 동약에 절문화(節文化) 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환난상휼’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공동체적 구해(救解), 수재·화재의 구제 및 질병 등으로 폐농(廢農) 위기에 처한 가호(家戶)에 대한 구조 등이 주된 조목을 이루고 있다.<sup>32)</sup> 더욱 세심하게 볼 것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항의 과감한 삭제, 약자에 대한 배려의식을 담은 조항이다. 전자의 경우 하인층에서 제기된 주장이었다. 회원 가운데 부모가 없는 경우 타지에 사는 처부모를 조상(助喪) 대상으로 삼을지의 여부였다. 이는 고규(古規)에도 없는 조항이었지만 하인층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동안 시행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재정적 상황이 이 조항의 장구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전면 삭제했던 것이다.<sup>33)</sup> 인정에는 부합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廢之 殊甚不敬 自今以後 互相勸勉 着意舉行”

30)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兩班家前 下人不得騎馬”

31)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兩班之於下人 前此雖無弔喪之例 然死喪 人之大變也 不可全無節文以阻上下之情 或使人 或相遇 隨宜以致弔慰之意”

32) 黃宗海, 『朽淺集』 卷7, 〈洞規凡例四十六條〉“上下人中有以冤枉事陷於囚繫 不能自伸 將被重刑者 上下共舉救解 上下人失火 則隨宜各備藁索椽木飛蓋以助之 上下人中當農作時 家有染病 將至廢農 則各隨其輕重 出力相濟 使不失時”

통해 동약 운영의 효율 및 지속성을 기하고자 했던 것이 ‘공촌동약’이 갖는 유연성이었다.

약자 배려와 관련해서는, 자녀가 없는 노령층도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조상(助喪)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34)</sup> 즉,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해인의 사망에 따른 수조(受助) 이후 다른 회원을 위한 출자(出資)의 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운영의 손결(損缺) 요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포용하는 방침을 고수했던 것이다. 또 자녀가 없는 과부(寡婦)의 경우, 형제질(兄弟姪)이 그를 조상(助喪)의 대상으로 청원하면 이를 수용했다.<sup>35)</sup>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는 직계 준비속에 제한되었음에도 ‘자녀가 없는 과부’의 지친들의 청원을 수용한 것은 ‘동속(洞俗)의 부박·폐악함(薄惡)’을 예방함은 물론 그 지친들의 ‘인격성 보장’이라는 배려와 맞닿아 있었다. 즉, 황중해는 재정적 손축(損縮)이 따르더라도 인정과 윤리적 측면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조항을 설정했던 것이고, 그 바탕에는 신분적, 경제적 기득권자의 양보가 전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촌동약’은 양반의 신분적 우위를 전제로 하면서도 도리의식을 강조함으로써 하층민에 대한 압제를 최소화하고, 조위(弔慰)의 절문화(節文化)를 통해 상하 상통의 가능성을 확대하였으며, 재정적 결손을 감수하고서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책을 모색함으로써 예의론에 바탕한 ‘인리상친(鄰里相親)’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지향이 있었던 것이다.

33) 黃宗海, 『朽淺集』卷7, 〈洞規凡例四十六條〉“我洞古規 助喪舉措 本不及於妻父母喪 而近來勉從下人之請 當身無父母者 則妻父母雖在他鄉 許以相救 然反覆深思 則實爲事力之所不及 理勢之所不便 決不行於久遠而無後弊也 今後上下人妻父母喪 勿論親父母有無 一切勿許相助”

34) 黃宗海, 『朽淺集』卷7, 〈洞規凡例四十六條〉“新入居洞者 年老無子女者 皆許入洞內 死喪患難 竝爲相救 若以爲新入無根着 年老無子女 皆無後日報答之路 而不爲相救 則豈可謂里有仁厚之俗耶”

35) 黃宗海, 『朽淺集』卷7, 〈洞規凡例四十六條〉“無子息寡婦之喪 則兄弟姪之中願用則許之 若以爲寡婦未嘗出物 而不爲許用 則非徒洞俗之薄惡 其爲兄弟姪者 近於禽獸 故不得不處之以此耳”

## 2. ‘공촌동약’의 후대적 계승 :

### 진주 ‘내동동약(柰洞洞約)’과 한강학의 환류

황중해의 ‘공촌동약’의 후대적 계승양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간은 진주 내동(柰洞)이다. 내동은 태안박씨 박민(朴敏, 1566-1630) 일가의 세거지였고, 박민은 진주를 대표하는 한강문인이었다. 1621년(광해군13) 황중해의 영남행 때 성주를 거쳐 박민을 방문하여 학문을 토론한 곳이 바로 내동이었다.<sup>36)</sup> ‘내동동약(柰洞洞約)’의 설계자는 박민의 증손 박태무(朴泰茂)였으며, 동약을 완성하여 시행에 들어간 것은 1730년(영조6)이었다.

‘공촌동약’과 ‘내동동약’의 상관성은 ‘한강학의 환류(還流)’라는 지식의 순환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박민가의 한강학 계승 양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박민이 한강문화에 입문한 것은 25세 때인 1590년(선조23)이었다.<sup>37)</sup> 당초 그는 정인홍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정구와의 학연을 통해 학문적 외연을 확장했던 것이다. 박민의 정구를 향한 ‘사문인식(師門認識)’은 일반적 경모의 수준을 넘어선다. 정구의 시작(詩作)을 벽에 써두고 애송함은<sup>38)</sup> 물론 1599년(선조 32) 정구가 성천부사로 부임하자 직접 가서 문후했고, 1607년(선조 40) 안동부사 재임 때도 동일한 예를 행한 바 있다.<sup>39)</sup> 특히 그는 1620년(광해군 12)

36) 황중해가 정구를 조문하고 동문과의 교계를 다지기 위해 1621년 여름 성주·진주 등 영남 일대를 순방했을 때 상견했던 한강문인은 裴尙龍·朴敏이었다. 특히 진주 柰洞 소재 朴敏의 집에서는 이들을 묵으며 中庸·心經·禮記 등을 강론한 바 있다. 이런 과정은 박민 일가가 황중해에 대해 친연의식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 분명하다(김학수, 앞의논문(2022), 175쪽).

37) 朴敏, 『凌虛集』, 「年譜」, 〈庚寅〉(1590) “二月 就謁寒岡先生 行束脩禮 寒岡先生授以大學心經等書”

38) 朴敏, 『凌虛集』 卷3, 附錄 〈言行總錄〉(成好正撰) “寒岡先生嘗有詩曰大丈夫心事 白日與青天 磊落人皆見 光芒正凜然 先生常愛此詩 題壁而觀省”

39) 朴敏, 『凌虛集』, 「年譜」, 〈己亥〉(1599), 〈丁未〉(1607).

정구가 사망하자 심상 3년을 행하고<sup>40)</sup> 기제에도 참여하는<sup>41)</sup> 등 사후의 예법에도 소홀함이 없었으며, 이들 박경광(朴慶光)의 관례에 ‘한강예법’을 준용하는<sup>42)</sup> 등 생활의 영역으로까지 사설(師說)을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그는 정구에게 배움을 청하기 위해 회연초당(檜淵草堂)을 비롯하여 무흘정사(武屹精舍)·노곡정사(蘆谷精舍)·사양정사(泗陽精舍)를 12차례나 왕래했을 정도로<sup>43)</sup> 향학의 의지가 뜨거웠고, 그 결과로서 후학들로부터 경학에 뛰어나 사도를 강명(講明)한 학인,<sup>44)</sup> 학문과 행의에 있어 한강학의 착실한 계승자로<sup>45)</sup> 평가되었던 것이다.

박민 집안의 가학(家學) 원류(源流)로서의 한강학에 주목하여 그것의 계승과 천양에 주력한 인물은 증손 박태무였다. 박태무는 정구를 퇴계학의 적전으로,<sup>46)</sup> 한강학을 자가의 학문연원으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sup>47)</sup> 그 연장선상에서 27세 때인 1703년(숙종29) 정구를 묘소를 참배, 치제(致祭)할 때 지은 제문에서는 이황(李滉)⇨정구(鄭逋)⇨박민(朴敏)으로 이어지는 학통인식을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sup>48)</sup> 특히 그는 유훈에서도 정구를 여느 선현과는

40) 朴敏, 『凌虛集』, 「年譜」, 〈庚申〉(1620) “及遭喪爲之心喪三年 葬與練祥 皆躬造 每歲忌辰 無故則必就參 雖疾病亦行素 行過星山 必尋謁書院及墳墓 李石潭謂人曰先生門下士不爲不多 而能服勤心喪 終始無間者 惟行遠爲然”

41) 朴敏, 『凌虛集』 卷1, 〈寒岡先生忌日有感〉 “人間悲此日 荏苒幾霜星 迷道終天慟 頭白舊門生”

42) 朴敏, 『凌虛集』, 「年譜」, 〈乙丑〉(1625) “子慶光加冠 三加儀節 一依寒岡先生冠儀”

43) 朴敏, 『凌虛集』, 「年譜」, 〈庚申〉(1620) “先生事寒岡先生服勤之誠 終始如一 距師門二百里 而前後請益之行凡十二 間值疾患 盡心調護 無異親病”

44) 朴敏, 『凌虛集』 卷3, 附錄 〈言行總錄〉(成好正撰) “先生氣質純粹 度量寬洪 自幼不屑遊戲 有長者風 既入學 強志不怠 至忘寢食 早遊寒岡鄭先生之門 得聞爲學大方 講明師道 造詣精深 鄭先生甚器重之”

45) 朴敏, 『凌虛集』 卷3, 附錄 〈挽詞〉(林眞愆) “寒岡門下士如林 行篤省三知爲己 工專重一以治心 平生不失中行道 造詣能從上面尋 會講遺壇春寂寞 千秋永設一悲吟”

46) 朴泰茂, 『西溪集』 卷1, 〈遊清涼小白山記行〉 “退陶傳正脉 吾道獨寒岡 山川爲毓氣 日月與齊光 南州同景仰 東國永輝煌 再拜遺祠下 愀然如見牆 右謁檜淵書院”

47) 朴泰茂, 『西溪集』 卷1, 〈讀曾王考凌虛先生行錄 抄出八條 畫而成帖題之 以寓感慕之意〉 “鳳飛巖下水洋洋 云是先生講道場 幾度春風時雨裏 論心論理話言長 右檜淵樞衣”

구별되는 특별한 ‘존현(尊賢)’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명하는 등 박민(박태무)로 이어지는 태안박씨가의 ‘한강계승의식’은 후모(酷慕)에 근접하고 있었다.

박민의 문집 『능허집(凌虛集)』을 편차하여 정고본(定稿本)으로 만든 것은 박태무였다. 『능허집』에 실린 황중해 관련 시작(詩作) 및 서간(書簡)을 취택, 편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능허연보』 및 『능허선생사우록(凌虛先生師友錄)』을 편찬한 것도 박태무였다. 따라서 그는 선대의 유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황중해에 대해 더욱 주목하게 되었던 것 같다. 수신(修身)과 관련하여 황중해의 시를 차운한 것은 관심과 존경의 복합적 표명이었다.<sup>49)</sup>

황중해에 대한 존경은 ‘선대의 세의’, ‘한강학맥으로서의 동지의식’과 결합되어 깊은 신뢰에 바탕으로 한 계승의식으로 확장되었다. 이 점에서 ‘내동동약’의 제정은 ‘적용지학(適用之學)’ 영역에서의 ‘후천계승(朽淺繼承)’이었다. 이런 점은 박태무가 ‘내동동약’<sup>50)</sup> 서문에서 여씨향약·예안향약 및 황중해의 동약(孔村洞約)을 취용하여 동약을 제정했음을 밝힌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51)</sup>

‘내동동약’은 ‘서문’·‘범례’·‘입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내동동약’은 5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범례를 포함하면 64개

48) 朴泰茂, 『西溪集』 卷4, 〈謁寒岡先生墓文〉 “降我退翁 紹承往哲 啓迪羣蒙 譽髦駿奔 凡幾陶鎔 猗歟先生 負笈而從 講書論理 氣感心通 爰有賢師 其樂融融 … 猗歟先生 吾道之宗 昔我先祖 得御柝幃 以醉醇醪 以扣洪鐘 依歸有所 喜若登龍 誠心敬愛 沒身尊崇”

49) 朴泰茂, 『西溪集』 卷2, 〈讀大學修身章 敬次黃朽淺韻〉 “修身學之本 學者最先行 箇中如得力 次第道理生”. 이 작품의 원운은 ‘讀大學修身章’이란 제목의 시인데, 『朽淺集』에 실린 첫 번째 글이 바로 이것이다. 『朽淺集』은 1713년에 간행되었고, 박태무는 그 뒤 어느 시기에 이를 입수, 학습하는 과정에서 위의 시에 차운하는 한편 ‘孔村洞約’에 착안하여 ‘柝洞洞約’의 제정에 착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50) 이 동약은 朴泰茂, 『西溪集』 卷7, 〈洞約〉이란 제명으로 실려 있고, ‘柝洞洞約’은 필자가 그 설행 공간과 결부시켜 명명한 것이다.

51) 朴泰茂, 『西溪集』 卷7, 〈洞約序〉 “今於洞規之作 以藍田呂先生鄉約四條爲之綱領 其所約諸說 則取退陶老先生鄉約朽淺黃公洞約並二篇 參互考證 多所採用 而亦或有時宜之不同 事務之疎漏 則俱爲斟酌增刪 間亦竊附己意 以爲如左五十七條 此皆節節的當於居隣處鄉之道 而無一事一言之所當廢者也”

조항에 이른다. 이는 범례를 포함하여 총 4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공촌동약’에 비해 내용이 크게 확장되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내동동약’은 ‘공촌동약’의 어떤 부분을 참용한 것인가? ‘범례’의 경우 11개 조항 가운데 8개 조항, 입의의 ①‘덕업상권’은 1개 조항, ②‘과실상규’는 6개 조항, ③‘예속상교’는 8개 조항, ④‘환난상휼’은 11개 조항을 전용(全用) 또는 변용(變用)한 것으로 확인된다. ‘범례’를 포함하여 총 64개 조항 가운데 34개 조항이 겹치는데, 참용율은 55%이다. 이런 수치는 ‘공촌동약’과 ‘내동동약’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이자 ‘공촌동약’이 갖는 전범성(典範性)을 잘 보여준다.

‘柵洞洞約’의 구성 및 ‘孔村洞約’ 參用 현황

- 序文
- 凡例 : 11개 조항[9개 조항 참용]
- 立議 : 53개 조항[26개 조항 참용]
  - 德業相勸 : 7개 조항[1개 조항 참용]
  - 過失相規 : 16개 조항[6개 조항 참용]
  - 禮俗相交 : 11개 조항[8개 조항 참용]
  - 患難相恤 : 19개 조항[11개 조항 참용]
- 비고 : 64개 조항 가운데 35개 조항 참용(참용율 55%)

박태무가 ‘내동동약’의 ‘범례’에서 ‘공촌동약’을 거린(居隣) 규범의 표본으로 극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퇴도선생의 향약 한 편은 주자의 가르침을 조술한 것인데, 나열한 조건(條件)은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규범이며, 또 황후천(黃朽淺)이 저술한 동약은 여씨향약의 유의를 추연(推演)하여 조목 하나하나가 거린(居隣)의 도에 정확하게 들어맞으니 선배들께서 풍속을 돈독하게 하고 세교를 부지하기 위해 힘써 마음을 쓰신 것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sup>52)</sup>

이제 ‘내동동약’은 ‘공촌동약’의 어떤 조항들을 주로 참용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의의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범례’는 ‘공촌동약’의 ‘범례’를 사실상 전용(全用)하고 있어 별도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덕업상권’에서 참용한 것은 충노(忠奴)에 대한 논상(論賞)을 규정한 한 조항이다. 박태무는 이 조항을 참용하면서도 ‘동역을 면제(許除洞役)’하는 내용을 추가하여<sup>53)</sup> 내동의 독자성을 살리고 있다.

‘예실상규’에서 참용한 8개 조항은 ‘적서(嫡庶)·소장(少長)·반상(班常)’관계의 규정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주목할 것은 벌칙을 수용하지 않는 회원의 출동(出洞)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공촌동약’의 범례 규정을 참작하여 적용한 것이다.

‘예속상교’는 11개 조항 가운데, 8개 조항이 ‘공촌동약’과 겹친다. 오히려 겹치지 않는 세 조항이 내동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첫째는 회집 때의 좌차 및 행배(行杯) 범절을, 둘째는 70세 이상 노인 회원의 생신연, 셋째는 회원 상호 간 친압(親狎) 및 해학(諧謔)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특히 노인 회원의 생신연은 반상과 남녀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로의식의 보편적 적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柰洞洞約’에서 ‘孔村洞約’을 참용한 내용

□ 凡例 : 9개 조항 참용

- ① 물품관리 규정 : 別作一冊 洞內各樣器物及稷中物件 並爲置簿
- ② 講信會 : 每年春秋 設講信會 以修整約中之事
- ③ 班常共任 : 每年定有司 兩班一員下人二名 使主掌約中之事 及秋講信時相遞而所掌文書器用等物 皆計數傳授 無至漏失
- ④ 有司의 임무 : 春秋講會時 有司先期發文以通 及其期日 上下有司 各具布席及

52) 朴泰茂, 『西溪集』 卷7, 〈洞約凡例〉.

53) 朴泰茂, 『西溪集』 卷7, 〈洞約〉 ‘德業相勸’ “兩班家奴婢如有盡忠者 會集之日 必招致論賞 又許除洞役 而且其至誠盡己 終始不變者 亦爲相議聞官”

行酒器用 使無闕遺

- ⑤ 유사의 명부 : 別作一冊 錄每年上下有司姓名
- ⑥ 업무 및 지출 장부관리 : 又別作一冊 書約中所爲之事及稷物出用之數 無至疎漏
- ⑦ 회원가입(分家者) : 洞內上下人 既婚娶各居者 卽許入約中 使之隨行
- ⑧ 회원가입(新入者) : 新入洞內 數年作農 因爲定居者 許入隨行
- ⑨ 징계 규정 : 洞內上下人皆入約中 其或有不肯隨參者 諄諄曉諭 使之隨參 而若終不聽施 則其爲無知異衆甚矣 水火不相資 農役不相通 患難不相救 以待其回悟 至於終不入約 然後杖之 杖之而猶不從 則上下共舉 告官出洞

□ 立議 : 총 26개 조항 참용

1) 德業相勸 : 1개 조항

- ① 忠奴에 대한 論賞 및 除役 : 兩班家奴婢如有盡忠者會集之日 必招致論賞 又許除洞役 而且其至誠盡己 終始不變者 亦爲相議聞官

2) 過失相規 : 6개 조항

- ① 嫡庶分義 : 兩班嫡庶之間 恩情雖同 而分義則至嚴 以擊凌嫡 罪在國典 如有犯者 會議致罰
- ② 凌長에 대한 警戒 : 少者之凌長 是居洞不德之大者也 昔石碯諫於衛莊公有六逆之說 而少凌長居其二 苟況爲三不祥之言 而幼而不肯事長居其一 可不懼哉 可不戒哉 如有犯者 僉議致罰 而各隨其輕重
- ③ 班常規範 : 兩班下人之間 其分截然 而近世以來 風俗頹敗 下人之凌辱兩班者 不一其數 如有犯者 亦從其輕重而罰之
- ④ 門地 우열 및 匿名書 등에 대한 警戒 : 又有因事相詰 而不能相下 或舉舊遠過失 或論門閥優劣 抑或有誣人過惡 以無爲有 以小爲大者 作嘲詠匿名等文書者 以洞人及親戚過失 傳播於他邑他洞之人者 實非善俗 皆歸惡行 無論上下 參酌致罰
- ⑤ 削籍 등 제 징계 규정 : 兩班則雖或犯科 不無知識廉恥 豈有不受洞罰 而又不改者哉 若下人則無知無恥 非但不受洞罰 亦有益肆悍惡者 若然則必上下僉議 削名於洞籍 使之不得與洞人吉匈相問 水火相資 農役相通 待其改悔自訟而後 始許更入洞籍 如或終不回悟 則上下共舉 告官出洞
- ⑥ 嫡庶·長幼·班常의 상호 규범 : 嫡之於庶 長之於少 兩班之於下人 各當盡其道 以待之 如或以非理劫制而怒其不如意 乃諉以庶凌嫡少凌長下人凌兩班 而彊欲

科罪 則亦甚悖理 且或有以己嫌隙 暗欲因事覓疵 以爲逞憾之計 則此非但致人  
冤枉 洞內公議無以得行 會集論科之際 此等事當商量處之

3) 禮俗相交 : 8개 조항

- ① 對 양반 相助 규정 : 兩班家有吉凶事 若冠禮登科除官 及呂約本註所云婚姻喪  
塋祭祀 往還書問慶弔之類 洞內上下人 皆着意舉行 無或闕漏 又各隨其家力豐  
約 以盡心顧助之
- ② 對 하인 相助 규정 : 兩班之於下人吉凶事 本無親就慶弔之例 然亦不可全無節文  
不通上下之情 不行報應之道 當使人替往 以致慰賀之意 其顧助之節則依例行之
- ③ 歲拜 규정 : 古人遇新正冬至四孟月朔 卑者幼者 於尊者長者 皆有謁見之禮 今  
人雖不能一遵此禮 然如正朝則例有 謁見之規 而上下人中或多廢之 殊甚不敬  
自今以後 互相勸勉 着意舉行
- ④ 會集 예법 : 會集之日 尊者長者未及定座 則卑者幼者不得徑先據席 其言語起  
去之節 亦皆不可先於尊長 而且無故晚到 紊坐失儀 座中爭詰 空座退便 俱歸不  
敬 各別惕念
- ⑤ 喪禮時 강회 및 연회 금지 규정 : 上下人中 有喪未塋前 凡講信及宴會等節  
勿爲舉行
- ⑥ 상례시 謔舞 및 鼓樂 금지 규정 : 兩班家有殯時 上下人不得謔舞鼓樂 雖下人  
之喪 塋前亦然
- ⑦ 반상간 예법(下馬) : 兩班家門前 下人不得騎馬
- ⑧ 장유간 예법(下馬) : 下人年少者 遇其同儕年老耆者皆下馬

4) 患難相恤 : 11개 조항

- ① 반상간 喪助 규정 : 上下人行塋時 兩班則出奴 下人則自赴 獲喪至墓 役訖而  
後退
- ② 喪助 규정 위배에 따른 벌칙 : 行塋時 上下人中有大段事 故人所共知之外 不  
可稱托家故 不赴墓役 不立役丁 如有犯者 兩班則罰米一斗 下人則決答十五度
- ③ 상조 및 벌칙 규정 : 兩班家無奴者 雇立役丁 事甚不便 若然則每員各出米五  
升 下有司前期收合 以助喪家 若塋前未及備給 則自有洞罰 其罰與元不立役丁  
者同
- ④ 喪具 활용 규정 : 死喪相助等具 各以家長爲主而用之 不復以一家子弟之名疊  
用之 盖自子弟視之 似當各爲其父兄 而自洞人視之 不過相助一喪而已

- ⑤ 회원의 在外 부모에 대한 상조 규정 : 洞人父母雖在他邑他洞 其助喪凡節 一依居洞之人 而勢難赴役 願捧軍價者 依願許施 或有旅死他鄉者 則無論上下 殫盡心力 運柩返葬
- ⑥ 子女喪의 상조 적용 연한 : 洞內上下人子女喪 許用於十五歲以上 以下則不許
- ⑦ 무자녀자에 대한 상조 규정 : 上下人中新入居洞 而年老無子女者 皆許入洞內 死喪患難 並爲相救 若以爲新入無根着 年老無子女 皆無後日報答之路 而不爲相救 則豈謂里有仁厚之俗耶
- ⑧ 鰥夫 및 寡婦의 상조 규정 : 無子女鰥夫寡婦之喪 則兄弟叔姪及遠近親戚之中 願用則許之 若以爲鰥寡未嘗出物 而不爲許用 則非徒洞俗之薄惡 爲其兄弟叔姪及遠近親戚者 近於禽獸 故不得不處之以此耳
- ⑨ 수재·화재 등 재난에 따른 상조 규정 : 上下人中有水火之變 隨宜各備藁索椽木飛蓋以助之 其營作之役 亦一併努力 以至訖功 而兩班則出奴 下人則自赴 兩班無奴者則一依塋時例
- ⑩ 옥사에 대한 상조 규정 : 上下人中有以冤枉事 陷於囚繫 不能自伸 將被重刑者 無論上下 共舉救援
- ⑪ 失農 상황에 처한 회원 구호 : 上下人中 當農作時 家有疾病事故 將至廢農 則洞內各隨其輕重 出力相濟 使不失時

‘환난상휼’은 19개 조항 가운데 11개 조항에서 참용의 양상이 뚜렷하다. 직계 비속의 경우 15세 이상 자녀의 상에만 조상(助喪)하는 것과 자녀가 없는 노인 회원을 배려하는 규정 등이 ‘공촌동약’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촌동약’에서는 자녀가 없는 ‘과부’에 대해서만 형(兄)·제(弟)·질(姪)이 청원할 경우 조상(助喪)을 허용했는데, 여기서는 피대상자를 ‘환부(鰥夫)’로까지 확대하고, 청원인 또한 형·제·질에서 숙질 및 원근 친척으로까지 그 범위를 크게 넓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변용의 원형이 곧 ‘공촌동약’이었던 것이다. 정구가 고안한 ‘월삭강계’가 황중해의 ‘공촌동약’으로 응용되고, 그것이 다시 진주지역 한강학의 거점 마을로 유입되어 ‘내동동약’을 탄생시킨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한강학이 양성한 향촌공동체 교화 및 교육론의 환류 양태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강학을 영남학의 범주에 국한할 수 없는 논거가 된다.

### Ⅲ. 한강학의 지식문화적 영역의 확장과 죽림서원(竹林書院) : 원향론(院享論)에 나타난 퇴계·한강 서원론의 적용 양상

#### 1. 원향론의 발론과 전개 : 강안권 한강문인과의 연대와 제휴

정구의 원향론은 사후 2년째 되던 1622년(광해군 14) 대구 연경서원(研經書院) 종향을 시작으로 1678년(숙종4) 현풍 도동서원(道東書院) 배향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총 12개소의 원우에 제향되었다.

원향론은 문집의 간행, 신도비의 건립, 증작(贈爵)·증시론(贈諡論)과 유기성을 지닌 ‘한강추양론’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존현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림의 대상으로서의 부각은 한강학의 위상 제고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정구의 제향처 : 書院		
研經書院 : 종향(1622)	대구	
川谷書院 : 종향(1623)	성주	· 張顯光 配享(1642)
檜淵書院 : 주향(1627)	성주	· 李潤雨 從享(1677) · 賜額(1690)
檜原書院 : 주향(1634)	창원	· 許穆 從享(1708)
龍泉書院 : 주향(1635)	성천(평안)	· 賜額(鶴翎書院:1660)
冠山書院 : 주향(1638)	창녕	· 賜額(1711)
竹林書院 : 배향(1649)	목천(호서)	· 黃宗海 從享(1649) · 賜額(道東書院:1676)
泗陽書院 : 주향(1651)	칠곡	· 李潤雨 從享(1664)
雲谷書院 : 종향(1661)	충주(호서)	· 賜額(1676)
道林書院 : 주향(1672)	함안	
三陽書院 : 주향(1677)	옥천(호서)	
道東書院 : 배향(1678)	현풍	

정구를 제향하는 원우의 분포는 그의 학문적 영향력과 등비성을 보여 성주·대구·창녕·칠곡·함안·현풍·창원 등 강안권에 집중되어 있다. 강안권이 한강학의 거점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강안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한강학을 ‘지역학’으로 축소시켜 확장적 파악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원우의 분포는 한강학의 범주를 보다 폭넓게 설정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한강학의 학문적 영토 또는 판도 구획과 관련하여 강안권 밖에 존재했던 원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위 표에 따르면, 정구를 제향하는 12개 서원 가운데 강안권(영남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서원은 용천서원(龍泉書院;成川), 죽림서원(竹林書院;木川), 운곡서원(雲谷書院;忠州), 삼양서원(三陽書院;沃川) 등 4개소이다. 용천·운곡서원은 사환처, 죽림·삼양서원은 우거처에 건립되었는데, 4개소 가운데 3개소가 사액되었다.

강안권 다음으로 분포도가 높은 것이 호서지역 3개 서원인데, 이 중에서도 한강학의 호서 확장과 관련하여 주목할 대상은 목천의 죽림서원(竹林書院)이다. 목천은 호서권 한강문인의 양성처, 한강예학의 정수 『오선생예설분류』의 편찬처라는 의미에<sup>54)</sup> 더해 죽림서원의 창건 및 운영의 주체가 정구·황중해 사제였다는 사실, 황중해 또한 배향되어 정구→황중해로 이어지는 목천지역 한강학통이 사람적 공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여느 서원과 차별성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죽림서원이 지니는 호서지역 한강학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죽림서원 건립의 단초가 마련된 것은 정구의 목천우거 때인 1603년(선조 36) 경이었다. 안정복의 『대록지(大鹿誌)』에 따르면, 정구는 사람 강학을 위해 자신의 우거처 갈전(葛田;礪溪) 인근에 강사(講舍) 건립을 추진했고, 개기(開基) 때 주희를 연상케 하는 ‘죽림(竹林)’이라 새겨진 돌(石; 또는 石鐘)이 출토되자 죽림강사(竹林講舍)로 명명했다고 한다.

54) 김학수, 앞의논문(2022), 165-167쪽.

이와 관련하여 송치규(宋穉圭, 1759-1838)의 『강재집(剛齋集)』에는 조금 다른 결의 연혁이 실려 있다.

공은 일찍이 반계의 남쪽에 강사(講舍)를 지으려 터를 닦을 때 석종(石鍾) 하나를 얻었는데, ‘죽림(竹林)’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공은 이를 기이하게 여기고 말하기를 ‘이것은 회옹(晦翁·朱子)의 정사의 이름이다. 오늘 이것을 얻은 것은 참으로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마을의 유생들과 함께 주자사(朱子祠)를 세우고 탁영(濯纓) 김공(金公·金駟孫)을 배향하였는데, 지금의 도동서원(道東書院)이 바로 이것이다.<sup>55)</sup>

안정복의 『대록지』와 송치규(宋穉圭)의 『강재집(剛齋集)』을 종합하면, 강사 건립을 주창한 것은 정구이고, 공간 및 물적 지원을 한 것은 한응기(韓應箕)·응남(應南) 형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정구는 황중해 등 문인들에게 죽림강사를 서원으로 승격하여 주희를 주향하고 김일손(金駟孫)을 배향할 것을 권유했다. 존현의 대상으로 주희가 대두된 것은 ‘죽림(竹林)’이란 지명의 상부성 때문이고, 김일손은 목천이 처향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김일손은 청도 출신이지만 26세 때인 1489년(성종 20) 예안김씨를 재취로 맞은 뒤<sup>56)</sup> 처향인 목천에 별서를 마련하여 죽림정사(竹林精舍)를 경영하는 등 연고가 깊었고, 무엇보다 무오사화에 피화되어 사림의 추앙을 받는 절사(節士)라는 점이 특별하게 고려되었다. 1610년(광해군 2) 황중해가 ‘탁영행장(濯纓行狀)’을 찬술하여<sup>57)</sup> 절행을 특서했던 것도 ‘죽림원향’의 명분을 강화하는 존현 행위의 일환이었다.

죽림원향론이 본래에 오른 것은 정구 사후 강안권을 중심으로 ‘한강추양론’

55) 宋穉圭, 『剛齋集』 卷6, 〈書磻溪松巖二韓公實蹟後〉.

56) 黃宗海, 『朽淺集』 卷8, 〈金濯纓行狀〉 “先生娶禮安金尾孫女 金居湖西木川地 故先生常往來或遊息 及卒 夫人因居木以終 墓於縣東十五里許 夫人之私親兄弟子孫 累世相傳 不絕香火”

57) 黃宗海, 『朽淺集』 卷8, 〈金濯纓行狀〉

이 강도 높게 추진되던 1624년(인조2) 무렵이었다. 강안권의 고조된 분위기가 호서지역 한강문인의 추앙론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황중해는 정구의 유의(遺意)와 목천지역 한강문인의 입장을 절충하여 주희를 주향하고, 김일손과 정구를 배향하는 ‘주향·배향’의 이원적 체계를 구상했고, 배위의 위치 또한 연치에 따라 김일손을 동배위(東配位), 정구를 서배위(西配位)로 설정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한강평화론’으로 지목되어<sup>58)</sup> 영남권 한려문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의성 출신의 장현광 문인 신달도(申達道, 1576~1631)였다.<sup>59)</sup>

1624년 당시 목천 인근 성환찰방에 재직하던 신달도는 위치 논의를 입수하고 황중해에게 서한을 보내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징(釐整)을 촉구했다.<sup>60)</sup> 그것은 신달도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원향에 있어 ‘도학(道學)’을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한 ‘퇴계원향론’의 환기였다.

듣건대. 죽림서원이 이미 낙성되어 탁영(濯纓)·한강(寒岡) 두 선생을 세대의 선후에 따라 추배한다고 하는데, 귀향의 침군자들께서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근세에 노공(盧公) 경린(慶麟)이 성주목사 재직시에 문열공 이조년(李兆年), 문충공 이인복(李仁復)을 위해 서원을 창건하고 한훤당(寒暄堂) 선생을 그 하위에 추향하고자 퇴계 선생께 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선생께서 답서에 ‘한훤 선생은 도학(道學)의 유종(儒宗)이므로, 일절지사(一節之士)에 지나지 않는 두 이씨에 비해 숭봉하는 도리에 있어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 예로부터 서원의 설립은 도학에 비증을 두었지 세대에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

58) 申達道, 『晚悟集』 卷9, 「年譜」, 〈甲子〉(1624) “黃公仍欲追奉寒岡於濯纓之下 先生以爲儒林事體 當以道學爲主 援引朱子南康故事 退溪川谷近例 而貽書辨之”

59) 신달도는 형제 3인이 여헌문화를 출입했고, 특히 아우 申悅道는 ‘旅門十賢’으로 일컬어진 고제였다(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0) 위치의 失宜性を 지적했던 또 다른 인물은 沈赫沈(奕)인데, 그는 鄭崑壽의 사위로 정구에게는 질서가 된다(黃宗海, 『朽淺集』 卷7, 〈書院廟享位次說〉 “適有沈公赫來觀此院曰 寒岡濯纓 將以世代爲坐云 是何言耶 儒家事體 當以道學爲主 斷不可容易定行”).

었습니다. 김탁영의 문장과 절의는 세상이 흠모하는 바이지만 정선생은 후일 문묘에 종사될 대현이므로 존봉하는 도리가 결코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sup>61)</sup>

도학(道學;鄭述)과 절의(節義;金駟孫)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신달도 주장의 핵심이고, 그 근거로 이황의 ‘도학론’이 적용된 영봉서원(迎鳳書院/川谷書院) 사례를 들고 있다. 특히 정구를 ‘문묘에 종사될 대현’, 김일손을 ‘문장과 절의로 세상의 흠모를 받는 인물’로 규정한 대목에서는 17세기 사람들이 양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계량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달도는 ‘도학’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그 또한 단안을 내리지는 못했다. 정구를 김일손보다 상위에 둘 경우 선현(金駟孫)에 대한 압존(壓尊)의 혐의가 수반되어 정구의 ‘겸허양장(謙虛讓長)’의 덕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62)</sup> 명시적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신달도의 본의는 별도의 사당을 지어 김일손을 제향하는 ‘별묘론(別廟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sup>63)</sup> 이를 포함한 제 논의와 결정은 자연스럽게 정구 사후 영남학과 종사의 지위를 물려받은 장현광(張顯光, 1554~1637)에게 미뤄지게 된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경우의 논의를 갖추어 여현 선생께 품질하여 조처한 뒤에야 사체가 온당해져 뒷날 이론(異論)이 제기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sup>64)</sup>

61) 申達道, 『晚悟集』 卷6, 〈與黃大進 宗海(甲子)〉 “伏聞竹林院宇已成 將以濯纓寒岡兩先生 從世代追配云 未知貴鄉僉君子所據之如何 … 近世盧公慶麟宰星州時 爲文烈公李兆年文忠公李仁復砌建書院 欲追享寒暄先生於其下 稟于退溪先生 先生答書曰寒暄先生 乃道學儒宗 其視二李之只取一節者 尊崇之道 不能不殊歸矣”

62) 申達道, 『晚悟集』 卷6, 〈與黃大進 宗海(甲子)〉 “蓋此追配 實有極難處者 若以道學爲重 奉寒岡於濯纓之上 則有違鄭先生謙虛讓長之意 若以世代爲主 奉濯纓於寒岡之上 則實非後生崇奉大賢之道”

63) 申達道, 『晚悟集』 卷6, 〈與黃大進 宗海(甲子)〉 “抑緣此而不祀濯纓 獨奉鄭先生 則又非鄭先生當日講定之遺意 未知如何可以得當也”

64) 申達道, 『晚悟集』 卷6, 〈與黃大進 宗海(甲子)〉 “鄙意則具此措語 稟質於旅軒先生而處之 然後方爲穩當而無後議矣”

‘세대를 반영한 위치의 실의성(失宜性)’, ‘도학과 절의의 엄격한 구분’, ‘별묘론’ 등 신달도의 다양한 주장과 제안은 황중해가 원향론을 수정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하지만 신달도의 권유, 즉 장현광의 자문을 받는 절차가 무려 6년이나 지연된 것에서 목천 사림 내부의 진통을 감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죽림원향론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황중해가 장현광에게 서간을 보낸 것은 1630년(인조8)이었다. 이 서간은 원서(原書)와 문목(問目)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원서에서 그는 청교(請敎)·원학(願學)의 뜻을 강하게 표명하였는데,<sup>65)</sup> 이는 장현광을 사문(師門)으로 인식하고 여헌문화 입문 의지를 공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66)</sup> 다만, 자문 서간이 6년이나 지연된 이유로 모상(母喪) 및 신병을 들고 있으나 절실한 해명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황중해의 문목은 죽림원향에 대한 목천지역에서 제기되는 제(諸) 사론을 알리고, 합당한 조처를 자문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당시 목천 사론은 ① 정구의 유의에 따라 주희와 김일손을 제향하는 주장<sup>67)</sup>, ② 김일손과 정구를 제향하되 문묘의 좌차 및 세대를 존중하여 김일손을 상위에, 정구를 하위에 제향하자는 주장<sup>68)</sup>, ③ 김일손을 별묘에 제향하자는 주장<sup>69)</sup> 등 세가지로 압

65) 黃宗海, 『朽淺集』 卷2, 〈上張旅軒書(庚午)〉 “謹按朱子書 吳生顏子堅輩未嘗及門 先以書請教 則朱子不以爲非而諄諄誨之 然則後學之所以不待攝衣 徑通聲問於先生長者之門 亦必有道矣 … 而抑恐先生不識宗海爲何等人 故先陳宗海之心迹大略 而後及願學之意 可乎 … 如荷先生不以無素而外之 則當繼此而承候道體 亦將以下學工程 隨事仰質 庶幾可以飭身補過於桑榆之景 而不遂爲小人之歸也 區區之願 孰大於是乎”

66) 황중해는 장현광을 한강문인으로 인식했던 바, 여헌문화 입문은 한강학통의順行的 계승이었다(黃宗海, 『朽淺集』 卷7, 〈書院廟享位次說〉 “況旅軒以鄭先生之門人 其欲遵遺意者 宜無所不用其極”).

67) 黃宗海, 『朽淺集』 卷2, 「上張旅軒書(庚午)」, 〈書院位次問目〉 “一則曰祀朱子配濯纓 初出於先生之教 必須一遵遺教 然後先生之靈安矣 吾輩尊先生之道得矣”

68) 黃宗海, 『朽淺集』 卷2, 「上張旅軒書(庚午)」, 〈書院位次問目〉 “今當只奉寒岡濯纓 而依國學兩廡之制 以世代爲次 寒岡當坐於濯纓之下矣 一則曰昞奉三位 或只奉寒岡濯纓 而皆以世代爲次 則寒岡當坐於右 或當坐於下”

69) 黃宗海, 『朽淺集』 卷2, 「上張旅軒書(庚午)」, 〈書院位次問目〉 “今不可執一於遺意也

축되었다. 이는 당시 목천 사론이 ‘도학’에 우월적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세대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도학중사론’에 바탕한 정구의 상위 배향의 실현이 녹록치 않았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황중해는 도학을 거듭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장현광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호소에 가깝다.

주자가 염계(濂溪周敦頤) 사당의 곁에 오현당(五賢堂)을 별도로 지은 것은 도정절(陶靖節, 陶潛)을 주자(周子)·정자(程子) 위에 두지 않기 위함이며, 퇴계·한강 두 선생 또한 서원과 향현사는 다른 것으로 여겨 마땅히 도학을 위주로 하여 이문절(李文節, 李兆年)을 한훤당(寒暄堂, 金宏弼)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비추어 볼 때, 예로부터 유가의 논의는 또한 모두 이와 같았을 뿐입니다.<sup>70)</sup>

황중해의 문목에 대한 장현광의 답서는 『여헌집(旅軒集)』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인동으로 가서 장현광에게 서간을 전한 이는 족제 황종선(黃宗善)이었고, 장현광이 그의 회편에 답서를 보낸 사실은 1635년 장현광에게 두 번째 보낸 서간에서 확인된다.<sup>71)</sup> 이 서간에 따르면, 장현광의 의견은 간명하면서도 자못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죽림원향론에 한강학이 얼마나 강도 높은 개입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이곳 서원의 묘향사(廟享事)는 삼가 선생(장현광)의 가르침에 따라 주자(朱子)를 주위(主位)로 삼고, 정선생(鄭述)을 배향하려고 합니다. 탁영(金駟孫)의 제사에 있어서는 사향(祠享)을 하지 말고 묘제(墓祭)로 하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절실합니다.<sup>72)</sup>

寒岡濯纓 勢難同奉一廟云”

70) 黃宗海, 『朽淺集』 卷2, 「上張旅軒書(庚午)」, 〈書院位次問目〉 “朱子別立五賢堂於濂溪祠堂之傍 不以陶靖節坐於周程之上 退溪寒岡兩先生 亦以爲書院異於鄉賢祠 當以道學爲主 乃不以李文節坐於寒暄之上 以此推之 從古儒家議論 蓋亦如斯而已”

71) 黃宗海, 『朽淺集』 卷2, 〈上張旅軒書(乙亥)〉 “往在庚午冬 因黃宗善往返 伏奉先生辱復書 每長跪敬讀 宛然如侍春風之座 區區感幸 到今刻骨而銘神也”

72) 黃宗海, 『朽淺集』 卷2, 〈上張旅軒書(乙亥)〉 “此中書院廟享事 謹依先生之教 擬以晦菴先生爲主位 而鄭先生 寒岡 配之 至於濯纓之祀 不以祠而以墓者 則先生所誨 誠爲

즉, 장현광은 주희를 주향으로 정구를 배향하고, 김일손에 대해서는 묘제(墓祭)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던 것이다.<sup>73)</sup> 이른바 ‘탁영배제론’이 장현광이 제안한 원향론의 골자였다.

황중해는 장현광의 권고에 공감하면서도 정구의 유의(遺意)와 목천의 사론을 감안한 절충안을 제시하였는데, 별묘론(別廟論)이 그것이다.

탁영에 대한 존사(尊祀)는 본디 정선생(鄭先生)의 유의에서 나왔고, 또 본 고을에서 여러 해 동안 논의하여 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것을 철회하고 묘제(墓祭)만 지낸다면 실로 정리에 있어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탁영의 묘우를 별도로 세웠는데, 강당을 중심으로 정묘(正廟)는 왼쪽, 별묘(別廟)는 오른쪽에 두어 오로지 주자가 남강(南康)에 세운 염계사(濂溪祠)와 오현당(五賢堂)의 제도와 같도록 했습니다.<sup>74)</sup>

황중해가 주희가 건립한 남강(南康) 염계사(濂溪祠)에서 논거를 찾아 절충안을 제시했고, 목천 사론의 고려할 때도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75)</sup> 이어 황중해는 1636년(인조14) 봉안을 예고하는 가운데 장현광

切至”

73) 묘제로의 대행은 시행된 흔적이 있다. 황중해가 〈祭濯纓金先生文〉에서 ‘祠以妥靈 縱云未遑 이 그 근거이며, 연 2회(중춘 및 중추) 상설하는 것으로 규범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일손의 묘는 淸道에 소재하고, 목천 분묘는 부인 禮安金氏의 묘라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이후로는 묘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파악된다(黃宗海, 『朽淺集』 卷6, 〈祭濯纓金先生文〉).

74) 黃宗海, 『朽淺集』 卷2, 〈上張旅軒書(乙亥)〉 “但尊祀濯纓 本出於鄭先生遺意 亦弊鄉之積年所定者 而今乃停罷 只行墓祭 實於情理有所未安 故又別立濯纓廟 蓋講堂居中 而正廟別廟在其左右 一如南康濂溪祠五賢堂之制”

75) 황중해가 別廟論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수반되었다. 목천 출신으로 한강문하의 동문이었던 李孝範조차도 ‘탁영배제론’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황중해는 원향에 있어 ‘도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으로 별묘론을 통해 그를 설득함으로써 반대 여론을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1635년에 가서야 장현광에게 두 번째 서간을 보내 봉안 계획을 통지할 수 있었던 것은 1634년까지도 李孝範 등 반대론자들과의 의견 조정 과정이 치열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黃宗海, 『朽淺集』 卷2, 〈與李進士孝範書(甲戌)〉).

에게 3위[朱子·鄭述·金駟孫]의 봉안문 및 ‘원기(院記)’ 찬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sup>76)</sup> 한편 천곡(川谷)·회연서원(檜淵書院) 원장에게 물력의 지원을 요청하였는데,<sup>77)</sup> 이는 죽림서원 원향론을 강안권 한강학파와의 연대와 제휴의 기반 위에서 완결하려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sup>78)</sup>

그러나 황중해의 의지와는 달리 1636년의 봉안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장현광에게 청했던 봉안문 및 ‘원기’ 또한 찬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봉안에 임박하여 어떤 변수가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황중해가 사망하던 1642년(인조20)까지 봉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서원묘향위차설(書院廟享位次說)’<sup>79)</sup>을 통해 죽림서원 원향론의 전개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도학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은 이황⇨정구로 이어지는 ‘원향론’의 문자적 천명이었다.

76) 黃宗海, 『朽淺集』 卷2, 〈上張旅軒書(乙亥)〉 “將以明春 定行兩廟奉安之禮 而三位奉安祭文及書院記 皆未有所囑處 此諸生之所共悶念而不得不赴懇於先生也 固知此事有妨於燕居調息之地 而顧瞻斯世 都無可當斯託者 故他不敢計 強爲請焉 其在先生衛道牖後之至意 豈肯愀然於此耶”

77) 黃宗海, 『朽淺集』 卷2, 〈與星州川谷檜淵二院院長書〉 “弊鄉嘗卜得書院之基 名曰竹林 我先生許以祀朱子配濯纓 至先生易簣之後 始建祠廟 初擬竝奉先生 而道學與一節所尊懸殊 決不可位先生於濯纓之下 故稟定于旅軒先生 將以先生配朱子 濯纓則別立祠以享之 而不惟橫議掣肘 實緣財力蕩盡 積歲經營 尙闕奉安 此間顛頓狼狽之狀 爲如何也 竊念 貴鄉二院所儲有裕 且爲先生崇敬一事 無間於彼此 倘二院協議 隨宜救助 則斯院之成 指日可期矣 豈不幸甚哉”

78) 황중해는 물력 요청에 더해 『寒岡集』 초간본(1636년 간행) 한 짚을 아울러 요청한 바 있다. 목천은 정구가 遊息했던 한강학의 중요 공간인 바, 그와 목천지역 한강문인에게 『한강집』은 강안권 문인들과 학파적 동지의식을 강화하는 상징이었다(黃宗海, 『朽淺集』 卷2, 〈與星州川谷檜淵二院院長書〉 “先生文集 鉞梓已久 而窮甚路遠 未易送紙印來 使朴野之俗 不能知尊我先生之道德 子夏之見責於曾子 固所甘心矣 此鄉實先生所嘗遊息之處也 送文集一通 以爲終始矜式之地者 其不是尊先生之一道耶 是則在本院諸君子議處中耳”).

79) 黃宗海, 『朽淺集』 卷7, 〈書院廟享位次說〉.

## 2. 원향론의 재론과 귀결 : 호서권 한강학 거점의 출현

죽림서원 원향론이 재접화된 것은 황중해 사후 7년째 되던 1649년(인조 27)이며, 원향론을 이끌며 상량문 등 예식문자를 찬술한 인물은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이었다.<sup>80)</sup> 김득신이 원향을 주도한 것은 황중해와의 척연 및 학연에서 기인했다.

김득신은 사천목씨를 매개로 황중해와 6촌의 척분이 있어 유년기부터 후천문하에서 종학했다. 물론 김득신은 황중해에 대해 ‘제(弟)’를 저처하지는 않았지만 ‘후천만사’에서의 소회,<sup>81)</sup> ‘후천행장(朽淺行狀)’·‘죽림서원강당상량문(竹林書院講堂上樑文)’ 등 모도 및 원우 관련 문자의 찬술 현황을 고려할 때, ‘후천문인(朽淺門人)’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원향론이 재접화된 1649년 당시는 창원 초기 원향에 관여했던 장현광·신달도 등 대부분의 강안권 한려학인(寒旅學人)들이 사망한 상태였고, 강안권의 그 후학들 또한 논의에 가담 또는 공조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의 원향론은 목천지역 한강문파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추진으로 보인다.

김득신이 찬술한 ‘죽림서원강당상량문(竹林書院講堂上樑文)’은 문학적 수사를 넘어 원향의 형태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김득신이 강당의 상량문을 지었다는 것은 황중해 당대에는 모우만 건립되었을 추론을 가능케 한다. 설령 이 상량문이 당초 황중해가 봉안을 예정했던 1636년 작품이라 하더라도 당시 김득신은 33세 불과했다. 물론 연령이 찬술 불가(不可)의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80) 김득신은 원향론을 이끄는 과정에서 ‘竹林’이란 원호 사용의 타당성을 두고 趙相禹와 논쟁을 거치기도 했다. 조상우는 ‘竹林’은 滄洲精舍의 임시 명칭이므로 원호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김득신은 鄭述의 遺意를 강조하며 이 명칭을 고수했다(趙相禹, 『時庵集』 卷2, 〈與金紘柳輜(己丑)〉; 金得臣, 『柏谷集』 冊6, 〈答時庵書〉).

81) 金得臣, 『柏谷集』 冊3, 〈黃朽淺挽詞二十韻(黃宗海)〉 “賤子誠狂簡 親情托始終 庸妄元魯鈍 聖學敢磨礪 不識持身正 徒勞摘句工 自違趨謁久 常有夢魂通”

사천목씨 가계도 : 황종해와 김득신의 인척관계

睦世枰	⇨詹	⇨敍欽	
		⇨長欽	
		⇨大欽[寒岡門人]	
		⇨女 金緞	⇨得臣
⇨鄭堉	⇨女 李弘璧	⇨女 黃宗海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량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 차서(次序)이다. 상량문에는 주희⇨정구⇨김일손⇨황종해 순으로 제향 대상 인물의 학덕을 형용하고 있다.<sup>82)</sup> 1636년 당시에는 언급조차 될 수 없었던 황종해가 제향인의 한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이 글이 1642년 이후에 찬술되었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 즉, 주희·정구·김일손 3현의 제향처로 모색된 죽림서원이 황종해를 포함한 4현의 기림처로 확대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김득신을 황종해의 추배를 주론한 인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추론의 영역에 속한다.

상량문은 또 다른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그것은 ‘세대론(世代論)’과 ‘도학론(道學論)’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었고, ‘별묘론’은 현실화되었는가의 문제이다. 김득신은 상량문에서 정구를 ‘대현(大賢)’, 김일손을 ‘정사(正士)’로 표현했다.<sup>83)</sup> ‘현(賢)’과 ‘사(士)’가 갖는 표현상의 등위에서도 ‘도학론(道學論)’의 적용을 실감할 수 있다. 이른바 ‘도학론’은 장현광이 권고하고, 황종해가 수용하는 단계에서 한강학적 ‘사설(師說)’이 되었고, 김득신은 1649년 죽림서

82) 金得臣, 『柏谷集』 冊7, 〈竹林書院講堂上樑文〉 “惟我新定向其儒業 重其人倫 地有竹林 同朱子精舍之嘉號 饗以俎豆 倣諸葛臥龍之古規 寒岡大賢 承嫡統於退老 濯纓正士 襲剩馥於畢翁 留杖履於葛村 既有神化之妙 托葭莩於木岳 孰無欽想之懷 朽淺傑出爲眞儒 學問最正於當世 孝悌忠信之懿行 質鬼神而無疑 冠婚喪祭之禮文 演經傳而著說 配享之禮斯設 尚德彌深”

83) 金得臣, 『柏谷集』 冊7, 〈竹林書院講堂上樑文〉 “寒岡大賢 承嫡統於退老 濯纓正士 襲剩馥於畢翁”

원 원향에서 그것을 적용한 것이었다.<sup>84)</sup> 상량문을 통해서도 ‘별묘론(別廟論)’의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희를 주향으로 정구·김일손·황중해가 배향되었고, 정구가 동배위로서 선작(先爵)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죽림서원 원향이 주희·정구·김일손에서 황중해에 이르기까지 시기적 격차를 두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1649년에 4현을 동시에 봉안했다는 점이다. 결국 김득신이 상량문을 통해 정련(精練)하고자 했던 것은 주희→이황→정구→황중해로 이어지는 학통이었다. 한강학의 호서 확장과 관련하여 죽림서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竹林書院의 학통 구조

朱子



李滉 : 東方程朱



鄭述 : 溪門正嫡



黃宗海 : 호서권 寒岡學의 小宗

84) 1649년 봉안에 임박한 시점까지도 김일손의 우위를 주장하는 이른바 ‘세대론’이 거세게 일고 있었던 것 같다. ‘세대론’은 ‘寒岡의 遺意’라는 것에 주장의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김득신은 이를 억견으로 일축했다. 정구가 김일손의 제향을 강조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목천에서 배출된 도학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고려된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정구와 같이 목천과의 학문적 연고성을 지닌 인물이 출현하여 상황이 달라진만큼 이황의 이래 원향의 기준으로 정립된 ‘先道學’, ‘後節義’를 적용하여 정구를 상위에 배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던 것이다(金得臣, 『柏谷集』 冊6, 〈與子長子亨書〉 “必隨世代而爲奉安者輒曰 寒岡之遺意也 … 浮薄年少僅識了字者 不知節義之爲何事 道德之爲何事 而徒以血氣之好勝 乃敢曰世代奉安爲是 託以寒岡之遺意 愚未知此論之正也 徒知寒岡遺意之不可違 則何不察寒岡道德之必可尊乎”).

이후 죽림서원은 남인집권기인 1676년(숙종2) 김득귀(金得龜) 등의 청액운동에 힘입어 ‘도동서원(道東書院)’으로 사액되어 국가로부터 공인되기에 이른다.<sup>85)</sup> 청액소의 소두 김득귀는 김득신의 종제였다. 당시는 김득신도 생존해 있었으므로 죽림서원 봉안 및 사액을 이끈 주체는 김득신을 비롯한 목천지역의 한강연원 제가(諸家)였음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김득신의 일련의 역할은 목천(柏田里)에 연고를 둔 사족으로서의 단위를 넘어 정구→황중해→김득신으로 이어지는 학통인식과 결부시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액호(額號)를 반사하는 ‘사액례(賜額禮)’는 그것을 공인하는 국왕의 ‘사액제문’의 반사를 통해 예식의 완결성을 기하게 된다. 1676년 도동서원 사액제문을 지은 것은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 이후 대제학을 맡게 되는 근기남인계 문신 권유(權愈, 1633~1704)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유의 ‘사액제문’ 찬술을 기획한 인물이 한강문인 허목이라는 사실이다.<sup>86)</sup> 허목이 권유를 찬술자로 추천한 것은 정구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바, 죽림서원(道東書院) 사액례는 호서·근기지역 한강학통의 연대와 협찬 속에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허목과 권유는 각기 ‘후천행장[黃徵君行狀]’과 ‘후천집서(朽淺集序)’를 찬술하게 되는데, 이 또한 양자의 연대를 강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 V. 맺음말

이 글은 정구를 종사로 하는 ‘한강학(寒岡學)’을 영남학(嶺南學)에 국한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였고, 한강학이 지니는 17세기 조

85) 『書院瞻錄』, <1676年 5月 11日>.

86) 黃宗海, 『朽淺集』, <朽淺集序>(權愈) “往歲 余直玉堂 眉叟許相國手書 屬余以竹林書院賜額祭文 且略道黃徵士隱德 以徵士之從祀書院也 余當時不識徵士何方之循 而只信相國言 敬諾而製進祭文矣”

선의 지식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추적 및 진단하는데 논점을 모았다.

1583년 성주 회연초당(檜淵草堂)에서 설계된 정구의 ‘월삭강계(月朔講契)’가 1603년 정구의 목천 우거를 통해 황종해(黃宗海)의 ‘공촌동약(孔村洞約)’으로 응용되었다는 것은 한강학의 호서확장의 뚜렷한 징후로 해석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진주권 한강문과의 핵심으로서 내동(奈洞) 일대에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던 박민(朴敏) 일가가 ‘공촌동약’을 수용하여 ‘내동동약(奈洞洞約)’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은 조선후기 향촌 교육 및 교화 장치에 있어 한강학의 한류성을 포착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된다.

한편 성호학파의 주축이자 18세기 근기남인계의 대표적 학자·관료였던 안정복(安鼎福)은 목천현감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황종해의 경세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월삭강계’(1583)→‘공촌동약’(1641)→‘내동동약’(1730)으로 이어지는 향촌교화 장치를 수렴하여 ‘경안동약’(1756)을 제정함으로써 한강학의 외연을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성호학의 원류가 정구에게로 소급된다는 학계의 통설에 따를 때, ‘경안동약’은 한강학과 성호학의 계승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죽림서원(竹林書院·道東書院)은 17세기 조선이 도학의 요새로 무장해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초 죽림서원은 정구가 목천에 우거하는 과정에서 기지를 점지하고 주희(朱熹) 및 김일손(金翹孫)의 제향처로 삼을 것을 권유한 곳이었다. 원향론을 주도한 것은 한강문인 황종해였다. 황종해는 사설(師說)을 준용하면서도 정구의 배향을 모색함으로써 피향인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황종해가 정구의 배향에 부심했던 것은 죽림서원을 한강학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그는 신달도(申達道)·장현광(張顯光) 등 한려학인의 자문과 지원 속에 위치에 있어 도학적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정구[道學]를 김일손[節義]보다 상위인 동배위로 설정하는 단초를 마련했고, 그의 사후 문인 김득신(金得臣)이 1649년 황종해까지 배향하는 원향론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로써 죽림서원은 주희를 주향으로 하여 정구·김일손·황종해를 배향하는 사실상 한강학의 호서 거점으로 출범할 수 있었고, 1676년(숙종2)

남인 집권기에는 도동서원(道東書院)으로 사액됨으로써 그 권위를 고양하게 되었다. 김득신은 퇴계문인 김충갑(金忠甲)의 증손이자 한강문인 황중해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호서권 영남학과의 대표적 학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론이 요구된다.

죽림서원은 단순히 목천권 한강학 거점을 넘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즉, 이항을 제향하는 아산의 정퇴서원(靜退書院)과 인산서원(仁山書院)과의 상호 관계성이 조명될 때 호서지역 퇴계학과의 존재 양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도 별고를 통해 진단해 보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鄭述, 『寒岡全書』; 鄭述, 『寒岡集』; 鄭述, 『국역한강집』(한국고전번역원); 黃宗海, 『朽淺集』; 朴敏, 『凌虛集』; 朴泰茂, 『西溪集』; 安鼎福, 『順菴集』; 安鼎福, 『교감역주순암집』(순암안정복선생기념사업회); 李廷龜, 『月沙集』; 宋時烈, 『宋子大全』; 鄭經世, 『愚伏集』; 宋相琦, 『玉吾齋集』; 李健命, 『寒圃齋集』;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趙亨道, 『東溪集』; 張福樞, 『四末軒集』; 盧相稷, 『小訥集』; 裴尙龍, 『藤庵集』; 宋穉圭, 『剛齋集』; 申達道, 『晚悟集』; 趙相禹, 『時庵集』; 金得臣, 『柏谷集』; 『書院謄錄』

### 2. 논저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학수, 「寒岡學의 湖西 확장과 黃宗海의 계승의식」, 『영남학』 8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Abstract

## The Expansion of Hangang Studies in the Hoseo Region and the Intellectual–Cultural Circulation – Focusing on *Gongchon Dongyak* and *Juknim Seowon* –

Kim, Haksu\*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of the regional expansion of Hangang Studies (*Hanganghak*, 寒岡學) into the Hoseo area through the case studies of *Gongchon Dongyak* (孔村洞約) in Mokcheon-hyeon and *Juknim Seowon* (竹林書院, also known as Dodong Seowon). The former focuses on diagnosing the reflexive circulation characteristics of Jeong Gu’s (鄭述) educational and didactic discourse. It demonstrates how the “Wolsak Ganggye” (月朔講契, 1583), originally designed and implemented at *Hoeyeon Chodang* (檜淵草堂), was adapted by Hwang Jong-hae (黃宗海), a Hangang disciple native to Mokcheon, into *Gongchon Dongyak* (1641). This model was subsequently expanded and applied by Park Tae-mu (朴泰茂), the great-grandson of Park Min (朴敏), a Hangang disciple in the Jinju region, in the form of *Naedong Dongyak* (柰洞洞約, 1730). Furthermore, this developmental trajectory influenced *Gyeongnan Dongyak* (慶安洞約, 1756) initiated by An Jeong-bok (安鼎福), providing a crucial clue to identifying the reflexive circulation nature of Hangang Studies.

The latter part of the study centers on tracing the establishment of *Juknim Seowon* as a strategic base of Hangang Studies in the Hoseo region and analyzing the directional tendencies of ancestral veneration (*wonhyangron*, 原

---

\* Associate Professor, Korean History, Division of Humanitie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soya@aks.ac.kr

鄉論). Although *Juknim Seowon* was originally conceived,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Jeong Gu, as a shrine for Zhu Xi (朱子) and Kim Il-son (金駟孫), Hangang disciples such as Hwang Jong-hae came to prioritize Jeong Gu over Kim Il-son in terms of commemorative hierarchy. This perspective was theoretically grounded in the doctrine of "Primacy of Neo-Confucian Orthodoxy" (*Do-hak Wi-ju-ron*, 道學爲主論). With the posthumous enshrinement of Hwang Jong-hae, *Juknim Seowon* came to establish itself as a key institutional center of the Hangang school in the Hoseo region. However, the scholarly and cultural landscape of Joseon, swept by the supremacy of Neo-Confucian orthodoxy, does not appear entirely coherent upon closer inspection.

Key word : Kim Il-son, Jeong Gu, Hangang Studies, *Gongchon Dongyak*, *Juknim Seowon*, *Naedong Dongyak*

논문 투고일: 2025. 05. 16 심사 완료일: 2025. 06. 05 게재 확정일: 2025. 06. 09

# 17세기 전반 대구지역 교육기구의 재건과 운영

## —관학과 사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 정 윤\*\*

- I. 머리말
- II. 향교: 대구향교의 재건과 「학교모범」
- III. 서원: 정구의 「원규」와 연경서원의 변화
- IV. 서재: 「선사정사학규」와 서재의 운영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전반 대구지역에서 이루어진 교육기구의 재건과 운영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조선 중기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이 전란 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복구되고 기능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양자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역할을 분담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대구지역은 왜란으로 인해 향교와 서원이 모두 파괴되었으나, 전후 수령과 사대부의 협력으로 향교가 재건되었고, 이후 연경서원이 중건되었다. 향교는 국가의 공교육 기관으로서 제향·강학·과거 응시·지역 공론의 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대부는 향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주체로 기능하였다. 연경서원은 이황과 정구의 서원론에 영향을 받아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재건되었으며, 강학·제술·거접 등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의 중추를 이루었다.

본고는 손처눌의 『모당일기』, 서사원의 『낙재일기』, 권문해의 『초간일기』 등을

\* 이논문은 2025년 4월 한국서원학회와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사연구회, 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 공동 주최한 연합학술대회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 연구의 새로운 모색”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활용하여 향교와 서원의 운영 양상의 실제, 지방관과 사대부의 협력 및 긴장 관계, 지역 교육의 실천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란 이후 대구지역에서 향교와 서원이 단순한 공사(公私)의 이분법이 아닌, 상호 연계되고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통치와 교육을 구현해 나아간 측면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대구지역 교육, 향교, 서원, 서재, 관학과 사학

## I. 머리말

교육은 국가 통치의 이념과 실재를 구체화 하는 과정이다. 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좁게 보면 지식인의 학습으로 제한되지만, 넓게 보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화이다. 결국 교육은 국가의 통치 이념을 사회에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조선은 국가 초에 각 지역에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지역을 단위로 성리학에 근본한 국가 운영 이념을 교육하였다.

국가는 교육을 주도하였고, 다양한 층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상하였다. 군현에는 향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16세기 중반이 되자 향교의 운영에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이(李珥, 1536~1584)는 지방 교육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에서 이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던 즈음에 전쟁이 일어났고, 논의는 중단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교육 분야는 이이가 설계한 방법이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서원은 16세기 중반에 처음 설립되었다. 선행연구는 초기 서원은 지방관이 주도하거나, 지방관과 지역 사대부가 함께 하거나, 지역 사대부 특히 후손이나 문인이 주도하여 설립되었다고 하였다.<sup>1)</sup> 이렇게 설립된 서원은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아서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였다.<sup>2)</sup> 첫 번째 서원은 이황(李滉,

1)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2)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1501~1570)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이황은 관직을 그만두고 학자로 지내면서 서원의 운영 원칙을 상세하게 마련하였다.<sup>3)</sup> 이후 서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이황의 생각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향교와 서원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다. 공통점은 지방의 교육기구라는 것이고, 차이점은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향교는 국가이고 서원은 민간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향교와 서원은 각각 연구하였다. 구태여 둘의 관계에 대해 소개한 경우는 16세기 이후 향교의 기능은 쇠퇴하였고, 같은 시기에 서원은 쇠퇴한 향교를 대신해서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주도권을 가졌다는 것이다.<sup>4)</sup> 그러나 향교는 조선시대 내내 자기 기능을 수행하며 존속하였다. 반면 서원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향교와 서원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지역사회에서 향교와 서원의 기능과 역할의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 향교와 서원에 대한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

대구는 왜란으로 향교와 서원 모두 파괴되었다. 17세기 전반에 전쟁이 끝나고 수령은 관아와 향교를 다시 세웠고, 사대부들은 이에 협력하였다. 그리고 사대부들은 연경서원과 선사재를 중건하였고, 대구수령은 서원과 서재의 강화에 참여하였다. 당시 대구에 살면서 이 일에 참여하였던 사대부들의 일상에서 향교와 서원 및 서재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시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서사원(徐思遠, 1550~1615)과 손처눌(孫處訥, 1553~1634)은 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정구(鄭逋, 1543~1620)와 장현광(張顯光, 1554~1637) 그리고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지방관 혹은 지역 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이 일에 참여하였다. 이들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기구에 대한 구성원의 시각을 검토하고 각각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교육 기관의 역할과 상호 작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임근실, 『16세기 영남지역 서원의 운영』, 단국대학교출판부, 2024.

4) 윤희면, 『朝鮮後期 鄕校研究』, 일조각, 1990.

## II. 향교: 대구향교의 재건과 「학교모범」

교육은 좁은 범위에 한정하면 사대부 관료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넓은 범위로 확대하면 전체 구성원에 대한 사회화의 과정이다. 선조 시대 이이(李珥)는 교육 대상과 목적에 맞게 교육 기구를 설립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도록 중앙과 지방에 교육기구를 구상하였다. 이것은 향촌사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한 이이의 지방 관리 방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sup>5)</sup>

이이는 국가 교육기구는 생원과 진사를 제외하고 서울에 살면서 학문에 뜻이 있는 선비(士)가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방의 경우는 사족(士族)과 한미한 가문(寒門)을 따지지 말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관료의 선발과 연계하여 학교를 운영하고자 설계하여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자는 과거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sup>6)</sup> 하재와 사학 그리고 향교와 같은 국가 교육기구는 선발 대상부터 공부하는 내용까지 과거에 맞추어 운영하도록 구상하였다. 이이가 구상한 교육과 사회화의 방향은 「학교모범」에서 볼 수 있다.

이이의 구상이 실현되기까지 조선사회는 커다란 위기와 변화를 겪었다. 1592년 왜란이 일어났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몇 해가 지났다. 본격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는 교육기구를 다시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이가 설계한 국가의 교육 방향과 지향, 지역사회 지식인들의 관념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경상도는 왜란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 그리고 경상도

5) 이경동, 「16세기 울곡 향정론의 구조와 특징」, 『울곡학연구』 55, 2024.

6) 이이, 『율곡전서』 권15 잡저, 학교모범 사목 여섯 번째: 一. 除生進外, 京中志學之士, 皆入下齋及四學, 外方則勿論士族寒門, 凡學儒者, 皆入鄉校. 初入時, 諸生十人, 薦其志學, 然後試講許入, 以學校模範, 使之飭行. 若厭憚拘束, 不籍名于學校者, 不得赴科擧.

의 중심에 위치한 대구는 전쟁을 거치면서 지역의 위상이 크게 변화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대구에 경상감영이 설치되었고, 도내 행정 체계가 대구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런 변화 역시 이이가 설계한 지역 운영방식의 틀에서 이루어졌다.<sup>7)</sup> 이런 배경에서 대구에는 관아와 함께 향교가 재건되었다.

대구에 향교가 재건된 것은 1599년 즈음의 일이었다. 대구는 앞서 1592년 4월 21일 왜군이 점령하였고, 약 1년 남짓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에 대구의 주요한 공공 기구는 모두 훼손되었는데, 향교는 왜군이 감옥으로 사용하다가 이후 소실되었다.<sup>8)</sup> 전쟁이 끝난 후에 향교를 재건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이전하는 데에 참여하였던 손처눌은 '경자년(1600년)에 달성에 옮겨지었다. 이때 순상 한준겸과 대구부사 김구정이 이 일을 주관하였다.'<sup>9)</sup>라고 향교의 재건 과정을 기록하였다.

대구부사와 지역 사대부들은 1600년 1월 새로 지은 향교에서 석전제를 준비하였다. 손처눌은 석전제에 맞추어 새로 만든 제기들을 점검하였다. 석전제가 가다오자 손처눌은 향교로 갔고, 아직도 제기가 모두 준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손처눌은 서원(書員)과 고지기에게 매를 쳐서 다스렸다.<sup>10)</sup> 그리고 향교에 있으면서 제기에 옷칠을 마치고 수령이 오기를 기다렸다.<sup>11)</sup> 석전제를 위해서 향교에서 재계하는 동안 수령과 사대부들은 향교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 서사원은 이이의 「학교모범」을 좌중에게 보여주었다. 자리에 있었던 손처눌은

서행보[서사원]가 퇴계 선생의 「학교모범」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인륜 명분

7) 김정운, 「경상감영의 설치와 대구의 변화」, 『한국학논집』 9, 2023.

8) 서사원, 『낙재일기』 1592년 6월 9일.

9) 손처눌, 『모당집』 권3 잡저, 향교이건사적(청호서원, 2003, 213쪽).

10) 손처눌, 『모당일기』 1600년 1월 29일.

\*이하 손처눌의 『모당일기』는 한국국학진흥원(<https://diary.ugyo.net/>)이 제공하는 원문이미지 및 정서본과 국역본을 참고하였다.

11) 손처눌, 『모당일기』 1600년 2월 1일.

의 가르침 중에 약이 되는 말이라 할 만하다. 한 번 받들어 읽어 보니 술에 취한 인생이 깨어날 것 같았다.<sup>12)</sup>

라고 그날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학교모범」이 학교를 운영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였다. 다만 손처눌은 「학교모범」을 ‘퇴계선생’의 글이라고 잘못 기록하였다.<sup>13)</sup> 이렇게 향교의 건물을 다시 세우고,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사대부들은 조력자 혹은 단순 참여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1600년 향교 대성전에 신임 경상도 관찰사가 참배하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향교 심부름꾼이 와서 신임 관찰사가 대구에 도착하였다고 전하자 손처눌은 읍내로 가서 향소에서 하루를 묵었다. 다음날 바람이 거칠게 부는 가운데 달성으로 들어갔더니 여러 유생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관찰사 김신원은 대성전에 참배하였는데, 새로 지은 향교에 대해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관아로 돌아가 버렸다.<sup>14)</sup> 손처눌은 관찰사의 태도가 탐탁하지 않았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향교를 재건하는 데 자신들의 역할은 분명하였고, 자신들에 의해서 대성전이 이렇게 자리할 수 있었는데 관찰사가 이를 외면하자 내심 불편하였다. 물론 그들은 향교 재건에 스스로 참여하였고, 한편으로 자랑스럽지만 구태여 자신들의 공로를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같은 시기 사대부들의 생각은 대구 사대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경상도 상주에 살았던 정경세도 같은 고민을 하였다. 상주는 왜란 때 대구 못지않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지역이 안정되면서 향교를 중수하는 하는 일에 참여하였던 정경세는 정구에게 편지를 보내서 질문하였다.

12) 손처눌, 『모당일기』 1600년 2월 2일.

13) 정재훈, 「『慕堂日記』를 중심으로 본 孫處訥의 교육활동」, 『退溪學과 儒敎文化』·현재 『嶺南學』 57, 2015 ; 박중천, 「『모당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초 대구 사림의 강학활동과 강회」, 『국학연구』 44, 2021, 58~59쪽.

14) 손처눌, 『모당일기』 1600년 4월 2일.

황공하게도 본 상주(尙州)의 문묘(文廟) 제도에 대해서 여쭙니다. 모든 일이 처음 시작되는 때라서 요즈음 바야흐로 보궐(篋篋)와 뇌작(鼐爵) 등을 갖추고자 하는데, 그 형체(形體)와 제도에 대해서 일찍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례의도(五禮儀圖)』에 나오는 주석은 너무 간략해서 그것만으로 확인하기는 부족하고, 『의례(儀禮)』를 상고해 보고자 하나 이곳에는 그 책이 없어서 대사(大事)가 미진할까 걱정됩니다. 이에 두 서생(書生)을 이 일을 위하여 보내니, 삼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sup>15)</sup>

정경세는 장구에게 향교의 제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정경세는 장구에게 두 사람을 보내니 보와 궤와 뇌와 작의 모양을 설명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당시 정경세는 상주 집에서 지내면서 향교를 다시 세우는 데에 필요한 제반 기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역민이 향교를 재건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시기 지역 사대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1601년 대구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쟁의 피해를 회복해 가는 가운데, 경상감영을 대구에 설치하기로 하였다.<sup>16)</sup> 2월 도체찰사 이덕형이 감영 자리를 물색하기 위해서 대구에 왔다. 그때는 새로 지은 향교에서 10년 만에 향례를 거행할 때였다. 손처눌은 ‘전쟁이 10년이나 이어졌으니 어찌 다시 성대한 의례를 보리라고 생각하였겠는가. 우리 도가 없어지지 않음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멈추지 않은 것이다.’<sup>17)</sup>라고 감격하였다. 대구향교의 소식을 들은 경주부윤이 태극도 두 본을 선물로 보내왔고, 서사원과 손린이 각각 한 부를 받아 갔다. 이들에게 향교는 자신들의 학문을 담은 공간이면서 국가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장에 향교가 있는 것으로 그곳은 문명의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들은 문명 국가의 구성원이라고 여겼다. 향교는 그런 상징을 담은 공간이었다.

15) 정경세, 『우복집』 권9, 서, 惶稟此州文廟之制. 凡百草創. 近方謀備篋篋鼐爵. 而其形體制度. 不曾理會過. 五禮儀圖註. 草略又不足徵. 欲考儀禮則此無其書. 恐不足以盡於大事. 兩生爲此進去. 伏望一一提耳. 使得遵依而不失其制. 幸甚.

16) 김정운, 「경상감영의 설치와 대구의 변화」, 『한국학논집』 93, 2023.

17) 손처눌, 『모당일기』 1601년 2월 8일.

같은 시기에 인동에 살았던 장현광 역시 향교를 중수하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인동향교 역시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서둘러 중건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었다. 장현광이 기록한 당시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본부(本府, 仁同府)의 향교(鄕校)가 도이(島夷)의 병화로 참혹하게 불타 없어졌다. 혹독한 난리가 다소 진정되자,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중수하였으나 물력이 부족하여 견고하고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비바람이 몰아쳐 기왓장이 날아가고 섬돌이 갈라져 형세가 장차 기울어져 무너질 판이었다. 고을의 선비들이 부(府)에 하소연하여 조정에 아뢰게 하니, 조정에서는 특별히 옮겨 창건하도록 허락하였다. [중략] 지난해 늦가을에 재목을 베어 일을 시작해서 이 해 여름 어제(御製)의 글을 받들어 봉안(奉安)하였다.<sup>18)</sup>

장현광에 따르면, 인동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향교를 중수하였다. 조정이 허락하는 명을 받들어 향교를 중수하였는데,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향교의 모양새가 잘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지역민들이 관아에 사정을 하소연하고 조정에 아뢰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윽고 조정의 허락을 얻어 1634년 늦은 가을부터 향교를 옮겨 새로 짓게 되었다. 재목을 마련하여 공사를 시작한지 1년 후에 향교는 완성되었고, 어제의 글을 받들어 봉안하였다. 장현광이 설명한 인동의 사정을 보면, 전쟁 직후에 서둘러 향교를 재건하였던 것과 지역민들이 향교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국가에 요청하였던 사정은 대구와 닮아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전란이 끝이 나고 지역 사회가 진정되면서 사대부들은 무엇보다 향교를 중수하는 일에 가장 먼저 착수하였다. 향교 중수는 조정의 명을 받들어 진행하였다고 말하지만, 건물을 세우고 기물을 갖추는 데는 지역 사대부들이 주도하였다. 상주에서 정경세, 인동에서 장현광에게서 그런 사정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재원을 마련하고, 향교의 기물과 제도를 고증하여

18) 장현광, 『旅軒先生續集』 권4, 雜著, 本校重修說

갖추기 위해 활동하면서 국가는 사대부들의 건의를 수렴하고 국가의 이름을 허락하였다. 여기서 향교를 둘러싼 국가와 지역민의 역할 분담을 볼 수 있다.

향교는 공자를 비롯해서 송나라와 우리나라의 여러 선현을 모시는 곳이었다. 장현광은 선현들의 학문과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학문은 원리가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자신들도 선현을 따라 학업에 매진한다면 그들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sup>19)</sup> 선현의 학문이면서 자신들의 학문을 담은 공간이 바로 향교라고 생각하였다. 이 공간이 전란으로 훼손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향교를 다시 세워서 자신들의 일상이 문명의 영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여겼다.

향교는 국가의 교육기구였다. 향교의 임원을 구성하고,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수령의 책임이었다. 다만 지역민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1601년 대구부에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대구부사는 관찰사가 겸하였다.<sup>20)</sup> 며칠 후에 향교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와서 신임 관찰사가 향교에서 부리는 사람을 마음대로 삭탈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sup>21)</sup> 손처눌은 수령이 향교의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직접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다만 불편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다.<sup>22)</sup> 향교 운영에서 사대부와 수령은 서로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존중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방관에 따라 이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위협 받았다.

왜란이 끝나고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에서는 급한 대로 자리를 물색하고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서 서둘러 향교를 지었다.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복구한 향교를 다시 옮겨 재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앞서 본 인동향교가 그러하였고, 대구향교 역시 같은 사정이었다. 1604년 8월 9일 석

19) 장현광, 『旅軒先生續集』 권4, 雜著, 本校移建時示諸生說.

20) 손처눌, 『모당일기』 1601년 5월 24일.

21) 손처눌, 『모당일기』 1600년 4월 1일.

22) 손처눌, 『모당일기』 1602년 1월 13일.

전제를 마치고 손처눌은 통판을 만나서 대성전을 고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23) 두어 달을 논의한 후에 향교를 옮겨 짓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실무적인 일은 지역을 대표해서 손처눌이 맡았다. 앞서 1599년에 달성에 향교를 세우고, 향사를 준비하던 때와 같았다.

1605년 9월 11일 고유하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일도 수령이 불참한 가운데 손처눌이 주관하였다. 향교는 국가 기관이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향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지역 사대부였다. 향교를 이관하는 과정에 대해 손처눌의 기록을 보면,

임진년에 왜적들이 점령하여 성묘가 적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 후 경자년(1600)에 달성에 옮겨지었다. 이때 순상 한준겸과 대구부사 김구정이 이 일을 주관하였다. 을사년(1605) 겨울에 다시 옛터로 옮겨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듬해(1606) 봄 2월 11일에 기둥을 세우고 여름 4월 11일에 상량을 하였다. 순상과 부사가 감영을 살피며 정사를 시작한 초기이다. 만력 34년 병오년(1606)이었다<sup>24)</sup>

라고 하였다. 1605년 9월에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본격적으로 향교 이관공사를 시작하였다. 손처눌은 10월 7일 통판이 향교에 가서 들보를 살펴 볼 예정이라는 기별을 듣고 아침 식후에 향교에 들어갔더니, 통판이 오지 않았다. 수령은 다음날로 약속을 옮겨 잡겠다고 하였는데, 손처눌은 집안 묘사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자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통판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하였고, 손처눌은 집안 묘사를 거르고 수령을 만나 향교 이관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구향교를 이관하는 과정은 손처눌을 비롯한 지역 사대부가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면 향교는 지역 사대부들에게 어떤 공간이었다. 첫째, 제향 의례를 통해 유학의 담당자를 확인하는 공간이었다. 제향은 향교의 기능에서 가장 우

23) 손처눌, 『모당일기』 1604년 윤9월 13일.

24) 손처눌, 『모당집』 권3, 잡저, 향교이건사적(청호서원, 2003, 213쪽).

선으로 두는 지점이다. 1601년 새해 아침 손처놀은 대성전에 참배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다.

이날 닭이 울 때 대성전에 참배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에 말을 달려와서 사당에 참배하였다. 아침 식후에 다시 성내로 길을 나섰다. 관찰사에게 명함을 들이고 수령을 뵈었다. 품관 유생들이 모두 모였다. 조출한 술자리가 차려졌다.<sup>25)</sup>

손처놀은 새해 첫날 새벽 일정으로 향교에 참배하였다. 참배를 마치고 급히 말을 달려 집으로 와서 집안 사당에 참배하였다. 아침밥을 먹고 다시 관아로 가서 관찰사와 대구부사를 만났다. 새해 첫날의 일정으로 대성전을 참배하고 고을 수령과 관찰사를 만나는 모습은 여느 사대부의 일상과 비교하여 새로운 점이 틀림없다.

이와 함께 석전제는 향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수령은 제사 전날 향교에서 재계하고 제사를 마치면 바로 돌아갔다.<sup>26)</sup> 그에 반해 석전제에 며칠 전부터 향교에서 재계하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일은 유생들의 몫이었다. 석전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대부들은 유학의 담당자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둘째, 강학과 거점으로 유학을 공부하는 공간이었다. 오늘날의 학습과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유생들이 향교에서 지내면서 때때로 강학하고, 시험으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의 주된 방식이었다. 향교의 강학은 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선 16세기 후반 대구향교에서 강학과 거점을 하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금학루에 나가 공무를 집행하였다. 교관 배덕수, 상사 조희익과 과차를 매기기 위해 거점유생들에게 제술을 실시하였다. 7월 8일 향교에 거점하고 있던

25) 손처놀, 『모당일기』 1601년 1월 1일.

26) 손처놀, 『모당일기』 1601년 7월 29일~8월 2일 ; 1601년 11월 4일~5일 ; 1602년 8월 8일 ; 1607년 8월 5일~7일.

유생들이 이날 거접을 파하였다.<sup>27)</sup>

당시 대구부사 권문해의 기록으로 짐작건대, 1587년 7월에 향교에는 거접하는 유생들이 있었다. 거접하는 유생에게 수령은 제술을 시험하여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며칠 후에 거접을 파하였다.

다음해는 6월 말에 거접 유생을 시험하였는데, 6월 22일부터 윤6월 2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시험하였다.<sup>28)</sup> 그 과정에서 수령은 향교에 가서 거접하는 유생들에게 개고기를 마련하여 격려하였다. 시험으로 거접을 마무리하였던 전 해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제 거접을 마칠 때가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해에는 향교 하인의 집에 염병이 심하게 돌아서 교관들은 이웃 집으로 피하고, 유생은 서둘러 파접하고 흩어졌다. 이후 줄곧 가뭃과 전염병이 심하였고, 겨울까지 교관들은 부사에서 지내면서 향교에 복귀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향교의 행사는 모두 객사에서 진행하였다. 다음해 초 향소에서 시행하는 강신(講信)도 관아에서 하였다.<sup>29)</sup> 당시 지역민들과 수령이 함께 하는 일정은 대부분 관아에서 시행하였고, 향교는 석전을 거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였다.

왜란을 겪고 새로 향교를 지으면서 향교의 기능은 더욱 다양해졌다. 손처눌은 1601년 1월 8일 저녁에 달성으로 들어가서 거접하는 친구 대여섯과 함께 잤다.<sup>30)</sup> 며칠 후에 다시 향교에 가서 거접하는 친구들과 잤다. 1601년 5월 16일 고을 수령이 향교에 와서 제술 시험을 시행하였다. 향교를 재건한

27) 권문해, 『초간일기』 1587년 7월 3일.

28) 권문해, 『초간일기』 1588년 6월 22일~윤6월 4일.

29) 권문해, 『초간일기』 1588년 11월 4일~7일 ; 1589년 2월 4일 경산수령 이정가가 우도 입문관으로 돌아왔다. 2일에 방을 내었는데 진사는 삼가의 홍경래가 1등을 하였고, 생원은 진주의 손기종이 1등을 하였다. 과차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방을 내었는데, 전도된 일이 많았다. 이날 향소의 여러 사람들이 강신(講信) 때문에 술과 반찬을 준비하여 아현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30) 손처눌, 『모당일기』 1601년 1월 8~11일.

후에 석전제를 지내고 거접 유생을 두고 강학과 고강을 시행하는 향교의 일상적인 일들은 회복되었다. 향교의 거접과 제술은 수령이 주관하였다.

수령이 향교에서 강학을 하는 일도 있었다. 손처눌이 향교에 들어갔더니 성주가 이미 와 있었다. 이 일에 대해서 손처눌은 수령이 향교에서 유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수령과 사대부가 여가에 글을 논하는 것은 옛사람이 하던 일이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송하였다.<sup>31)</sup> 이전까지 수령은 석전제나 미리 정해둔 강학의 제술 기일에 맞추어 향교에 다녀갈 뿐이었는데, 왜란 이후 재건한 향교는 유생들과 수령이 학문을 논의하는 공간이 되었다.

1607년 5월 대구부사로 정경세가 부임하였다. 8월 손처눌은 향교로 들어갔더니 서사원 등이 먼저 와 있었다. 그날 향교에서 묵었고, 다음날 수령이 와서 강론을 하였다. 그 자리에 참여하였던 손처눌은 온화하고 너그러운 부사의 모습에 깊이 감탄하였다.<sup>32)</sup> 수령이 향교에서 강독을 하고, 사대부들이 참석하는 일은 재건한 향교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해가 돌을 무렵 향교로 길을 나섰다. 이탁, 반호발, 최식, 정강로와 설이 따라왔다. 오후에 부사가 와서 참석하였다. 별이 뜰 무렵에 강독을 마치고 옛집으로 돌아왔다.<sup>33)</sup>

새해가 되고 며칠 후에 손처눌은 해가 돌을 무렵에 향교로 길을 나섰다. 이탁, 반호발, 최식, 정강로와 아들 설이 따라왔다. 오후에 부사가 왔고, 별이 뜰 무렵에서야 강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방식으로 수령은 학교가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강학을 주관하면서 지역 사대부들과 학문적 공감을 형성하였다.

31) 손처눌, 『모당일기』 1604년 11월 11일.

32) 손처눌, 『모당일기』 1607년 8월 20일.

33) 손처눌, 『모당일기』 1608년 1월 16일.

셋째, 각종 국가의 시험에 관한 일을 시행하는 공간이었다. 지방관은 지역 사회에 유학의 관념을 교육하고,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하는 것으로 교육을 장려하였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제술은 국가의 관념을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과정으로 설계하였고, 지방관은 그것을 수행하였다.

1601년 2월 7일 봄 석전제를 위해 향교의 임원들이 재계하였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여 앉은 지역 사대부들은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밤 논의는 이학가라는 사람의 정거(停擧)를 푸는 일까지 말하였다.<sup>34)</sup> 과거 응시는 사대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과거 응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은 지방관과 향교의 일이었다. 향교의 역할은 지역사회 사대부들에게 이렇게 작용하였다.

넷째, 지역민이 국가와 만나는 공간이었다. 향교는 지역민들이 상소를 올려 국가에 의견을 피력할 때 논의하는 장소였다. 1601년 대구 사대부들은 상소를 올리기 위해 향교에 모였다.<sup>35)</sup> 경상 우도 사람 문경호 등 10여 명이 소를 들고 대구향교로 왔다. 향교에서 이 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령은 조정에서 이 상소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모인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였지만 손처눌을 물러나 나왔다. 향교는 지역 사대부들이 모여 상소를 올리는 과정에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령과 논의하면서 상소의 논지를 현실 정치에 맞추어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1602년 8월 6일 손처눌은 석전에 맞추어 향교에 들어갔다. 가서 들으니 손린이 아무런 까닭 없이 정거 논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손처눌은 재계를 마친 뒤에 공사를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 제사도 마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였다.<sup>36)</sup> 다음날 수령이 재계하러 향교에 오자 손처눌은 종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날 유생들이 산성(山城)을 만드는 것에 대해 논하자 수령이 언성을 높였다.<sup>37)</sup> 수령은 국가의 일에

34) 손처눌, 『모당일기』 1601년 2월 6일~8일.

35) 손처눌, 『모당일기』 1601년 11월 9일~11일.

36) 손처눌, 『모당일기』 1602년 8월 6일.

대해 지역 유생들의 논의가 분수를 넘어섰다고 여겼다. 향교는 제향을 계기로 지역 사대부들이 모였고,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 수령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604년 4월 25일 손처눌은 아침 식사 후에 향교의 소회에 들어갔다. 안동과 영천 두 고을의 통문이 당도하였고, 11일에 상주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소회에 모인 유생들이 백여 사람이었다. 앞서 손처눌은 성균관 통문을 얻어 보았고, 다음날 정구를 만났다. 좌우도에 통문을 하여 상소의 일로 모임을 열기로 계획을 하면서 통문의 문구를 작성해서 정구에게 보여주고 수정해서 완성하였다.<sup>38)</sup> 상소를 작성하는 것은 사대부들이었지만, 소회를 열고 함께 논의하는 곳은 공간은 향교였다.<sup>39)</sup>

다섯째, 지방관과 지역 사대부가 학문을 매개로 교류하는 공간이었다. 지역 사대부와 수령의 교류는 다양한 층위에서 긴밀하게 이어졌다. 국기와 지역의 관계는 지방관을 통해서 지역민과 마주하였고, 이들 사이에 형성된 공감대는 지역의 개인으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학문에 영향을 주었다.

옥부절을 차고 경상도의 봄을 두 번 맞으셨습니다  
부지런히 신의를 돈독히 하는 그대가 대단하고  
어리석게 편안하게만 살려는 내가 외려 부끄럽습니다  
『소학』이 특히 좋다고 권면 하시니  
또 자주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sup>40)</sup>

37) 손처눌, 『모당일기』 1602년 8월 7일.

38) 손처눌, 『모당일기』 1604년 4월 9일~27일.

39) 손처눌, 『모당일기』 1608년 5월 9일~5월 13일 ; 1614년 5월 19일 이때 서정보(徐精甫)는 낙재(樂齋)에서 와서 선생을 뵈고 대구향교로 되돌아가서 소유(疏儒)를 의논하여 정하였는데, 우도의 유생들이 곧바로 그들을 제지시켰다고 한다. 합천의 의론이라고 하였다. 1617년 8월 27일 새벽에 양경사가 향교로 향하였는데, 소유(疏儒)로 배행하는 일은 그만두었다. 낮에 채정(蔡禎)이 보러왔다가 떠났다. 1621년 7월 14일 제독 아재 및 희로는 소(疎)에 관한 일로 향교에 갔다.

송영구(宋英耆, 1556~1620)는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대구 사대부들과 교류하였다. 송영구는 『소학』을 강조하였고, 이점에서 지역 사대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고을 수령과 지역 사대부들은 학술적으로 교류하였고, 이 관계는 지방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지식인들의 학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향교는 지역에서 국가와 지방민이 만나는 공간이었다. 이런 역할은 전쟁으로 파괴된 향교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분명해졌다. 이전에도 지역민들은 사마소와 향사당 등에서 역할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수령과 지역민이 마주하는 공간의 중심은 관이었다. 이를테면 1587년 10월 대구부사 권문해는 관아에서 생원 조회의, 교관 서식, 서사원과 함께 술을 마셨다. 얼마 후 12월 6일 향회를 열 것이라고 하였는데, 수령이 그런 모임에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회를 주최한 사람들은 술과 안주를 마련해 직접 이현으로 와서 수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sup>41)</sup> 당시에는 지역에 사마소나 향사당이 있어 수령과 지역민들은 주로 그곳에서 만났고, 향교의 교관은 수령을 만나기 위해서 관아로 갔다. 이제 새로 지은 향교는 지역민과 수령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서로 마주하는 공간의 중심이 되었다.

### Ⅲ. 서원: 정구의 「원규」와 연경서원의 변화

연경서원은 1563년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여 1564년 3월 인지당(仁智堂)의 상량을 하였고, 1565년 10월에 완성하였다.<sup>42)</sup> 연경서원은 처음 성주 팔거현(八莒縣) 녹봉정사(鹿峯精舍)에서 시작하였다. 녹봉정사는 황준량(黃俊良, 1517~1563)이 성주목사일 때 1561년(명종 16)에 건립한 서당이다. 녹봉정사는 건립 후 성주목사와 교관 오건(吳健)이 강의를 주도하였다.<sup>43)</sup> 여기에 전경창이

40) 서사원, 『낙재선생문집』 권2, 서사원과 송영구(宋英耆, 1556~1620)의 시.

41) 권문해, 『초간일기』 1587년 12월 6일.

42) 이숙량, 『매암문집』 권1, 記, 「연경서원기」(花樹齋, 1938).

참여하였고, 이것이 연경서원으로 이어졌다.

연경서원은 이숙량(李叔樑, 1519~1592)과 전경창(全慶昌, 1532~1585)이 주도하여 건립하였다. 이숙량은 경상도 예안 출신으로 중년에 대구로 옮겨 와서 연경동 화암(畫巖) 아래 거주하였고, 전경창은 대구 출신이다. 두 사람은 모두 이황(李滉, 1501~1570)에게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다. 채응린(蔡應麟, 1529~1584)과 정사철(鄭師哲, 1530~1593)은 서원을 건립하는 데 참여하였다.<sup>44)</sup> 그리고 대구부사의 지원을 받았다.

연경서원은 왜란 때 완전히 소실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지역 사대부들은 서원을 다시 세우기 위해 협의하였다. 1602년(선조 35) 3월부터 서원을 중건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였고, 7월에 연당(蓮堂)을 완공하였다. 사당과 강당은 1602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하였다.

당시 대구는 1599년 말에 향교를 건립하였고, 석전제와 강학은 규모를 갖추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향교가 모양을 갖추어 가자 이제 서원을 짓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서원을 다시 세운 사람들은 처음 서원을 세울 때와 다른 관점에서 서원의 운영에 대해 고민하였다. 여기에는 17세기 전반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었다.

처음 연경서원을 설립한 사람들은 서원에 특별한 목적을 담았다. 이황과 이이를 비롯한 당시 사대부 관료들은 서원에 대한 견해를 다양하게 피력하였다. 주목할 지점은 그들이 국가의 교육기구와 서원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이다. 이황은 연경서원이 건립된 후에 서원이 필요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학교는 중앙과 지방에 두루 있어 선비가 머물러 있기에 이것으로 충분한데, 어찌서 서원을 세우는 데에 이렇게 급급한가. 그것은 학교정책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우리 학문에 전념할 수 있어서 이다. 그러니 저들 여러 사람들이

43) 구본옥, 「녹봉정사의 건립과 경영 및 강학」, 『한국학논집』 78, 2020.

44) 구본옥, 「研經書院의 설립과 위상 및 의의」, 『한국서원학보』 10, 2020.

합의하고 협력해서 이 서원을 크게 지은 것이 어찌서 공연한 일이겠는가. 목소리를 높이고 분발하여 진실로 위기지학에 종사하고 서로 권하여 선하고, 서로 권하여 이름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sup>45)</sup>

이황은 중앙과 지방의 여러 곳에 이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충분한데 구태여 서원을 세우는 이유를 말하였다. 서원은 국가의 학교 정책[學政]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우리 학문[吾學, 爲己之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도처에 있는 학교는 국가에서 학규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과거[科擧]에 맞추어 교육하였다. 이에 대비해서 서원은 위기지학을 공부하는 곳이었다. 이이 역시 서원은 성리설을 공부하는 곳이며,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sup>46)</sup> 이이는 향교는 과거 공부를 하고, 서원은 성리설을 공부하는 곳으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서원의 공부만 두고 본다면 이황과 이이의 생각은 같았다.

왜란으로 소실된 연경서원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논의는 서사원(徐思遠, 1550~1615)·손처눌(孫處訥, 1553~1634)·곽재겸(郭再謙, 1547~1615)·유요신(柳堯臣, 1550~1618)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앞서 대구향교의 재건을 주도하였다. 향교를 세우고, 제향과 강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들은 서원을 건립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서원은 향교 다음의 일이라는 생각은 같은 시기에 장현광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장현광은 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47)</sup>

45) 이황, 『퇴계집』 권43, 跋, 書李大用研經書院記後 “今之學校, 遍于中外, 士之遊居於此足矣, 何所取於書院, 而惓惓若是. 其不以無拘於學政, 而可專於吾學也耶. 然則彼中諸人所以合謀竝力, 大作此院者, 夫豈徒然哉. 倡起奮發, 實從事於爲己之學, 相觀而善, 相助以成者, 必有其人也.”

46) 이이, 『율곡전서』 권15, 잡저, 隱屏精舍學規戊寅 一. 非聖賢之書, 性理之說, 則不得披讀于齋中. 史學則許讀. 若欲做科業者, 必習于他處.

47) 장현광, 『여헌집』 권7, 雜著, 서원설.

- ① 서원(書院)은 옛날에는 없었으니, 가장 후세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처음 만든 것은 선대 제왕(帝王)의 국전(國典)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한때 조정의 정령(政令)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다만 후현(後賢)들이 사사로이 의리(義理)로 만든 것이다.
- ② 옛날에 국도(國都)에는 태학(太學)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鄕校)가 있으며, 주(州)에는 서(序)가 있고 당(黨)에는 상(庠)이 있고 여(閭)에는 서숙(書塾)이 있었으니, 이는 삼대(三代)의 학교이다. 이 이외에는 학교가 없었으니, 지금의 서원은 여(閭)에 있는 서숙(書塾)의 의의일 것이다.
- ③ 옛날에 그 지방에 공덕(功德)이 있어 그 지방에서 잊을 수 없는 자이면 반드시 사(社)에 제사하는 일이 있었으니, 지금 서원의 제향도 그러한 의의일 것이다.
- ④ 서원은 애초 국전(國典)과 국학(國學)의 떳떳한 준례가 아니고 후세에 별도로 설치한 것이니, 규화(規畫)하는 요점과 받아 지키는 방도는 반드시 번거로움을 버리고 간략함에 힘쓰며 문(文)을 버리고 질(質)을 숭상하고 풍부함을 버리고 담박함을 취한 뒤에야 사리에 온당하다.

장현광은 서원은 민간에서 만들고, 마을(閭)에 있는 서숙(書塾)에 해당하며, 그 지방 사람들이 기억하려는 사람을 제사하는 곳이므로 규범은 간소하게 하여 본래의 의미를 담으면 된다고 하였다. 왜란 이후에 대구 지역민들이 먼저 향교를 세우고 제향과 강학을 진행한 이후에 서원을 세운 것을 보면, 장현광의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서원을 이해하였던 것이다.

연경서원을 다시 세우고 운영하는 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정구(鄭逵, 1543~1620)와 학문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세운 연경서원을 운영하는 데에 정구의 생각은 크게 작용하였다. 정구는 연경서원을 재건할 즈음 현풍에 도동서원을 다시 세우면서 「원규」를 지었다.<sup>48)</sup> 「원규」는 여덟 조목으로 구성되었다.

정구의 「원규」에서 주목할 지점은 원생 선발(引新進)과 강습(勸講習)에 관한 규정이다. 원생은 서원의 구성원이 추천해서 선발하고, 사마시에 합격하

48) 정구, 『寒岡先生續集』 권4, 雜著, 院規(爲道東作).

면 거주 지역과 나이에 관계없이 원생이 될 수 있었다. 추천은 2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사마시(司馬試) 혹은 향시(鄉試)에 합격하면 나이에 무관하게 원생이 될 수 있었다. 만약 다른 지역 사람이 원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추천이 없더라도 허용하였다.<sup>49)</sup> 결국 구성원의 추천과 사마시 합격 여부가 원생이 되는 데에 중요한 요소였다. 반면 이이는 사족이나 서류(庶類)를 따지지 말고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면 누구라도 은병정사에 입학할 허락하였다.<sup>50)</sup>

강습에 대해 정구는 ‘원장은 벗들을 불러들여 학문을 권하고 강습하는 것을 폐하지 않는다. 겨울과 봄에는 오경(五經)과 사서(四書) 및 이락(伊洛)의 여러 성리서(性理書)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 역사서와 자서(子書), 문집을 읽어 도 된다. 서원에서 과거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외에도 옛사람의 이른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는 것이 있다.’<sup>51)</sup>고 하였다.

49) 정구, 『寒岡先生續集』 권4, 雜著, 院規(爲道東作) 一. 引新進 每於享祀之日. 議引新進. 每人各薦一員. 進于院長. 如無可薦. 不必可舉. 院長通可否. 採衆議而定之. 如用可否. 則宜只取純點. 書于案. 各於名下. 書所引之人. 凡所薦進. 必二十歲以後有學行可觀者. 雖未滿弱冠. 而司馬入格. 或累中鄉學. 而才行超異. 可齒三益之列者. 大概只觀學行成就之如何. 豈可拘拘於科舉之得失耶. 既擇之後. 院長具書迎之. 入院之士. 如有行實不脩. 舉趾踰違者. 輕則院長糾之. 重則院中責之. 用心滅裂. 終不肯改者. 院長與院中. 齊議黜之. 前日所引之人. 竝行損徒之罰. 庶幾引進之際. 有所慎重而不敢輕舉. 噫. 孟子曰. 觀遠臣以其所爲主. 觀近臣以其所主. 後人之觀此錄者. 據其所引之如何. 而其人邪正得失. 亦將難逃矣. 宜各謹慎勉勵. 無相爲累. 志氣衰惰. 不復能振發者. 或已經鄉任. 不肯從事於問學者. 竝聽出院. 遠方之士. 如有願入者. 雖無引之者. 學行成就而別無顯失者. 亦許入. 新學小兒凡在二十歲以下者. 皆聽養蒙齋入學. 雖二十歲以後. 未及入院之選. 而願入養蒙齋者. 亦聽.

50) 이이, 『율곡전서』 권15, 잡저, 은병정사학규 一. 入齋之規. 勿論士族庶類. 但有志於學問者. 皆可許入. 齋中先入者. 僉議以爲可入. 然後乃許入. 若前日悖戾之人願入. 則使之先自改過修筋. 熟觀所爲. 決知其改行. 然後許入. 素昧平生者願入. 則使之姑接近村. 或養正齋. 或山寺往來問學. 觀其志趣操履. 知其可取. 然後許入.

51) 정구, 『寒岡先生續集』 권4, 雜著, 院規(爲道東作) 一. 勤講習: 院長迎請朋徒. 不廢勸講. 冬春. 五經四書與伊洛諸性理之書. 夏秋. 史學子集. 任其所讀. 夫入院之士. 雖不能不爲科舉之事. 而科舉之外. 亦有古人所謂爲己之學者. 苟能不全爲彼所奪. 而或能用心於此焉. 而求之於日用性分之內. 則其存心之地. 用力之方. 庶幾不越乎敬之一字矣. 伊川夫子. 始表章之. 而雲谷夫子. 大發明之. 寒喧堂一生辛苦. 皆是此字. 願與

정구는 서원은 위기지학을 중심으로 강습하되 과거 공부에 대해서도 관대하였다. 이황이 서원은 위기지학을 하는 곳이라고 한 것과 이이가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금지하였던 것과 다른 점이다. 다만 정구는 「강법」에서 ‘과거에 관한 글은 여력이 있을 때 읽을 수 있지만 강회의 교재로 넣을 수 없다.’<sup>52)</sup>고 한 것으로 서원이 과거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은 경계하였다. 서원 운영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이후 각 지역에서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구체화 하였다.

연경서원은 정구의 영향이 작동하던 대구에서 1600년 이후에 재건되었고, 이황과 이이 그리고 정구의 영향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동하였다. 정구는 서원에서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원규」에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며 강습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폐할 수 없지만 이들을 곁에서 붙잡아 주고 배양하는 길은 그 책임이 본 고을 수령에게 있다. 한가한 날 찾아와 한 자리에 모여 제생을 인솔하고 옛사람의 학문을 강명(講明)하면서 권하고 인도해 준다면 보고 느끼며 흠모하여 따라 배우는 사이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한 성취와 분발이 저절로 있게 될 것이다.’<sup>53)</sup>라고 하였다. 이렇게 정구는 서원 강학에 수령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재건된 연경서원은 설립과 운영 그리고 강학에 지방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였다. 처음 연경서원이 운영될 때 대구부사 권문해는 연경서원에 나아갔다.

아침 일찍 연경서원에 가서 유생들에게 제술시험을 보였다. 감역 서사원, 생원 전춘년과 같이 묵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sup>54)</sup>

당시 연경서원에는 유생들이 거접하고 있었다. 이날 서원에 갔던 권문해는

諸君共黽勉而不敢已也.

52) 정구, 『寒岡先生續集』 권4 雜著 講法 一. 所讀書. 逐月有課. 當先經書. 亦及子史. 其他文章學業之書. 雖不免餘力看讀. 而不得入於課簿.

53) 정구, 『寒岡先生續集』 권4 雜著 院規(爲道東作).

54) 권문해, 『초간일기』 1588년 10월 4일.

서원 제술을 주관하였다. 그날 밤 권문해는 여러 유생들과 함께 서원에 묵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방관이 연경서원에서 제술을 주관하던 일은 연경서원이 처음 운영될 때부터 있었다. 이것은 서원을 재건한 후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났다.

연경서원을 다시 세우는 공사를 시작하자 대구부사는 직접 나가서 서원을 지을 터를 살폈다.<sup>55)</sup> 그리고 서원이 완공된 후에 수령은 강학에 참여하였다. 연경서원은 1604년부터 강학을 정기적으로 열었다. 1604년 5월 손처눌은 거접하는 사람들을 고강하기 위해서 연경서원으로 갔다. 「경재잡(敬齋箴)」을 고강하였는데, 거접하는 사람들이 읽을 책은 한 달에 권수가 정해져 있었고, 열흘에 한 번씩 제술을 하면서 두 유사가 함께 번갈아가며 고강을 하였다.<sup>56)</sup>

연경서원으로 가서 통독을 실시하였다. 통관이 와서 잤다. 강독과 제술을 실시하였다. 강독을 마치고 오후에 통관이 부로 돌아갔다. 아침 식사 후에 서행보[서사원, 광익보(廣益)재검]와 작별하고 향교 건물 짓는 곳에 들렀다가 돌아왔다.<sup>57)</sup>

그리고 2년이 지나면서 통독 모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수령은 서원에서 함께 묵으면서 강학과 제술에 참여하였다. 때마침 대구는 1599년에 달성에 지었던 향교를 예전의 자리로 옮겨 짓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대구 사대부들은 연경서원과 향교를 오가며 공사를 감독하고, 강학을 이어갔다.<sup>58)</sup>

55) 손처눌, 『모당일기』 1602년 4월 30일.

56) 손처눌, 『모당일기』 1604년 5월 1일~2일.

57) 손처눌, 『모당일기』 1606년 4월 24일~26일.

58) 손처눌, 『모당일기』 1606년 5월 24일 서원으로 가서 『주자서절요』를 강론하였다. 5월 25일 선성과 선사의 상에 참배하였다. 아침에 강론을 시작하여 저녁에 마쳤다. 1606년 7월 25일 날이 밝을 무렵에 선성과 선사의 상에 참배하고 강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서행보가 조금 차도가 있어서 시험을 보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최기와 배상례가 모두 떨어져 회초리를 맞았다. 1607년 4월 13일 서행보가 연경서원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려 갔다. 이날 목수들을 모아

1604년 수령은 시취하는 일로 서원에 오기로 하였지만, 공무 때문에 오지 못하였다. 수령은 직접 서원에 오지 못하였지만 시와 부의 제목을 서원에 전달해 주었고, 수령의 명을 위임받아서 월강을 시행하였다.

이른 아침에 말을 달려 서원에 갔다. 통관은 진상하는 일 때문에 오지 않았다.【시취(試取)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시(詩)와 부(賦)의 제목을 전해 받았다. 희로가 학관(學官)으로 통관의 명을 받아 월강(月講)을 시행하였다.<sup>59)</sup>

연경서원 강학에 대구부사가 매년 참석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었다. 수령은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신 시와 부의 제목을 보냈고, 서원에서는 수령의 명을 위임받아 학관을 지정하여 월강을 시행하는 것으로 거점과 월강에 수령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1607년 대구부에 신임 부사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왔다. 정경세는 대구에 부임하고 두 달이 되어갈 무렵에 연경서원에 방문하였다. 부사는 초저녁에 서원에 도착하였고, 모인 사람들과 밤중까지 이야기 하였다.<sup>60)</sup>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부사와 서원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상에 배알하고, 서로 읍례를 행하였다.

이날 정경세는 연경서원의 사람들과 함께 서원에서 통독하는 방식(讀法)과 강회를 열고 듣는 방식(聽講)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였다. 대구부사는 고강과 제술을 시행하고, 늦은 밤에 관아로 돌아갔다.<sup>61)</sup> 정경세가 연경서원에서 강회의 규정을 제정하고, 제술을 시행하는 등의 일에 참여한 것은 정구가 서원 원규에서 강습은 수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같은 맥락이었다. 이듬해 수령이 교체되었고, 신임 수령 역시 서원 강학에 참여하였다.

밥을 먹었다. 4월 15일 연경서원으로 갔다. 이날 강회를 마쳤다.

59) 손처눌, 『모당일기』 1604년 3월 6일, 3월 15일.

60) 손처눌, 『모당일기』 1607년 윤6월 15일

61) 손처눌, 『모당일기』 1607년 윤6월 16일 早朝謁, 先聖先師像, 行相揖禮, 設讀法聽講, 午後考製, 星城主還官, 講明文學, 踐履規矩, 眞賢大夫也.

당시의 지방관은 사대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령으로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서원 강학에 참여하면서 지역 사대부를 이끌어 지역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하였다.

연경서원은 과거시험 준비도 철저하게 하였다. 이윤우(李潤雨, 1569~1634)와 손린(孫遴, 1566~1628)은 연경서원에서 함께 공부하였다. 어느날 손처놀이 연경서원으로 갔더니 두 사람이 강경 시험을 연습하고 있었다.

연경서원에 가는 길에 서지숙(徐智叔)을 만나 술을 마셨다. 저녁에 서원에 들어가니, 이무백(이윤위)과 계진(季進) 종숙(손린이 강경(講經)시험을 연습하고 있었다. 이무백과 종숙이 읽은 경전을 고강하였다. 내가 급제는 이 경전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sup>62)</sup>

손처놀은 두 사람이 읽던 책을 시험하였고, 급제는 이 책에 좌우된다고 말해 주었다. 당시 서원에서 강경을 공부하던 이윤우와 손린은 이듬해 대과에 합격하였다. 서원에서 강경을 준비하며 그에 맞추어 고강을 하였고, 이렇게 공부하였던 두 사람이 대과에 급제하였다. 연경서원은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공간이었고, 이는 서원의 공부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서원에서 거접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이었다. 무엇보다 서원이 본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거접을 인식하다. 문제는 원생이 거접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 때문에 앞 시기에 이황은 서원을 설립할 당시부터 거접에 대해 고민하였다.<sup>63)</sup>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적절할 때에 시험을 보고 제한된 인원에게는 거접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통판이 서원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 서원으로 길을 나섰다. 말을 달려

62) 손처놀, 『모당일기』 1605년 3월 28일~29일.

63) 정재훈, 「조선후기 龍山書院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16, 2023.

서원에 도착하였더니 모두 모여 있었다. 낮에 통판이 왔고, 제술 시험에 입격(入格)한 자들 16명을 거집하도록 정하였다.<sup>64)</sup>

1604년 연경서원은 강학과 거집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해 수령이 주관하는 제술에서 16명을 뽑아서 거집을 하였다. 정구가 서원의 강학에 수령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던 지점은 이렇게 시행되었다.

연경서원은 관학의 다음에 설립하고 관학과 일정하게 차이를 두면서 운영하였다. 연경서원은 서원은 위기지학을 공부하는 곳이라는 이항의 관념에 기반하여 시작하였다. 이항과 이이 그리고 왜란 이후에 장현광에 이르기까지 서원에 대한 인식은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왜란 이후에 재건한 연경서원은 과거 공부를 금지할 수 없으며, 서원의 강학에 수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구의 입장은 서원의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 연경서원은 과거 공부에 맞추어 고강을 시행하고, 수령이 주관하여 거집할 유생을 선발하였다. 연경서원은 향교의 다음으로 지역의 사대부가 주도하여 건립하였고, 지방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였던 교육 기구였다.

#### IV. 서재: 「선사정사학규」와 서재의 운영

선사재는 1587년 가을 정사철(鄭師哲)이 선사암(仙槎庵)이 있던 자리에 세운 선사서당에서 비롯되었다.<sup>65)</sup> 선사서당은 지역 사대부들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 설립한 공간이었다. 처음 선사서당이 완성되자 당시 대구부사 권문해가 와서 남긴 글에서 ‘선사리는 암자가 있던 자리에 새로 서당을 세워서 후생들을 기르고자 하니 선비들이 공부하는 장소를 이제야 얻었다.’고 설명하였다.<sup>66)</sup> 처

64) 손처눌, 『모당일기』 1604년 윤9월 14일.

65) 구분옥, 「금호강 하류에 仙查書堂을 연 林下 鄭師哲」, 『조선사연구』 23, 2014.

66) 권문해, 『초간집』 권2, 詩○七言律詩 題仙槎庵書堂: 孤雲遺跡在山阿. 庵號仙槎遠

음 선사서당은 지역 선비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이해하였고, 수령 역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선사서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강학은 중단되었다. 전쟁이 끝나고 지역이 안정되면서 다시 서재를 지어서 선사서재(仙查書齋) 또는 선사재(仙查齋)라고 하였다. 선사재를 다시 운영한 것은 서사원이 중심이 되었고, 지역 사대부들이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사재는 개인의 강학 공간에서 지역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공의 서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17세기 전반에 향교와 연경서원을 재건하고 제향과 강학이 이루어지면서 선사재도 본격적으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서재는 서원과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었지만,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서재는 강학을 위주로 운영되었다. 서사원과 손처놀이 운영하던 강회는 선사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sup>67)</sup> 그리고 선사재의 운영 규약은 서사원이 정리하였다.<sup>68)</sup> 선사재 운영 규약 가운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에 입학은 사족이나 서류를 따지지 말고 단지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입학을 허락한다.<sup>69)</sup>
2. 성현의 책과 성리에 관한 설이 아니면 재 안에서 읽지 않는다. 역사책은 허락한다.<sup>70)</sup>
3. 제생은 비록 모일 때가 아니라도 매달 한 번은 정사에 모여 의리를 강론하고 직월을 새로 정한다. 매월 초하루에 반드시 모인다.<sup>71)</sup>

自羅。洗硯池存餘舊墨。爛柯臺廢沒寒莎。新營學宇尋前躅。更濬文源導後波。士子藏修今得所。溪風吹雨和絃歌。

67) 박중천, 『『모당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초 대구 사림의 강학활동과 강회』 『국학연구』 44, 2021.

68) 서사원, 『樂齋集』 권6, 雜著, 仙查精舍學規

69) 서사원, 『樂齋集』 권6, 雜著, 仙查精舍學規 一. 入齋之規. 勿論士族庶類. 但有志於學者. 皆可許入. 齋中先入者. 僉議以爲可入. 然後乃許入. 若前日悖戾之人. 願入則使之先自改過修飾. 熟觀所爲. 決知改行. 然後許入. (公糧之用依研經)

70) 서사원, 『樂齋集』 권6, 雜著, 仙查精舍學規 一. 非聖賢之書性理之說. 則不讀于齋中. 史學則許讀.

서사원은 선사재에 사족이나 서류를 따지지 않고 입학을 허락하였다. 서재에서는 성리설을 공부해야 하며, 역사책은 허락하였다. 매달 한 번씩 모여 강론을 하고 직위를 새로 선발하여 서재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재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이이가 제시한 「은병정사학규」와 선사재의 규약은 내용 구성이 같다는 점이다.<sup>72)</sup> 참여 자격에서 선사재는 사족이나 서류를 따지지 말고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입재를 허락하였다. 이 규정은 이이가 「은병정사학규」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이에 반해 정구는 「원규」에서 기존 구성원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원장과 구성원들이 심사해서 허락한다고 하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다음으로 서재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다. 선사재는 성현의 성리설이 아니면 읽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예외적으로 역사서는 허락하였다. 여기까지는 「은병정사학규」의 내용과 같았다. 다만 이이는 과거 공부는 정사에서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였지만, 서사원은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정구가 「원규」에서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변화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 그밖에 서재 생활에 관한 규정은 「은병정사학규」와 내용이 같다. 결국 서사원은 앞서 향교를 재건하고 「학교모범」을 운영의 기준으로 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선사재는 「은병정사학규」를 기반으로 운영하였다.

이렇게 세운 선사재는 연경서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서재는 강학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서원은 향사와 함께 거접과 강학을 진행하는 곳이었고, 규칙은 엄격하였다. 이에 반해 서재는 강학과 거접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서원보다 다소 자유로웠다.

71) 서사원, 『樂齋集』, 권6 雜著 仙查精舍學規 一. 諸生雖非聚會之時. 每月須一會于精舍. 月朔必會朔日有故. 則退定不出三四日. 有司先期出回文周告. 講論義理. 改定直月.

72) 은병정사에 대한 이해는 박균섭, 「은병정사 연구:학문과 학풍」, 『울곡사상연구』 19, 2009 ; 임근실, 「16세기 서원 학규에 대한 검토와 특징」, 『한국서원학보』 6, 2018 ;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사상사학』 61, 2019 참조.

서원 심부름꾼이 와서 곽여달(郭爾達)의 편지 내용을 알려주었다. 선사로 옮겨 강회를 하자는 일이었다.<sup>73)</sup>

선사재는 정기적으로 강학을 하였고, 연경서원의 강학과 공유 및 역할분담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 연경서원에서 강학은 1602년 서원이 중건되면서 시작하였고, 1605년 즈음에는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sup>74)</sup> 1606년 연경서원 심부름꾼이 와서 곽용의 편지를 손처눌에게 전해 주었다. 곽용은 연경서원에서 예정된 강학을 선사재로 옮겨 진행하자고 하였다. 곽용은 곽재겸의 아들이고, 곽재겸은 연경서원과 선사재의 건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연경서원에 사정이 생기면 강학을 선사재로 옮겨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선사재는 연경서원의 외곽에서 강학과 거점의 기능을 분담하였다. 선사재와 연경서원이 강학을 공유한 것은 손처눌은 서재의 규약에서도 볼 수 있다.

을사규약(乙巳規約): 매일 초하루에 혹 연경서원에서 모이고 혹 선사재에서 모여 성현의 잠계를 강당 벽 위에 걸고 북쪽 벽 아래 스승의 자리를 설치한다. 선생이 낙재선생과 나란히 앉으면 여러 생도들은 앞으로 나와 배례를 행하고, 이어서 세 면으로 나누어 서서 서로 향하여 읍례를 행한다. 자리를 정하고 앉으면 유사가 소리 내어 「백록동규」와 「학교모범」을 한 번 읽는다. [중략] 성현의 글과 역사(史)가 아니면 강학을 허락하지 않는다.<sup>75)</sup>

을사규약은 손처눌이 정리한 연경서원의 강학 규약이다. 강학 규정에 매일 초하루에 서원에 모여서 강학을 하되 여의치 않으면 선사재에서 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강학을 할 때는 「백록동규」와 「학교모범」을 읽고 구성원들이 내

73) 손처눌, 『모당일기』 1606년 8월 25일.

74) 구본욱,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논집』 11, 2012 ; 구본욱, 「연경서원의 강학과 대구지역 제3세대 유학자」, 『조선사연구』 28, 2019.

75) 손처눌, 『국역 영모당통강제자록』 「을사규약」(청호서원, 2001).

용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후 대구지역의 학문에 토대가 되었다.

서재가 지역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지방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선사재 건립에 수령은 여러 측면에서 행정적인 편의를 봐 주었다.<sup>76)</sup> 선사재에 대한 수령의 관심은 서재의 강회와 고강에 수령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초저녁에 서행보(徐行甫)와 함께 선사재(仙查齋)에서 잤다. 모인 인원이 겨우 서른 명이었다. 순찰사도 고강(考講)에 참석한다는 기별이 있었다.<sup>77)</sup>

선사(仙查)로 갔다. 광익보(廣益)재검, 한경안, 류성유가 어제 이미 와서 모여 있었다. 『주자서절요』 제2권과 「원조오잡(元朝五箴)」을 읽었다. 정오 무렵에 순찰사가 와서 강회에 참석하였다가 저물녘에 감영으로 돌아갔다. 순찰사는 경서를 익숙하게 읽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애석하게도 자신의 본분에 적용할 줄을 모른다.<sup>78)</sup>

1606년 선사재는 본격적으로 강학을 하였다. 1월 초 고강을 하기 위해서 선사재에 모인 사람이 서른 명이나 되었고, 순찰사가 참석한다고 연락을 하였다. 선사재는 다수의 지역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학문 공간이었고, 지방관이 고강에 참여하여 지역 사대부들과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었다. 9월 초하루 손처눌은 초하루 서재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번 강회는 수령이 참석하여 자신의 공부를 충분히 보여주고 돌아갔다.

17세기 전반에 대구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정구는 선사재에서 활

76) 손처눌, 『모당일기』 1613년 4월 10일 집에 있었다. 일기를 정리하여 썼다. 이가 화李可和가 와서 서재를 짓는 일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내가 한숨을 쉬며 “보통 사람은 전후로 관찰사나 수령의 앞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사적인 부탁을 하여 허락을 받아내는데, 유향소의 네 임원은 모두 이 고을 출신이면서 재중齋中에서 논의하여 정한 것을 듣지 않고 목수를 함안咸安에 보냈으니, 말세의 풍속이 반드시 헤아리기 어려운 데로 이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77) 손처눌, 『모당일기』 1606년 1월 19일.

78) 손처눌, 『모당일기』 1606년 9월 1일.

동하였다.<sup>79)</sup> 당시 정구는 서재에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책을 잃어 버렸다.<sup>80)</sup> 정구의 문인들은 선사재에 모여 책을 베끼는 일을 하였다.

아침 일찍 선사재(仙查齋)로 갔다.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을 베끼는 일이 18일부터 시작되었다. 희로(希魯)가 유사로 일찍부터 와 있었다. 이때 선생은 기일이어서 재계하느라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행보(行甫)는 병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었다. 글을 베끼는 유생 10여 인이 있었다.<sup>81)</sup>

정구는 선사재에서 문인들과 함께 자신의 저술을 정리하였다. 강학과 저술은 참여한 구성원들이 학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유용하게 작용하였다. 선사재는 1606년 이후에 10여 년 가량 지역 사대부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으로 자리하였다

이렇게 운영되었던 선사재는 학문적인 논의를 넘어서 지역 사대부의 공론이 형성되는 공간이었다. 1615년 서사원이 세상을 떠나고 상례를 마친 후에 문인들은 선사재에 모였다. 서재에 사당을 설치하고 서사원을 제사하지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였다.<sup>82)</sup> 이에 손처눌은 편지를 써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서사원을 제사지내려면 선사재를 처음 건립한 전경창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의는 의견이 분분하였고, 손처눌은 서사원 만을 위한 사당을 세우려면 다른 곳이다 하면 되지 선사재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선사재는 지역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며, 개인을 추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

79) 장윤수, 「대구권 성리학의 학문 지형도와 특징」, 『국학연구』 42, 2020 ; 김형수, 「임진왜란 직후 대구향촌세력의 재편과 갈등」, 『국학연구』 44, 2021.

80) 손처눌, 『모당일기』 1614년 4월 10일 지난번 한강寒岡 선생께서 『오선생예설五先生禮說』을 저술하였는데, 미처 상재하기 전에 서실에 화재가 났다. 지금 한창 다시 모으고 있는데 본문本文, 『문헌통고文獻通考』, 『남헌독서록南軒讀書錄』, 『이굴집理窟集』, 『주자어류朱子語類』, 『통진通典』, 『이정전서二程全書』, 『이정수어二程粹語』,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등 10여 종이다.

81) 손처눌, 『모당일기』 1614년 4월 23일.

82) 손처눌, 『모당일기』 1620년 4월 27일.

다는 입장이었다. 선사재에 서사원을 제향하는 일은 손처놀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선사재에서 지역 사대부들은 공론을 모을 수 있었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공감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지역 사회에 지식인이 늘어나고, 그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관념이 드러나면서 보다 다양한 공부 공간이 등장하게 되었다. 손처놀은 선사재를 두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손처놀은 자신의 서재에서도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규약을 마련하였다. 규약은 연경서원과 선사재의 운영 원칙에 기반하면서 자신에게 맞추어 수정하였다. 손처놀이 서재를 만들면서 나눈 회문을 보면,

통독회문(通讀回文): (전략) 이에 근년의 연경·선사의 규약을 계승하여 오늘 통독의 모임을 회복하고자 하니, 우리 동지 여러 군자들은 『소학』, 사서(四書) 등의 책 가운데 각각 읽을 것을 가지고 이번 보름 하루 전에 모두 황청동 서숙에 모여 다시 규약을 설정하고, 이어서 읽을 것을 강론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sup>83)</sup>

라고 하였다. 손처놀은 회문으로 자신의 서재를 지역사회에 알렸다. 손처놀은 연경서원과 선사재의 규약을 계승하여 통독 모임을 조직하였다. 『소학』과 사서 등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여 공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구상한 서재는 1612년 2월에 비로소 규약을 정리하였다. 손처놀의 서재는 완전히 개인의 영역이었지만 규약을 제정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였다.

손처놀의 서재는 구성원 선발에서 운영까지 모두 개인의 몫이었다. 구성원의 면면이나 그들과의 관계는 개인의 영역이었다. 손처놀의 서재는 기본적인 운영 원칙은 연경서원과 선사재에 기반하였지만, 독특한 측면도 있었다. 손처놀의 서재에는 서재 승려가 있었고, 서재의 운영과 공부에 참여하였다. 승려가 서재에 참여하는 것은 이색적인 모습이다.

83) 손처놀, 『영모당통강제자록』 「통독회문」.

서재승(書齋僧) 경선(敬先)이 보러 와서 양사유(楊四諭)가 거역하고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일에 대해 말하며, “우리 어리석은 중들은 어린 나이에 산에 들어가서 잠시 경전의 말을 배우지만 이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요즘 경전 모임에 참여하는 중(經會僧)들은 태반이 서재(書齋)에 살며 혹은 역사서(史傳)를 읽고 혹은 사서(四書)를 익힙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망념이 많아서 유학을 버리고 불가에 들어가려고 하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는 세 번이나 한탄하였다. 이때 배우는 중이 셋이 있었으니, 이쪽(儒)은 성하고 저쪽(佛)은 쇠하려는 조짐인가.<sup>84)</sup>

손처눌의 서재에서 글을 배우는 서재 승은 세 사람이 있었다. 승려들은 경전 모임에 참석하면서 역사서와 사서를 익혔다. 물론 평소에 서재의 잡다한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데, 승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손처눌의 개인 서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손처눌의 서재는 개인의 영역인 만큼 스승 손처눌과 문인들의 유대는 친밀하였다. 생일을 맞이한 손처눌에게 서재의 학생들은 술상을 마련하였다. 자리를 마치려고 할 무렵에 한 학생이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겠다고 하자, 사양하는 손처눌에게 “부모의 생일에 응당 축수의 잔을 올리는데, 부모의 생일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어찌 안 될 일이겠습니까?”<sup>85)</sup>라고 학생과 나눈 이야기를 자세하게 일기에 기록하였다. 손처눌은 서재에 출입하는 이들을 사식과 같이 대하였고, 문인들 역시 손처눌을 아버지와 같이 대하였다.

마지막으로 17세기 전반 대구지역의 교육기구 가운데 서재를 보았다. 서재는 운영 방식과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 두 종류가 있었다. 선사재는 지역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대구향교와 연경서원의 다음에서 역할을 하였다. 선사재는 강학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정구가 다수의 지역 사대부들과 함께 저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서사원이 세상을 떠나고 그를 제향하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후 선사재는 지역 사대부가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 과정에서 손

84) 손처눌, 『모당일기』, 1611년 9월 11일.

85) 손처눌, 『모당일기』 1612년 6월 25일.

처눌은 자신의 공간에 서재를 운영하였다.

선사재와 손처눌의 서재는 향교와 서원을 운영하는 규칙을 기반으로 운영하였고, 지역과 개인의 특성에 맞게 변화하여 개인의 영역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담았다. 이것으로 지역 교육기구의 다층적인 실재를 통해서 관학과 사학의 역할 분담과 17세기 국가의 지역사회 운영 방식에서 사대부의 다층적인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 V. 맺음말

17세기 전반은 왜란이 끝나고 이전의 사회 구조를 재정비해 가는 시기였다. 본고는 이 시기 대구에서 지역사회의 교육기구를 국가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으로 나누어 운영의 실재를 확인하였다. 17세기 전반 대구는 향교와 서원 그리고 서재를 복구하였고, 각기 영역을 나누어 기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기구는 운영 주체와 운영 원칙에서 차이가 있었고, 학습과 교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적인 역할을 하였다.

향교는 지역의 교육기구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하였다. 재건된 대구향교는 「학교모범」을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다. 향교 설립에 지역 사대부는 주체로 참여하였다. 향교 운영은 국가와 지방관이 주체이면서 지역 사대부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향교는 지역사회에서 사대부와 국가를 매개하는 중심으로 기능을 하였다. 봄과 가을에 석전제를 시행하고, 강학과 제술을 통해 학습하며, 지역 사대부들이 공문을 모아 상소하는 데에 중심 장소였고, 지역민과 지방관이 공감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경서원은 16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지역 사대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던 교육기구였다. 연경서원은 왜란으로 소실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재건되는 과정에서 향교가 재건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다. 연경서원은 정구

와 서사원 등 대구 사대부들이 설립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연경서원은 강학을 위주로 운영하면서 과거 공부를 병행하였고, 지방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였다.

선사재는 대구지역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강학 기구였다. 선사재의 운영 규칙을 담은 「선사정사학규」는 이이의 「은병정사학규」에서 가져왔다. 선사재는 지역 사대부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고을 수령은 서재 강학에 참여하거나 제술 시험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학문을 매개로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편으로 수령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지역 사대부들에게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해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개인의 영역에서 서재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손처눌의 서재는 선사재와 같이 지역 사대부의 공론으로 운영되는 곳과 차이가 있었다. 구성원을 선발하고 운영하는 전반은 개인의 영역이었다. 그러면서도 서재에서 지켜야할 규약을 제정하여 지역에 알리고, 구성원들과 공유하면서 개인의 공부 공간에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손처눌은 연경서원과 선사재에 기반하여 자신의 서재를 운영하였다.

이것으로 조선시대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육 구조의 실재와 운영의 실상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향교와 서원의 역할에 대한 대립적인 이해해서 나아가 지역 사대부의 관점에서 서원과 향교의 상호 협조와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여기서 관학과 사학이 상생적 공생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과 교화를 구체화 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16세기 후반, 국가는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하였다. 다양한 층위에서 교육기구를 마련하고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던 이이의 향촌정책은 전란 이후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국가가 설계하고, 지역 사대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역할을 하는 데서 출발한 이이의 구상은 이후 조선 사회를 운영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 【참고문헌】

#### 1. 원전

- 이이, 『동호문답』, 『율곡전서』  
정구, 『한강집』  
정경세, 『우복집』  
손처눌, 『모당일기』·『모당집』  
서사원, 『낙재문집(樂齋文集)』·『낙재일기(樂齋日記)』  
장현광, 『여헌집』

#### 2. 논저

- 윤희면, 『朝鮮後期 鄕校研究』, 일조각, 1990.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남명학연구원 엮음,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임근실, 『16세기 영남지역 서원의 운영』, 단국대학교출판부, 2024.  
박균섭, 「은병정사 연구:학문과 학풍」, 『율곡사상연구』 19, 2009.  
구본옥,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논집』 11, 2012.  
홍원식, 「퇴계 이황 및 낙중 퇴계학과와 연경서원」, 『퇴계학논집』 11, 2012.  
구본옥, 「연경서원의 경영과 유현들」, 『한국학논집』 57, 2014.  
구본옥, 「금호강 하류에 仙查書堂을 연 林下 鄭師哲」, 『조선사연구』 23, 2014.  
김석배, 「교동시기의 대구향교 연구」, 『한국학』 37, 2014.  
정재훈, 「『慕堂日記』를 중심으로 본 孫處訥의 교육활동」, 『退溪學과 儒敎文化』·현재 『嶺南學』 57, 2015.  
홍원식, 「연경서원 제향 인물과 그 배경」, 『퇴계학논집』 16, 2015.  
임근실, 「16세기 서원 학규에 대한 검토와 특징」, 『한국서원학보』 6, 2018.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사상사학』 61, 2019.  
김정은, 「17세기 초반의 대구와 사대부 손처눌孫處訥(1553~1634)의 다면적 위상」, 『國學研究』 44, 2021.  
김형수, 「임진왜란 직후 대구향촌세력의 재편과 갈등」, 『국학연구』 44, 2021.

- 박종천, 『『모당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초 대구 사림의 강학활동과 강회』 『국학연구』 44, 2021.
- 이경동, 「16세기~17세기 초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구조와 변화」, 『중앙사론』 55, 2022.
- 김정운, 「경상감영의 설치와 대구의 변화」, 『한국학논집』 93, 2023.
- 김정운, 「도남서원(道南書院)의 강회(講會)와 강학(講學)」, 『한국서원학보』 16, 2023.
- 정재훈, 「조선후기 龍山書院의 운영양상과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16, 2023.
- 도이명, 「조선 말기 낙동강 중류 지역 유학의 학맥 의식에 관한 연구: 우성규(禹成圭)와 신성섭(申聖燮)의 활동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169, 2024.
- 이경동, 「16세기 율곡 향정론의 구조와 특징」, 『율곡학연구』 55, 2024.
- 정우락, 「낙동강의 서원과 '한강학풍(寒岡學風)」, 『유교사상문화연구』 95, 2024.
- 정재훈, 「호계서원과 경세-국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9, 2024.

Abstract

##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Early 17th-Century Daegu: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Academies

Kim, Jeongun\*

This study examines the re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Daegu region during the early 17th century, following the devastation of the Imjin War.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ponsored *hyanggyo* and privately established *seowon*, the paper analyzes how these institutions functioned in the local context and complemented one another in the educational system.

While *hyanggyo* served as formal public schools where Confucian rites, lectures,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and local discourse took place, they were substantially supported and operated by local *sadaebu* elites. *Seowon*, such as the reconstructed *Yeongyeong Seowon*, were re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Yi Hwang and Jeong Gu's educational philosophies, emphasizing *wigi ji hak* (learning for self-cultivation) and fostering scholarly communities through lectures and residential study (*geojeop*).

Drawing on first-hand sources such as *Modang ilgi* by Son Cheonul, *Nakjae ilgi* by Seo Sawon, and *Chogan ilgi* by Gwon Munhae, this study reveals that *hyanggyo* and *seowon* were not in a binary relationship of state versus private education, but rather functioned in a complementary and interactive manner.

---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se institutions became key arenas where state authority and local intellectuals coalesced to rebuild postwar governance and moral education in Joseon society.

Key word : Education in Daegu, Hyanggyo, Seowon, Seojae(Private Study Halls), State and Private Academies

논문 투고일: 2025. 05. 15 심사 완료일: 2025. 06. 05 게재 확정일: 2025. 06. 09

# 18세기 京華士族의 塾師 교육

## —서울·경기 지역 사족의 교육 실태와 사회적 의미—\*

김 충 현\*\*

- I. 머리말
- II. 京華士族 塾師 교육 문화의 배경
- III. 京華士族 塾師의 존재와 인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8세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京華士族의 塾師 교육 문화를 조명하였다. 경화사족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인 도성 인근에 거주하며, 가문의 지속과 자녀의 관직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숙사를 고용해 자택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숙사 교육은 단순한 동몽교육을 넘어, 과거시험 준비 및 문예 교양 함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기술직 중인 및 서얼 출신 중 문예 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숙사로 활동하였다. 숙사는 고용된 가문 내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며 교육했고, 그 과정에서 가문과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변종수와 정내교, 성호기를 비롯한 창녕성씨 일가 등은 경화사족의 자제를 대상으로 교육하며 스승으로서 존경 받았고, 이들의 관계는 문집 간행, 묘지문 작성 등으로 지속되었다. 또한 숙사의 문장 교육 방식은 비평문을 통한 작문 훈련 등 구체적인 실천 양상으로 드러난다.

시간이 흐를수록 숙사를 통한 교육은 점차 기술직 중인 가문에서도 활용되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교육이 사적, 가문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 방식의 변화는 산림학자에게 나아가 학통을 계승하고, 봉당을 배경으로 정치

\* 이논문은 2025년 4월 한국서원학회와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사연구회, 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 공동 주최한 연합학술대회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 연구의 새로운 모색”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aramsol83@naver.com

활동을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게 했다.

주제어 : 京華士族, 塾師, 교육 문화, 中人

## I. 머리말

18세기 조선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학문적 다양성이 공존한 시기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京華士族은 조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면서 도시적 생활상을 정립하였다. 특히 이 시기 서울의 생활권이 경기 지역으로 확대되며 서울과 경기 지역을 높이고 다른 지방을 낮추는, 京鄕의 분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화사족은 외래 문물을 보다 손쉽게 수용하면서 도시문화를 향유하는 한편 조선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였다.<sup>1)</sup> 이처럼 경화사족은 향촌 질서와는 구별되는 공간적, 인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을 모색했다. 그들은 도성이라는 정치·문화적 중심지에 거주하며, 관직 진출을 통해 가문의 지속과 명예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자녀의 중앙 정계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塾師를 통해 교육하는 방식을 수립하였다.

경화사족들은 앞선 세대에 비해 향촌과 유대가 느슨해졌다. 전원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정리한 『林園經濟志』의 등장은 이러한 당시 세태를 잘 보여준다. 조선 사회의 주도세력인 경화사족이 향촌과 점차 유리되어 갔던 상황으로 인해 향촌 사회구조에 기반을 둔 산림학자의 권위가 서서히 와해되어 갔으며, 그들의 학문적·정치적 활동 공간이었던 書院의 강학 기능 역시 이전과 비교해 힘을 잃어갔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생활의 근거지로 둔 명문가의 자

1) 유봉학, 「경화사족의 대두와 새로운 문화예술」, 『실학과 진경문화』, 신구문화사, 2012, 93~94쪽.

제들은 산림학자나 유림으로부터 전통 주자학풍을 계승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경화사족적 처지를 갖게 된 서울과 경기의 학자를 찾아 수업하거나, 塾師로 모시고 家內에서 기초를 닦고 家學을 계승하기도 했다.<sup>2)</sup> 이러한 방식의 경화사족의 교육은 그들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학풍이 등장하는데 일조했다.<sup>3)</sup> 경화사족의 속사 교육이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것은 閭巷人으로 지칭되었던 기술직 중인이나 서리들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속사 교육 문화는 조선후기 사회문화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속사에 대한 인식은 최근까지 童蒙教育을 담당했던 ‘서당의 훈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속사의 존재 양태를 교육기관에 고용된 교사로서의 속사와 개인적 교사로서의 속사로 구분하기도 한다.<sup>4)</sup> 그러나 18세기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속사는 동몽을 대상으로 한 문자 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경화사족들이 속사를 초빙하여 교육한 것은 집안에 설치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속사를 초빙해 이루어진 교육은 학문적 도통을 계승하기 위

2) 김문식, 『서명응과 서유구의 학문 활동』, 신구문화사, 2024 ; 「풍석 서유구의 학문적 배경」,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3~7.

徐有槩는 할아버지 徐命膺이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향촌에 거처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들며 학문을 연마했고, 농서인 『本史』를 함께 편찬하였다. 그리고 서유구 사후 그의 유고의 정리를 담당하기도 했다. 또한 생부 서호수 역시 농서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대구서씨 가학의 경향 서유구의 학문 형성에 큰 영향을 주어 『林園經濟志』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3) 유봉하, 「경·향 학계의 분기와 京華士族」,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115쪽.

4) 김대식, 「조선후기 塾師에 대한 試論」, 『교육사학연구』 17-1, 교육사학회, 2007. 이 글에서는 塾師에 대해 里塾·學舍·書塾과 같은 향촌서당 소속이거나 개인이 설치한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가르치는 이에 대한 호칭이기도 하였으나 독립적으로 자신의 거처 등에 주위 동몽을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이전 연구성과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조선후기의 속사를 초보적인 수준의 유학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의 포괄적 호칭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구분 없이 조선후기 속사의 용례를 분석하고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정치적 진출을 돕기 위한 교육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sup>5)</sup> 이 글에서는 숙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살핀 후 18세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활동했던 숙사의 존재와 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Ⅱ. 京華士族 塾師 교육 문화의 배경

조선시대 士族들은 다양한 공간에서 학습했다. 성균관이나 서원에서 공부하는 경우, 명망있는 학자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아 사승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이외에도 집안의 어른에게 배우는 家學을 비롯해 다양한 학습형태가 존재했다. 조선은 억불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족들은 사찰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며 승려들과 폭넓은 교류를 지속하였다.<sup>6)</sup> 이는 주자학 중심 사회에서도 불교적 공간이 지식의 교류와 전달의 장소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전기 사림의 한 사람인 成侃(1427~1456)이 서울 인근의 여러 절에서 공부했다는 기록,<sup>7)</sup> 젊은 문신의 학문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부여했던 賜暇讀

5) 유봉학, 「서설」, 『실학과 진경문화』, 신구문화사, 2012, 21쪽.

당시 공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산림에게 나아가 도통을 계승했다. 뒤의 본문에서 언급되는 金鍾厚의 경우 변중수와 정내교를 숙사로 모시고 공부했고, 한편으로는 閔遇洙에게 나아가 제자가 되면서 李珥-金長生-金集-宋時烈-金昌協-李穡-閔遇洙-金鍾厚로 이어지는 낙론 학통을 계승하였다.

6) 현전하는 조선시대 승려 문집 서문의 상당수는 중앙에서 활동한 고위 관료이거나 명망있는 학자가 지은 경우가 많다. 또한 淨屠塔碑 역시 상당수는 고위 관료와 학자들이 참여하여 글을 짓고[撰], 글씨를 쓰고[書], 篆額을 썼다[篆]. 이러한 현상은 승려의 권위를 대대 명망있는 사족이 보장하고 강화하는 모습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사족과 승려 사이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7) 成侃, 『眞逸遺藁』, 「眞逸遺稿序[成侃]」.

成侃은 曉日寺(현 시흥 소래산), 冠岳寺(현 과천시 관악산), 三藐寺(현 안양시 삼성산), 興教寺(현 개풍군), 開慶寺(현 개성), 檜巖寺(현 양주) 등에서 독서했다. 성간은 조선전기 대표적인 사람이며, 동생 成侃은 甲子士禍 때 부관참시 당했다.

책을 절에서 행한 사례,<sup>8)</sup> 사림의 종장 趙光祖(1482~1519)가 龍門寺에서 벗들과 학술 토론을 했던 일<sup>9)</sup> 등 다양한 형태로 사찰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가 확인된다. 조선후기 역시 중앙은 물론이고 지방의 사족들도 생활 영역 인근의 사찰을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상주지역 사족이자 관료이기도 했던 權相一(1679~1759)은 상주와 문경, 예안 등의 산사에서 居接했다.<sup>10)</sup> 이처럼 조선시대 사족의 학습 공간과 학습의 방식, 지식을 전수하는 존재는 다양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된 공부는 궁극적으로는 修身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관직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文科에 급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로였으나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官路 개척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소한 司馬試에 합격해야 蔭補나 薦擧를 통해 관직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었다. 예비관료를 선발하는 사마시는 生員과 進士를 각각 선발했다. 생원을 선발할 때는 經書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였고, 진사를 선발할 때는 詩와 賦의 작성 능력을 통해 문예적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는 응시자의 經學에 대한 이해력뿐 아니라 문장 구성과 문체 운용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한 목적이었다.<sup>11)</sup> 진사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작

한편 성현의 『虛白堂集』에는 승려의 堂號를 지어준 기문, 그 친구가 절에서 공부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金宗直, 『佔畢齋集』 권15, 「簡時叔」.

丙申歲, 館閣諸公建白, 選文臣年少聰敏者, 給暇讀書于藏義寺. 蔡壽·權健·許琛·曹偉·楊熙止·俞好仁, 六人在選. 常時朝參, 皆不與焉. 時謂之文章接.

1476년(성종 7) 문신 중 나이가 젊고 총명하고 영민한 사람을 선발해 왕실사찰인 藏義寺에서 賜暇讀書를 하게 했다. 이밖에도 김종직은 절에서 사가독서 중인 인물들을 찾아가 시를 주고 받은 사례가 확인된다.

9) 趙光祖, 『靜菴集』 권6, 「行狀[洪仁祐]」.

10)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修學과 과거 응시-권상일의 『淸臺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273~277쪽.

權相一은 상주의 大乘寺와 金龍寺, 문경의 吳井寺, 예안의 聖泉寺 등에서 거접했다. 사찰에서 거접생활 중 학습은 강경보다는 제술 공부에 치중했던 모습이 나타난다.

문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經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문예적 능력만 시험했던 것은 아니었다. 경서의 이해에 기초한 적절한 典故나 사실을 인용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다. 즉 응시자의 문예적 능력과 더불어 경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폭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가 진사시였던 것이다.<sup>12)</sup> 이러한 까닭으로 경학이 강조되었던 조선초기를 제외하면 조선시대 내내 진사시가 생원시보다 응시율이 높았다.

시를 짓는 능력은 사족이 반드시 지녀야 할 교양이기도 했고,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중국 사신과의 酬唱은 조선의 문예 역량을 드러낼 중요한 기회였다. 때문에 사신을 접대할 때 시문에 능한 인물을 선발하고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조선의 遠接使와 명나라 사신이 주고받은 시들을 엮어 『皇華集』을 편찬하였고, 조선후기에 이르면 사족이 아니더라도 시문 작성에 능한 인물을 製述官에 임명했던 모습을 통해 외교에서 詩가 가지는 의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sup>13)</sup>

11) 『經國大典』, 「禮典」, 諸科.

조선에서 생원을 선발할 때는 五經義와 四書疑를 시험했고, 진사를 선발할 때는 賦 1편과 古詩·銘·箴 중 1편을 시험하였다. 생원이 經書에 얼마나 통달했는지를 시험했다면 진사는 글을 짓는 능력을 판단해 선발한 것이다. 경학이 중시되었던 조선초기를 제외하면 진사시가 생원시에 비해 응시 인원도 많았고, 입적 인원도 생원시를 압도했다. 19세기 경상좌도에서 시행된 소과 초시의 경우 진사시는 경쟁률이 262:1이었고 생원 경쟁률은 176:1이었다.(김경용, 「조선후기 京·鄕 유생의 생원·진사 진출실태 비교연구-1846년 식년감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0-4, 한국교육사학회, 2018)

12) 김우영, 「조선 초기 진사시 성립 과정 연구」, 『교육사학연구』 25, 교육사학회, 2015.

13) 實錄에는 중국, 일본의 사신과 시를 주고 받은 사실이 빈번하게 확인된다. 특히 중국 사신과의 성공적인 皇華酬唱은 소중화를 자처했던 조선의 문예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중요했으며, 그 자체로 막중한 외교 행위였다. 이를 위해 조선에서는 최고의 문사를 원접사와 관반으로 임명하여 대비했으며, 황회수창시를 모아 『皇華集』을 간행하기도 했다.(김덕수, 「황회수창 시고의 작성과 간행 : 1537년 황회수창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9-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120쪽) 특히 조선후기에는 洪世泰와 같이 사족이 아니더라도 시

시문 작성 능력이 중시되던 조선에서는 신분과 상관없이 詩才가 뛰어난 인물이라면 사족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敎育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는 문예가 사회적 계층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하나의 매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선후기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기술직 중인과 경아전은 詩社를 조직하고, 『昭代風謠』(1737), 『風謠續選』(1797), 『風謠三選』(1857)의 간행을 통해 능력을 드러냈다. 그리고 중인들이 편찬한 문집과 시집의 서발문과 간행 과정을 통해 평소에 교류하던 경화사족들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사에 소속되어 시집에 이름을 올린 기술직 중인과 경아전들 중 일부는 서울과 경기지역 명문가의 자제의 숙사로 초빙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숙사 敎育이 단순한 가정 敎育을 넘어, 당대 지식 생산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土意識의 확대로 나타났다. 朴趾源(1737~1805)은 선비(士)에 대해 ‘아래로는 農·工과 같은 부류이고, 위로는 王公과 벗이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사람(生民)은 선비이며, 작위의 높고 낮음이 있어 지위에 귀천이 생길 뿐이라고 하였다.<sup>14)</sup> 이와 같은 인식은 국왕 역시 선비의 일원이라 여기게 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글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 없이 선비(士)라는 인식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사의식의 확대는 학식과 덕이 있다면 신분이 다르더라도 서로 스승과 제자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형성될 수 있게 했다. 李天輔(1698~1761)가 嚴啓興에 대해 ‘스승

에 뛰어난 인물을 製述官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徐居正이나 李睟光 등 사행을 갔던 인물들이 베트남 사신과 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수광은 베트남 사신 馮克寬과 필담한 글과 수장한 시를 모아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을 남기기도 했다.(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베트남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141, 147쪽) 이처럼 시는 외교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14) 朴趾源, 『燕巖集』 권10, 「原土, 夫士下列農工, 上友王公. 以位則無等也, 以德則雅事也. 一士讀書, 澤及四海, 功垂萬世. 易曰, 見龍在田, 天下文明, 其謂讀書之士乎. 故天子者, 原土也. 原土者, 生人之本也. 其爵則天子也, 其身則士也. 故爵有高低, 身非變化也. 位有貴賤, 士非轉徙也. 故爵位功於士, 非士遷而爵位也.

로 삼아야 하고 벗으로 삼을 수 없다.'고 평하면서 자신의 아들인李文源(1740~1794)의 선생으로 삼았으며, 이문원 역시 엄계홍의喪事に 예를 다했던 모습에서 당대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sup>15)</sup>

한편 사의식의 확대는 저명한 학자들이 비사족 출신의 제자를 수용했던 모습과도 연관된다. 成孝基(1701~?)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庶族이었지만 李緯(1680~1746)에게 나아가 수학하였으며, 柳琴<sup>16)</sup>의 아버지 柳漢相은 李廷燮(1688~1744)의 제자였다. 이들은 모두 당대 저명한 학자와 사승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경화거족의 숙사로 활동했다. 유금의 경우 徐有本(1762~1822)과 徐有槩(1764~1845) 형제의 숙사였다.<sup>17)</sup> 서유본과 서유구의 아버지는 徐浩修(1736~1799)이고, 서호수의 아버지 徐命膺은 이정섭의 제자이자 만사위였다. 유금이 서호수의 두 아들의 숙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대의 학습 과정에서 형성된 교류가 바탕이 된 것이다.<sup>18)</sup>

숙사들은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지식인 계층이었으나 이들의 신분은 대부분 기술직 중인이거나 경아전, 문한 능력이 뛰어난 서얼들이었다. 조선후기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중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의 능력을 극대화해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숙사로 활동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성효기는 숙사 생활을 하면서 매우 가난해 지붕을 잇기 어려워 비가 새고, 겨울에는 벽에 얼음과 서리가 가

15) 趙熙龍, 『壺山外史』, 「嚴啓興傳」, 晉庵李相國[天輔]爲文字交. 晉庵嘗曰, 可師不可友. [文源受業, 位至尙書, 恭執弟子禮. 年六十六卒于家, 尙書臨其喪盡其禮.]

嚴啓興은 英祖 때 비변사 서리이자 명필인 嚴漢朋의 아들로 京衙前 출신이다.

16) 柳琴의 본명은 柳璉이며, 유득공의 숙부이다. 거문고를 좋아하여 柳琴으로 개명하고 字를 彈素라 했다.

17) 徐有槩, 『楓石鼓篋集』 권5, 「送遠辭哭幾何子[有序]」.

徐有槩는 柳琴이 서거하자 哀辭를 지어 추모했는데, 애사의 첫 문장에서 '나의 숙사는 幾何子[柳琴의 號] 柳彈素[彈素는 字]이다. 余之塾師曰, 幾何子, 柳彈素.'라고 밝히고 있다.

18) 오수경, 「18세기 서울 文人知識層의 성향 : '燕巖그림'에 관한 研究의 一端」,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146쪽.

득할 정도였다.<sup>19)</sup> 鄭來僑(1681~1759) 역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후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지경이었으나 평소 그에 대한 존경을 갖고 있었던 경화 사족들이 나서서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었다. 여러 사례로 미루어 숙사로 고용된 이들은 사족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문한 능력을 갖추었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정 내에 숙사가 거처할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한 경우가 다수 포착되는 것은 곤궁했던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닿아있다. 그렇다고 숙사들이 교육활동을 통해 수령하는 보수가 부를 축적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폈듯 성효기는 숙사 생활 내내 빈한하다 말년에 관직을 얻어 가계 경제가 나아진 것으로 보이며, 정내교 역시 평생 숙사로 살았으나 사후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곤궁했기 때문이다. 다만 邊宗洙가 수십 년간 김재로의 집에서 숙사로 활동하며 ‘집안 손님처럼 지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숙사를 초빙한 집에서 거처를 제공하고 생활을 책임지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sup>20)</sup>

경화사족의 숙사 교육 공간은 서울·경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시대 관료는 지방관으로 나가면서 자녀가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숙사 역시 고용인과 함께 임지로 이동해 교육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정내교의 동생 鄭敏僑(1697~1731)는 趙顯命(1691~1752)에게 고용된 숙사였다. 조현명은 1730년(영조 6) 경상도관찰사로 나가면서 두 아들과 정내교를 동행하게 했다. 이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조현명은 정내교를 경상감영의 書記에 임명하여 감영의 업무를 부여하는 한편 동행한 아들들의 교육을 맡겼다.<sup>21)</sup> 이러한 사례는 숙사를 고용한 고용인의 처지에 따라

19) 成海應, 『研經齋集』 권10, 「師說」, 先祖考家居貧甚, 茆屋不能以時揜. 夏日雨輒漏不可坐, 冬日冰霜滿壁不可寢, 麥飯葱湯, 有時或闕, 而都下士大夫多從之學, 共其淡泊而不之苦. 若其服勤也, 不離乎左右, 成就者甚多.

20) 金鍾厚, 『本庵續集』 권4, 「邊翁[宗洙]哀辭」, 邊翁館忠靖公家累數十年, 人客關節旁午, 而翁始終泊然無一累, 竟能成就公二子學業.

21) 趙顯命, 『歸鹿集』 15, 「鄭進士季通墓誌銘」, 庚戌, 余忝按嶺南節, 以君掌書記, 且使課二子. 時君就食湖右, 托妻子隣友而來赴之. 乃於辛亥十一月初三日, 得奇疾, 死於

숙사의 생활과 교육 여건, 교육 공간에도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숙사는 고용된 가문의 자제들을 교육하면서 한편으로는 품계를 올리거나 관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었다. 숙사의 가장 큰 임무는 가르치는 대상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목표를 달성한 후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숙사를 고용한 가문과 교육 대상자는 자신을 가르쳤던 숙사를 위해 資級을 올려주거나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도 했다. 洪鳳漢, 金鍾厚, 金鍾秀 등은 오랫동안 정내교에게 배웠다. 흥봉한의 지위가 높아지자 김종후와 김종수 형제는 숙사였던 정내교의 품계를 올리는 시도를 하기도 했으며,<sup>22)</sup> 앞서 정민교의 사례에서 보이듯 반드시 관직의 진출이 아니라도 관청의 서리로 활동하는 기회를 얻어 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sup>23)</sup>

### Ⅲ. 京華士族 塾師의 존재와 인식

18세기를 전후한 시기 京華士族은 집안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고(塾舍, 宿館), 고용한 선생(塾師)을 거쳐하게 하여 자제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旅次, 其年三十五.

조현명과 정민교의 관계는 1725년(영조 1)에 처음 맺어졌다. 당시 조현명은 龍岡縣令이었는데, 上舍生이었던 정민교가 찾아왔던 것이다. 이후 1730년 조현명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정민교를 동행하게 했는데, 정민교는 경상감영의 서기의 업무를 관장하는 한편 조현명의 두 아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1731년 정민교는 병을 얻어 객사에서 죽었고, 조현명은 장례를 치른 이후 정민교를 위해 묘지명을 작성하였다.

22) 鄭來僑, 『浣巖集』, 「浣巖集跋(洪鳳漢)」, 記余幼少時, 問字於玄翁, 首尾數十年, 受益於玄翁者多矣. 及余致位, 金侄伯高兄弟與其同學諸人, 謀所以加玄翁之資, 勸余倡之而余不能遂焉, 蓋從玄翁雅意也.

23) 鄭敏僑의 경우 평안도와 경상도 감영에서 書記 등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모두 당시 관찰사를 통한 것이었다.

했다. 경화사족 중 일부는 많은 시간을 관직 생활로 보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자녀를 고도하고 훈육할 수 없었다. 교육 내용 역시 동몽학습을 뛰어넘어 여러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과거급제를 목표로 긴 시간 교육이 진행되었던 사례가 빈번히 확인된다. 숙사를 고용한 가문에서는 숙사에게 교육이 필요한 가문내 복수의 인물을 교육하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한 경제력을 보유했어야 가능했다. 金鍾厚(1721~1780)와 金鍾秀(1728~1799)를 배출한 淸風金氏의 사례는 당시 숙사 교육 문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김중후와 김중수 형제의 할아버지는 金希魯(1673~1753), 아버지는 金致萬(1697~1753)이며,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金在魯(1682~1759)는 작은할아버지로 청풍김씨는 당대 대표적인 京華巨族이었다. 김희로와 김치만의 경우 각각 사마시에 입격하였고,<sup>24)</sup> 김중후 역시 사마양시에 입격한 뒤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김중수는 1768년(영조 44)에 문과에 급제한 뒤 정조 세손시절 弼善(정4품)으로 성실히 보좌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영조와 정조는 김중수를 특히 아꼈는데 『英祖正祖賜金鍾秀御製御筆帖』(수원박물관 소장, 경기도 유형 문화유산)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도 金若魯(1694~1753)와 그 아들 金致燕(1717~1785), 金尙魯(1702~1766)와 그 아들 金致讓(1725~1793), 金致顯(1746~?) 등 다수가 영·정조대 문과에 급제해 중앙 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들 가계에서는 여향문인 중 뛰어난 인물을 고용해 교육을 맡겼던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sup>25)</sup> 김중후와 김중수는 鄭來僑를 숙사로 두었고, 김재

24) 金希魯는 1702년(숙종 28)에 진사가 되었고, 金致萬은 1721년(경종 1)에 생원진사가 되었다.

25) 金鍾厚, 『本庵續集』 권4, 「邊翁[宗洙]哀辭」, 吾兄弟童子時, 學于浣巖鄭潤卿翁. 吾從祖叔父兄弟, 學于簡庵邊翁. 蓋吾祖考參判公暨弟忠靖公, 知其最賢於閭巷士, 而使之教子孫. 鄭翁則風流蕭散, 若邊翁狷介有守, 其爲人不同, 而同其潔也. 邊翁館忠靖公家累數十年, 人客關節旁午, 而翁始終泊然無一累, 竟能成就公二子學業. 其兄則大顯, 繼忠靖公爲相. 余亦時從邊翁學學子文, 余故以鄭翁視邊翁. 觀今世間巷之士其最

로의 아들들인 金致一과 金致仁, 金致彦 등은 邊宗洙에게 배웠다. 변종수와 정내교 등은 모두 여항에서 뛰어나기로 알려졌던(知其最賢於閭巷士) 인물이었다. 김재로는 집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변종수를 초빙했는데, 적어도 ‘수 십 년’ 머물게 했다. 주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김종후는 종종 변종수에게 시를 배웠다고 하였고, 정내교 역시 당대 유명한 여항시인이었음을 고려하면 주로 詩作에 대해 가르치고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변종수는 김재로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한편 조카인 김종후를 가르친 청풍김씨가의 숙사였다.

변종수는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데, 觀象監의 教授를 거쳐 察諷(종6품)을 지냈으며, 만년에 예산에 유배되었다(然邊翁晚歲流寓于湖西之禮山)는 내용으로 미루어 중앙 아문에서 기술직 중인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보인다.<sup>26)</sup> 김종후가 변종수의 喪事에 만사를 지은 것은 서로 신분의 차이는 있었으나 師弟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존경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종수의 셋째 아들 邊迪源이 21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자 김종후는 변종수가 지은 行錄에 대한 後識와 墓誌文을 작성하기도 했다.<sup>27)</sup> 한편 김종후가 지은 묘지문에

著名者. 惟工詞章功令而已, 求其能超脫輩流, 澡身勵志, 如二翁者則無有焉. 鄭翁以己卯歲亡, 余悼念之久, 見邊翁如見鄭翁. 然邊翁晚歲流寓于湖西之禮山, 余每恨不數相見, 見則相與道舊故爲悲. 今去鄭翁亡十三年, 而邊翁又亡. 嗟, 夫余既爲文哭鄭翁, 而視其葬又爲之銘, 邊翁之喪則在數百里之外. 余病且有老母在, 不克奔赴, 而翁之嗣子使人言曰, 葬有月日, 盍與誄. 此固余志也, 而可辭乎. 翁諱宗洙, 原州人. 仕由庶官至沙斤道察訪, 享年七十五. 有子孫略干. 翁既落于南, 而南土之行過余者, 往往誦慕翁不已.

26) 邊宗洙의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승정원일기』에 변종수와 관련한 기록이 8건 확인된다. 1741년(영조 17)에 觀象監 地理學兼教授에 임명된 것으로 미루어 기술직 중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관력이 쌓이면서 活人 署別提를 거쳐 陞六이 이루어졌다. 주로 실무관서를 경험하여 掌苑署別提, 瓦署別提를 역임하고 沙斤站察訪을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7) 金鍾厚, 『本庵續集』 권4, 「書邊生迪源行錄後」; 『本庵續集』 권8, 「邊生迪源墓誌」. 김종후는 변종수의 셋째 아들인 邊迪源이 사망하자 行錄과 墓誌文을 지었다. 변

서는 변적원의 효행을 강조하였는데, 『소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체득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변중수의 학문적 지향과 성취가 당대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후대로 유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대대로 숙사 생활을 했던 成海應(1760~1839)의 가계에서도 드러난다.

성해응의 가계는 할아버지 成孝基 이후로 서울의 사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성효기는 李穡에게 배웠기 때문에 문장은 물론이고 經學에도 밝았다. 성해응이 할아버지 성효기의 제자들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성취한 것이 많았다는 것은 단순히 급제 여부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었다.<sup>28)</sup> 성효기가 庶族임에도 당대 제일의 학자 이재에게 나아가 사제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壯洞金氏의 庶外孫이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다. 성효기의 고조 成俊耆(1574~1633)는嫡子가 없음에도 양자를 들이지 않고 서자 成後龍으로 가계를 계승시켰는데, 성후룡의 처는 金尙容의 庶女였다. 장동김씨는 사회적으로 嫡庶의 차별이 있었음에도 가정 내에서 양육과 교육에 있어 크게 구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金光燦의 서자 金壽能은 1666년(현종 7)에 진사가 된 뒤 1673년(현종 14) 30살의 나이에 춘당대시에서 문과에 급제했으며, 그 아들 金昌復은 적자들과 더불어 양육되어 10대 중반의 나이까지 서자로의 자각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장동김씨의 집안 분위기가 창녕성씨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sup>29)</sup>

---

중수가 직접 김중후에게 그 아들에 대한 묘도문자를 저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할아버지 김희로와 작은할아버지 김재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8) 成海應, 『研經齋集』 권10, 「師說」, 吾家以教授爲業, 見人多矣. 其上材固未易也, 下材亦少. 要之無不可教之人. 先祖考家居貧甚, 茆屋不能以時揜. 夏日雨輒漏不可坐, 冬日氷霜滿壁不可寢, 麥飯葱湯, 有時或闕, 而都下士大夫多從之學, 共其淡泊而不之苦. 若其服勤也, 不離乎左右, 成就者甚多.

29) 이규상 지음·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 并世才彥錄』, 창작과 비평사, 1997, 22쪽.

변중수가 대를 이어 청풍김씨의 숙사였다면, 정내교는 풍산홍씨와 청풍김씨의 공동 숙사였다. 洪象漢과 그 아들 洪樂命, 洪鳳漢과 洪樂任이 모두 정내교에게 배웠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豊山世稿』(1824, 奎4229)에는 정내교와 관련한 홍상한과 홍낙명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sup>30)</sup> 홍상한은 시에서 정내교를 ‘夫子’라 칭하고 있으며,<sup>31)</sup> 홍낙명은 정내교의 비문을 지었다.<sup>32)</sup> 홍낙명이 지은 「浣巖鄭翁墓表」에는 외사촌인 김종후가 정내교의 묘표를 짓게 하고, 홍낙명 역시 김종후에게 묘지명을 찬술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종후와 김종수의 아버지 김치만은 홍상한의 누이인 풍산홍씨에게 장가들면서 처가의 숙사였던 정내교에게 자식의 교육을 맡겼던 것이다. 김종후와 김종수가 변중수, 정내교에게 시를 배웠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作詩教育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풍산세고』를 통해 교육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풍산세고』에는 홍상한이 정내교에게 지어 주거나 정내교의 시에서 차운하여 지은 시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정내교가 홍상한이 지은 시에 대해 직접 지도하거나 평가한 내용은 없지만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표 1〉은 청풍김씨와 풍산홍씨 인물들의 입격과 급제 현황을 보여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 중 문과 급제자는 12명이다. 문과 급제자 중 진사 출신은 5명, 생원 출신은 2명, 생원진사 출신은 4명이다. 홍인한의 경우 사마시 입격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총 12명의 문과급제자 중 진사와 양시 입격자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정내교에게 배

3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豊山世稿』는 고려 후기 문신 洪侃(?~1304)부터 조선전기 洪仁謨(1755~1812)에 이르기까지 豊山洪氏 14인의 詩文 505편을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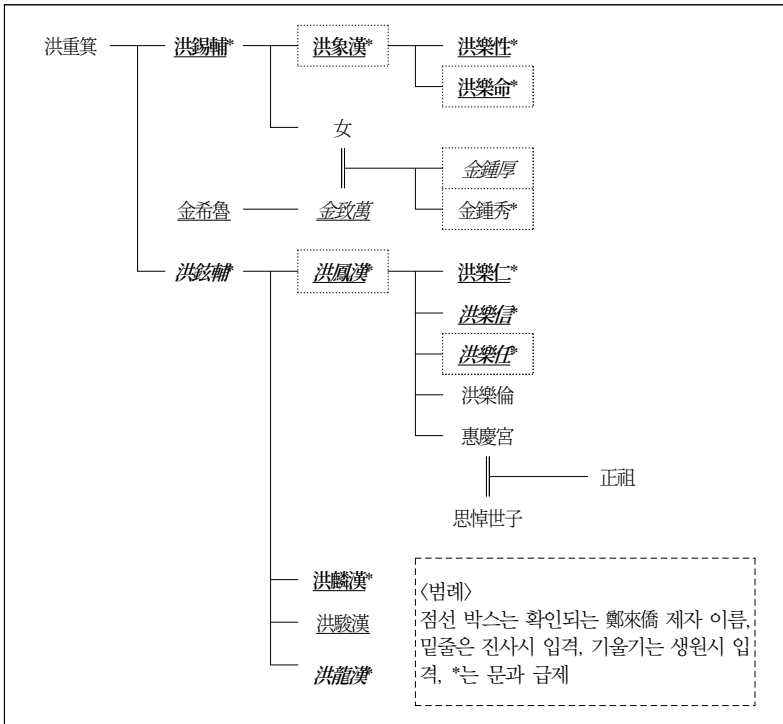
31) 洪象漢, 『豊山世稿』 권4, 「和潤卿」, 清高吾愛鄭夫子, 山澤之癯松柏槎, 讀書萬卷頭如雪, 風流文采奈老何, 槐檻寂寞滄翁死, 寒天留飲但悲歌.

위 시는 洪象漢이 鄭來僑를 위해 지은 시이다. 이 시에서 홍상한은 정내교에게 ‘夫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스승’으로 대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2) 洪樂命, 『豊山世稿』 권5, 「浣巖鄭翁墓表」.

은 사실이 명확한 인물은 6명인데, 그 중 5명이 문과에 급제했다. 풍산홍씨의 외손인 김종후와 김종수가 정내교에게 수학한 사실로 미루어 漢자 항렬과 樂자 항렬의 다른 인물들 역시 정내교에게 수학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내교의 청풍김씨와 풍산홍씨 자제들 敎育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鄭來僑에게 수학한 豊山洪氏·淸風金氏 인물과 입격·급제 현황



한편 徐有榘(1764~1845)의 『楓石鼓篋集』에는 숙사의 문장 敎育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나타나 있다. 『풍석고협집』은 서유구가 1781년(정조 5)부터 1788년까지의 저술을 엮은 청년시절 문집으로, '鼓篋'이라고 이름 붙인 데에

서 학습기 문장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풍석고협집』에는 다양한 형식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 글에는 成大中(1732~1809), 李義駿(1738~1798),<sup>33)</sup> 李德懋(1741~1793)가 작성한 비평문이 수록되어 있다. 서유구가 지은 글의 말미에 評語를 기록하고, 각각 평어의 끝에 ‘靑城’, ‘愚山’, ‘炯庵’으로 비평자의 호를 기입함으로써 누구의 비평문인지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서유구가 작성한 문장에 비평문을 제시하며 문장 교육을 했던 것이다.<sup>34)</sup>

『풍석고협집』에 보이는 평어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가 가능하다. 즉 ① 직관적 제시 ② 포괄적 제시 ③ 집중적 제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중 포괄적 제시와 집중적 제시는 한두 글자의 단어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서술과 설명이 이루어진 비평을 의미한다. 포괄적 제시는 작품의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해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의준이 작성한 평어의 특징이며, 집중적 제시는 평자가 특별히 주목한 한두 가지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는 방식으로 모든 평자가 공유하고 있으나 특히 성대중과 이덕무의 평어에서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sup>35)</sup>

〈표 2〉는 『풍석고협집』에 수록된 각 문장 형식의 수와 비평문의 숫자를 정

33) 李義駿은 본관이 全州이며, 서유구의 할아버지 徐命膺(1716~1787)의 매형인 李徽中(1715~1786)의 둘째 아들이다. 초명은 商駿이다.

34) ‘鼓篋’은 『禮記』 「學記」의 “입학하여 북을 쳐 울리고 상자에서 책을 꺼내는 것은 학업을 공손히 받기 위함이다.[入學鼓篋, 孫其業也.]”에서 취한 것으로 스승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나아가는 생도를 이르는 말이다. 『楓石鼓篋集』은 徐有槩가 18~28세에 지은 글을 序·記·書·傳·塔銘·墓誌銘·祭文·哀辭·雜著로 구분해 편집하였으며, 각 글의 말미에 成大中, 李義駿, 李德懋의 評語를 함께 수록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한문학에서 한문비평과 미적 지향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였는데, 수록된 평어의 충위를 작품에 대한 해석, 평자의 자기표현, 유대감 확인으로 나누어 바라보았으며, 특히 유대감의 확인은 ‘동인적 성격’으로 규정하였다.(김대중,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한편으로는 『풍석고협집』에 수록된 평어의 경우 스승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제자의 글에 대해 비평하는 과정을 통해 작문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다.

35) 김대중,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26쪽.

리한 것이다. 『풍석고협집』에는 雜著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記와 序, 書, 墓誌文, 傳, 祭文 등이 뒤를 잇는다. 塔銘과 哀辭도 각각 1건이 확인되어 모두 47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비평문이 수록되지 않은 7편을 제외하면 모두 40편의 글에 평어가 기재되어 있다. 평어는 이덕무가 34건으로 제일 많은 비평을 남겼고, 이의준이 26건, 성대중이 17건을 남겼다. 이덕무가 가장 많은 글에 대한 비평을 남긴 것은 그가 성대중의 뒤를 이어 서유구의 속사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표 2〉 『楓石鼓篋集』에 수록된 문장 형식별 評語 기재 현황

문장 종류	문장 수(無評語)	成大中	李義駿	李德懋
序	8	5	3	8
記	9	5	5	9
書	6(1)	1	5	2
傳	4(1)	0	3	0
塔銘	1	0	1	1
墓誌文	5	0	3	5
祭文	3	0	3	3
哀辭	1	0	1	1
雜著	10(5)	0	2	5
계	47(7)	11	26	34

『풍석고협집』에 수록된 평어를 살펴보면 이의준은 편지[書]와 인물의 일대기[傳]에 대하여 다른 문장 형식에 비해 적극적으로 비평했는데 반해, 이덕무는 序와 記의 모든 글에 대한 비평에 참여하면서도 편지[書]에만 2건의 비평문을 남겼다. 서유구가 편지의 형식으로 작성한 글은 「上仲父明臯先生論四書輯釋書」, 「與李愚山論尙書古文書」, 「與李愚山論深衣續衽鉤邊書」, 「與沈穉教乞題小照書」, 「與內弟朴聖用書」, 「與從父弟道可書」 6편이다. 이 편지글의 수신자는 각각 徐澐修, 이의준, 沈象奎, 朴蓍壽, 徐有繁이며, 심상규를 제외하면 모두 혈연 관계이다. 서형수는 서유구의 작은아버지이고, 이의준은 서유구의

할아버지 서명응의 매형으로 서유구와는 5촌이었다. 서유경과 박시수는 모두 서유구의 사촌이며,<sup>36)</sup> 심상규와는 교유관계에 있었다. 특히 서형수와 이의준에게 보낸 편지는 四書輯釋과 尙書, 深衣에 관한 글로 당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와 닮아있다. 이 편지들은 모두 서유구가 가진 학문적 의문을 각각 서형수와 이의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다. 이의준은 성대중과 이덕무보다 상대적으로 유학적 논쟁에 대한 글에 집중적으로 지도한 것이다.

한편 서유경에게 보낸 편지인 「여중부제도가서」에는 성대중과 이의준, 이덕무의 비평이 모두 남아있는 유일한 편지글이다. 이 편지에서는 극단적으로 가물었다가 극단적으로 장마가 진 기후환경과 비를 통해 서유구가 문장에 대해 얻은 깨달음, 스스로에 대한 반성, 서유경에 대한 기대와 당부 등을 비雨라는 소재로 쓴 내용으로 문학적 표현의 원숙함이 드러난 글이다.<sup>37)</sup> 특히 이덕무는 이 글을 청나라 시인이자 문예비평가인 金人瑞가 비를 주제로 한 시에 비견하며 칭찬하였다.<sup>38)</sup> 서유구 편지글에 대한 비평문 게재의 양상은 중인 숙사와 사족 스승의 역할의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한 글[傳]은 「權應銖傳」, 「魏禧, 邵長蘅傳」, 「金, 朴二烈婦傳」, 「和靖夫人傳」 4편이다. 이중 「권응수전」과 「김, 박이열부전」은 조선 인물에 관련한 내용이며, 「위희, 소장형전」과 「화정부인전」은 각각 중국

36) 『楓石鼓篋集』에 수록된 편지 중 심상규를 제외한 인물들은 모두 徐有槩와 혈연 관계이다. 徐滢修는 徐命膺의 아들이며, 徐有慶은 서형수의 아들이다. 朴著壽의 어머니는 서명응의 딸이다. 또한 이들과 주고 받은 편지의 내용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 학습의 방법과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김대중, 앞의 논문, 27쪽.

38) 徐有槩, 『楓石鼓篋集』 권3, 「與從父弟道可書」.

이 편지글에 대해 成大中은 ‘鬻’이라 표현하여 글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하였고, 李義駿은 ‘以序體作書, 議論高潔, 末句轉掉尤矯夭入化.’라 하여 序文의 체제로 편지를 썼는데 의론이 고결하고 마지막 구절의 내용이 훌륭하다고 했다. 또한 李德燃는 ‘金人瑞以雨喻詩, 極其靈悟, 今以雨喻文 何代無賢.’라고 평어를 남겼는데 金人瑞의 시에 비견하면서 편지의 문장이 뛰어남을 칭찬하였다.

의 문장가인 明의 魏禧와 淸의 邵長蘅, 宋의 처사 林逋에 관한 글이다. 傳에는 「화정부인전」을 제외하고 평어가 남아있는데, 이의준이 작성한 비평문만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풍석고협집』에 수록된 평어들은 단순히 문장에 대한 비평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 논의에 대한 논지 전개와 점검, 스승과 제자 사이 문학적 교류와 신뢰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숙사들이 문체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하지만 숙사들이 문장을 짓는 것에 대한 교육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살폈듯 경화사족이 숙사들을 초빙해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했던 것은 과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숙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인물들이 남긴 기록에서 ‘숙사에게 배웠다[就塾師學]’거나 ‘숙사 누구에게 시를 배웠다’는 내용은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이덕무의 글에서 숙사의 교육 방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大學』·『論語』·『孟子』·『中庸』은 학문을 해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차례가 질서정연하고 어지럽지 않다. 그 뒤를 이어서 공부할 책은 『擊蒙要訣』·『小學』·『近思錄』·『聖學輯要』로서, 이 체계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니, 나는 일찍이 이름하여 ‘後四書’라고 했다. 그것을 되풀이해 읽어 일관하면 자연스럽게 그 효과가 드러나니 매양 동료들에게 學規를 삼도록 권한다.<sup>39)</sup>

위 글을 통해 이덕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덕무는 四書에 대한 교육을 한 다음 『격몽요결』·『소학』·『근사록』·『성학집요』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대학』·『논어』·『맹자』·『중용』과 대비해 後四書라 칭하였다.<sup>40)</sup> 이 중 『소학』과 『격몽요결』은 학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학습

39)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27~29, 『士小節』 3, 士典, 「教習」, 學語孟庸爲學階梯, 井不紊. 繼此者, 擊蒙要訣·小學書·近思錄聖學輯要, 規模, 由淺入深, 予嘗名之曰後四書. 循環貫串, 自見功效, 每勤同人以爲學規.

40) 권오영, 「18세기 洛論의 學風과 思想의 계승양상」,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서로 활용되었다고 여겨지는 책들이다. 흔히 어린 아이들이 처음 글을 배울 때는 『천자문』, 朴世茂의 『童蒙先習』과 같은 초학용 수신 교재로 문자를 익힌 뒤 『史略』이나 『通鑑節要』와 같은 훈석 단계의 책을 배우고 經學을 학습하는 단계로 나아간다.<sup>41)</sup> 통상적인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이덕무의 교육 방식은 학습을 이제 막 시작하는 어린 학동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다. 적어도 문자 학습을 마친 수준의 학생을 교육하는 대상으로 삼은 방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덕무는 사서를 통해 유학의 대체를 익힌 뒤 ‘후사서’로 정밀하게 익히는 교육방식을 채택한 것이다.<sup>42)</sup> 더불어 이덕무는 이러한 교육 방식을 동료들[同人]에게 學規로 삼을 것을 권한다고 했다. 여기서 ‘동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숙사의 역할을 담당할 이들에게 자신의 교육 방법을 공유했던 것이다.

- A. 내가 일찍이 남의 부탁을 받아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으나 결국에는 성취한 자가 적으니, 그것은 모두 부형의 지나친 사랑에서 연유한 것이다. 처음에는 비록 신신부탁을 하고 엄하게 통솔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만약 회초리를 때리면 크게 이상한 일로 여기고 아이도 배반하고 가버린다. 그러므로 비록 엄한 스승이 있더라도, 만약 현명한 父兄이 없으면 자제는 금수가 되어버려 못할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은 스승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부형의 식견이 없는 탓이다.<sup>43)</sup>

2009, 201쪽.

『小學』과 『聖學輯要』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18세기 洛論 계열의 학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李紱는 『소학』 공부를 통해 孝悌로써 근본을 삼으라 했으며, 『성학집요』는 의리의 근원을 담고 있고 학자의 自修에 절실한 책이라고 평하면서 강학의 주요 교재로 언급하였다. 이덕무의 교육 방법은 낙론의 학풍을 계승한 것이었다.

- 41)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314~324쪽.  
 42) 이러한 교육 방식이 과거를 준비하는데 어떠한 효용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3)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27~29, 『士小節』 3, 士典, 「教習」. 予嘗受人之托, 教數十童子, 畢竟成就者少, 皆錄其父兄之溺愛. 始雖申屬托, 而愈恐其督率, 若加楚撻, 則

B. 도학을 전수하는 스승은 말할 것도 없이 존경해야 하거니와 다만 한 가지의 일, 한 가지의 재주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師道로써 대접할 것은 아니지만 그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한 가지의 일, 한 가지의 재주를 내가 익혀서 그 사람보다 도리어 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능멸하거나 조소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그 근본을 잊는 일이다. 근본을 잊는 사람보다 더 상서롭지 못한 사람이 있겠는가?<sup>44)</sup>

C. 백년 사이에 풍속이 날로 낮아져, 반드시 집에 스승을 끌어들이어 이바지하며 그 자제를 가르치니, 저들의 자제들의 성품이 교만하고, 또한 이바지하는 형세를 가지고 스승에게 입하니, 스승 역시 위엄을 가질 수 없으니, 꾸짖고 책망할 수도 없고, 회초리를 칠 수도 없으니, 다만 일만 할 뿐이다.<sup>45)</sup>

위 글은 이덕무와 성해응이 당시 숙사들에 대한 인식을 논평한 글이다. 두 사람은 18세기 대표적인 경화사족의 숙사였다. 성해응은 할아버지 성효기가 숙사로 생활을 유지하였고, 그 스스로도 숙사로 활동했으며, 이덕무 역시 관직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숙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덕무와 성해응의 글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숙사는 道學을 전수하는 스승과는 ‘다른’ 존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숙사를 초빙한 가문은 학습 기간 동안 숙사의 거처와 생계를 책임졌다. ‘집에 스승을 끌어들이어 이바지’한다는 말은 학생이 스승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처한 곳으로 선생을 초빙해 그 선생의 생활 공간과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를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경우에

---

大以爲異事, 而童子始叛去矣. 故雖有嚴師友, 而若無賢父兄, 則不肖子弟, 爲禽爲獸, 無所不至, 此非師友之過也. 迺父兄之無識也.

44)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27~29, 『士小節』 3, 士典, 「交接」, 傳道受業之師, 姑無論, 只如一事一技, 因人覺曉未必以師道待之, 而自不可忘. 其所謂一事一技, 我則熟習, 反勝於其人, 不可凌侮嘲笑. 若然則是忘其本也. 忘本之人不祥孰甚焉.

45) 成海應, 『研經齋集』 권10, 「師說」, 百年之間, 風俗日下, 必延師於室而參之, 以教其子弟, 彼子弟素驕, 且挾其參之之勢以臨師, 師亦無以爲威, 不施訶責, 不施捶楚, 特爲之役而已.

따라서는 학생이 자신의 가세를 믿고 교만하게 굴기도 하고, 원하는 성취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또한 숙사의 역할을 맡은 사람 역시 그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풍조가 있었음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숙사가 도학적 사제관계를 맺는 스승이기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된 교육 담당자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세태에도 불구하고 숙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낸 사례 역시 적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종후는 가문의 숙사인 변중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으며, 변중수와 그 이들을 위한 글을 여러 편 남겼다. 경우에 따라서는 숙사의 문집을 편찬하는데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정내교의 문집인 『浣巖集』은 그 제자, 교유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이 참여해 간행하였다. 현재 전하는 『완암집』에는 李天輔가 지은 서문이 남아있으며, 『완암집』에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김종수 역시 『완암집』 서문을 작성하였다. 이천보와 김종수가 지은 『완암집』 서문에는 정내교와의 여러 일화와 더불어 문집 간행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된다.<sup>46)</sup> 서문에 따르면 정내교가 죽은 뒤 洪履健(1751~?)이 詩文을 필사하고, 洪鳳漢이 跋文을 짓고 재물을 들여 간행하였다.<sup>47)</sup> 정내교는 홍봉한의 숙사였지만<sup>48)</sup> 홍이건과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종수가 작성한 서문에 정내교와 교유했던 사람들이 遺集을 함께 교정했다고 해 홍이건 역시 정내교 교유인 중 한 사람으로 보인다.

한편 김종후는 홍낙명의 부탁으로 묘지명을 작성하였는데, 정내교의 상사가 발생하자 많은 사대부들이 조문하고 부의를 보내왔으며, 혹 軍校를 보내 상사와 관련한 일을 받들게 하고, 혹 몸소 거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 무덤을 조성할 때 고을 수령이 ‘이러한 사람이 나의 땅에 장사 지내니 내

46) 이천보가 承文院(槐院)에 재직할 때 정내교가 製述官으로 있었는데 이때부터 사귀었다고 한다. 또한 김종수는 어릴 때부터 배운 정내교를 위해 서문을 작성하였다.

47) 鄭來僑, 『浣巖集』, 「浣巖集序[李天輔]」, 潤卿既死, 洪學士子順抄其詩文, 洪尙書翼汝捐財, 將印行於世. 余不可無一言, 遂爲之序. 六化居士李宜叔書.

48) 鄭來僑, 『浣巖集』, 「浣巖集跋[洪鳳漢]」.

가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49)</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뛰어난 능력을 갖춘 속사는 사족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IV. 맺음말

18세기 서울과 경기 일대를 근거지로 삼았던 경화사족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문내 자제 교육 방식을 모색했다. 이들은 가문의 유지와 자녀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山林에게 나아가 학습하고 전통 주자학풍을 계승해 이루어지던 봉당정치가 변화하면서 점차 유력 가문 중심으로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과 연동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유력한 경화사족은 빈번한 출사와 정치 참여로 직접 자녀를 교육하기 쉽지 않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塾師의 고용이었다. 당시 속사는 사족 명문가의 자제를 가르치는 사적 교육자로, 단순히 동몽교육자가 아니라 사족으로의 교양을 함양하고, 과거시험 대비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공동체적 교육이 사적이고 가문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 갔음을 의미하며, 정치적·사회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유력한 경화사족이 선택한 교육 방식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생활 배경으로 삼았던 경화사족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속사로 활동한 인물들은 사족 사회에서 인정할 정도의 학식과 고급 문예 능력을 보유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 고용 관계를 넘어 사제 간의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김종수가 청풍김씨의 속사였던 변중수의 아들을 위해 묘지명을 찬술하고, 변중수가 죽자 애사와 행록

49) 金鍾厚, 『本庵集』 권8, 「沆巖鄭翁[來僑]墓誌銘并序○己卯」, 及其葬, 則其邑之守者曰, 斯人也葬于吾土地, 吾可不力.

을 저술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정내교 사후 그 제자들과 교유인이 원고를 모아 문집을 간행하는 모습에서 역시 숙사와 제자 사이 강한 유대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사와 경화사족 자제의 사제관계는 숙사를 초빙한 가문 전체의 인적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특징을 가진다. 변중수는 대를 이어 청풍김씨의 숙사였고, 정내교는 풍산홍씨의 숙사로 있으면서 그 외손인 김종후와 김종수를 가르치기도 하는 등 숙사는 고용된 가문의 자제, 형제, 친척의 교육을 맡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숙사는 경우에 따라서 고용된 가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품계를 올리거나 관직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한편 숙사교육은 경화거족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서울·경기지역 기술직 중인 가문은 자신들의 전공을 세습하며 전문성을 극대화해 나갔으며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기술직 중인 가문 역시 잡과 입격을 목표로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해 숙사를 초빙하기도 하였다. 譯官이자 개화파의 비조로 잘 알려진 吳慶鏞(1831~1879)은 家塾에서 家學으로 학습한 후 16세에 역과에 입격했으며,<sup>50)</sup> 그 아들 吳世昌(1864~1945) 역시 8세가 되자 가숙을 설치하고 劉鴻基(1831~?)를 숙사로 초빙했다.<sup>51)</sup> 이 가숙은 1879년(고종 16) 오세창이 16세 때 역과에 입격하자 철거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서울과 경기 지역 이외의 중인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이기도 했다. 이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숙사교육은 점차 명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술직 중인까지 아우르는 교육문화로 확대되었다.

50) 신용하, 「오경석과 한국개화사상의 형성」, 『韓國近代知性史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11쪽.

51) 『위창 오세창』, 예술의 전당, 2001 ; 신용하,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역사학회, 1985.

## 【참고문헌】

## 1. 원전

『經國大典』, 『英祖正祖賜金鍾秀御製御筆帖』(수원박물관,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豊山世稿』(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4229)

金宗直, 『佔畢齋集』

金鍾厚, 『本庵續集』

朴趾源, 『燕巖集』

成 侃, 『眞逸遺藁』

成海應, 『研經齋集』

徐有架, 『楓石鼓篋集』

李德懋, 『靑莊館全書』

鄭來僑, 『浣巖集』

趙光祖, 『靜菴集』

趙顯命, 『歸鹿集』

趙熙龍, 『壺山外史』

## 2. 논저

김문식, 『서명응과 서유구의 학문 활동』, 신구문화사, 2024.

신용하, 『韓國近代知性史 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유봉학, 『실학과 진경문화』, 신구문화사, 2012.

\_\_\_\_\_,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이규상 지음·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并世才彥錄』, 창작과 비평사, 1997.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권오영, 「18세기 洛論의 學風과 思想의 계승양상」,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김경용, 「조선후기 京·鄉 유생의 생원·진사 진출실태 비교연구- 1846년 식년감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0-4, 한국교육사학회, 2018.

김대식, 「조선후기 塾師에 대한 試論」, 『교육사학연구』 17-1, 교육사학회, 2007.

김대중, 「『楓石鼓篋集』의 評語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석사

학위논문, 2005.

김덕수, 「황화수창 시고의 작성과 간행 : 1537년 황화수창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9-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김문식, 「풍석 서유구의 학문적 배경」,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김우영, 「조선 초기 진사시 성립 과정 연구」, 『교육사학연구』 25, 교육사학회, 2015.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베트남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신용하, 「오경석의 개화사상과 개화활동」, 『역사학보』 107, 역사학회, 1985.

오수경, 「18세기 서울 文人知識層의 성향 : '燕巖그림'에 관한 研究의 一端」,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修學과 과거 응시 - 권상일의 『淸臺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 3. 도록

『위창 오세창』, 예술의 전당, 2001.

Abstract

## The Suksa Education of Gyeonghwa Sajok in the 18th Century

– Educational Practices and Social Significance among  
Literati Families in Seoul and Gyeonggi IV

Kim, Chunghyun\*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culture through *suksa* (塾師 private tutor) among the *gyeonghwa sajok* (京華士族 capital-based *yangban* aristocracy) formed in the 18th century in Seoul and the Gyeonggi region. Residing near the political center of the capital, the *gyeonghwa sajok* employed *suksa* as a strategic means to ensure the continuation of their lineage and to secure their children's success in officialdom. Education conducted at home by these tutors went beyond elementary instruction, encompassing preparation for state examinations and cultivation of literary refinement. Many *suksa* came from socially lower social status—such as *jung-in* (中人 technical specialists) or *seo-eol* (庶孽 illegitimate offspring)—they demonstrated exceptional literary and scholarly talent.

Residing in a specific area of the household that employed them, *suksa* educated the family's children and, through this process, developed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Notably, figures such as Byeon Jong-su, Jeong Nae-gyo, and Seong Hyo-gi, along with members of the Changnyeong Seong clan, earned deep respect as tutors to the children of *gyeonghwa sajok*, with

---

\* Full-time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relationships often continuing through the publication of literary collections and epitaph writings. Their teaching methods often included critical commentary and composition training, revealing the concrete pedagogical practices of the time.

Over time, this form of private tutoring extended beyond the *gyeonghwa sajok* to *jung-in* families, indicating a broader transformation toward privatized and lineage-based education in the late Joseon society. This transformation in educational practices prompted *sanlim* scholars (山林 reclusive confucian scholars) to depart from traditional modes of scholarly lineage transmission and faction-based political engagement. By analyzing suksa education among the *gyeonghwa sajok*,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and social significance of educational culture in the late 18th-century Joseon period.

Key word : Gyeonghwa sajok (京華士族 capital-based yangban aristocracy), Suksa (塾師 private tutors), Educational culture, Jung-in (中人 technical specialists)

논문 투고일: 2025. 05. 16 심사 완료일: 2025. 06. 05 게재 확정일: 2025. 06. 12

# 조선후기 사육신 서원의 정치적 기능과 위상\*

— 건립과 사액, 치제 활동을 중심으로 —

이 경 동\*\*

- I. 머리말
- II. 사육신 추송과 서원 건립의 추이
- III. 사육신 복관과 서원 사액의 정치적 의미
- IV. 사육신 서원 치제를 통한 君臣義理의 강화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육신 배향 서원의 건립과 사액, 치제 등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서원의 정치적 기능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육신은 1456년(세조 2) 단종복위운동 실패 이후 逆臣으로 규정되면서, 그들에 대한 평가는 16세기까지 조정 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남효온이 저술한 『六臣傳』이나 민간 전승 설화 등을 계기로 사육신이 ‘忠臣’으로 규정되면서 재야에서는 사육신에 대한 시각이 점차 긍정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후반부터 사육신 서원 및 사우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서원 및 사우가 건립되는 지역은 사육신의 遺墟, 묘소, 후손의 세거지 등이며, 단종의 묘소가 있던 영월의 경우 묘소 인근 火巢 내에도 사육신 사우가 건립되었다. 이 중에서도

\* 이논문은 2025년 4월 한국서원학회와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사연구회, 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 공동 주최한 연합학술대회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 연구의 새로운 모색”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5787).

\*\* 고려대학교 글로벌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geistlkd@korea.ac.kr

주목되는 장소는 바로 사육신의 묘소로 추정되는 露梁 지역에 건립된 六臣祠宇였다. 노량은 한양과 가까운 지역이면서 사육신의 묘소가 있다는 점에서 육신사우는 京鄕을 불문하고 다양한 인사들이 방문하여 사육신을 기념하였으며, 그 결과 총절의 상징으로 사육신을 대표하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사육신에 대한 서원 및 사우의 건립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약 12개소의 사육신 배향 서원 및 사우가 건립되었다.

1691년(숙종 17) 사육신의 복관은 이전까지 있었던 사육신에 대한 평가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사육신 관련 서원 및 사우의 건립·사액이 확대되는 분기점이 되었다. 노량에 위치한 육신사우가 서원으로 격상됨과 동시에 ‘愍節’로 사액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육신 관련 서원들이 건립·사액되었다. 사육신의 복관은 국왕 주도의 정국운영을 지향했던 숙종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는데, 당시 격화된 봉당 간의 갈등이 아닌 국왕에 대한 신료들의 충절을 강조하는 장치로서 사육신과 이를 배향하는 서원 및 사우가 활용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봉당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탕평론이 대두되면서 사육신 서원은 국왕에 대한 충절을 상징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서원은 노량의 愍節書院과 영월의 彰節書院이다. 영조와 정조는 두 서원의 致祭를 통해 사육신의 과거 행적을 평가함과 동시에, 신료들에게 君臣義理를 중심으로 한 충절을 강조하였다. 국왕뿐만 아니라 노론계에서는 노량 민절서원 인근에 노론 4대신을 배향하는 四忠書院을 건립하였는데, 이를 통해 노론은 사육신의 총절과 노론 4대신의 충절을 동일시하며 노론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주제어 : 死六臣, 端宗, 愍節書院, 彰節書院, 賜額, 致祭, 君臣義理

## I. 머리말

1543년(중종 37) 豊基郡守 周世鵬이 건립한 白雲洞書院을 시작으로 서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향촌사회 교육기관으로 정착되었다. 조선시대 서원의 출현 배경으로 관학인 향교의 쇠퇴, 심성론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의 발전, 사

림의 성장과 향촌자치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들 수 있다.<sup>1)</sup> 이러한 과정에서 서원은 선현을 배향하는 ‘尊賢’과 후속 세대의 양성이라는 ‘養士’의 양대 기능을 토대로 발전되어 갔다.

17세기 이후 서원은 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공론 형성을 비롯한 정치적 기능이 확대되었다. 붕당정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붕당에서는 서원을 여론 형성이나 정치적 사안을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했다. 通文을 통해 붕당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서원 내에 疏廳을 두어 儒疏를 작성하여 향촌의 공통적인 의견을 중앙에 제출하기도 했다.<sup>2)</sup> 18세기 이후부터 등장한 萬人疏의 작성 과정에서 서원은 공론 형성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현존하는 만인소가 陶山書院, 玉山書院 등 서원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향촌사회에서 서원이 가진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조정에서는 賜額과 致祭를 중심으로 서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사액은 조정에서 공인된 교육기관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사액은 사액현 관 뿐만 아니라 書院田, 書院奴婢, 書冊 등의 혜택을 동시에 제공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정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공인된 ‘國庫’의 자격을 부여해주었다는 점에서 관학과 사학의 공존이라는 官私合辦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3)</sup> 致祭는 국왕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체로

1) 최완기, 「朝鮮朝 書院 成立의 諸問題」, 『韓國史論』 8, 1980 ; 정만조,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1980 ; 이수환, 「서원의 건립활동」,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 김자운,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儒敎思想文化研究』 58, 2014 ; 이병훈,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한국서원학보』 10, 2020 ; 정순우, 「조선조 서원과 중세 대학의 출현과정과 그 이념적 토대」, 『민족문화논총』 87, 2024.

2)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 ; 士林活動의 展開와 관련하여」, 『韓國史學』 10, 1989 ;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上疏의 類型과 推移」, 『朝鮮史研究』 4, 1995 ; 차장섭, 「陶山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과 位相」, 『歷史敎育論集』 54, 2015 ; 김순환, 「『道南疏廳雜錄』을 통해 본 조선후기 상주 사족 사회의 변화상」, 『지역과 역사』 54, 2024.

3)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승지나 예조낭관이 파견된다. 치제는 先賢에 대한 褒獎이라는 원론적인 기능 이외에도 특정 인물을 주목하고 배향 인물의 정치적 견해들을 토대로 국정운영을 주도하려는 국왕의 정치적 의도가 존재한다. 17세기 이후에는 붕당정치의 심화로 인해 각 붕당에서 건립되는 서원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액에 대한 혜택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서원의 남설로 인해 17세기 후반부터 조정 차원에서 지속적인 훼손이 단행되고 최종적으로는 19세기 중반 흥선대원군에 의해 47개의 院·祠를 제외한 모든 서원들이 훼손되었다.<sup>4)</sup> 이러한 점에서 서원은 교육기관이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유사 교육기관들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sup>5)</sup>

조선시대 서원의 정치적 기능과 관련하여 사육신 배향 서원이 주목된다. 사육신 배향 서원들은 사육신과 관련된 연고지를 중심으로 대부분 17세기 이후 건립되었고, 사육신 복관이 실현된 1691년(숙종 17) 이후 사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육신의 복관과 사액이 환국과 연동되어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서원의 건립과 사액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서도 단종 복위를 포함하여 사육신의 복관과 서원의 건립과 사액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노산군의 단종으로의 묘호 복권과 관련한 정치사적 맥락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sup>6)</sup> 이들 연구에서는

4) 정만조, 「17~18世紀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특히 士林의 建立活動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2, 1975 ; 이수환, 「大院君의 院祠毀撤과 嶺南儒疏」, 『嶺南史學』 6, 1994 ; 윤희면, 「서원의 설립과 남설, 철폐」,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안다미, 「私設 논의를 통해 본 서원철폐령의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97, 2021.

5) 정수환, 「동아시아 서원, 일반성과 다양성의 경계—조선시대 서원과 비교 관점에서—」, 『한국서원학회』 14, 2022.

6) 윤정, 「숙종대 端宗追復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2, 2004 ; 이근호,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復權과정 연구」, 『史學研究』 83, 2006 ; 진상원, 「단종복위 모의자들의 伸冤과 追尊」, 『역사와 경계』 64, 2007 ; 이현진, 2010,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장」, 『史學研究』 98, 2010 ; 김성희, 「朝鮮

경신환국을 비롯한 일련의 환국 과정 속에서 사육신의 복관이 충절을 토대로 왕실과 군주권의 존엄성 등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숙종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연계하여 사육신과 관련한 서원의 건립과 배향과정이 분석되기도 하였다.<sup>7)</sup> 사육신 서원의 건립과 사액 추이 그리고 숙종조에 집중되었던 정치사적 맥락을 토대로 서원의 건립과 사액이 담긴 의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단종의 복위를 중심으로 사육신에 대한 현창과 추송에 대해 과거청산, 역사화해 등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sup>8)</sup>

이상의 연구들은 숙종대 이루어진 사육신 복권과 그 전후과정에서 나타난 추송과 현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서원의 건립과 사액보다는 숙종대 사육신 복권과 단종의 복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서원 자체에 시기별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들이 숙종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致祭 등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육신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립과 사액, 그리고 치제 등을 중심으로 서원과 관련한 정치사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원을 향촌사회의 교육기관이라는 제한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다양한 측면에서 서원이 상호 영향을 끼치며 전개되어갔던 양상과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肅宗의 君臣義理 定立과 尊周大義,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7) 정만조, 「肅宗朝의 사육신 追崇과 書院祭享」, 『한국학논총』 33, 2010.

8) 심희기, 「死六臣 裁判과 그 復權 - 조선시대판 과거청산작업의 사례연구-」, 『법제연구』 17, 1999; 계승범, 「역사화해 관점에서 본 조선 숙종 대 노산군 복권 조치」, 『서강인문논총』 57, 2020.

## Ⅱ. 사육신 추송과 서원 건립의 추이

1456년(세조 2)에 발생했던 단종복위운동은 세조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평가된다. 계유정난으로 인해 조정의 주도권을 획득했던 수양대군(세조)이 단종의 양위와 함께 국왕으로 즉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정 내부에서는 단종을 옹호하는 정치집단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단종복위운동의 실패는 세조가 본격적으로 정치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死六臣으로 대표되는 河緯地·成三問·朴彭年 등이 사사되면서 이들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약화되었고, 세조의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韓明澮 등 정치집단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올라 설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조 집권의 정당성을 공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sup>9)</sup>

세조 사후 16세기까지 사육신과 관련하여 조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거나, 이들의 복관이나 추송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았다. 사육신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576년(선조 9) 朴啓賢이 건의로 사육신에 대한 복관 등이 건의되었지만 선조가 부정적으로 이해하였던 점이 대표적이다.<sup>10)</sup> 대체로 단종을 비롯하여 사육신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한 이유는 계유정난을 비롯한 세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9) 단종복위운동의 과정과 평가에 대해서는 최승희, 「世祖代 王位の 취약성과 王權強化策」, 『朝鮮時代史學報』 1, 1997; 최승희, 「世祖代 國政運營體制」, 『朝鮮時代史學報』 5, 1998; 김돈, 「世祖代 '端宗復位運動'과 왕위승계 문제」, 『歷史教育』 98, 2006; 김경수,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정치세력의 재편」, 『사학연구』 83, 2006; 김경수, 「세조의 집권과 권력 변동」, 『白山學報』 99, 2014; 한춘순, 「단종대 癸酉靖難과 그 성격」, 『韓國史研究』 174, 2016 참조.

10) 이에 대해 이이는 선조의 힐문에 대해 박계현이 자신이 같은 상황이 되면 사육신처럼 행동하겠다고 언급했다면 오히려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栗谷全書』 卷29, 「經筵日記」 萬曆四年丙子 ○今上九年正月丙申, 朴啓賢輕發非時之言 幾致主上有過舉 可謂愾不解事矣 昔者金宗直啓于成廟曰 成廟驚變色 宗直徐曰 幸有變故 則臣當爲成三問矣 成廟色乃定 惜乎侍臣無以此語啓于上前者也).

때문이다. 세조 이후에 즉위한 군주들은 모두 세조와 직·간접적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사육신의 복관은 세조 집권의 정당성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16세기 중반까지 사육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유지되고 있었다.<sup>11)</sup>

조정 차원에서 사육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별개로 민간에서는 사육신을 애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였다. 민간에서는 사육신과 관련한 설화가 전승되었으며,<sup>12)</sup> 사육신 중에서 4명이 처형되었던 곳으로 알려진 鷲梁 인근에는 이들의 묘소로 추정되는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다.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公州 東鶴寺에는 사육신을 위한 招魂祭가 거행되기도 하였다.<sup>13)</sup>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에서 공인되었다기 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육신이 하나의 집단으로 묶여져서 ‘충신’으로 규정된 계기는 15세기 후반 南孝溫이 「六臣傳」에 의해서였다. 「육신전」은 사육신을 역모가 아닌 충신으로 규정하였던 최초의 기록으로서, 계유정난을 비롯한 단종~세조대 정치 상황에 대한 사림파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sup>14)</sup> 「육신전」은 16세기 이후로 사

- 11) 이근호,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 과정 연구」, 『사학연구』 83, 2006.
- 12) 일제강점기 박문서관에서 발행한 『端宗大王實記』에는 단종 뿐만 아니라 사육신에 대한 설화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20세기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5세기 이후부터 민간 차원에서 전승된 것들이 이 시기까지 전해지면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종대왕실기』의 서술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이기대, 「단종대왕실기의 서술 태도와 시대적 의미 연구」, 『온지논총』 80, 2024 참조.
- 13) 1921년 宋柱憲이 편찬한 『東鶴志』에 의하면 1451년(세조 3) 세조가 동학사에 머무르면서 직접 사육신을 비롯한 연좌인들을 위한 초혼제를 지내도록 하였다고 전하나, 당시 세조가 직접 이 지역에 내려갔다거나 사육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당대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보다는 설화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동학사에서 사육신에 대한 초혼제의 시행은 1642년(인조 20) 신익성이 작성한 「成謹甫集序」에 기술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한 17세기 전반에는 초혼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두, 「단종충신 追復 논의와 세조의 사육신 인식」, 『사학연구』 98, 2010, 15~24쪽 참조.
- 14) 「육신전」의 체제와 특성에 대해서는 김영호, 2013, 「秋江 南孝溫의 「六臣傳」 研究」, 『국학논총』 12 참조. 물론 남효온도 성종대 소릉 복위를 상소할 당시에도 단

림파를 중심으로 사육신에 대한 인식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자리잡았으며, 조선후기까지 사육신에 대한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사육신의 추송을 위한 사우·서원의 건립은 16세기 후반부터 이들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583년(선조 16)에는 康翎에 兪應孚를 제향하는 忠烈祠宇가 1637년(인조 15)에는 善山에 있는 月巖書院에 河緯地가 추향되었다. 충렬사우의 경우 유옹부가 이 지역의 관리로 파견되었던 것에 근거하여 세워졌다. 월암서원은 본래 고려시대 예판 金澍를 배향하기 위한 목적에서 1630년(인조 8)에 건립되었으나, 하위지의 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하위지를 추향하였다. 17세기 이후 사우·서원의 건립이 점차적으로 추진되었다.<sup>15)</sup>

사육신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었던 장소는 사육신의 묘소가 위치한 鷲梁이었다. 노량은 지리적으로 한양과 가깝다는 점과 함께 경기의 서남부에서 한양으로 진출하는 경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들이 방문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이 장소에 사육신의 묘소가 있다는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육신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었으며, 일부 지식인들은 詩文 등을 통해 사육신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추념을 하기

종복위 운동을 반란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조정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육신전」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成宗實錄』 卷91, 9년 4월 15일 丙午).  
15) 조선시대 건립된 사육신이 배향된 서원 및 사우는 다음과 같다.

지역	명칭	연도	사액 연도	제향인물	연고
康翎	忠烈祠宇	1583		유옹부	유옹부 관력지
善山	月巖書院	1630	1694	하위지	하위지 생장처
洪州	魯恩書院	1676	1692	사육신	성삼문 구장
大邱	洛濱書院	1679	1694	사육신	박팽년 후손거주
果川	愍節書院	1681	1692	사육신	육신묘 소재
寧越	彰節書院	1685	1702	사육신	노산묘 火巢 내
連山	忠谷(八賢)書院	1692		사육신, 계백, 김익겸	성삼문 외가
懷德	靖節書院	1693		박팽년, 宋楡 등	박팽년 우거
義城	忠烈祠宇	1698		사육신, 박태보 등	성삼문 유허
昌寧	勿溪書院	1729		成松國, 성삼문 등	成氏世德祠에서 출발
抱川	兪摠管壇	1807		유옹부	유옹부 유허
公州	東鶴(學)書院	1830		사육신 등	冤死人 招魂

도 했다. 사육신묘에 대해 1614년(광해군 6) 李睟光이 편찬한 『芝峯類說』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露梁 나무 남쪽에 세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死六臣의 무덤이라고 한다. 모두 標石이 없고 다만 ‘成氏之墓’, ‘朴氏之墓’, ‘俞氏之墓’라고만 쓰여 있다. 許篈이 말하기를, ‘婦人을 氏라고 일컫는데 지금 이 무덤은 세 개가 함께 나란히 있으니 부인의 무덤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남자라면 반드시 벼슬이 있을 텐데 씨라고 일컬었으니,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어떤 의로운 사람이 이들 세 분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곳에 묻어 주면서 감히 그대로 나타내어 새길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일컬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成三問, 朴彭年, 俞應孚 세 사람의 무덤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였다. 임진년의 변란을 겪은 뒤에 어떤 사람이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 刻石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字畫은 마멸되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니, 애석한 일이다.”<sup>16)</sup>

『지봉유설』에 의하면 노량에는 성삼문, 박팽년, 유응부의 3인의 묘소만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사육신의 무덤이 맞는지 실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데에 있었다. 실제 당대에도 이 묘가 사육신의 것인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六臣疑塚으로 불리기도 했다. 1650년(효종 1) 박팽년의 6내손 박승고가 육신묘를 다시 封築하는 과정에서 허목에게 비문을 부탁하였는데, 허목은 1651년(효종 2) 「六臣疑塚碑」를 지으면서 육신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세종 때 명신 중에 朴彭年, 河緯地, 成三問, 俞應孚, 李垔, 柳誠源이 있는데 이들을 육신이라 부르며 그 사적이 六臣本傳에 실려 있다. 六臣塚은 西湖의 露梁津 아래 강 언덕 위에 있는데, 세상에서는 옛날에 이곳에서 죄인을 죽였다고 한다. 비석에 모두 朴氏·俞氏·李氏·成氏의 무덤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박씨의 무덤이 가장 남쪽에 있고 조금 더 북쪽에 유씨의 무덤, 더 북쪽에 이씨의

16) 『芝峯類說』 卷19, 宮室部, 「陵墓」.

무덤, 더 북쪽에 성씨의 무덤이 있다. 그 뒤 10여 보쯤 떨어진 지점에 또 성씨의 무덤이 있는데, 옛날부터 전해 오는 말에 성씨 부자가 묻힌 곳으로 그 뒤에 있는 것이 成勝의 무덤이라 하였다. …(중략)… 嶺南의 一善府(善山)에 河氏의 무덤이 있고 유독 柳氏는 장지가 없다. 그의 傳記에 “모의가 누설되었다는 말을 듣고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스스로 목을 찢러 죽었는데, 관리가 추후에 그 시신을 가져다가 사지를 찢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처형한 시기가 같지 않고 시신을 찢은 사람도 장소도 같지 않아서 장사 지낸 곳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혹 불행하게도 끝내 장지가 없는 것인가. 아, 모두 알 수가 없다. 湖西 洪州에 성씨의 장지가 있고, 忠州 德面里에 박씨의 장지가 있다. 성씨의 외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른바 성씨의 무덤은 사지 중 하나만을 매장한 것이라 하니, 박씨의 무덤 역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이는 “중적이 이미 사라져 민간에서 전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 하니, 그 말이 사실 옳다. 이는 강가의 부로들이 전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에 불과할 뿐, 처음에 누가 보고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이미 증거로 삼을 만한 옛일이 남아 있지 않으니, 꼭 믿을 수 있다고 고집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앞으로 천백 년이 흐른 뒤에 세대가 멀어질수록 민간의 이야기가 더욱 전해지지 않게 되고 그 무덤도 오랜 세월에 의해 변해 버려 반신반의하던 것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志士의 뒤늦은 한탄이 무궁할 것인데, 더구나 어진 사람과 효자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sup>17)</sup>

「육신의충비」에는 『지봉유설』과 달리 李塏의 묘와 성삼문의 부친인 成勝의 묘가 추가되었다. 허목은 현존하는 육신묘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유응부의 경우 노량에서 처형당한 것이 아니고, 자결하였는데 왜 이 처형 장소에 그의 묘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둘째, 이미 박팽년과 성삼문은 묘소가 다른 장소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량에 다시 묘가 있는 것에 대한 점이다.<sup>18)</sup> 셋째, 이 묘가 과연 사육신의 묘가 맞는가에 대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목은 이 장소가 결과적으로는 사육신의 행적을

17) 『記言』 卷17, 丘墓, 「六臣疑塚碑」

18) 특히 허목은 유응부와 하위지의 묘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였다(『記言』 卷17, 丘墓, 「答朴翊贊書」).

추념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이유로 인해 남길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논평하였다. 허목의 「육신의총비」 이후 사람들은 사육신묘에 대한 진위여부보다는 사육신을 추념하는 장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679년(숙종 5) 사육신묘가 있는 노량에 사우가 건립되었다. 한양과 경기의 사족들의 주도로 건립된 사우는 사육신을 추념하는 핵심 장소로 기능하였다.<sup>19)</sup> 육신사우는 육신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고, 사육신에 대한 다양한 형상화 작업에 있어 노량의 사우 건립은 주목된다. 이후 이 사우를 ‘六臣祠’ 혹은 ‘六臣書院’으로 부르며 다양한 인사들의 방문이 확인된다.

1672년(현종 13)에는 戶曹書吏 嚴義龍이 인왕산에서 성삼문의 신주를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충청감사였던 閔維重이 해당 신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송시열에게 문의하였는데 송시열은 洪州 魯恩洞에 있는 성삼문의 舊家에 신주를 모시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삼문의 신주를 봉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육신을 동시에 향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송시열은 세조가 성삼문에 대해 萬古忠臣으로 평가했다는 사실, 하위지를 선산 월암서원에 추향했고 회덕에 박팽년의 비석을 세웠음에도 조정에서 금단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sup>20)</sup>

그런데 문제는 사육신을 어떠한 위치로 두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서원들은 1인을 배향하거나, 사승관계 혹은 도통을 중심으로 배향하였기 때문에 1인의 主享인과 다수의 從享인을 기준으로 위치를 설정하였다. 사육신의 경우 모두 節義로는 동일한 위치였기 때문에 주향-종향의 관계보다는 나란히 위치를 두는 並享을 할 수 밖에 없었다.<sup>21)</sup>

19) 『成謹甫先生集』 附錄, 「實記」, 肅宗七年辛酉九月 京外士林 就果川 露梁江南岸建書院 並享六先生.

20) 『宋子大全』 卷142, 記, 「洪州魯恩洞遷奉成先生神主記」. 홍주에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 사당을 짓는 것에 대해 허목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記言』 卷51, 論事, 「答希仲書(己未)」).

21) 유응부의 경우 무관이기 때문에 병향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병향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이후 무관을 배향하는 방식의 전거로

이에 대해 白鹿洞 濂溪書院에서 二程을 나란히 두는 사례를 토대로 방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sup>22)</sup> 이후 1676년(숙종 2) 서원으로 건립되면서 사육신 서원의 하나로 기능하였다.

송시열은 홍주의 성삼문 舊家와 사육신 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홍주에 성삼문의 위패를 봉안하는 제문을 직접 작성했으며,<sup>23)</sup> 舊家에 대한 내력과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절의를 표창하는 遺墟碑를 작성했다.<sup>24)</sup> 송시열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연산 漢陽村 지역이 성삼문 가문과 연계되어 있었고 古塚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해 遺墟碑를 작성하였다.<sup>25)</sup>

송시열의 사육신에 대한 관심은 지역적으로 성삼문과 관련한 遺墟가 호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과 스승인 金長生이 성삼문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기억하였다는 점 등이 그 표면적인 근거였다. 그 외에도 의리론의 관점에서 충절은 군신에 대한 충절을 넘어 사회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인 충절과 의리로 연결되었고, 이를 義理主人으로 자처했던 송시열이 주목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sup>26)</sup>

1679년(숙종 5)에는 大丘에도 사육신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 지역은 박팽년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중서원의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작용하기도 했다(『承政院日記』 817冊, 영조 12년 1월 22일 丁巳).

22) 『宋子大全附錄』 卷16, 語錄, 「朴光一錄」. 이후 三學士를 배향하는 과정에서도 사육신의 방향이 그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長巖先生集』 卷4, 筭, 「代儒生請三學士祠宇賜額疏」, 三賢同堂并享. 如露梁書院六臣之例).

23) 『宋子大全』 卷151, 祝文, 「洪州魯恩洞奉安成先生祠版文」.

24) 『宋子大全』 卷171, 碑, 「洪州成先生遺墟碑」.

25) 『宋子大全』 卷171, 碑, 「連山成先生遺墟碑」.

26) 송시열은 사육신뿐만 아니라 정몽주, 조광조 등 동방 도학의 주요 인물들을 현창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는 단순히 과거 인물의 현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춘추 의리를 포함한 정통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송시열의 주도하는 의리론을 정립하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송시열의 의리론에 대해서는 정재훈, 「17세기 尤庵 宋時烈的 政治思想」, 『한국사상과 문화』 42, 2008 ; 정만조, 「천하의리의 주인, 우암 송시열」, 『우암논총』 8, 2015 ; 김문준, 「우암(尤庵) 송시열의 의리사상과 그 의의」, 『동서철학연구』 19-1, 2000 참조.

당시 배향은 박팽년만이 아닌 사육신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위치 또한 병향으로 하여 홍주의 사례와 동일하게 하였다. 이는 박팽년뿐만 아니라 사육신을 함께 배향함으로써, 사육신으로 표방하는 충절을 표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85년(숙종 11)에는 寧越의 魯山君墓 인근에 사육신 사당인 六臣祠가 건립되었다. 복관 이전 건립된 사우·서원으로서의 마지막 사례로서 사육신의 충절의 대상이던 노산군의 묘소 인근에 존재한 서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육신사의 건립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들에서 서술된 서원의 건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 (a) 영월부 북쪽 3리 거리인 장릉 火巢 밖에 있다. 신해년(1791, 정조 15) 영월 부사 朴基正과 강원도 관찰사가 장릉 관리와 함께 상의하여 화소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서 지금은 화소 안에 있다. 을축년(1685, 숙종 11)에 감사 홍만종과 군수 조이한이 의논하여 사당을 세우고 육신인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와 호장 엄홍도를 나란히 배열하고 제사를 지냈다. 신해년(1791, 정조 15) 왕의 특별 고지에 의해 사당을 고쳐 세우고 매월당 김시습과 추강 남효온 그리고 엄호장을 차례로 배향하고 세 임금의 어제시 7관을 사당 안에 보관하였다.<sup>27)</sup>
- (b) 숙종 11년 을축 강원도 관찰사 홍만종이 노산대군의 사우를 증수하기를 계청하고, 또 영월부사(군수) 조이한과 함께 육신사를 그 옆에 세우는 것을 의논하였다. 5월에 시작해서 7월에 공기를 마쳤고, 9월 季丁에 6선생의 신위를 봉안하고 호장 엄홍도도 배향하였고, (『定齋集』) 六臣祠라 이름하였다. 우암 송 문정공께서 그 편액을 쓰셨다. (『寒水齋集』) 【奉安位次】 순천 박선생 창녕 성선생 한산 이선생 문화 유선생 진주 하선생 기계 유선생을 차례로 배향하고 엄공은 남벽 하위에 膾享하고 版題에 호장엄공신위라고 하였다. (本院謄錄)<sup>28)</sup>

27) 『寧越府邑誌』 「彰節祠 六臣祠」

28) 『寧越邑誌』 「寧越府彰節書院謄錄」 事實.

영월 육신사는 감사 흥만종과 영월군수 조이한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육신의 배향방식은 홍주의 사례와 동일했다. 육신사의 건립과 사육신의 배향은 노산군과 사육신을 직접적으로 연계하였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사육신과 함께 엄홍도를 함께 배향한 점은 다른 서원·사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징이기도 하다. 육신사의 건립 이후 팔현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우들이 이후에 건립된다는 점에서 육신사의 건립은 추후 단종으로의 복위와 생육신을 비롯한 제반 인물들의 현창과정의 시작점으로 기능했다.

영월 육신사 창건의 주도 인물은 대체로 봉당으로는 西人에 속해 있었다. 강원감사 흥만종을 비롯하여 편액을 작성한 송시열, 육신사의 창건과정에 대한 「寧越六臣祠記」를 작성한 박태보 등은 모두 서인계에 해당된다.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닌 서인이라는 봉당에서 육신사 창건을 주도한 점은 이후 사육신에 대한 현창을 서인계가 주도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29)</sup>

사우·서원의 건립과 함께 사육신의 현창과 복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청원이 이루어졌다. 1652년(효종 3) 趙綱은 홍주에 있는 舊家에 정표를 하고 남효온의 『육신전』 등을 거론하여 사육신에 대한 은전을 요청하기도 했으며,<sup>30)</sup> 1657년 宋浚吉은 연산과 회덕에 위치한 기존 서원들에 사육신을 추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sup>31)</sup> 1679년(숙종 5) 尹鑑은 「請復魯陵疏」를 올려 노산군에 대한 복위와 이와 관련된 사육신 등의 복관을 주장하기도 했다.<sup>32)</sup>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론이었다. 「육신의

29) 창절서원 이외에도 특히 호서에 위치한 사육신 관련 서원이나 遺址에는 서인계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송규림은 연산에 있는 팔현서원 상량문을 작성했으며(『玉吾齋集』 卷12, 上梁文, 「連山六臣書院上梁文」), 윤봉구는 송시열이 작성했던 홍주 성선생유허비에 추기를 남기기도 했다(『屏溪先生集』 卷48, 碑, 「洪州成先生(三間) 遺墟碑追記」).

30) 『孝宗實錄』 卷9, 3년 11월 13일 辛巳.

31) 『孝宗實錄』 卷19, 8년 10월 25일 甲午 ; 『顯宗實錄』 卷17, 10년 8월 戊寅.

32) 『白湖先生文集』 卷10. 疏, 「請復魯陵疏(己未正月二十日)」

총비」를 직접 작성했던 허목조차 노산군의 복위 뿐만 아니라 사육신의 복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sup>33)</sup> 관료들은 현 시점에서 추송을 진행하는 것은 선왕인 세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해하였다.

조정에서의 청원과 함께 사육신과 관련한 저술의 편찬도 추진되었다. 1658년(효종 9) 박송고에 의해 『六先生遺稿』가 간행되어 사육신의 행적과 저작에 대한 정리작업이 추진되었으며, 1663년(현종 4) 윤순거의 주도로 『魯陵志』가 편찬되었다. 이와 같은 저작들의 편찬과 간행은 남효온이 정리한 「육신전」 이래로 사육신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들의 행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사육신이 사회적으로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34)</sup>

이상과 같이 사육신에 대한 현상은 17세기 이후에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우 혹은 서원의 건립은 제향 행위를 통해 대상자를 기억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었다. 특히 사육신이 사망했던 노량과 노산군의 묘소가 있었던 영월에 사육신의 사우·서원이 건립된다는 것은 점차 사육신을 넘어서 노산군에 대한 평가까지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서원·사우의 건립 뿐만 아니라 조정 내에서의 복관 건의, 민간에서의 출판 활동과 연계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논리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 Ⅲ. 사육신 복관과 서원 사액의 정치적 의미

1679년(숙종 5) 9월 숙종은 鷲梁壇所에서 闕武를 시행하였다. 허적은 노량에 있는 六臣墓에 대한 封植을 건의하였다. 허적은 先王이 자손을 녹용했고

33) 『記言』 卷66, 自序, 「自序二」.

34) 이근호,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 과정 연구」, 『사학연구』 83, 2006.

절의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들어 특별히 봉식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sup>35)</sup> 조정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육신묘에 대한 봉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못하였다.<sup>36)</sup> 1680년에는 강화유사 이선이 상소를 올려 사육신에 대한 복관을 요청하였다. 숙종은 사육신의 충절을 인정했지만 列聖朝에서 이들에 대한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복관 자체는 거부하면서도 士林에서 尊慕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sup>37)</sup>

육신묘에 대한 봉식의 보류나 사육신 복관에 대한 거부와 별개로 민간차원에서 사육신에 대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681년에는 노량의 六臣墓 인근에서, 1685년에는 영월의 魯山君墓 인근에 사육신을 배향하는 사우가 건립되었다. 두 지역 모두 사육신과 노산군의 묘소가 존재했다는 점으로 인해 이전부터 주목되었으며, 1679년 사우의 건립은 숙종이 사육신에 대해 충절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건립되었거나 숙종대 전반에 건립이 추진되었던 서원이나 사우 중에서 노량의 사육신 사우는 한양의 인근에 있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방문하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는 국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량은 闕武를 시행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한강의 서남부에 위치한 陵墓에 능행하러 가는 경로에 존재했기 때문에, 국왕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1691년 9월 숙종이 金浦 章陵에 展謁하며 환궁하는 도중 노량의 교장에서 열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육신이 재론되었다. 숙종은 六臣墓와 영월의 魯

35) 『承政院日記』 272冊, 숙종 5년 9월 11일 癸卯.

36) 『承政院日記』 272冊, 숙종 5년 9월 11일 癸卯.

37) 『肅宗實錄』 卷10, 6월 12월 22일 정미. 숙종이 사육신에 대해 이전의 국왕들과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에 관해 같은해 발생했던 경신환국 과정에서 발생했던 왕권에 대한 재정립과 충절을 통해 국왕과 신료들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하기도 한다(정만조, 「肅宗朝의 사육신 追崇과 書院祭享」, 『한국학논총』 33, 2010).

山君墓도 동시에 치제를 지시하였다.<sup>38)</sup> 사육신과 노산군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육신묘와 노산군묘를 동시에 치제를 지시했다는 점은 군신관계에서 충절로 표상되는 사육신과 노산군을 연결짓는데 있어 노량 지역이 계기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領中樞府事 김덕원은 육신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六臣祠宇에 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치제의 대상이 묘가 아닌 사우로 변경되었다. 숙종은 치제를 지시하며 사육신이 명의 方孝孺와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복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sup>39)</sup> 육신묘는 그것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하지만, 그것의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육신 중에서 일부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사육신을 모두 배향하는 육신사우에 치제를 단행하고 사육신을 현창하였다. 아울러 사육신뿐만 아니라 노산군까지도 동시에 치제를 지시한 점은 노산군과 사육신의 충절을 상호 연관시키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육신사우의 치제가 결과적으로 복관 논의로까지 확장되면서 사육신에 대한 평가는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조정 내에서는 대신과 예조를 비롯하여 주요 관원들에게 사육신 복관에 대한 타당성을 收議하였고,<sup>40)</sup> 館學 및 한양의 유생들도 상소를 올려 사육신의 복관과 서원 사액을 청원하기도 했다.<sup>41)</sup> 복관에 대한 숙종의 의지나 재야 유생들의 견해와 별개로 조정 내부에서는 복관을 반대하거나 보류의 입장이 대다수였다. 이에 숙종은 재외유신에게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특별히 남인계 산림이었던 李玄逸에게 사육신 복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예조좌랑 박세신을 영해로 파견하였다.<sup>42)</sup> 이현일은 상소를 올려 신원과 복관이 繼志述事의 하나이며, 태종과 정몽주의 관계와

38) 『承政院日記』 346冊, 숙종 17년 9월 2일 癸丑.

39) 『承政院日記』 346冊, 숙종 17년 9월 2일 癸丑.

40) 『承政院日記』 346冊, 숙종 17년 9월 5일 丙辰; 『承政院日記』 346冊, 숙종 17년 9월 13일 甲子.

41) 『承政院日記』 346冊, 숙종 17년 9월 13일 甲子; 『承政院日記』 346冊, 숙종 17년 9월 19일 庚午.

42) 『承政院日記』 346冊, 숙종 17년 9월 18일 己巳.

마찬가지로 세조와 사육신에 대한 관계로 동일하다고 평가하며 이것이 세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닌 闡揚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복관을 지지하였다. 또한 복관 문제는 국왕이었던 숙종의 '遠慮'에 근거한다는 점을 들어 결정권이 신료가 아닌 국왕에게 있다고 규정하면서 숙종의 입장을 지지하였다.<sup>43)</sup>

1689년 기사환국 이후 남인의 정국주도 하에서 조정 내의 대부분의 관료들이 복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것에 대해 남인계 산림이었던 이현일의 복관을 지지하는 발언은 숙종에게 사육신 복관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4개월이 지난 같은해 12월 숙종은 사육신을 복관하고 육신사우를 사액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숙종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該曹에 특별히 명하여 成三問 등 여섯 사람을 復爵하고, 관원을 보내어 致祭하게 하였다. 사당의 扁額을 愍節이라 내리고, 備忘記를 내리기를, "나라에서 먼저 힘쓸 것은 본디 節義를 崇獎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신하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도 절의에 죽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저 六臣이 어찌 天命과 人心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인 줄 몰랐겠는가마는, 그 마음이 섬기는 바에는 죽어도 뉘 우침이 없었으니, 이것은 참으로 사람이 능히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忠節이 수백 년 뒤에도 凜凜하여 方孝孺·景濤과 견주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선왕의 陵에 일이 있어서 輦이 그 무덤 옆을 지남에 따라 내 마음에 더욱 느낀 것이 있었다. 아! 아버지를 위하는 것은 숨기는 법인데, 어찌 이 의리를 모르라마는, 당세에는 亂臣이나 후세에는 충신이라는 분부에 聖意가 있었으니, 오늘의 이 일은 실로 世祖의 遺意를 잇고 세조의 盛德을 빛내는 것이다."<sup>44)</sup>

43) 『葛庵先生文集』 卷5, 獻議, 「六臣復官致祭賜額議(辛未九月)」. 다른 한편으로 주목할 점은 같은 해 12월 기축옥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철의 관직을 추탈하고 안방준의 사당을 헐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현일은 이들의 행위가 사육신을 모함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며 이들을 비판했다는 사실이다(『葛庵先生文集』 卷6, 經筵講義, 「辛未十二月十六日丙申」). 숙종의 왕권을 둘러싼 사육신의 현창에서 이현일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 뿐만 아니라 이현일의 정치적 견해를 정당화하는데 사육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44) 『肅宗實錄』 卷23, 17년 12월 6일 丙戌.

숙종은 비망기를 통해 사육신이 충절로 대표되는 인물임을 공식화했다. 또한 그 계기가 원종의 묘소인 장릉을 전할할 시점에 일어났으며, 세조가 사육신에 관해 당대에는 亂臣이나 후세에는 忠臣이라는 견해를 밝혔던 사실도 언급했다.<sup>45)</sup>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세조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遺意를 계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盛德을 빛내는 일이라고 하며 사육신의 복관이 세조를 오히려 현양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다.

비망기의 내용과 같이 사육신의 복관과 서원 사액은 동시에 진행되었다. 복관 조치와 함께 노량의 六臣祠宇는 '愍節'이라는 액호를 부여받았고, 祠宇는 書院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sup>46)</sup> 숙종의 복관 지시 이후 4개월이 지난 1692년 3월 사액과 치제를 위해 예조정랑 최기가 파견되면서 육신사우는 민절서원으로 변모하게 되었다.<sup>47)</sup> 사육신 일부 중에서는 단종복위운동 과정에서 絶孫되었던 사례도 있었는데, 서원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복관 과정에서 告身을 자손에게 전달해 주는데 자손이 없을 경우 민절서원으로 보냈다.<sup>48)</sup> 민절서원은 사육신과 관련한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육신묘 인근에 존재한 서원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지역의 인사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단적인 예로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유생고강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민절서원의 경우 인근의 사대부 자제들의 藏修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방의 유생들이 빈번하게 방문하기 때문에 다른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유생고강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언급을 할 정도로 서원은 다양한 인사들의 방문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sup>49)</sup>

45) 세조가 사육신에 대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세조의 발언은 당대에는 확인되지 않으며, 16세기 이후 시작되어 17세기에는 사실로 정립되어 갔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두, 2010, 「단종충신 追復 논의와 세조의 사육신 인식」, 『사학연구』 98 참조.

46) 『承政院日記』 347冊, 숙종 18년 1월 25일 乙亥.

47) 『承政院日記』 347冊, 숙종 18년 3월 5일 甲寅; 『承政院日記』 347冊, 숙종 18년 3월 6일 乙卯.

48) 『肅宗實錄』 卷24, 18년 1월 25일 乙亥.

사육신의 복관과 사액은 철저하게 숙종의 의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환국을 통해 국정을 주도했던 숙종에게 사육신으로 표상되는 충절은 과거의 현상이 아닌 현실의 관료들에게도 동시에 요구되는 것이기도 했다. 정국의 주도자로서 군주를 설정하고, 군주에 대한 충절이 당론을 비롯한 봉당의 이해관계에 앞서게 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환국을 통해 주도한 봉당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군주가 주도권을 가지며 신료는 충절을 통해 군주를 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갑술환국을 통해 정국이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재편되었던 상황에서 군주인 숙종이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면이 사육신 복관과 서원 사액을 통해 확인되고 있었다.<sup>50)</sup>

민절서원의 사액 이후 기준에 건립된 사육신 서원에서도 사액에 대한 청원이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충청도 홍주의 서원이었다. 충청도 진사 李澆 등이 상소하여 민절서원의 예에 따라 사액을 요청하였다.<sup>51)</sup> 이에 따라 ‘緣雲’으로 사액 결정이 내려지고 예조낭청이 파견되어 사액과 치제가 시행되었다.<sup>52)</sup> 연운서원은 이후 노은서원으로 재사액되었다.<sup>53)</sup> 다음으로 경상도 선산에서도 사액을 요청하였다. 경상도 유생 張大臨 상소하여 민절서원과 연운서원의 사례에 따라 사액을 청원하였다.<sup>54)</sup> 경상도 대구에 하위지의 후손 세거지에 있던 사육신 서원 또한 청액을 거쳐 낙빈서원으로 사액되었

49) 『承政院日記』 437冊, 숙종 33년 8월 30일 己酉, “副校理權詹曰 此難以一概論之矣 若以六臣書院言之 則京中士夫 以爲藏修之所 雖外方亦有士子往來之事 何可一體考講乎?”

50) 남구만은 노산군이 아닌 사육신을 먼저 현창하게 된 계기로서 노산군의 복관은 세조와의 관계설정에서 직접적 문제가 되지만, 사육신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세조 자체의 위상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복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藥泉集』 卷34, 書, 「寄兒(戊寅十月三日)」).

51) 『承政院日記』 347冊, 숙종 18년 3월 18일 丁卯.

52) 『承政院日記』 350冊, 숙종 18년 11월 6일 辛亥.

53) 『承政院日記』 450冊, 숙종 35년 8월 20일 戊午.

54) 『承政院日記』 351冊, 숙종 19년 2월 18일 壬辰.

다.<sup>55)</sup> 당시 청원된 사액 요청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이 승인되었으며, 사액과 치제가 시행되었다.

서원 사액과 함께 사육신과 연고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 사육신 서원의 건립이 추진되었다. 1692년 성삼문의 외가였던 연산에 八賢書院이,<sup>56)</sup> 1693년 박팽년이 우거하였던 회덕에 靖節書院이, 1698년 성삼문 유허가 있는 의성에 忠烈祠宇가 건립되었다. 의성의 충렬사우의 경우 사액청원이 시도되기도 했는데 경상도 유생 金塘의 청액소에 의하면 금학산 아래 성삼문 舊宇의 터가 있었고, 별사로 오두인, 박태보, 이세화를 배향하는 별사를 두었다.<sup>57)</sup> 이들은 대체로 사육신의 연고지라는 점과 동시에 사육신에 대한 복관 조치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복관과 서원 건립이 상호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조정에서 이루어진 서원에 대한 관점은 남설과 첩설의 금지였다. 붕당정치의 심화에 따라 각 붕당에서 경쟁적으로 서원과 사우의 건립이 추진되었고, 이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서원의 남설이나 첩설을 금지하고 사액 또한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 사육신 서원은 이러한 경향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복관이라는 정치적 행위와 함께 사육신 서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기준을 두었던 것이다.

사육신의 복관과 서원 사액은 결과적으로 노산군의 복위로 연결되었다. 단종의 복위 논의는 前縣監 申奎의 상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491인의 조정 신하들의 수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端宗으로 廟號를 복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58)</sup> 숙종의 비망기에 의하면 단종 복위는 ‘근본적으로 六臣’으로 말미암

55) 『靜齋先生文集』 卷3, 疏, 「洛濱書院請額疏(癸酉正月 爲大邱士林作)」.

56) 『丹溪先生遺稿』 附錄, 「院享錄」.

57) 『承政院日記』 446冊, 숙종 35년 2월 13일 甲寅. 그러나 해당 사우가 최종적으로 사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숙종 44년 의성유학 申一模를 疏頭로 재차 사액 청원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후 『增補文獻備考』를 포함하여 서원관련 자료에도 사액 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미사액 사우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정만조, 「肅宗朝의 사육신 追崇과 書院祭享」, 『한국학논총』 33, 2010).

았으며, 육신의 복관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59)</sup> 결과적으로 단종 복위와 육신 복관은 상호 연계되어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왕권강화라는 숙종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sup>60)</sup>

단종의 복위는 노산군묘가 장릉으로 위상이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와 동시에 장릉 火巢 내에 있는 사육신 서원의 이설 논의로 이어졌다. 장릉이 왕릉으로 격상되면서 왕릉 구역 내에 있는 사육신서원은 사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숙종은 蜀漢의 武侯祠의 사례를 들어 사육신서원이 현재 위치에 두는 것이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설은 보류되었다.<sup>61)</sup>

장릉 내에 있던 서원 또한 사액이 추진되었다. 1702년 강원도 영월읍 朱鑛 등 상소로 이루어진 사액이 요청되었으며,<sup>62)</sup> 다음해인 1703년 彰節로 사액되었다.<sup>63)</sup> 창절서원을 포함하여 장릉 인근은 이후 단종과 단종에게 충절을 바쳤던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건립 당시부터 창절서원에는 사육신과 함께 단종이 사망했을 당시 시신을 수습했던 엄흥도를 함께 배향하기도 했으며, 생육신과 권절, 정보 등을 배향한 八賢祠를 창절서원 경내에 마련하였다. 또 장릉으로 추봉된 이후 영릉 인근 낙화암에 단종을 모시다가 순절한 시녀와 시종의 제단을 설치하고 1742년(영조 18)

58) 『肅宗實錄』 卷32하, 24년 9월 30일 辛丑; 『肅宗實錄』 卷32하, 24년 10월 20일 辛酉; 『肅宗實錄』 卷32하, 24년 11월 6일 丁丑. 申奎의 상소는 본래 東平尉 鄭載崙이 주동한 것으로서, 사료로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단종으로의 복위를 위한 일련의 과정은 숙종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정만조, 「肅宗朝의 사육신 追崇과 書院祭享」, 『한국학논총』 33, 2010)

59) 『肅宗實錄』 卷32하, 24년 10월 24일 乙丑.

60) 윤정, 「숙종대 端宗追復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2, 2004; 이근호,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復權과정 연구」, 『史學研究』 83, 2006; 진상원, 「단종복위 모의자들의 伸冤과 追尊」, 『역사와 경계』 64, 2007; 이현진, 「조선 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史學研究』 98, 2010.

61) 『承政院日記』 382冊, 숙종 24년 11월 30일 庚子; 『承政院日記』 386冊, 숙종 25년 8월 8일 癸酉.

62) 『承政院日記』 406冊, 숙종 28년 8월 4일 癸未.

63) 『肅宗實錄』 卷38, 29년 10월 5일 丁丑.

사당을 건립하여 한식과 단종이 승하한 10월 24일에 제향을 올렸으며 1758년 ‘愍忠’으로 사액되었다.<sup>64)</sup>

이상과 같이 숙종대 이루어진 사육신 복관과 서원의 건립 및 사액은 상호 연동되어 있었다. 특히 환국정치와 군주 중심의 정국구상이라는 숙종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리며 사육신의 복관과 서원의 사액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었다. 사육신 서원은 사육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건립이 증가되었으며, 서원 정비라는 당대의 분위기와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사액될 수 있었다.

#### IV. 사육신 서원 치제를 통한 군신의리의 강화

18세기 전반 정국은 노론과 소론의 갈등과 함께 壬寅獄事를 통해 봉당이 상호간의 공존이 아닌 배제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종과 왕세제 연잉군을 지지하는 소론과 노론의 갈등은 임인옥사를 계기로 사망한 노론 4대신과 그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사되거나 귀양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종의 사망과 영조의 즉위는 임인옥사 이후 소론이 주도하던 정국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영조는 탕평론을 제시하며 노론과 소론, 그리고 남인 등의 봉당간의 갈등을 타파하고 군주 중심의 정국 운영을 천명하였다.<sup>65)</sup>

노론계 입장에서는 임인옥사 이후 규정된 노론 4대신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고, 4대신의 賜死를 왕세제 연잉군과의 의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서 4대신의 신원과 복관 문제가 대두됨과 동시에 4대신을 배향하는 서원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는 영조가 왕위에 즉위한 다

64) 장릉 인근에 위치한 각 사우에 대한 내력은 『寧越府邑志』와 『莊陵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5) 경종대부터 영조대 초반 정국과 관련해서는 정만조,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蕩平基盤의 成立에 이르기까지」, 『震檀學報』 56, 1983 참조.

음해인 1725년(영조 1)부터 추진되었다. 조정 내에서의 노론 4대신 서원의 건립과 건립 위치의 근거는 다음 민진원의 견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 민진원이 말하기를, “만약 별도로 사대신을 위하여 사우를 세운다면 儒疏에 따라 과천 지역에 두어야 할까요” 하니 상이 말하기를, “반드시 과천에 사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하니 신사철이 말하기를, 사대신은 일찍이 과천지역에서 왕래하였기 때문에 土論이 이 지역에 사우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니 민진원이 말하기를, 만일 城中에 사우를 세우면 일이 難便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과천의 盤溪는 한강의 남쪽 가에 있으니 이곳에 사우를 세우면 좋을 듯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 ... 상이 이르기를, “이 사우는 六臣書院과 멀지 않은데, 그 서원의 이름은 무엇인가?”하니 민진원이 말하기를, “愍節祠입니다.”<sup>66)</sup>
- (b) 민진원이 말하기를, “사대신의 서원은 애초에 鄉儒의 上疏로 인하여 과천지역에 영건하고자 하였습니다 ... 鷺梁은 대신들의 유배길에 지나가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우를 세우고자 하며, 또 육신서원이 근처에 있어 그곳의 士人들의 家田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서원의 터를 어찌 값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고 문서를 만들어 보내왔다고 하니, 인심이 동의하는 바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sup>67)</sup>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대신을 위한 서원을 과천의 鷺梁 인근에 세우고자 했다. 서원이 이 지역에 건립되어야 하는 근거로 사대신이 과거에 과천 지역에서 왕래했다는 점과 임인옥사 당시의 귀양로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서원의 입지 선택은 일반적인 서원 입지의 선택과는 이질적인 것이기도 했다. 대체로 서원의 입지 선정의 근거는 배향자의 연고지로서 묘소, 강학처, 거주지, 관력지, 문중 세거지 등이 일반적이었다.<sup>68)</sup> 배향자와 연고지가 무관한 경우에는 도통과 관련한 인물을 배향하거

66) 『承政院日記』 599책, 영조 원년 8월 16일 辛巳.

67) 『承政院日記』 614冊, 영조 2년 4월 9일 辛未.

68) 김덕현, 「韓國 書院과 中國 書院의 立地·空間構成과 遊息空間에 대한 比較研究」, 『한국서원학보』 15, 2022.

나, 학문적 종장일 경우만이 예외적으로 해당되었다.<sup>69)</sup> 이에 비해 사충서원을 노량에 건립한다는 근거는 왕래처 혹은 유배경로라는 일반적인 서원 입지의 근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 가지 주목될 만한 사실은 노량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이다. 위 인용문 및 <그림 1>과 같이 노량은 六臣墓와 愍節書院, 인현왕후를 옹호하다 희생된 박태보를 배향하는 鷺江書院이 있었다.<sup>70)</sup> 따라서 이 지역에 사대신을 배향하는 서원을 건립한다면, 사육신과 마찬가지로 사대신 역시 충절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희생된 인물로 규정함과 동시에, 현 국왕인 영조를 위한 신임의리를 지키려다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사육신-사대신을 연결짓기에 유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노론계 인물들은 노량 인근에 사충서원을 짓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sup>71)</sup>



<그림 1> 『청구요람』 내 과천현지도

69) 예를 들어, 海州의 紹賢書院이나 礪山의 竹林書院은 조광조를 비롯하여 이황, 이이, 성혼, 김강생 등 도통과 관련된 인물을 배향하였고, 이황, 이이, 송시열 등을 배향하는 서원의 경우 지역적 연고와 무관하나 해당 지역이 특정 학파와 관련성이 높을 경우에 건립되기도 한다.

70) 노강서원은 인현왕후를 옹호했던 박태보를 배향하기 위한 목적에서 1695년(숙종 21) 건립되었다. 박태보가 인현왕후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사육신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박태보가 노량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노량에 서원이 건립될 명분은 존재했다. 1698년 의성에 건립한 충렬사우는 사육신의 사우 옆에 別祠로 이 박태보 뿐만 아니라 오두인과 이세화를 배향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당대에 사육신과 이 세 인물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시각도 존재했다(『丹溪先生遺稿』附錄, 『院亭錄』).

71) 사충서원의 입지 선정은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묘소도 강화처도 아닌 제3의 장소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충서원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윤세진은 노량에 사충서원을 건립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을 들어 이 지역에 서원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다(『承政院日記』 622冊).

사충서원은 신임의리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영조대 전반에 걸쳐 건립과 철폐, 재건립, 사액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1756년(영조 21) 왕명에 따라 사충서원이 복설되고 사액이 이루어지면서 사충서원은 노론 4대신의 배향서원이자 『闡義昭鑑』의 간행과 함께 신임의리를 확정하는 계기가 되었다.<sup>72)</sup> 사충서원의 건립과 더불어 주목할 점은 노론계를 중심으로 노론 4대신과 사육신을 연계하고, 나아가 동일한 장소에 있던 민절서원과 사충서원을 상호 연계하여 인식하였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노론계 인사들은 민절서원과 사충서원을 동시에 방문하여 충절에 대한 의리를 확인하였으며,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두 서원을 연관지어 이해했다.

사충서원과 민절서원의 관계는 민우수가 지은 사충서원 상량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이 지역은 매우 아름답고 진실로 義烈이 모인 곳이니, 우주를 지탱하는 것은 死六臣의 순수한 충정이고, 윤리를 떠받치는 것은 三學士의 큰 절개입니다. 사당이 매우 가까우니 세시의 흠향을 함께 할 수 있고, 영걸들이 함께 노닐었으니 저승의 울적함을 떨 수 있습니다.<sup>73)</sup>

상량문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노량은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충절로 상징되는 지역이었고, 사충서원의 건립을 토대로 의열이 모인 장소로서 규정하였다. 사충서원을 건립과 노량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절 의리의 형상화는 노론계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4대신에 대한 의리는 영조에게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영조를 위한 의리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사육신에 대

영조 2년 8월 27일 병술). 19세기에는 사충서원이 노량에 건립된 것은 민절서원이 존재로 인해 절의를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承政院日記』 2588冊, 철종 8년 2월 20일 壬寅, 竊惟四忠祠之特建露湖者 因六臣之祠 而取其節義 則崇獎之典 非不重且盛矣).

72) 사충서원의 건립과 사액에 관한 과정은 이경동, 「조선후기 四忠書院의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15, 2022 참조.

73) 『貞菴集』 卷9, 上梁文, 「露梁四忠祠上樑文(丙午○代仲父)」.

한 복관은 자신의 부친이었던 숙종의 업적이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숙종의 치적을 계승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육신을 현창하고 이를 추념하는 것은 정통 성과도 직결되었다. 1734년(영조 10) 영조는 김포항공으로 가는 도중에 민절서원을 치제하였다.<sup>74)</sup> 민절서원에는 船隻에 대한 收稅 일부를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들도 이루어졌다.<sup>75)</sup>

노량의 민절서원과 함께 영조는 영월의 창절서원에 대한 지원과 치제도 시행하였다. 창절서원의 경우 사액서원의 기준에 따라 3결의 면세전을 획급해 주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sup>76)</sup> 단종의 복위 1주갑이 되던 1757년에는 장릉을 포함하여 주변 서원 및 사우의 치제가 시행되기도 했다.<sup>77)</sup> 장릉과 창절서원의 치제는 숙종에 대한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릉 내 창절서원의 이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조는 현재의 위치인 火巢 내에 서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유지의 근거로서 영조는 『杜詩』의 ‘임금과 신하는 一體이고 제사도 같다[一體君臣祭祀同]’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서원을 현 위치에 두어도 무방하다는 점을 밝혔다.<sup>78)</sup> 이는 군신간의 一體, 즉 같은 의리로서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757년이라는 시기가 영조가 신임의리를 확정하고, 4대신을 포함한 신임옥사 과정에서 피화된 인물들의 신원을 모두 복원해 주었다는 시기라는 점에 근거해 볼 때, 영조의 이와 같은 견해는 당시의 정치현실과 맞닿아 있기도 했다.

영조의 경우 민절서원과 창절서원을 중심으로 한 치제활동이 확인된다. 1778년(정조 2) 정조는 노량에서 大闢을 시행하며 민절서원, 사충서원, 노강서원에 치제를 시행했다.<sup>79)</sup> 1791년(정조 15) 현릉원으로 능행하는 과정에서

74) 『承政院日記』 786冊, 영조 10년 9월 15일 丁亥; 『承政院日記』 787冊, 영조 10년 9월 17일 己丑.

75) 『承政院日記』 787冊, 영조 10년 9월 18일 庚寅.

76) 『承政院日記』 863冊, 영조 13년 11월 20일 癸酉.

77) 『承政院日記』 1162冊, 영조 34년 11월 5일 戊子.

78) 『英祖實錄』 卷92, 영조 34년 10월 4일 丁巳.

79) 『承政院日記』 1427冊, 정조 2년 9월 7일 癸巳.

도 치제를 시행했다.<sup>80)</sup> 정조가 현릉원으로 능행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던 민절서원은 국왕인 정조로 하여금 사육신과 관련한 충절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현창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치제문을 정조 스스로 작성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사육신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sup>81)</sup> 민절서원의 치제 이후 1788년(정조 12)에는 엄홍도의 정려와 함께 창절서원의 치제도 시행하였다.<sup>82)</sup> 치제문은 정조 스스로 작성하고 승지를 파견하여 치제를 지시하였는데, 치제에 돌아온 이후 정조는 치제 당시 참석인원과 강원도의 민원을 청취하였다.<sup>83)</sup> 치제를 통해 향촌사회의 선현을 추승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민심을 파악하는 것은 선현의 추승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지역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정조대의 경향 중 하나이기도 했다.<sup>84)</sup>

정조대에는 창절서원의 추향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창절서원은 본래 사육신을 배향하는 서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인 1791년 현릉원으로 능행하는 과정에서 민절서원의 치제의 과정에서 생육신을 포함하여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장릉배식록」에는 전체 과정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80) 『承政院日記』 1686冊, 정조 15년 1월 17일 壬辰.

81) 『弘齋全書』 卷22, 祭文, 「六臣祠致祭文(辛亥)」; 『弘齋全書』 卷24, 祭文, 「六臣祠致祭文」.

82) 『承政院日記』 1645冊, 정조 12년 8월 16일 乙巳; 『承政院日記』 1647冊, 정조 12년 10월 3일 辛卯.

83) 『承政院日記』 1647冊, 정조 12년 10월 15일 癸卯.

84) 대표적인 사례가 1792년(정조 16) 시행된 경주 옥산서원과 예안 도산서원의 치제이다. 정조는 閣臣 李晚秀로 하여금 두 서원에 치제를 지내게 하고, 도산서원의 경우 별과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진산사건을 비롯한 천주학의 성행에 따른 정학을 배양시키고 영남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도산서원의 치제와 별과 시행 이후 疏頭인 李瑀를 중심으로 사도세자신원만인소가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치제가 선현의 현창을 넘어선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치제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김문식, 「『교남빈홍록』을 통해 본 정조의 대영남정책」, 『퇴계학보』 110, 2001 참조.

신해년(1791, 정조15) 정월 17일에 처음으로 顯隆園에 거둥하려고 노량진을 지나다가 승지를 보내어 六臣祠에 致祭하는데, 그때 경기 유생 黃默 등이 상언하여 和義君 李璣를 彰節祠에 추가로 배향할 것을 간청하자, 이 문건을 예조에 내려 보냈다. …(중략)… 錦城大君과 화의군 등은 이같이 빛나는 절의가 종영(宗英 왕족 중의 걸출한 인물에서 나왔으니, 어찌 더더욱 기이하고 장한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이 두 종영 이외에도 절의가 뛰어나서 육신 못지않는데도 이 사당에 배향되지 못한 사람임에랴. 이번 추가 배향 때에는 일체 시행하는 것이 실로 절의를 권장하고 충의를 포장하는 정사에 합치된다. 내각과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품지하도록 하라.”하였다. 이에 내각은 錦城大君 李瑜, 漢南君 李璣, 화의군 이영, 永豐君 李璠, 처사 金時習, 진사 南孝溫…(중략)…등 여러 사람을 더 보태어 올렸는데, 그 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사당에 배향하기에는 取舍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중략)…그중 행적이 아주 드러난 사람은 正壇에 배향하고 사적이 자세하지 않은 자와 收司(당시 역모 가담자의 처벌 기관)에 연좌된 자는 별단에 배향한 다음, 아래와 같이 차례로 기록하였다.<sup>85)</sup>

현릉원의 행차와 민절서원의 치제, 그리고 창절서원 배향인물의 증가는 상호 연계되어 있었다. 능행 경로에 위치한 민절서원은 사육신의 충절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인근에 위치한 사충서원과 노강서원 또한 충절이 반영된 서원이기도 했다. 민절서원은 숙종이 사육신 복관과 함께 사액한 서원이었으며, 사충서원은 영조의 신임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노론 4대신을 배향하는 서원이었다. 노강서원은 인현왕후를 신변하다 사망한 박태보를 배향하는 서원이었으며, 정조 자신은 ‘壬午義理와 관련한 정치적 행위인 능행을 하는 도중에 추진되었다는 점은 충절 혹은 의리라는 개념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의미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민절서원의 치제를 시작으로 장릉에 대한 치제와 창절서원을 중심으로 한 단종 충신에 대한 배향 대상의 확대 과정은 군주와 신하에 대한 관계를 충절로 형상화하고 이를 현실에서 추배와 치제라는 형태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의리의 주인으로 자처한 정조의 입장에서는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의리

85) 『弘齋全書』 卷60, 雜著, 「莊陵配食錄(辛亥)」

를 강조하고 이를 현실 정치에서 강조하려는 경향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육신 서원을 중심으로 한 현창과 치제의 과정은 충절로 상징화된 다른 인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가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사육신을 중심으로 생육신과 단종의 사망을 전후로 하여 단종의 사망을 애도하거나 절의를 지킨 인물들을 중심으로 추숭이 본격화되었다.<sup>86)</sup> 계유정난 당시에 희생된 김종서, 황보인, 정분의 3대신을 포장하는 논의가 추진되었다.<sup>87)</sup> 충절의 대상으로서 병자호란 당시 희생된 三學士를 사육신을 계승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sup>88)</sup> 삼학사와 사육신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당대인들의 시선에는 이들이 절의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이해되기 시작했으며, 삼대신, 사육신, 생육신, 삼학사, 그리고 노론 4대신까지 연결지어 인식하는 경향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18세기 국정운영 과정에서 전개된 군신의리는 사육신의 충절담론이 활용되며 사육신 서원과 사우의 치제로 구현되어 갔다.

## V. 맺음말

조선시대 서원은 준현과 양사로 대표되는 제향과 강학을 주로 담당하였지만,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향중공론을 수합하고 유소를 작성하는 등의

86) 대표적으로 生六臣 혹은 八賢은 단종 복위 이후 사육신과 연관되어 형성된 개념으로서, 사우 혹은 서원의 배향을 중심으로 현창이 전개되었다. 생육신은 정조가 범주화하여 포장하면서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19세기에는 『生六臣合集』을 포함한 간행과 사적 정비를 통한 충절 이미지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생육신의 성립과정과 현창에 대해서는 윤정, 「18세기 '단종계신' 표장의 확대와 '생육신'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6, 2010 ; 윤정, 「19세기 生六臣 사적정비와 인식강화」, 『역사와 실학』 54, 2014 참조.

87) 『承政院日記』 565冊, 경종 4년 4월 5일 戊申.

88) 『承政院日記』 1150冊, 영조 33년 11월 23일 辛亥.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아시아 내에서도 독특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대체로 서원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서원에서 중앙으로의 접근이 주목되었지만, 반대로 중앙에서 서원의 사액과 치제의 과정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달성하려는 점도 서원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다. 숙종대 추진된 사육신의 복관과 이를 전후로 한 사육신 서원의 건립과 사액, 그리고 치제 등은 당시 국정운영과 연동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16세기까지 사육신은 조정 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逆臣으로 평가되었다. 사육신에 대한 평가는 선대왕인 世祖의 평가와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는 금기시되었다. 재야에서 이루어진 추념의 방식도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사육신과 연관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遺墟碑나 사우·서원의 건립을 통해 점차 사육신은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규정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가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17세기 후반 사육신 복관의 조치는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사육신을 배향하는 서원의 위상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사육신 서원들은 군신에 대한 충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갔으며, 군주권을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하고자 했던 숙종의 정치적 의도와 연동되면서 건립과 사액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8세기 탕평론의 대두와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와 연동된 의리론의 전개 과정에서 사육신과 사육신 서원도 치제를 통해 정치적 의미를 강화해 갔다. 노량에 위치한 민절서원의 경우 노론 사대신의 배향서원인 사충서원이 건립되면서 충절의 계보로 사육신과 사대신을 연결하였으며, 영월의 창절서원도 군주였던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특히 정조가 현릉원 행차의 과정에서 민절서원의 치제를 단행하고, 이후 영월 장릉과 창절서원의 치제를 단행하고, 추가적으로 배향인물을 확대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당시 정조가 주도하는 의리론의 연장선에서 사육신 서원의 치제와

정비가 단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사육신 서원에 대한 건립과 운영과 같은 세부적인 접근이나 단종과 생육신을 포함한 이른바 ‘端宗諸臣’ 배향 서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사육신 서원과 사우는 결과적으로 단종과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켰던 인물들, 그리고 이들을 추송하는 각 서원들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조선후기 단종과 그와 연관된 역사적 평가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동일인물을 배향하는 각 서원과 사우들은 상호 연관성 속에 운영되었다는 사실에서 상호 비교를 통한 운영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한다면 조선후기 서원 연구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書院謄錄』, 『增補文獻備考』, 『寧越府邑誌』, 『寧越邑誌』  
『葛庵先生文集』, 『記言』, 『丹溪先生遺稿』, 『白湖先生文集』, 『屏溪先生集』, 『成謹甫先生集』, 『宋子大全』, 『藥泉集』, 『玉吾齋集』, 『栗谷全書』, 『貞菴集』, 『靜齋先生文集』, 『弘齋全書』, 『林下筆記』, 『芝峯類說』

### 2. 논문

김경수, 「세조대 단종복위운동과 정치세력의 재편」, 『사학연구』 83, 2006.  
김경수, 「세조의 집권과 권력 변동」, 『白山學報』 99, 2014.  
김덕현, 「韓國 書院과 中國 書院의 立地·空間構成과 遊息空間에 대한 比較研究」, 『한국서원학보』 15, 2022.  
김 돈, 「世祖代 '端宗復位運動' 과 왕위승계 문제」, 『歷史教育』 98, 2006.  
김문준, 「우암(尤庵) 송시열의 의리사상과 그 의의」, 『동서철학연구』 19-1, 2000.  
김영두, 「단종충신 追復 논의와 세조의 사육신 인식」, 『사학연구』 98, 2010.  
김영호, 「秋江 南孝溫의 「六臣傳」 研究」, 『국학논총』 12, 2013.  
윤 정, 「숙종대 端宗追復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2, 2004.  
윤 정, 「18세기 '단종제신' 표장의 확대와 '생육신'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6, 2010.  
윤 정, 「19세기 生六臣 사적정비와 인식강화」, 『역사와 실학』 54, 2014.  
이경동, 「조선후기 四忠書院의 건립과 운영」, 『한국서원학보』 15, 2022.  
이기대, 「단종대왕실기의 서술 태도와 시대적 의미 연구」, 『온지논총』 80, 2024.  
이근호,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 과정 연구」, 『사학연구』 83, 2006.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史學研究』 98, 2010.  
정만조, 「英祖代 初半의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蕩平基盤의 成立에 이르기까지」, 『震檀學報』 56, 1983.  
정만조, 「肅宗朝의 사육신 追崇과 書院祭享」, 『한국학논총』 33, 2010.  
정만조, 「천하의리의 주인, 우암 송시열」, 『우암논총』 8, 2015.

- 정수환, 「동아시아 서원, 일반성과 다양성의 경계-조선시대 서원과 비교 관점에 서-」, 『한국서원학보』 14, 2022.
- 정재훈, 「17세기 尤庵 宋時烈의 政治思想」, 『한국사상과 문화』 42, 2008.
- 진상원, 「단종복위 모의자들의 伸冤과 追尊」, 『역사와 경계』 64, 2007.
- 최승희, 「世祖代 王位の 취약성과 王權強化策」, 『朝鮮時代史學報』 1, 1997.
- 최승희, 「世祖代 國政運營體制」, 『朝鮮時代史學報』 5, 1998.
- 한춘순, 「단종대 癸酉靖難과 그 성격」, 『韓國史研究』 174, 2016.

Abstract

## The political function and status of the Sayuksin seo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kyungdong\*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function and meaning of seo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and king's bestow of nameboard of seowon to enshrine the Sayuksin (死六臣), six martyred ministers who attempted to restore King Danjong (端宗) to the throne. The evaluation of the Sayuksin was generally not addressed at the court level or viewed negatively until the 16th century, as it was linked to the political legitimacy of King Sejo (世祖). As the Sayuksin began to be defined as "loyal subjects" based on the "Biography of the Sayuksin (六臣傳)" written by Nam Hyo-on (南孝溫) and various folk tales, the view of the Sayuksin gradually began to spread positively throughout society.

The positive image of the Sayuksin spread from the late 16th century as seowon and shrines to enshrine the Sayuksin were gradually built. The areas where seowon and shrines were built included the remains of the sayuksin, tombs, residences of the descendants of the sayuksin, and Yeongwol (寧越), where the tomb of King Danjong was located. In particular, the shrine built in Noryang (露梁), which is believed to be the tomb of the Sayuksin, is noteworthy. Since this shrine was built in an area close to the capital city of Hanyang, it played a decisive role in functioning as a place where many people visited to

---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 geistkd@korea.ac.kr

commemorate the sayuksin and to portray them as symbols of loyalty. The construction of shrines and seowon for the sayuksin continued thereafter, and approximately 12 shrines and seowon were built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The restoration of the sayuksin in 1691 redefined the evaluation of the sayuksin and became a turning point for the seowon related to the Sayuksin. Starting with the elevation of the shrine of the Sayuksin located in Noryang to the seowon and the bestow of nameboard of “Minjeol(愍節),” the status of the shrines and seowon related to the Sayuksin was elevated. The restoration of the Sayuksin was a result of King Sukjong's intention to pursue a political operation led by the king. The Sayuksin and the seowon dedicated to them were utilized as a device to emphasize the loyalty of the bureaucrats to the king, rather than the conflict between factions that had intensified at the time.

In the 18th century, as the theory of tangpyeong(蕩平), impartiality, emerged to mediate the conflict between factions, the Sayuksin seowon were utilized as a device symbolizing loyalty to the king. The seowon of particular note were the Minjeol-seowon in Noryang and the Changeol-seowon (彰節書院) in Yeongwol. Through the memorial rites for the two seowon, King Yeongjo (英祖) and Jeongjo (正祖) evaluated the past achievements of the Sayuksin and emphasized to the ministers their loyalty centered on the monarch's authority, not the interests of the factions to which they belonged. The Noron (老論) faction also built the Sachung-seowon (四忠書院) near the Minjeol-seowon in Noryang to honor the four Noron ministers. They also strengthened their party's political legitimacy by claiming that the actions of the four ministers and the Sayuksin were the same and that the seowon was also built nearby.

Key word : Sayuksin (死六臣), King Danjong (端宗), Minjeol-seowon (愍節書院), Changeol-seowon (彰節書院), king's bestow of nameboard (賜額), memorial rites (致祭), loyalty to the king (君臣義理)

논문 투고일: 2025. 05. 16 심사 완료일: 2025. 06. 05 게재 확정일: 2025. 06. 09

## 18~19세기 永川 龍溪書院과 生六臣 追崇\*

이 광 우\*\*

- I. 머리말
- II. 龍溪別廟[龍溪祠] 건립과 李孟專 奉祀孫 승계
- III. 龍溪書院 승격과 生六臣 追崇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8~19세기 李孟專의 碧珍李氏 후손이 전개한 永川 龍溪書院 건립 및 生六臣 追崇 활동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 본 것이다. 용계서원은 1755년 이맹전을 제향하는 書堂에서 출발한다. 1760년 龍溪別廟를 거쳐, 1786년에 이르러 서원으로 승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 대목을 주목하였다. 첫째, 18세기 이후 院祠 건립에 대한 朝廷의 禁습이 강화되는 가운데 용계서원 건립이 성사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君臣 간의 의리를 상징하는 충절인 褒獎를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영·정조 연간 조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忠節人 제향의 원사는 증가하게 된다.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도 이러한 조정의 정책 기조에 편승하여 端宗 충신인 이맹전의 별묘를 서원으로 승격시켰다. 둘째, 용계서원 건립이 支孫의 宗系 계승 사업과 맞물려 진행된 것이다. 18세기 무렵 善山의 종계는 단절되었지만, 영천의 자손이 이맹전 추숭을 주도하기에는 명분이 약하였다. 이에 이맹전 묘역 관리, 墓碣 건립, 贈諡 청원을 단계적으로 성사시킴으로써 종계를 계승할 명분을 1차적으로 확보하였다. 이어 조정으로부터 繼後立案을 발급받아 종손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 이 논문은 2025년 4월 한국서원학회와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사연구회, 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 교육연구단에서 공동 주최한 연합학술대회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 연구의 새로운 모색”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kw38@ynu.ac.kr

후 별묘를 용계서원으로 승격시켰다. 이는 용계서원이 생육신을 並享하고 있지만, 사실상 18세기 이후 증가하는 門中書院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셋째, 생육신의 범주 확립과 용계서원의 역할이다. 용계서원은 앞서 건립된 咸安의 西山書院과 더불어 생육신 贈諡 청원을 주도하였다. 또한 1833년에는 용계서원에서 『生六臣合集』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용계서원의 활약은 결과적으로 사림에게 생육신의 총절과 범주를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제어 : 龍溪書院, 李孟專, 碧珍李氏, 生六臣, 永川

## I. 머리말

역사의 교훈성은 그 시대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성립된다. 여기서 교훈성은 물론 완곡한 표현이며, 실제로는 역사를 활용하는 당사자의 정치·종교·사상 등의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방법 중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로 시도될 것이다. 역사적 평가를 체득하고 실감하는데, 역사 인물의 행적만큼 좋은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대 역사의 화자는 교훈을 제시하는 데 적합한 인물을 예시로 들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물상을 정립하였으며, 그렇게 정립된 인물의 권위를 정치·사회적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시대와 공간, 그리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가변성을 지닌다. 당연히 조선 시대 사대부 계층은 성리학적 가치, 그 중에서도 道學과 忠節을 역사 인물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지만, 그것의 적용 양상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시기별 성리학의 경향과 정치적 부침, 사회 변동에 따라 인물 평가가 극적으로 달라지며, 역사 인물 사후 그에 대한 신원·복권·추증·추탈이 반복되곤 했다. 그런 가운데 조선 시대 동안 가장 극적으로 인물 평가가 이루어진 집단이 바로 단종 충신일 것이다.

15세기 후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사림파는 세조의 공신 세력인 훈구 세력과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조를 따르지 않거나 단종복위에 앞장 선 인사를 충신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南孝溫(1454~1492)은 1456년(세조 2) 단종복위를 도모한 사육신의 행적을 기린 〈六臣傳〉을 편찬하였고, 많은 사림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사육신은 역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16세기 이후 사림 세력은 이들의 행적을 수시로 재평가하였다. 향촌의 사림들도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단종 충신에 대한 현양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sup>1)</sup> 세조 이후 국왕이 모두 세조의 직계 혈통이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림 세력은 조정과 향촌에서 단종 충신을 재평가하고 현양함으로써, 성리학의 道統 계보와 더불어 ‘충절’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숙종은 1691년(숙종 17) 사육신을 복관하였으며, 1698년에는 단종 복위가 이루어졌다. 숙종은 극단적 換局을 통해 국정을 주도한 군주이다. 그는 ‘君臣分義’를 확립하여, 군신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했다. 사육신 복관과 단종 복위는 이러한 숙종의 정치적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단이다.<sup>2)</sup> 사림의 공감과 국왕의 정치적 의도 속에 영·정조를 거치면서, 단종 충신은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상으로 정립되어 갔다. 이에 향촌의 사림 세력도 다양한 범주의 단종 충신을 적극 발굴하고 현양하게 되는데, 生六臣의 정립 과정과 그 의미도 이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元昊(?~?)·金時習(1435~1493)·李孟專(1392~1480)·趙旅(1420~1489)·成聃壽(?~?)·南孝溫(1454~1492) 6인으로 이루어진 생육신은 18세기 단종 충신에 대한 추숭과 褒獎의 확대 과정에서 정립되었다.<sup>3)</sup> 앞서 15세기 후반 남효온은

1) 예컨대 慶尙道 善山 사람 崔暉은 1591년(선조 24) 저술한 〈琴生異聞錄〉을 통해 지역 출신 河緯地와 李孟專의 행적을 기렸다. 또한 1636년(인조 14) 무렵에는 선산 사림과 함께 고려 충신 金澍의 사묘에 하위지·이맹전을 추향하는 三仁廟 [月巖書院]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광우, 「단계 하위지의 절의와 선산 사림의 추숭 활동」, 『한국사상사학』 69, 한국사상사학회, 2021, 158~167쪽.

2) 윤정, 「숙종대 단종 추복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2, 한국사상사학회, 2004, 229~233쪽.

〈六臣傳〉을 저술하면서, 죽음을 무릅쓴 단종의 여섯 충신을 설정하였다. 당시 남효온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육신을 설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사건의 엄중함 때문에 자료 수집에도 한계가 많아 내용도 정확하지 않았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충신을 아우르는 상징적 범주로 인식되어 갔다. 여기에서 나아가 살아서 단종의 충신으로 남은 여섯 충신, 바로 생육신이 설정되기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향촌의 재지사족 층이 생육신의 범주를 정립하고 왕조 차원의 포장을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함안·청송에 세거하는 조려의 咸安趙氏 후손과 영천에 세거하는 이맹전의 碧珍李氏 후손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함안과 영천에 각각 西山書院<sup>5)</sup>과 龍溪書院을 건립하여 생육신을 竝享하였고, 이곳에서 생육신과 자신들의 顯祖에 대한 추송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육신의 범주는 18세기 이래 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재지사족 활동의 결과물이다. 한편으로 18세기 이후 정책적 차원에서 단종의 신하를 충절 인사로 현양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향촌의 재지사족이 문벌과 가문의 위세를 높이고자 자신들의 현조를 생육신으로 설정하고, 이를 서원 건립과 현조 추송의 명분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18~19세기 경상도 영천에 세거하는 이맹전 후손의 용계서원 건립과 생육신 추송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지금의

3) 18세기 생육신 정립 과정은 ‘윤정, 「18세기 ‘단종제신’ 포장의 확대와 ‘생육신’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참조.

4) 柳成龍은 〈육신전〉에 수록된 하위지의 행적이 『魯山君日記』의 사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고(『西厓集』 卷15, 雜著, 〈南秋江記事有誤〉), 『東園雜記』에서는 단종 충신이 육신뿐만 아닌데, 굳이 ‘육신’이라 제목 지은 것을 아쉬워하였다(『六先生遺稿』 附錄, 〈六臣傳跋〉).

5) 서산서원과 생육신 추송에 대해서는 ‘김현지, 「조려(1420~1489) 현창과 함안 서산서원의 역할-『서산연시록』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회, 2024』 참조.

용계서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元覺에 소재한다.<sup>6)</sup> 이곳의 벽진 이씨 일족은 처음 이맹전을 기리는 서당을 건립하였고, 1760년(영조 36) 龍溪別廟龍溪祠를 거쳐 1786년(정조 10) 생육신을 병향하는 서원으로 완성하였다. 이후 용계서원 측은 생육신의 권위를 내세워 관부의 재정적 지원과 사림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으며, 『生六臣合集』 간행 등 생육신 추송 사업에 앞장섰다. 즉, 18~19세기 영천 용계서원의 건립과 운영 양상은 당대의 역사 인물 정립 과정에서 서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 II. 龍溪別廟[龍溪祠] 건립과 李孟專 奉祀孫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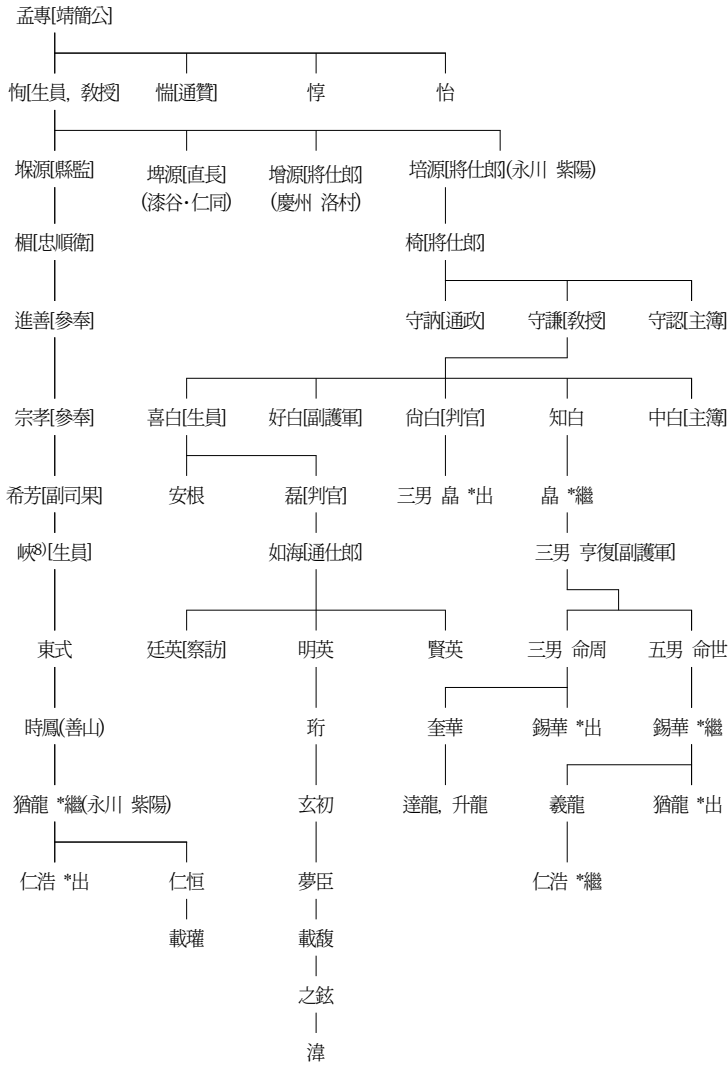
### 1. 碧珍李氏 일족의 永川 紫陽 정착

이맹전의 본관은 碧珍, 자는 伯純, 호는 耕隱이다. 선대는 대대로 星州 命谷에 살았는데, 판서를 지낸 아버지 李審之 대에 선산 荊谷村으로 이거하였다. 1427년(세종 9) 문과 급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나, 수양대군 일파가 권력을 잡자 1454년(단종 2) 관직을 그만 두고 은거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선산 網障村에 물러나 살며, ‘눈멀고 귀먹었다는데 의탁(託跡盲聾)’하여, 친한 이와 벗을 사절한 채 여생을 보내다 1480년(성종 11) 생을 마감하였다. 善山府 동쪽 延香의 남쪽 彌石山에 장사지냈으며, 비문 없는 작은 墓碣만 마련되었다.<sup>7)</sup>

이맹전 사후 선산의 봉사손이 묘소에 제사를 지내왔다. 그러나 宗系가 단절되어 제사도 멈추게 되었다. 이에 영천의 支孫이 이맹전의 제사를 대신 지내게 되는데, 용계서원 건립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6) 용계서원은 처음 성곡리에 건립되었고, 흥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철폐된 이후 노항리에 중건되었다. 1976년 영천댐 건설로 인해 현재 위치로 이관하였다.

7) 『訶齋集』 拾遺, 事蹟, 〈三仁事蹟〉.



〈그림 1〉 이맹전의 봉사손 계보<sup>9)</sup>

8) 『癸酉式年司馬榜目』과 〈三仁事蹟〉에서는 ‘李琰’.

9) 벽진이씨대중회, 『벽진이씨대동보』, 대보사, 1998.

이맹전은 4남 1녀를 두었다. 이중 장남 恂과 차남 攄의 外裔가 각각 鄭經世와 崔暉이다.<sup>10)</sup> 이들은 16세기 전반 선산 지역에서 전개된 月巖書院 건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sup>11)</sup> 순은 다시 4남을 두었는데, 현감을 지낸 장남 堦源의 후손이 선산에 세거하였고, 그 아우인 埤源·增源·培源의 후손은 각각 칠곡·인동·경주·영천에 정착하였다. 선산의 보원 후손이 자연스레 가문의 종계를 이었으며, 한동안 이맹전의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

한편, 순의 4남 배원은 永川 紫陽<sup>12)</sup>에 始居하였다. 그의 아들 李椅는 영천의 퇴계 문인인 金應生·鄭允良 등과 함께 1551년 紫陽書堂을 짓는 등 지역의 문풍 진작에 앞장섰다. 黃俊良의 〈紫陽書堂記〉에 따르면, 자양서당이 있던 자리가 바로 이의의 옛 書齋였다고 한다.<sup>13)</sup> 영천의 벽진이씨는 이의의 손자 대에 이르러 크게 번창하였다.

李喜白[1548~1608]은 이의의 차남인 守謙의 장남이다. 그는 喜好益의 문인으로서 영천 立巖에 은거한 張顯光과 교유하였다. 그의 아우 李知白과 아들 李磊도 장현광의 문인으로 활동했다. 장현광 또한 이희백이 부친의 삼형제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鶴眠亭의 기문을 써 주는<sup>14)</sup> 등 막역한 관계를 맺었다.<sup>15)</sup>

10) 『訥齋集』 拾遺, 事蹟, 〈三仁事蹟〉.

11) 『愚伏集』 卷16, 祝文, 〈月巖書院龍巖金先生享祀祝文〉; 『訥齋集』 附錄, 祭文, “念茲創院 我公經始”.

12) 『永陽誌』 卷1, 坊里의 舊面條에는 紫陽面의 洞으로 龍化·土洞·回龍·冠坊·圓覺·月淵·仁邱·獐洞·新坊·龜尾·日見·檢丹·道日·騎龍·塔田·巨洞·立巖·開日·光州·芝坪 등 모두 20개의 확인된다. 벽진이씨는 土洞[土谷]과 元覺[圓溪] 일대에 주로 세거하였다.

13) 『錦溪集』 卷8, 外集, 雜著, 〈紫陽書堂記〉, “吾友永陽金君 … 乃謀洞人鄭君允良等協功出力 建堂于李椅書齋之舊址 拓其隘而弘其規 始事於庚戌之秋 明春而斷手 齋堂得所 … 乃於壬子春 會洞人而落之”.

14) 『旅軒續集』 卷4, 雜著, 〈鶴眠亭記〉, “時則有李上舍喜白 方奉其伯仲季三親 而仲乃其翁也 距八十只二歲矣 伯翁則已八十有三歲 而其季亦踰七十歲云也 上舍共其弟四人 及其諸從 隨分取資 能兼志口之養 曾已孝友聞 而鄉人稱福者 必歸諸李門也”.

15) 김학수, 「조선 후기 영천지역 사림과 임고서원」, 『포은학연구』 6, 포은학회, 2010, 128~129쪽.

뿐만 아니라 이희백은 臨臯書院 초대 원장으로서 임진왜란 때 鄭夢周 영정을 이봉하고 전란 후 향사를 재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16)</sup> 이처럼 이희백 대에 이르기까지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은 학문적으로는 退溪學派·旅軒學派, 당색으로는 南人으로 접목하면서, 영천 지역의 주요 사족 가문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선산의 종계가 단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영천의 벽진이씨 계열이 이를 잇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선산의 종계가 단절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현의 <三仁事蹟>에는 봉사손인 希芳·瑛 부자, 보원의 차남인 檢의 후손 希陽·得澗·得澗가 이맹전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sup>17)</sup> 적어도 17세기 후반까지는 제사가 무난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시기 보원의 장남 楸 계열은 이맹전의 9대 봉사손 時鳳을 포함해, 그의 아우 및 종질이 모두 无后가 되면서 단절되었고, 그 여파로 이맹전에 대한 제사와 묘소 관리도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김 계열인 득미의 후손이 당시 선산 형곡을 중심으로 세거하고 있었지만, 종계를 잇기에는 족세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龍溪別廟[龍溪祠] 건립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이 처음 종계 문제를 언급한 시기는 1718년(숙종 44) 무렵이다. 이와 관련해 이희백의 5대손이자 봉사손인 李玄初[1682~1758]의 遺事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무술[1718]에 부군[이현초]이 耕隱先生[이맹전]의 일에 뜻을 두고 여러 宗人 과 모의하였다. 이때 말하기를 불행히 “우리 선조의 宗嗣가 9세손에 이르러 단절되었는데, 비록 월암과 서산에 모두 제향되어 있다고 하나, 자손의 향사가

16) 김학수, 위의 논문, 2010, 132쪽.

17) 『訃齋集』 拾遺, 事蹟, <三仁事蹟>.

없습니다. 우리 지파가 있는 영천은 비록 멀지만 해마다 제수를 구해서 墓祭를 지내고 있으며, 또한 조정의 贈賚와 易名의 은전이 있으니, 어찌 廟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응하여 별사를 만들어 ‘權道로 봉안(權奉)’하는 논의를 획책하였다.<sup>18)</sup>

위의 언급처럼 선산의 종계는 1718년 이전에 단절되었다. 이에 영천의 후손들이 묘제를 지냈으나 미안한 점이 적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준비하게 된다. 그것은 영천 세거지에 별묘를 건립하는 것이었는데, 1718년 종인 회의에서 별묘 건립의 배경과 명분으로 “조정의 贈賚와 易名의 은전”을 내세웠다. 당시 단종 충신을 포장하는 조정의 정책 기조를 포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691년 공식적으로 사육신이 복관되었으며, 1694년에는 이맹전을 제향한 선산 월암서원이 사액 받았다. 1703년 경상도 幼學 郭德齡 등은 [사육신에 빚대어 살아 있으면서 의리를 지킨 원호·김시습·이맹전·성담수·남효운·조려도 제사 지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소를 올렸다. 그러면서 사육신을 병향한 대구 洛濱書院의 사례처럼, 條畬에 구애 받지 말고 함안의 조려 사당에 여섯 신하를 병향할 것을 청원하였다.<sup>19)</sup> 그 결과 함안의 조려 사당은 1704년 서원으로 승격되었고, 1713년 서산서원으로 사액 받게 된다.<sup>20)</sup>

월암·서산서원 사액은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다. 1695년 6월 이조판서 尹趾善의 건의에 따라 조정은 서원 疊設을 금지하였다.<sup>21)</sup> 나아가 1713년 숙종은 文廟에 종사된 儒賢이라도 칙설을 금지하고, 사액 청원을 영원히 금지시키라는 유시를 내렸다.<sup>22)</sup> 서원의 남설을 극단적 단쟁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한 만큼, 도학을 명분으로 각 학파의 명현을 제향하는 서원의 건립은 더 이상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1694년 이후 두드러

18) 『碧珍世稿』卷8, 龍溪公逸稿, 附錄, 〈遺事〉.

19) 『肅宗實錄』卷38, 29年 10月 13日(乙酉).

20) 『燃藜室記述』別集 卷4, 祀典典故, 書院.

21) 『肅宗實錄』卷28, 21年 6月 2日(壬辰).

22) 『肅宗實錄』卷54, 39年 7月 21日(丙寅).

지게 나타났다.<sup>23)</sup> 월암·서산서원의 사액은 서원 건립에 대한 조정의 금령이 강화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당시 조정에서 적극 포장하던 단종의 충신이 제향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도학이 아니라 군신 간 의리를 상징하는 인물을 제향한 서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금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현초 등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도 1718년 무렵부터 조정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이맹전의 별묘 건립을 준비하게 된다.

그러나 별묘 건립에 큰 걸림돌이 있었다. 영천의 후손은 족세는 강하지만, 여러 小宗 중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별묘를 건립할 수는 없었다. 여러 전례를 참고하여, 별묘 건립의 명분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에 벽진이씨 일족은 ‘權道로 봉안’, 즉 소종이 주도한 제향처 마련의 불가피함을 별묘 건립의 명분으로 내세우게 된다.

별묘 건립은 이희백의 봉사손인 이현초·李夢臣(1709~1782) 부자와 李錫華(1706~1767)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석화는 이지백의 玄孫이자, 훗날 이맹전의 봉사손이 되는 李猶龍(1737~1803)의 생부이다. 1718년의 종인 회의 이후 이현초는 재물을 내어 별묘 건립을 위한 기본 자금으로 삼았다. 또한 자신의 집 왼편에 원림을 조성하여 소나무·대나무·감나무·대추나무를 길렀다. 장차 별묘를 비호하기 위해서였다.<sup>24)</sup> 당시 이현초는 土谷의 龍溪에 살고 있었는데,<sup>25)</sup> 이 무렵부터 별묘를 자신의 거처 주위에 건립하기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1755년 만년의 이현초는 족속 李奎華(1697~1756)와 함께 용계의 舊基에다가 3칸의 초사를 건립하고 ‘書堂’이라 하였다.<sup>26)</sup> 비록 서당의 명목으로 건립

23) 전용우,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 건립추이 및 제향인물을 중심으로-」, 『호서사학』 13, 호서사학회, 1985, p.28.

24) 『碧珍世稿』 卷8, 龍溪公逸稿, 附錄, 〈遺事〉, “乃捐財 爲首事之本 … 家左措置園林 植松於西畔 養竹於北麓 雜以柿栗 … 俾爲異日宮牆之庇護焉”.

25) 현재 용계서원이 있는 자양면 용산리 원계의 서남쪽으로 처음 용계서원이 건립된 곳이다.

26) 『龍溪書院誌』 上編, 〈龍溪祠考往錄〉.

하였지만, 이곳의 일족은 紙牌를 만들어 봄과 가을에 향사와 다름없는 의례를 거행했다.<sup>27)</sup> 사실상 향사를 지내면서도 서당에 그친 것은 여전히 소중이란 지위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1758년 단중복위 1周甲을 맞이하여 조정에서 사육신과 단중충신에 대한 대대적인 은전을 내렸다.<sup>28)</sup> 이에 함안의 서산서원 사립 또한 상소를 올려 생육신에 대한 贈諡를 청하였는데, 이 疏會에 영천에서는 이석화와 李台華가 참여하였다.<sup>29)</sup>

무인[1758]에 내가 중형 태화씨와 더불어 함안 서산서원에 갔는데, 즉 六臣祠였다. 漁溪 先生[조려]의 후손과 더불어 서로 伯夷峰의 探薇亭에서 주선하다가 이야기가 본가에 봉사하는 절차에 미쳐 “종파가 보존되지 못함으로서 별도로 사당을 세웠으며, 그 나무의 神主粉面에 ‘先祖考某官某封’이라 쓰고는 傍題는 쓰지 않았습시다.”고 하여, 내가 그제야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면서, 귀가하여 제종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지손으로서 먼 선조를 제사 모심은 비록 經禮는 아니나, 그러나 우리 선생은 이미 儒宮에서 혈식을 하니 家廟에 있는 불천위는 여러 자손들에게 백세의 親이 다하지 못한 신위가 되는데 차손손이 옮겨서 봉안함은 가히 인정의 예에서 나왔다고 하겠으며, 또한 일찍이 소문을 들으니 籠巖 金先生[김주의]의 가문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농암 선생과 어계 선생을 월암서원과 서산서원에서 함께 봉양하니, 별묘를 건립하여 부조묘의 신주를 봉안하고 양가의 예를 하나같이 따름은 이것도 역시 예에 어긋나지 않으며, 인정에도 유감 됨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그제야 서당의 서쪽에 터를 결정하고 재물을 모아 사당을 건립하니, 기묘[1759] 3월에 처음으로 착수하여 8월에 이르러 공을 마쳤다. 아! 이것은 모두 현초 宗君이 여러 해를 잘 다스린 효과이다.<sup>30)</sup>

27) 『碧珍世稿』 卷8, 龍溪公逸稿, 附錄, 〈遺事〉, “但以紙牌 春秋行茶薦 做俎豆儀”.

28) 『英祖實錄』 卷92, 34年 10月 4日(丁巳).

29)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30) 『塑窩遺稿』 卷2, 記, 〈龍溪別廟記〉. 본 유고의 국역은 ‘용산정사, 『국역 소와유고』, 대보사, 2018’ 참조

위의 기문대로 1758년 서산서원에서 소회가 열렸다. 증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석화를 비롯한 영천의 벽진이씨도 소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석화는 조려의 함안조씨 일족에게 종파가 보존되지 못할 경우에도 별묘를 세워 신주를 봉안하는 방법을 듣게 된다. 이석화는 곧장 영천으로 돌아와 여러 종인들 앞에서 별묘 건립을 설득하였다.

공사는 1759년 2월 시작되었다. 서당 서쪽에 터를 닦았고, 3월에 이르러 3칸의 묘우를 건립하였다. 여러 재목은 李道華와 이몽신을 비롯해 여러 자손이 마련한 것이다. 당시 도감은 이태화가 맡았으며, 이석화의 아들 李義龍과 이몽신의 아들 李載馥이 유사로서 일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760년 11월 11일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맹전의 위패 봉안이 거행되었다.<sup>31)</sup> 그 과정에서 이몽신은 李象堉[1710~1781]에게 편지를 보내 고유문의 교정을 청하였을 뿐만 아니라,<sup>32)</sup> 첫 향사의 제향 의식을 묻고 결정하였다.<sup>33)</sup>

봉안식 후에는 여러 참석자들이 이맹전의 시에 차운하였는데, 이몽신은 자신의 차운사에서 별묘 건립이 부친의 숙원 사업이었음을 소회하였다.<sup>34)</sup> 봉안례는 영천의 일족인 李海龍·李翊臣이 都廳을 맡아 진행하였고, 별묘 건립 후首任은 이태화, 유사는 이희룡·李稷臣으로 임명하였다.<sup>35)</sup> 이 중 이태화와 이희룡은 각각 이석화의 종형과 종질이 되고, 이익신·이직신은 이몽신의 아우이다. 영천 자양에 세거한 벽진이씨 중에서도 희백·지백 계열인데, 이들은 별사 건립뿐만 아니라 훗날 전개되는 서원 승격 및 생육신 추승 활동을 실질

31)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32) 『碧珍世稿』 卷10, 巖軒公逸稿, 書, 〈與李大山【象堉附答庚辰】〉, “就吾耕隱先生別祠已成 將以某日行綱儀 特賜賁臨 以光賓席大仰 其慰安告由文 敢有愚見所略述 而亦不敢以此輕用 茲以稟呈于秉筆之下 伏乞訂正批教之”.

33) 『塑窩遺稿』 卷3, 附錄, 〈行狀〉, “又勸耕隱先生別祀於龍溪 後爲六先生俎豆之院 而其初享文與祭儀 皆就質於湖門而定之”.

34) 『碧珍世稿』 卷10, 巖軒公逸稿, 詩, 〈龍溪別廟成用 先生詩多字韻 感吟以志〉, “祧廟經營歲已多 先君一念在宗家 孤兒獨見新祠起 感舊悲懷自此加”.

35)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적으로 주도하였다.

이처럼 이현초에 의해 처음 제기된 별묘 건립은 1755년의 서당을 거쳐, 1760년 완성을 보게 된다. 이석화는 봉안식 후 지은 차운시를 통해 별묘 중건이 ‘권도’에 의한 것이라 하면서,<sup>36)</sup> 소종이 별묘를 건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종의 이맹전 제항은 부담이 되었다. 이에 이석화는 별묘의 기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릇 높은 명성과 큰 절의가 있거나 國乘에 소상하고 祀典에 오름이 있다면 대대로 계속 종손을 계승하는 가문에서 간혹 不祧廟를 옮기지 아니하고 무궁하게 전함이 있기도 하며, 또한 혹 불행하여 종손의 이름이 중간에 끊어져 지파가 겨우 보존한다면 차종가가 바꾸어 선생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이것이 부득이한 권도가 아니겠으며 또한 자손들이 능히 그만둘 수 없는 인정이 아니겠는가! 애 금일 우리 가문에서 경은 선생의 별묘를 경영하여 건립하는 것은 經禮가 아니고, 역시 권도이기 때문에 이름을 별묘라 하고 드디어 눈물을 닦으면서 기록하여 말하노라.<sup>37)</sup>

위의 기문에서 이석화는 종가가 단절되어 차종가가 별묘를 받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經禮, 즉 일반적 예법에 어긋난 조처라고 했다. 사당의 이름을 ‘별묘’라 한 것도 종가의 부조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의 언급과 달리 벽진이씨 일족은 별묘를 장차 서원으로 승격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후대 사람들도 서원 이전의 형태를 사우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여러 문헌에는 ‘용계별묘’ 외에도 ‘龍溪祠’, ‘龍溪別祠’ 등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다.

별묘를 서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준비는 묘우 건립 직후부터 추진된 듯하다. 봉안식 4개월 전인 1760년 7월 4칸의 재사를 지었는데,<sup>38)</sup> 齋號는 永慕齋

36) 『塑窩遺稿』 卷1, 詩, 〈新建別廟於龍溪 敬次先祖多字韻【庚辰 十一月】〉, “先祠未保已年多 忍見有宗絕我家 茲用權宜重建廟 耳孫迫感一層加”.

37) 『塑窩遺稿』 卷2, 記, 〈龍溪別廟記〉.

이다. 이석화가 찬한 영모재 서문에 따르면, 건물은 별묘의 동쪽 처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영모재는 후손이 거처하며, 묘우를 관리하는 곳이었다.<sup>39)</sup> 이어 1766년에는 愼獨齋를 짓게 된다. 역시 이석화가 그 서문을 지었는데, 이곳은 단순한 書齋가 아니라 사당에 경건함을 이루는 齋舍라고 했다.<sup>40)</sup> 이 두 건물은 각각 묘우의 좌우에 위치하여, 서원의 동재·서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sup>41)</sup> 즉, 일반적 의례를 의식하여 ‘별묘’로 명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맹전을 제향하는 사우였고, 장차 서원으로서의 확장을 염두하고 廟域을 조성한 것이다.

별묘 건립 이후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제적 기반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관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이와 관련해 1760년 별묘 건립부터 1786년 서원 승격까지 모두 11명의 永川郡守가 부임하였는데,<sup>42)</sup> 용계별묘를 알묘한 영천군수는 5명이 확인된다.<sup>43)</sup> 그중 尹得聖·李正模는 少論系 명문가 출신이며,<sup>44)</sup> 비록 알묘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별묘 건립 당시의 영천군수 趙載得은 소론 대신 趙顯命의 아들이다.

특히 조재득은 1761년 용계별묘에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묻고 이맹전의 시에 차운하였다. 또한 1762년 3월에는 良下典 10명을 획급해 주었다.<sup>45)</sup> 그러나 얼마 후 관부에서 용계별묘 양하전에 煙戶雜役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용계별묘 측은 齋門에 청원하여 잡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의 完文을 발급

38)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39) 『塑窩遺稿』 卷2, 序, 〈永慕齋序〉, “簷於祠廟之東 而比如生人之膝下 則愚孫之所以居處於四時 而不欲小離者 非有慕於孔邇者乎”.

40) 『塑窩遺稿』 卷2, 序, 〈愼獨齋序【丙戌十二月日】〉, “嗚呼是齋也 非吟詠之書齋 卽先廟致虔之齋舍 卽子孫之居是齋者 亦何敢少忽而少怠也”.

41) 『塑窩遺稿』 卷3, 附錄, 〈家狀〉, “又起四門齋 於祠之左右 以永慕愼獨 扁其東西”.

42) 『永陽誌』 卷2, 首官.

43)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44) 趙載得은 趙顯命의 아들, 尹得聖은 尹淳의 재종질, 李正模는 李秉模의 형이다.

45)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辛巳二月日 本倅趙載得書致問 仍次耕隱先生多字韻 … 同年[壬午]三月日 本倅趙載得 給良下典十名”.

받게 되는데,<sup>46)</sup> 당시 영천군수는 이정모였다. 양하전은 避役의 대가로 院祠에 投屬되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양인이다. 서원 양하전을 보통 院屬이라 하는데, 해당 서원의 위상에 따라 30~15명 정도로 원속 수를 제한하고 있다.<sup>47)</sup>

원사가 아닌 용계별묘에 양하전이 지급된 것은 당시 소론계 영천군수의 적극적 협조로 볼 수 있다. 이는 영조 연간 老·少 간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론이 영천의 벽진이씨와 같은 영남 남인에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 경향과<sup>48)</sup> 관련 지어 이해할 수 있다.

### 3. 李孟專 追崇 사업과 奉祀孫 승계

1760년 용계별묘 건립은 사실상 서원 승격을 염두 한 조치였다. 단종 충신을 포장하는 조정의 정책 기조, 그리고 여기에 호응하여 합안의 조려 사당이 생육신을 제향한 사액서원으로 승격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 벽진이씨 일족도 18세기 초반부터 이맹전 추송을 진행하였고, 1760년에는 용계별묘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18세기 이래 서원 건립에 대한 조정의 禁畵는 이어지지만, 그와 별개로 향촌에서는 家廟的 성격의 원사, 즉 門中書院이 증가하고 있었다.<sup>49)</sup> 용계별묘도 분명 가묘적 성격의 원사였다. 그러나 제향인의 행적이 충절 인사를 포장하던 당시 조정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기에 충분히 서원 승격을 노릴 만 했다. 그런데 별묘 건립과 이맹전 추송을 주도한 계열은 영천에 세거하는 벽진이씨 중에서도 입향조 이배원의 증손인 희백·지백 계열이다. 비록 선산의 종계가

46)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丙申十一月日 本孫李升龍 以本所下典事 往請營門 卽付本郡以煙戶雜役勿侵之意 成出完文”.

47) 이수환, 『조선후기서원연구』, 일조각, 2001, 181~199쪽.

48)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135~139쪽.

49)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66~69쪽.

단절되었다고 하지만, 지손이 여러 지역에 산재한 상황에서 영천 자양의 희백·지백 계열이 별묘를 넘어 서원 건립과 운영의 주체로 전면으로 나서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충절 인사를 포장하는 조정의 정책 기조를 놓칠 수도 없는 문제였다.

1718년 별묘 건립을 시창한 이현초는 평소 단절된 선산 종계의 봉사손을 다시 세우는 데 관심을 가졌다. 동향의 鄭萬陽·鄭葵陽 형제를 비롯해 道內 여러 禮家에게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지만,<sup>50)</sup> 이현초 당대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지손의 한계를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이현초의 구상대로 봉사손 승계일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문제였다. 이에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과 용계별묘 측은 이맹전 추송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손의 한계를 극복할 명분을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갔다.

영조 무술년(1778) 유룡이 문중의 任司로서 선생의 묘도에 문장이 있는 비를 세웠고, 정조 신축년(1781)에 先考의 遺意로 猶龍이 어가의 앞으로 상언하여 특별히 先祖考의 작위와 시호의 은전을 받았으며, 계묘년(1783) 延諡할 때에 문중 사람이 조정에 상언하여 猶龍으로서 세위 宗嗣를 계승하였다.<sup>51)</sup>

위의 글은 용계별묘 건립을 주도한 이석화의 가장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석화 사후 전개된 일련의 문중 사업을 나열해 놓았다. 이맹전의 묘갈 건립과 증시 청원 등의 단계를 거쳐, 1783년 이유룡의 봉사손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먼저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과 용계별묘 측은 묘갈 건립을 통해 이맹전의 묘역을 크게 정비하였다. 이보다 앞서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은 해마다 한 차례씩 이맹전의 묘소에 제사를 지내오고 있었다. 또한 묘소 수호를 위해 位田

50) 『碧珍世稿』 卷8, 龍溪公逸稿, 附錄, 〈遺事〉, “嗣孫復立之節 往復講質兩叟 無故之日 又博訪於道內知禮家與諸族議定之”.

51) 『塑窩遺稿』 卷3, 附錄, 〈家狀〉.

을 매입하고 墓奴를 두었다.<sup>52)</sup> 1750년에는 이현초와 이석화가 선산 형곡의 유허비각을 중수하였다.<sup>53)</sup> 종계 단절 이후 사실상 영천의 지손이 이맹전의 묘소를 관리하는 중이었다.

그런 가운데 1778년 正朝를 맞이하여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은 묘갈 건립을 의론하기에 이른다.<sup>54)</sup> 당초 이맹전의 묘갈은 유언에 따라 비명이 없고 크기도 작았다. 이에 묘갈 건립을 주도할 임원을 선출했는데, 薦出治石任司都監은 이직신, 유사는 이유룡, 物財補掌은 이몽신으로 정하였다. 尙州에서 묘갈에 쓸 6척 4촌 길이의 돌을 매입하였고, 낙동강 商船을 통해 월암서원으로 운반하였다. 이후부터는 선산 사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이 진행되었다. 11월 선산 사림이 월암서원에 모여 土人 盧濼을 立石都監으로 추대하고, 府內 향교·서원에 협조 통문을 발급하였다. 선산부사 李命杰도 여러 물건과 役丁을 지원하였다. 비석이 건립되기까지 300여 명이 일을 도왔는데, 영천의 일족은 이들의 糧錢으로 890냥을 지출하였다.

묘갈명은 이상정이 찬하였다. 이몽신이 편지를 보내 청하였고,<sup>55)</sup> 이상정의 문인 이유룡이 스승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하였다.<sup>56)</sup> 묘갈명의 글은 최현의 후손인 正言 崔光璧이 썼으며, 告由文은 金就文 후손인 정언 金夢華가 지었다. 두 사람 모두 선산 지역 사족 가문의 후예였다. 이처럼 1778년 묘갈 건립은 월암서원을 중심으로 한 선산 사림의 협조 속에 성사될 수 있었다. 월암서원은 선산의 충절 인사 金澍·河緯地·이맹전을 제향한 사액서원으로서,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과 용계별묘의 이맹전 추송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52) 『龍溪書院誌』 上編, 〈龍溪祠考往錄〉, “宗家喪禍之後 支孫散在列邑 而在永川者稍多 故 辦出財力 買位田立墓奴守護 仍行歲一祭”.

53) 『碧珍世稿』 卷8, 龍溪公逸稿, 附錄, 〈遺事〉, “耕隱先祖遺墟在荊谷 故知府金公萬增 立碑表之閣而庇之 歲久幾頹 庚午府君與族叔錫華 謀畫重葺 而地脩力絀 以未克巨其 閣厚其庇爲恨”.

54) 이하 묘갈 건립 과정은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참조.

55) 『碧珍世稿』 卷10, 巖軒公逸稿, 書, 〈與李大山【戊戌】〉.

56) 『大山集』 卷48, 墓碣銘, 〈耕隱李先生墓碣銘【并序】〉.

이맹전에 대한 증시 청원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청원은 용계별묘를 건립하기 이전인 1758년에 추진되었다. 그해 단종복위 1주갑을 맞이해 사육신에 대한 증시·증직이 이루어지자, 조려를 제향한 서산서원에서 영천의 벽진이씨에게 증시 청원을 제안하게 된다. 생육신 후손 중 단절되지 않고 이때까지 번창한 가문이 바로 벽진이씨와 함안조씨였다. 이에 이석화·이태화가 서산서원으로 가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고,57) 같은 해 이몽신이 청송의 조려 후손인 趙相拊과 함께 연명으로 예조에 褒贈을 청원하였다.

지금 이 忠烈公 河先生(河緯地)의 延謚日에 우리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와서 성대한 의식을 볼 수 있었으니, 흠양하고 감격한 바가 있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적 단묘조에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었는데, 그 삶과 죽음은 비록 다르지만 섬기는 바는 목숨을 걸고 죽음에도 변치 않고 다른 마음이 없는 것은 같습니다. ... 무인년[1758]이 다시 돌아옴에 우리 성상께서 先朝가 남긴 뜻을 특별히 거행함에 사육신은 이미 또 贈爵·贈謚하였으나, 생육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일체의 은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대개 일은 때를 기다려야 해서 그렇습니다. 六賢의 자손은 혹 남아 있거나 혹 단절되었는데, 지금 온 趙·李는 곧 耕隱·漁溪 두 선생의 후예입니다. 금일 延謚의 거행은 이를 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愴慕함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같은 節家의 후손 마음은 당연히 어떠하겠습니까? ... 앞드려 바라건대 합하게서는 復命하시는 날에 이로써 入啓하여 생육신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58)

이맹전·조려 후손은 1758년 거행한 하위지의 延謚禮에 참여하였다. 그해 은전은 사육신에게만 내려졌고 생육신은 제외되었다. 그 때문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증시를 축하하면서도 생육신이 제외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이몽신·조상변은 정문을 올려 삶과 죽음은 다르지만, 그 충절은 생육신과 사육신이 다르지 않다는 논리로 차별 없는 은전을 청원한 것이다. 1758년의 청

57)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河考往錄〉.

58) 『碧珍世稿』 卷10, 巖軒公逸稿, 呈文, 〈呈禮官文略【戊寅與趙上舍相拊聯呈請生六臣褒贈啓】〉

원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연대를 계기로 두 가문은 1781년 2차 청원을 진행하게 된다.

1781년의 증시 청원은 생육신 후손들이 개별적이지만, 연달아 청원하였다. 1781년 이맹전의 후손 이유룡이 먼저 上言하였고, 조려의 후손 趙重晦가 뒤를 이었다. 1782년에는 원호의 후손 元景迪이 증시를 청원하였다.<sup>59)</sup> 이유룡은 1781년 8월 15일 駕前에서 증시를 청원하는 상소를 올렸다.<sup>60)</sup> 증시 청원의 명분은 앞서 청원한 이몽신·조상변의 논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생육신 이맹전의 충절도 이미 증직·증시가 이루어진 사육신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sup>61)</sup> 같은 해 9월 吏曹判書 李衍祥은 이유룡의 상언에 대하여, 이맹전의 절의는 숭상할만하지만 증시의 사체는 중요하기에 그대로 두자고 回啓하였다. 이에 정조는 대신에게 품처를 지시하였고,<sup>62)</sup> 소론계의 領議政 徐命善은 “故正言 李孟專은 특별히 우뚝한 절개가 있으니,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소서”라고 아뢰어 정조의 윤허를 받게 된다.<sup>63)</sup>

이맹전에 대한 증직·증시가 이루어지자, 곧바로 조려 후손인 奉朝賀 趙重晦가 상소를 올려 이맹전의 전례에 따라 증시의 은전을 청원하여 윤허를 받았다.<sup>64)</sup> 당시 이유룡·조중희가 연달아 상소를 올린 것은 두 가문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함안조씨는 이유룡의 상언과 該曹의 覆啓를 베풀어 열람하고, 조중희도 이유룡의 상언을 바탕으로 상소를 작성하였다.<sup>65)</sup> 일이 성사된 후

59) 『西山延諭錄』 卷1, 請諭疏草, 〈耕隱李先生請諭上言 本孫李猶龍〉·〈漁溪趙先生請諭上疏 本孫判書趙重晦〉·〈觀闡元先生請諭上言 本孫元景迪〉. 『西山延諭錄』에 대해서는 ‘김현지, 앞의 논문(2024)’ 참조.

60)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61) 『碧珍世稿』 卷2, 耕隱先生逸稿, 〈請賜謚上言【正宗辛丑】十世孫猶龍〉.

62) 『碧珍世稿』 卷2, 耕隱先生逸稿, 〈吏曹回啓【判書李衍相】〉, “李孟專節義非不可尙而贈謚體重 上言內辭緣置之何如 下批議大臣稟處”.

63) 『正祖實錄』 卷12, 5年 9月 21日(庚申).

64) 『正祖實錄』 卷12, 5年 9月 29日(戊辰).

65) 『西山延諭錄』 卷2, 書簡通章, 〈又趙貞益大郁景泌景潛相朴相憲等【居青松】〉, “茲以書告 而李氏上言草及該曹覆啓 竝爲謄送 輪照後或因便有回眛之路也”; 김현지, 앞

양 가문은 현조에게 내려진 은전을 서로 자축하였다.<sup>66)</sup> 정조의 윤희에 따라 이맹전은 1781년 9월 23일 吏曹判書로 증직되었다. 다만 시호의 경우 같은 해 11월 點望한 ‘眞穆’이 仁顯王后의 시호와 같다는 이유로 낙점이 이루어지다가, 1782년 10월에 이르러서야 ‘靖簡’이란 시호로 결정 된다.<sup>67)</sup>

1783년 4월 6일 드디어 이맹전의 연시례가 거행되었다.<sup>68)</sup> 1,300여 명이 이르는 인사가 연시례에 참석하였으며, 영천과 列邑에서 230여 냥의 돈을 부조하였다. 영천군수 沈鈺을 비롯해 左議政 李福源과 判書 徐有隣 등 조정 관료들의 賻儀도 이어졌다. 1781년의 상언부터 연시례 때까지 소용한 돈은 1,500여 냥에 이른다.<sup>69)</sup> 이와 같이 이맹전의 묘갈 건립에 이어 증직·증시도 영천 벽진이씨 일족의 주도 하에 성사되었다. 추송 사업 과정을 남긴 이들의 문적에는 관부와 여러 사람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이맹전의 다른 지손이 여기에 적극 참여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지손이기 때문에 권도에 따라 별묘를 건립할 수밖에 없었던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에게 있어, 이맹전 봉사에 대한 중요한 명분과 자격 조건이 될 수 있었다.

연시례를 마치고 얼마 지나 漆谷 東明의 본손 李時釅이 이맹전의 봉사손을 세우는 일로 자신의 아들 李安稷을 한양으로 보내어 상언하였다.<sup>70)</sup> 이시험은 이맹전의 차남인 晈의 8대손인데, 晈의 삼남 禮源 대부터 칠곡 동명에 세거하고 있었다. 당시 상언에서 이시험을 자신을 가문의 門長이라 밝혔다. 그는 여러 종족이 상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시봉의 12촌인 이석화의 아들

의 논문, 2024) 453쪽.

66) 『西山延諭錄』卷2, 書簡通章, 〈又李文龍升龍稷臣仁君仁觀等【居永川】〉, “區區仰望令族待兩員 不期同參 此亦可驗於未盡先誼耳”.

67) 『龍溪書院誌』上編, 〈附龍溪祠考往錄〉.

68) 연시례가 거행된 정확한 장소는 『龍溪書院誌』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신수가 모셔진 곳에서 보통 연시례가 거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용계별묘나 그 인근일 것이다.

69) 『龍溪書院誌』上編, 〈附龍溪祠考往錄〉.

70) 『龍溪書院誌』上編, 〈附龍溪祠考往錄〉.

이유룡을 이시봉의 양자로 세울 것을 청원하였다. 결국, 정조의 受敎에 따라 1783년 8월 28일 예조는 繼後立案을 발급해 주었다.<sup>71)</sup>

당시 이시협이 상언을 올린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무렵 추송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낸 영천의 희백·지백 계열에게 종계 계승의 자격을 주어도 무방하다는 공감대가 벽진이씨 일족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이시봉의 아래 향렬 중에서도 용계별묘 건립을 주도한 이석화의 아들이자, 묘갈 건립과 증시 과정에서 큰 활약을 한 이유룡을 이맹전의 봉사손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유룡이 국왕에 의해 공식 봉사손이 되면서, 더 이상 권도에 의한 불가피함을 별묘 운영의 명분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 봉사손 승계를 계기로 용계별묘 측은 보다 주체적인 위치에서 서원 승격과 더불어 이맹전 및 생육신 추송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Ⅲ. 龍溪書院 승격과 生六臣 追崇

#### 1. 서원 승격과 請額

정조 연간은 충절 인사를 제향한 원사 건립과 사액 청원의 적기였다. 17세기 후반 숙종의 금령과 1741년(영조 17) 원사 훼손 등으로 서원 건립이 쉽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선현 봉사를 통해 문벌과 가문의 위세를 높이려는 재지사족 층의 강한 의욕 앞에 서원 남설은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원사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조정의 금령을 피해 祠廟·

71) <禮曹立案>, “不幸嫡妾俱無子 後嗣無托 故以其同姓十二寸錫華之第二子猶龍 欲爲繼後 一家諸族相議定是白乎矣 時鳳及錫華 夫妻俱歿 與受無人 不得循例呈狀禮料是白如乎 臣矣身忝在門長 不忍坐視其絕嗣 茲敢冒萬死呼籲於法駕之前爲白去乎 伏乞天地父母俯諒哀矜情狀 亟令該曹 依他例 上項猶龍身乙 立爲時鳳之後 俾奉先記事 … 既有受敎 向前猶龍身乙 特爲立後”. 이 문서는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에 소장된 것이다.(<https://yn.ugyo.net>)

影堂·精舍 등으로 발의되었다가 서원 승격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sup>72)</sup> 이 때문에 1741년의 휘철도 재지사족 층의 비협조와 방관 등으로 일부만 철폐되었고, 정조 연간에 이르러 많은 서원이 새로 건립되거나, 서원으로 승격하게 된다.<sup>73)</sup>

영천의 용계별묘는 1786년 용계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앞서 1783년 이유룡이 예조로부터 계후입안을 발급받으면서, 영천 자양은 이맹전 봉사손의 세거지가 되었다. 제향처 마련과 향사는 이제 권도에 의한 불가피함이 아니라, 經禮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유룡의 봉사손 승계 후 용계별묘의 서원 승격 사업은 빠르게 진행된 듯하다. 1786년 12월 영천 사림이 생육신 병향의 의론을 처음 일으킨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12월 28일, 100여 명의 인사가 모인 가운데 원호·김시습·조려·성담수·남효운을 추향하고 서원으로 陞號하였다.<sup>74)</sup>

승격 당시 造位版都監은 鄭一鉉, 床卓有司는 李升龍, 公事員은 洪洛瑞, 都廳은 徐有謙, 奉安都監은 生員 趙相彦, 請禮儒生은 이유룡, 都執禮는 趙亮燮, 位版은 李仁純·李仁觀이 맡았다. 이 중 정일필은 정운량의 후손으로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과 오래 교유한 연일정씨 출신이며, 조상언은 청송의 함안조씨로 이상정 문하에서 이유룡과 함께 수학한 인사이다.

초대 원장은 前 都事 李時逸, 유사는 崔興博·徐象綱으로 임명하였다.<sup>75)</sup> 용계서원 <考往錄>에 따르면 院任의 경우 대체로 원장 1인, 유사 2인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유사 중 1인만 벽진이씨 일족이 맡는 것으로 나타난다.<sup>76)</sup> 용계별묘 시절에는 수임 1명과 유사 2명을 비롯해 여러

72) 이수환, 「영해 인산서원의 설립과 휘철」, 『대구사학』 63, 대구사학회, 2001, 86쪽.

73) 이병훈, 「경상도 서원·사우의 건립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5~27쪽.

74) 『龍溪書院誌』 中編, <考往錄>.

75) 『龍溪書院誌』 中編, <考往錄>.

76) 1786~1804년 사이의 <考往錄>에서 확인되는 원임과 유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시 직책을 모두 후손이 맡았었다. 그러나 승격 이후에는 사림 공문에 의해 운영되는 서원임을 표방하고자, 타 성관의 인사를 원임으로 위촉하였다.

1786년 승격 당시 奉安文과 常享祝文은 慶州 출신의 학자 鄭燾가 지었다. 정희는 봉안문에서 함안 서산서원의 전례에 따라, 묘우를 확장하여 생육신을 합향하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였다.<sup>77)</sup> 승격 이후 용계서원은 조금씩 서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1786~1788년 동안 祭器·櫝子·床卓를 차례로 마련하였다. 1788년에는 院號의 글씨를 參議 李祖源에게 받았다. 1790년부터는 강당 건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고, 1797년에 강당을 완공하였는데 쓴 돈은 866냥 7전 5푼에 이른다.<sup>78)</sup> 당시 상량문은 경주 출신의 학자 南景羲가 작성하였다.<sup>79)</sup> 이로써 용계서원은 승격 10년 만에 서원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용계서원은 완전한 서원의 외형을 갖추기도 전인 1788년 원장 洪萬宗 등이 연명하여 사액을 청원하는 상소를 올린 적이 있다. 서원으로 승격

연월	원장	유사	연월	원장	유사
1786.12	李時逸	崔興博 徐象綱	1793.春	朴明淳本閑	
1787.正朝	徐有謙	崔興博 李之鉉	1794.06	鄭周采	李宜永 權熙鼎
1787.03	徐有謙	崔興博 李仁純	1797.02	安璣重	
1788.02	洪萬宗	李仁純 權七鼎	1797.07	安璣重	朴希聖 李仁恒
1789.01	徐有侃	李仁純 孫基億	1798.07	孫履九	李之鉉 徐楨輔
1789.08	徐有侃	孫基億 李載秘	1800.正朝	孫履九	李載秘 孫基密
1789.11	徐聖哲	成昌勳 李載璣	1800.03	金熙泰	李載秘 孫基密
1790.10	徐聖哲	崔衡璧 李仁恒	1801.04	安采重	李宜永 孫基密
1792.02	曹濟臣	崔衡璧 李仁恒	1801.08	安采重	李載珍 成昌洛
1792.05	成德龍	洪洛瑞 李仁潑	1804.02	曹景銓	李仁國 朴萬元

77) 『蒙巖集』 卷4, 祝文, 〈龍溪六先生奉安文〉, “噫彼西山 一廟竝殿 同氣相求 神人理一如水在地 永何獨闕 矧茲龍溪 碧珍氏宅 有幽一宮 爲靖簡設 公議齊發 竝學縉儀 一體以祀 於禮則宜”.

78) 『龍溪書院誌』 中編, 〈考往錄〉. 당시 강당 증건 비용은 용계서원 재정 외에도 본鄉各洞에서 殖利한 돈 37냥, 李氏名錢 103냥 2전 5푼, 別扶助 24냥, 院生扶助錢 25냥, 銀寺[銀海寺] 扶助錢 20냥, 金東雲願納錢 4냥, 各邑合銀 260냥 1전 5푼에 이른다.

79) 『癡庵集』 卷9, 上梁文, 〈龍溪書院講堂上梁文〉.

한 지 불과 2년 뒤이다.

우리가 거처하는 고을에 이맹전의 妥靈之所가 있는데, 이름 하여 용계서원입니다. 서원을 건립한 것은 이곳에 대개 자손이 거처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같이 大丘 洛濱의 朴彭年서원을 따른 것입니다. ... 한 도의 士論이 함께 발하여 조려·원호·김시습·성담수·남효온 5인을 并廟하고 향사 지냈으니, 대개 그 절의가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 전후 열성조의 은전이 오래되고 더욱 애중하여 증직하고 시호를 내렸으니, 褒揚과 崇獎의 법도가 사육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다만 생각하건대 육신의 한 사당은 廟宇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미처 申籲하였는데 여전히 홀로 액호가 없으니 '같이 대하는 은택[一視之澤]'에 흠이 될까 두렵습니다. ... 특별히 恩額을 내리셔서 생과 사의 육신이 하나 같이 褒崇되어 한 세상의 일이 함께 밝게 드러나 ...<sup>80)</sup>

위의 상소에서 용계서원 측은 삶과 죽음의 형태만 다를 뿐 생육신과 사육신의 충절은 같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앞서 증시 청원 때 내세운 명분과 같은 논리이다. 또한 지난 번 생육신에 대한 증직·증시도 사육신처럼 일시에 이루어졌다며, 이번에도 '같이 대하는 은택[一視之澤]'을 베풀어 사육신 제향의 서원과 동등하게 사액을 내려 주기를 청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육신을 제향한 다른 서원, 그 중에서도 대구 洛濱書院의 전례를 사액의 명분으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육신 제향의 사액서원으로는 월암서원·낙빈서원·魯恩書院·彰節書院·愍節書院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두 사우·별묘 등의 형태로 건립되었다가 사육신 복관 후 서원 승격과 사액이 이루어졌다.<sup>81)</sup> 또한 월암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육신이 병향되어 있다. 용계서원도 처음에는 이맹전 제향의 별묘로 시작한 후 증시를 계기로 생육신 병향의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특히 낙빈서원의 경우 1693년(숙종 19) 사액 청원 당시 다음과 같은 명분을 내세운 적이 있다.

80) 『觀閣遺稿』卷3, 實記2, 〈請額疏【洪萬宗等】〉.

81) 이광우, 앞의 논문, 2021, 162~165쪽.

박팽년 등 육신의 사우가 대구에 있는데, 박팽년의 자손을 함께 제사 지내고 4대 이후로는 제사 지내는 규정에 제한을 두자 나이 많은 선비에게 묻고 사림들에게 상의해서 一廟를 건립하여 육신을 함께 배향할 것을 도모하였습니다. 그곳은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과 거리가 멀지 않고, 제사 지내는 법도는 제향하는 儀禮를 모방하여, 한편으로는 저승에 있는 신령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흠모하는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sup>82)</sup>

당시 청액을 한 사림의 주장에 따르면, 낙빈서원의 전신인 六臣祠宇가 처음부터 향사를 위해 건립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4대 봉사가 끝난 후 후손들이 제사를 이어가고자 묘우 하나를 건립했는데, 다만 의례 절치는 향사를 모방했다고 한다. 흥만중 등의 상소에서 “하나같이 대구 낙빈의 박팽년서원을 따른 것”이란 언급도 이 대목을 참고했을 것이다. 용계서원은 별묘 이전 1755년 서당으로 처음 건립되었을 때 이곳에서 향사를 모방한 제사를 지냈다. 실제로는 서원 승격을 염두 한 조치지만, 당시 내세운 명분은 육신사우처럼 종계의 단절로 중단된 선조의 봉사를 이어간다는 데 있었다.<sup>83)</sup>

어찌되었던 용계서원 측은 생육신의 충절과 사육신의 전례를 들며 사액을 청원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정조 재위 전반 정책 기조를 편승한 측면이 있다. 정조가 즉위하고 1788년까지 모두 11개소의 원사가 사액을 받았는데, 대부분 충절·절의 또는 명신을 제향한 곳이었다.<sup>84)</sup> 그러나 1788년의 사액 청원은 사체의 중요성을 내세운 예조의 回啓에 따라 끝내 윤택 받지 못하였다.<sup>85)</sup> 오히려 이 무렵 충신·명신에 대한 포장에 편승하여 금령을 어긴 서원 건립과 사액 청원이 빚발치고 있었다.<sup>86)</sup> 조정의 정책 기조가 서원 남설을 조장할 우

82) 『書院瞻錄』 3, 1693년 11월 23일.

83) 주 27) 참조.

84) 김순한, 「18세기 후반 상주 옥동서원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99~101쪽.

85) 『觀闡遺稿』 卷3, 實記2, 〈請額疏【洪萬宗等】〉, “時禮曹以體重回啓 事遂寢”.

86) 『正祖實錄』 卷29, 14년 2월 19일(庚午); 김대식, 「조선 서원 휘철 논의의 전개—인조부터 정조까지」, 『교육사연구』 24-1, 교육사학회, 2014, 22~23쪽.

려가 발생하자, 서원 건립과 사액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용계서원이 승격 2년 만에 급히 사액을 청원한 것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1788년의 사액 청원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용계서원 측은 스스로 사액서원과 버금가는 곳임을 자부하였다. 용계서원은 서원 승격 이후 재정적 기반으로 額外의 院屬을 획급 받았고 屬村·屬寺·屬店을 점유하였다. 또한 향사 때는 관아에서 官奠을 備給해 주었다. 하지만 관부의 부세 행정에 따라 원속 및 속촌·속사·속점의 與奪·侵奪이 거듭되었고, 官奠도 자주 중단되었다. 그럴 때 마다 용계서원 측은 上書·所志·稟報를 올려, 사액서원에 준하는 혜택과 이를 인정하는 원문 발급을 요청하였다.

지난 번 무신(1788)에 龍院의 수백 선비들이 대궐에 請額하였는데, 특별히 該曹에 품쳐하라는 恩敎를 下命하였으나, 사액을 받지 못하였으니 단지 章甫가 抑鬱해 합니다. 이 서원의 事實은 이미 登聞에 관계되어 있고, 名號 또한 邦籍에 실려 있으니, 선산의 월암, 함안의 서산과 더불어 영천의 용계는 하나이면 서 둘이니, 사액과 미사액으로 이를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삼가 듣건대 본원은 원래 額外의 募屬이 없고, 또한 鄉祠와는 다름이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주께서는 열성조가 숭봉한 盛典을 체득하시어 본원 案의 丁을 參商하여 分揀해 주시면, 그보다 더 큰 다행이 없기에 무턱대고 진정 한 것입니다. 계축 [1793] 7월 7일 院長 朴希說, 齋任 李仁觀, 사림 權宅鼎 등<sup>87)</sup>

예컨대 위의 상서는 1793년 7월 7일 용계서원 측이 액외 원속을 청원한 것이다. 여기서 용계서원 측은 제향인의 위상이 사액서원인 월암서원·함안서원과 같으므로 사액·미사액을 논할 것 없이 사액서원에 준하는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804년 8월에도 관부가 액외 원속을 充役하자 비록 사액되지는 않았으나, 증시와 賜祭를 근거로 承額과 다름없다는 명분을 내세워<sup>88)</sup> 원속의 면

87) 『龍溪書院誌』 中編, 〈上書〉(1793.07.07).

역을 인정받는 완문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 외에도 용계서원은 土洞·回龍을 完戶村,<sup>89)</sup> 外南菴을 屬菴,<sup>90)</sup> 新寧의 釜谷土店을 屬店<sup>91)</sup>으로 획급 받으며, 스스로를 사액서원에 비견하였다. 이처럼 용계서원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정립된 생육신의 위상을 재정 확보 전략에 적극 활용해 나갔다.

## 2. 용계서원과 『生六臣合集』 간행

단종 충신의 규모는 18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다양한 성격의 단종 충신이 발굴되었고, 이들에 대한 조정의 포장과 향촌 사림의 추송이 이어졌다. 더불어 충신의 성격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묶는 노력도 진행되었다. 기존의 육신을 사육신으로 설정하고, 사육신에 견준 생육신이란 개념도 등장하였다. 처음 생육신의 범주는 일정하지 않아, 6인 중 몇몇 인사는 출입의 여지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1791년 이맹전·조려 등에 대한 증시를 계기로 생육신의 범주는 정립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sup>92)</sup> 1833년(순조 33) 용계서원 주도로 이루어진 『生六臣合集』 간행 작업도 이러한 흐름에 따른 인물상 정립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33년 『생육신합집』 간행은 1834년 진행된 원호·이맹전·성담수·조려 4인의 彰節祠[彰節書院 追配]를 염두 한 사업으로 평가된다.<sup>93)</sup> 창절사는 영월 단종의 묘역 내에 사육신을 제향한 六臣祠에서 출발한다. 이후 육신사는 창절사로 사액되었고, 사육신 외에도 다른 단종 충신들을 추배하였다. 그 중에

88) 『龍溪書院誌』 中編, 〈上書〉(1804.08), “一體贈諡 累降賜祭 … 茲院事實 既系於登聞名號 又載於國乘 則雖未蒙額 無異承額”.

89) 『龍溪書院誌』 中編, 〈稟報〉(1848.07.22).

90) 『龍溪書院誌』 中編, 〈稟報〉(1840.02).

91) 『龍溪書院誌』 中編, 〈完文〉(1793.04.15).

92) 윤정, 앞의 논문, 2010, 66쪽.

93) 윤정, 「19세기 생육신 사적정비와 인식 강화」, 『역사와 실학』 54, 역사실학회, 2014, 120~121쪽.

는 생육신으로 분류된 김시습·남효온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생육신 추승을 주도한 조려·이맹전 후손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4인을 창절사에 추배함으로써, 4인과 생육신의 위상을 사육신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 중에서는 이희백의 봉사손이자 이현초의 현손인 李滄(1779~1832)가 앞장서서 3차에 걸쳐 4인에 대한 추배를 청원하였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sup>94)</sup> 특히 1834년에는 幼學 徐相說이 상언을 올려 사육신의 충절은 형태만 다를 뿐 그 본질은 같다는 논리를 내세워 원호·이맹전·성담수·조려 4인의 추향을 청원하였다.<sup>95)</sup> 그러나 창절사에 4인이 빠진 것이 조정의 흠결도 아니고, 사림이 억울해하는 바도 아니라는 예조의 회계에 따라<sup>96)</sup> 거부되었다. 이렇게 창절사 추배 청원을 주도한 이위가 바로 『생육신합집』 간행도 주도하였다.<sup>97)</sup>

『생육신합집』은 사육신의 문집을 합한 『六先生遺稿』를 전범으로 삼고 있다. 『육선생유고』는 1658년(효종 9) 박팽년의 후손 朴崇古가 자신의 선조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생육신합집』도 이위가 주도하여 이맹전을 중심으로 『생육신합집』을 간행하였다. 그 때문에 『육선생유고』의 서두에는 박팽년의 ‘朴先生遺稿’가 있고, 『생육신합집』의 서두에는 이맹전의 ‘耕隱逸稿’가 수록되어 있다.<sup>98)</sup>

그런데 이때까지 이맹전의 문집·유고는 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맹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의 아우 李季專이 정리하였으나, 병화로 모두 소실되었다. 이후 최현이 ‘耕隱先生事蹟’으로 정리하였고,<sup>99)</sup> 1668년(현종 9)에는 江原道觀察使 李尙逸이 김주·하위지·이맹전의 사적을 엮은 『三仁錄』을 간

94) 『碧珍世稿』無有齋遺稿 卷3, 附錄, 〈遺事〉, “又以彰節迫配事 三上書 以不得蒙允”.

95) 『碧珍世稿』無有齋遺稿 卷2, 雜著, 〈上言草【甲午秋】〉.

96) 『碧珍世稿』無有齋遺稿 卷2, 雜著, 〈禮曹回啓〉, “今此四臣之不得竝享 非特有欠於朝家一時之澤 無怪齋鬱於志士公共之論是白乎矣”.

97) 『龍溪書院誌』中編, 〈生六臣先生合集刊役時攷往錄〉, “而謀劃之者 實李滄也”.

98) 윤정, 앞의 논문, 2014, 123~125쪽.

99) 『訥齋集』拾遺, 事蹟, 〈三仁事蹟〉.

행하였다. 그런 가운데 영천에서는 1783년 5월 李仁器가 이맹전의 遺事 1권을 편집했으며,<sup>100)</sup> 1788년에는 이유룡이 判書 李獻慶을 찾아가 유사의 서문을 받아 왔다.<sup>101)</sup> 이어 1792년 10월 용산서원에서 유사를 다시 편차하고 교정한 뒤 正書하였다.<sup>102)</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맹전 유고의 초고를 완성하였고, 이후 전개된 이맹전 등 4인의 창절사 추배 청원과 맞물려 『생육신합집』을 간행한 것으로 이해된다.

漁溪조례 후손 上舍 趙基永이 육선생 시문의 글을 수집하고, 절의를 묶어 1질로 책으로 엮으니 3권으로 구분하였다. 志·傳·狀·碣·褒贈의 사실을 부록으로 하였으며, 耕隱 후손 李家鉉이 이를 교정하고, 文斗[성담수의 傍裔 成近默이 이를 편차하니, 대개 사육신 선생의 합집의 예를 따른 것이다. 경은의 世祀孫 李載權과 李滄가 어계 후손과 더불어 久遠한 계책으로써 모의한 바, 提學 相公 趙寅永과 豐安 相公 柳相祚에게 서문을 청하였고, 장차 판각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다만 물력을 마련하기 어려워 성사를 근심하였으니, 使郡[영천군수] 근목이 이때 본읍을 맡아 100금을 내어 基本으로 삼고, 경은의 外裔 金陽淳이 본도의 按使로 俸金을 내어 간행 비용으로 삼았다. ... 물자는 경은·어계·秋江남효온 본손의 가문에서 낸 것, 본향의 校院에 배정한 것, 각 문중에서 助學한 것, 도내 열읍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합하였으니, 총계와 수효는 아래쪽에 기록해 놓아 굳이 번거롭게 주를 달지 않았고, 본원에서 道會를 열어 임원을 임명하고 釐下에 刊所를 정하여 事局을 排布하였다. 계사[1833] 정월에 역을 시작해서 5월에 일이 끝났다. 그 사이 일을 맡아 항상 머무른 자가 5~6인이고, 刻手로 連用한 자는 십 수인이며, 보낸 날이 200여 일이다. 수입이 부족하여 所用으로 지탕한 까닭에 겨우 20여 질만 印出하여 조금만 반포한 뒤 役을 폐하고 돌아왔다. ... 판목은 육선생을 합향한 용계서원의 院堂 西夾에 수장하였다. 聖上 34년[1834] 계사 동 12월 上澣 安東 權默 記.<sup>103)</sup>

100) 『龍溪書院誌』 上編, 〈附龍溪祠考往錄〉, “同年[癸卯]七月日 本孫李仁器 編輯先生遺事一卷”.

101) 『龍溪書院誌』 中編, 〈考往錄〉, “同年[戊申]月日 靖簡公李先生遺事序文 宗孫李猶龍受來于大廟洞李判書獻慶”.

102) 『龍溪書院誌』 中編, 〈考往錄〉, “同年[壬子]十月日 靖簡公李先生遺事 更爲編次正書于本院 校正生員鄭禧書寫洪洛瑞”.

영천 출신의 幼學 權默이 쓴 기문에 따르면, 『생육신합집』은 영천의 벽진 이씨 후손인 이위와 李載權이 오래전부터 기획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문집이 합집의 형태로 간행되는 관계로 다른 생육신의 후손을 참여시켰다. 조려의 후손인 趙基永에게 시문의 수집을 의뢰하고, 성담수의 방예 성근묵에게 편차를 의뢰하였다. 성근묵은 앞서 1828년 6월부터 1831년 6월까지 영천군수로 재임하였기에<sup>104)</sup> 『생육신합집』 간행의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서문은 조정에 있던 趙寅永과 柳相祚가 썼는데, 이 또한 이위가 의뢰하였다.<sup>105)</sup> 이처럼 원고 간행을 위한 대략적인 준비가 끝나자, 1832년 10월 20일 용계서원에서 도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하였다.

公 事 員：金養中, 申思永

曹 司：洪周燮, 南熙德

刊役都監：徐綸補, 申冕周, 崔龍羽

刊役有司：李錕, 李廈祥, 趙纘漢

校正都監：李鼎基, 朴光錫, 鄭夏源, 李義發, 金會運, 金誠進, 崔昇羽, 柳徽文, 趙弘復, 李秉遠, 李老淳, 李相奎

校正有司：張錫愚, 李天永, 申灑辰, 李達仁, 琴詩述, 柳致球, 權世永, 李魯學, 鄭民秀, 徐瑤, 朴履坦, 洪秉朝, 李以鼎, 朴箕寧, 崔世麟, 朴宗喬, 李尙冕, 崔孝述, 權默, 曹啓遠, 柳進明, 李存永, 柳厚祚, 曹有海, 金養植, 李鍾祥, 孫志魯, 鄭裕觀, 閔在鏞, 成鎮教, 孫麟錫, 李鍾潤<sup>106)</sup>

당시 도회에서는 공사원·조사·간역도감·간역유사·교정도감·교정유사의 업무를 분장하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상우도의 상주·선산·성주를 비롯해, 경상좌도의 남인계 주요 가문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반면,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은 한 명도 확인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103) 『龍溪書院誌』 中編, 〈生六臣先生合集刊役時攷往錄〉.

104) 『永陽誌』 卷2, 首官.

105) 『碧珍世稿』 無有齋遺稿 卷2, 書, 〈與趙判書【寅永】〉; 〈與柳判書豐安君【相祚】〉.

106) 『龍溪書院誌』 中編, 〈壬辰十月二十日道會時〉.

경상좌도 남인계 가문의 동의와 협조 하에 『생육신합집』이 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편찬 과정에서 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영천군수 성근묵은 성담수 傍孫이라는 명목으로 100냥을 내었는데, 이 돈은 이자를 놓아 간행 비용으로 증식하였다. 이맹전의 외예인 慶尙道觀察使 金陽淳도 녹봉을 내었다. 영천의 각 문중 외 도내 66개 고을로부터 부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김양순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맹전·조려·남효온의 본손들도 부조하였다. 다만 후손이 없는 김시습 가문과 강원도에 세거하는 원호의 후손은 참여하지 않았다.<sup>107)</sup>

『생육신합집』 간행은 이맹전 증시 청원, 서원 승격, 청액 청원과 더불어 용계서원이 진행한 대규모 사업 중 하나였다. 이와 맞물려 전개된 이맹전 등 4인에 대한 창절사 추배 청원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지만, 창절 인사로서 이맹전의 위상과 생육신의 범주를 정립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더불어 이맹전 중심의 『생육신합집』 간행을 통해 생육신으로 상징되는 창절의 명분을 지역 사회에 투영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 본 논문에서는 18~19세기 이맹전의 벽진이씨 후손이 전개한 영천 용계서원 건립과 생육신 추송 활동을 살펴보았다.

생육신을 병향한 용계서원은 이맹전 제향의 용계별묘에서 출발한다. 앞서 선산에는 이맹전의 봉사손이 세거하였으나, 17세기 후반 이후 단절되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번창한 영천 자양의 지손들이 선산에 소재한 이맹전의 묘소에 제사를 지내고 묘역을 관리하였다. 1718년 이현초는 비록 지손이지만, 중

107) 『龍溪書院誌』 中編, 〈鳩財錄〉.

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권도로서 이맹전을 제사 지낼 공간을 마련하자고 건의하였다. 오랜 노력 끝에 1755년 영천 자양의 용계에 서당을 건립하고 향사를 모방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760년 함안 서산서원과 선산 월암서원의 전례에 따라 서당을 별묘로 바꾸고 이맹전을 봉안하였다. 용계별묘의 건립은 서원 승격을 염두 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조정은 금령을 내려 서원 건립을 통제했지만, 서원 운영을 도모하는 향촌의 재지사족 층은 사묘·영당·정사로 제향처를 마련한 후 서원 승격도 도모하였다. 또한 충절 인사를 포상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라, 충신·절의 인사를 제향하는 원사가 증가하게 된다.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도 별묘를 서원으로 승격시킬 의도가 있었지만, 지손이란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적극적인 이맹전 추송 사업을 통해 지손이란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먼저 선산에 있는 이맹전의 묘갈을 크게 중건하였고, 함안 서산서원의 조려 후손과 함께 상언·상소를 올려 생육신에 대한 증시를 청원하였다. 이들은 증시의 명분으로 사육신과 생육신은 삶과 죽음의 형태만 다를 뿐 충절 정신은 같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 결과 1783년 이맹전에게 ‘정간’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이맹전 추송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영천의 벽진이씨 일족은 종계 계승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같은 해 이유룡에게 봉사손을 인정하는 계후입안이 발급되었다.

계후입안 발급으로 영천 자양이 이맹전 봉사손의 세거지가 되자, 이곳의 후손들은 1786년 용계별묘를 서원으로 승격시키고 생육신을 모두 병향하였다. 그리고 불과 2년 뒤 상소를 올려 사액을 청원하게 된다. 정조 즉위 이후 충절·절의 인사를 제향하는 원사의 사액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계서원 측은 대구 낙빈서원의 전례를 들며 사액을 청원하였다. 낙빈서원은 원래 박팽년을 제사지내는 곳에서 출발하였으나 향사 의례를 거행하였고, 훗날 사육신을 병향하는 사액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용계서원 역시 별묘에서 생육신을 병향하는 서원으로 승격한 데다 생육신의 충절이 사육신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사액을 청원한 것이다. 용계서원의 사액 청원은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

다. 그러나 용계서원 측은 사액서원과 다름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향인이 모두 증시·증직을 받은 인사인 데다, 그 사체가 사액서원인 월암·서산서원과 동일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원속 획급, 속촌·속사·속점 점유, 관전 비급 등 관부로부터 서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냈었다.

1833년 간행된 『생육신합집』은 영천 용계서원이 주도하였다. 당시 용계서원 측은 이맹전의 창절사 추배 청원과 연계하여, 사육신의 『육선생유고』를 본뜬 『생육신합집』을 간행하였다. 생육신의 문적 및 행적을 엮은 것이지만, 용계서원이 주도하였기에 이맹전의 ‘경은일고’를 가장 앞에 수록하였다. 『생육신합집』은 관부와 여러 사람의 협조 속에 간행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경상좌도의 상주·선산·성주를 비롯해 경상좌도의 남인계 주요 가문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생육신합집』이 단순히 생육신과 이맹전의 위상 정립을 넘어, 사림의 공감대 속에 생육신으로 상징되는 충절의 명분을 지역 사회에 투영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원전

- 『朝鮮王朝實錄』  
『燃藜室記述』  
『六先生遺稿』  
『錦溪集』(黃俊良)  
『西厓集』(柳成龍)  
『旅軒續集』(張顯光)  
『訥齋集』(崔暉)  
『塑窩遺稿』(李錫華)  
『大山集』(李象靖)  
『蒙巖集』(鄭禧)  
『碧珍世稿』  
『永陽誌』  
『龍溪書院誌』(1977)

### 2. 논저

- 김대식, 「조선 서원 휘철 논의의 전개 - 인조부터 정조까지」, 『교육사연구』 24-1, 교육사학회, 2014.
- 김순한, 「18세기 후반 상주 옥동서원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 김학수, 「조선후기 영천지역 사림과 임고서원」, 『포은학연구』 6, 포은학회, 2010.
- 김현지, 「조려(1420~1489) 현창과 함안 서산서원의 역할 - 『서산연시록』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9, 한국서원학회, 2024.
- 벽진이씨대중회, 『벽진이씨대동보』, 대보사, 1998.
- 용산정사, 『국역 소와유고』, 대보사, 2018.
- 윤 정, 「숙종대 단종 추복의 정치사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2, 한국사상사학회, 2004.
- \_\_\_\_\_, 「18세기 ‘단종제신’ 포장의 확대와 ‘생육신’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 \_\_\_\_\_, 「19세기 생육신 사적정비와 인식 강화」, 『역사와 실학』 54, 역사실학회, 2014.
- 이광우, 「단계 하위지의 절의와 선산 사림의 추송 활동」, 『한국사상사학』 69, 한국사상사학회, 2021.
- 이병훈, 「경상도 서원·사우의 건립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수환, 「영해 인산서원의 설립과 훼손」, 『대구사학』 63, 대구사학회, 2001.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전용우, 「조선조 서원·사우에 대한 일고찰- 건립추이 및 제향인물을 중심으로-」, 『호서사학』 13, 호서사학회, 1985.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s://yn.ugyo.net>)

Abstract

## Yeongcheon Yonggye Seowon and Posthumous Honor of Saengyuksin in the 18th to 19th Centuries

Yi, Gwang-wo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s of the foundation of Yeongcheon Yonggye Seowon and posthumous honor of Saengyuksin practiced by Byeokjin Lee Family's descendants of Lee Maengjeon in the 18th to 19th century. Yonggye Seowon was originally a Seodang (Confucian lecture hall) founded in 1755 to honor Lee Maengjeon. It later became Yonggye Byeolmyo (a memorial shrine) in 1760 and then was officially elevated to the status of a Seowon in 1786. In that process of transformation, the following aspects are of significance: 1. Yonggye Seowon was established while the Joseon court prohibited the foundation of a private academy called 'Wonsa' in the 18th century. At that time, the government encouraged loyalty as a symbolic virtue of loyal officials to the King. Despite Royal decrees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private academies to honor loyal officials increased. The descendants of Yeongcheon Byeokjin Lee Family as well elevated Byeolmyo of Lee Maengjeon who was a loyal subject during the period of King Danjong under such a Royal policy. 2. The establishment of Yonggye Seowon was promoted along with the efforts put into succession of the descendants' head family. By the 18th century, the main lineage of Seonsan was severed, but there was no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Yeongcheon's

---

\* Yeungnam University, ikw38@ynu.ac.kr

descendants to lead posthumous honor of Lee Maengjeon. Against this background, the fundamental basis for succession was established by managing Lee Maengjeon's cemetery, establishing a tombstone, and petitioning the court for a posthumous title called 'Jeungsi.' Upon securing the Royal approval with the permission called 'Gyehu-ipan' issued, the inheritance right as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was officially recognized and Byeolmyo was finally elevated to Yonggye Seowon. This suggests that while honoring Saengyuksin as well, Yonggye Seowon also played a role as an academy called 'Munjung Seowon' whose status started to be elevated after the 18th century. 3. Defining the legacy of Saengyuksin and the role of Yonggye Seowon Yonggye Seowon actively petitioned for commendation to Saengyuksin, alongside Seosan Seowon in Haman, which had already been founded. In 1833, Yonggye Seowon published a collected works of Saengyuksin entitled 『Saengyuksin Hapjip (生六臣合集)』. Such activities of Yonggye Seowon reinforced the significance of Saengyuksin's loyalty and significance among Confucian scholars.

Key word : Yonggye Seowon, Lee Maengjeon, Byeokjin Lee Family's, Saengyuksin, Yeongcheon

논문 투고일: 2025. 05. 09 심사 완료일: 2025. 06. 05 게재 확정일: 2025. 06. 09



## ■ 일반논문

- ▣ 중종 후반기 『주자대전』 간행과 주자의 서원론 활용
- ▣ 숙종-영조대의 서원·사우 휘철
- ▣ 영조와 정조의 서원 賜祭와 도산서원



# 중종 후반기 『주자대전』 간행과 주자의 서원론 활용\*

최민규\*\*

- I. 머리말
- II. 기묘사림의 학풍 계승 노력과 『주자대전』 간행
- III. 『소학』-『대학』 교육론의 강화와 주자의 서원론 활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중종 후반기 『주자대전』 간행의 지적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그 영향으로서 주자 서원론이 활용되는 과정을 살핀 글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묘사화 이후 생존한 기묘사림들이 심성수양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군주일심성태론이 강화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주자 학문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김안국의 『주자대전』 간행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했다. 당시 『주자대전』에 대한 권벌의 교정기를 통해 볼 때, 주자의 서간을 통해서 『대학』의 전단계로서 『소학』의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간행층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주자대전』의 간행을 전후로 해서 주자와 육구연의 학문적 차이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위기지학의 성취를 위한 방안으로 『소학』-『대학』 교육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주자 학문에 대한 관심은 주세붕의 서원 건립으로 연결되었다.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조선전기 주희 문헌 연구와 사대부 성학론」의 V장 1절에 주자의 서원론 관련 부분을 추가 작성한 글이다. 꼼꼼하게 심사를 보여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주세붕은 『죽계지』를 통해서 주자 서원론의 요체를 위기지학을 실현하여 인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대부들의 결집처로 정의했다. 이는 조선 서원의 특성인 위기지학의 사회적 확산 토대로서 서원의 역할과 위상을 초기적인 형태로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말하자면 중종 후반기 『주자대전』의 간행은 주자 심성수양론의 요체로서 『소학』-『대학』 교육론이 재차 확인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간 창안을 위해 주자 서원론이 활용되었다.

주제어 : 위기지학, 군주 일심 성패론, 주자대전, 『소학』-『대학』 교육론, 주자 서원론

## I. 머리말

16세기 조선에서는 정치에서부터 일상까지 규율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유교, 즉 성리학의 위상이 분명해지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종래 신왕조 건설과 체제 정비를 위해 용인되던 다양한 성리학 내부의 경향들이 주자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 동향은 텍스트적인 차원에서 종래 명 황제에 의해 편찬되어 범성리학적 경향을 지닌 『성리대전』에서 탈피해서, 남송대 주자 개인의 시문과 봉사, 서간 등을 수록한 『주자대전』에 주목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sup>1)</sup>

그런데 『주자대전』은 1543년(중종 38)에 조선에서 간행되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주자대전』의 간행 이후 사단칠정논쟁, 인심도심논쟁 등 조선 성리학사에서 중요한 논쟁들이 발생하고, 서원과 같은 주자의 사회제도론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6세기 『주자대전』 간행과 보급, 그 반향을 고찰하는 것은 16세기 성리학의 정치사회론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1) 김준석, 『儒敎思想史論』, 『한국 중세 유교정치사상사론(I)』, 지식산업사, 2005.

중래 『주자대전』의 간행에 대해서는 편찬 과정, 판본에 대한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2)</sup> 이와 함께 사림계열의 성리학 연구 동향 속에서 『주자대전』 간행을 살펴보기도 했다.<sup>3)</sup> 그 연장선상에서 기묘사림의 학풍으로서 성리학의 심성화 경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sup>4)</sup> 그럼에도 『주자대전』이 중종 후반기에 간행된 원인과 주도층의 사상, 그것이 미친 지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까닭에 본고는 조선에서 『주자대전』 간행 전후로 한 지적 동향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자대전』 간행의 영향을 爲己之學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자는 남송 이후 유학자들이 공맹 유학의 정수이자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학문적 목표이자 유학의 전체적이고 중추적인 학문 개념으로 위기지학을 정립하고, 향약·서원과 같은 사회제도의 이념적 토대로 삼았다.<sup>5)</sup> 마찬가지로 16세기 조선에서도 지주전호제의 확대, 사회 등으로 인한 정쟁이 극심해지는 과정에서 사대부들의 학문적 정체성으로서 위기지학론이 본격화되고 향약, 서원과 같은 주자의 사회제도론이 본격적으로 정착했다.<sup>6)</sup> 따라서 『주자대전』 간행과 위기지학의 확산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면, 16세기 조선 성리학에서 주자 학문의 관심 증대와 서원론의 조선적 정착 과정을 해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김문식, 「조선본 『주자대전』의 간행과 활용」,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 ; 김문식, 「조선본 『朱子語類』의 간행과 활용」, 『史學志』 43, 2011 ; 최채기, 「한국에서 주자문집 수용 방식」, 『書誌學研究』 60, 2014 ; 최경훈, 「조선시대 『주자대전』의 간행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76, 2018.

3) 김항수, 「16세기 사림의 성리학 이해」, 『韓國史論』 7, 1981.

4) 정재훈, 『朝鮮前期 儒敎政治思想 研究』, 태학사, 2005 ; 지두환, 「16세기 시대적 과제와 율곡의 대응」, 『韓國思想과 文化』 43, 2008.

5) 미우라 쿠니오 지음, 김영식·이승연 옮김, 『인간 주자』, 창작과 비평사, 1996 ; Wm.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표정훈 옮김, 『중국의 '자유' 전통』, 도서출판 이산, 1998 ; 유권중, 「朱熹의 爲己之學 고찰」, 『철학탐구』 33, 2013.

6) 김정신, 「16세기 朝鮮의 朱子學 鄕政論 수용과 鄕約-鄕約의 시행방식과 성격의 分岐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85, 2018.

## Ⅱ. 기묘사림의 학풍 계승 노력과 『주자대전』의 간행

### 1. 기묘사림의 학풍 계승 노력과 심성수양론 중시

기묘사화 이후 생존 기묘사림은 강학 활동을 전개하면서 기묘사화 이전 학풍을 계승하고 있었다. 당시 여주에는 김안국이, 고양에는 김정국이, 충주에는 이연경·이약빙·이자가, 선산에서는 박영이 있었다. 이들은 강학 활동을 통해서 후학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상호 간의 강학결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sup>7)</sup>

이들 생존 기묘사림들의 특징은 기묘사화 이전 중앙에서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소학』과 향약의 보급과 같은 성리학의 사회화를 추구했다는 점에 있었다. 이들은 『소학』에 담긴 리로부터 부여받은 삼강오륜이라는 인륜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위기지학으로 이해하고, 향약에 대해서는 그 실현을 위한 집단적 규약으로 보았다. 이는 주자가 리=인륜의 원칙 하에 전 사회구성원들을 포섭하여 상하, 준비의 사회질서를 안착시키려던 지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sup>8)</sup> 여기에 덧붙여서 기묘사화의 발생 원인을 조광조 등이 보여준 언로의 과격성, 주장의 급진성 등에서 찾고, 군주를 자신들이 지향하던 리=인륜의 원칙 속에 들어올 수 있게 설득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묘사화 이전 성리학을 곧 위기지학으로 이해하면서<sup>9)</sup> 『소학』·『근사록』 등

#### 7) <표 1> 생존 기묘사림들의 거주지와 주요 문인들

거주지	인물명	주요 문인들
驪州	김안국	金麟厚, 柳希春, 許忠吉, 洪德寅, 沈連源, 鄭宗榮, 沈銓, 鄭滋, 許磁, 尹漑, 宋麟壽, 金有孚, 沈達源(李彦迪), 李湜, 徐敬德
高陽	김정국	鄭之雲, 鄭之霖, 朴衡
忠州	이연경	盧守愼, 康惟善, 沈鍵(李浚慶, 李潤慶)
善山	박 영	李恒, 成運, 朴紹, 申季誠

\*출전: 정만조, 「조선중기 유학의 계보와 봉당정치의 전개(1)」, 『조선시대사학보』 17, 2001, 91쪽.

- 8) 윤인숙, 「朝鮮前期 鄉約의 구현을 통한 ‘土文化’의 확산- 김안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81, 2015 ; 김정신, 앞의 논문, 2018 ; 정재훈,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학문과 사상」, 『大丘史學』 149, 2022.

을 당위로서 강조하던 것을 넘어서 그 근원이 되는 심성수양론의 이론적인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sup>10)</sup>

우선 생존 기묘사림들 중 김안국은 명에서부터 도입된 정민정의 『심경부주』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 연구 단초를 열고 있었다. 그는 기묘사화 이전인 전라도 관찰사로 근무하던 때인 1519년(중종 14)에 『심경부주』를 간행했다.<sup>11)</sup> 그리고 김안국으로부터 허충길이 임종 전에 『심경부주』를 전수받았다.<sup>12)</sup> 이와같이 김안국과 그 후학은 16세기 중·후반 『심경부주』 탐구를 선도했던 것이었다.

정민정은 진덕수의 『심경』을 재편하면서<sup>13)</sup> 인간의 마음을 바로 잡는 尊德性を 중심으로 해서 사시물물에 대한 이치 탐구인 道問學을 포섭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남송대부터 명까지 존덕성과 도문학에 대한 욕구연과 주자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다는 朱陸和解論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그는 주자의 정론이 인간이 본래 갖추어진 덕성을 온전하게 견지하면서 도문학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관점에 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인간 마음에 담긴 人心·私欲을 극복하고 道心を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敬에 입각한 수양론을 강조했다. 그런 까닭에 『심경부주』는 마음이 인욕을 막고 天理에 따르게 유

9) 『中宗實錄』 권26, 11년 10월 丁卯.

10) 기묘사화 이후 생존 기묘사림들이 심성수양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리학풍 형성 노력과 관련된 논고는 다음을 참고했다. 정재훈, 앞의 책(2005), 190~203쪽.

11) 정재훈, 앞의 책(2005), 196쪽.

12) 『草堂集』, 墓碣銘, 〈許南溪墓銘〉, “受業金慕齋先生 臨終 授以心經 吾亦得以始見之”

13) 『심경부주』는 명의 정민정이 남송대 진덕수의 『심경』에 주를 붙여 1492년에 만든 서적이었다. 원래 진덕수의 『심경』은 경전과 송대 도학자들의 글에서 심성수양과 관련된 격언을 모으고 그에 대한 유학자들의 논의를 주석으로 삼고, 자신의 『心經贊』을 덧붙여 만든 저술이다. 그 후 명에 들어 정민정은 진덕수의 『심경』에 다시 송·원대의 도학자들의 저술을 인용해서 부주를 더 보태고, 按을 설정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심경부주』를 지었다. 분량상으로는 경문이 전체의 1/10, 진덕수의 원주가 72조항으로 전체의 1/10 정도이고 정민정의 부주가 329조항으로 전체의 8/10을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민정의 부주가 『심경』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지두환, 앞의 논문(2008), 135~136쪽.

도하는 심성 수양으로의 방향을 확대 강화시킨 것이었다.<sup>14)</sup>

다만 김안국이 『심경부주』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입장을 견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그가 재서용된 후인 1542년(중종 37) 조 정에서 간행할 책 목록에 육구연의 『象山集』을 포함시켰다. 이때 그는 육구 연에 대해 주자와 같은 때에 덕성을 밝히는데 마음을 쏟아서 왕복 변론했다는 점을 말하고, 비록 주자와 취지는 다르나 심성의 학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sup>15)</sup> 이는 정민정이 『심경부주』에서 주자의 마음 공부법이 육구 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년에 도문학에서 존덕성으로 나아갔다는 해석<sup>16)</sup>에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안국은 종래 본원 함양의 교재로서 『소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기묘사화 이후 마음의 두 양태로서 인심과 도심의 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경 수양론과 관련된 언설이 풍부하게 수록된 『심경부주』에 주목했다고 하겠다.

심성수양론에 대한 관심은 왕수인의 『전습록』 검토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왕수인의 『전습록』은 1520년(중종 15)에 김세필이 명에서 귀국할 때에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 후 박상과 김세필은 『전습록』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전습록』을 검토하면서 『심경부주』에 나오는 인심도심의 문제를 연계시켰다. 김세필은 박상의 시에 대해 차운하면서 주자가 죽은 후 斯文이 사라져 누가 危微, 즉 인심도심의 가르침을 살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습록』을 박상에게 보내서 검토를 부탁했고, 박상은 『전습록』이 육구연을 본받아서 병통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sup>17)</sup> 이들은 육구연과 왕수인의 학문을 동일한 계통에 놓으면서도, 그것

14) 이봉규, 「『심경부주』에 대한 조선성리학의 대응 : 이황과 송시열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12, 1995 ; 이봉규, 「“격군심(格君心)”과 조선의 문치」, 『東方學志』 193, 2020, 46~47쪽.

15) 『中宗實錄』 권98, 37년 5월 丁亥.

16) 이봉규, 앞 논문(1995), 6~9쪽.

17) 『十清軒集』 권2, 「又和訥齋」, “紫陽人去斯文喪 誰把危微考舊聞 學 蹈象山多病處 要君評話復云云”

이 인심과 도심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장단을 따져보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sup>18)</sup>

이와 같은 생존 기묘사림들의 심성수양론에 대한 관심은 1537년(중종 32) 12월에 조정 복귀 이후, 격군의 문제의식을 본격화되었다. 이는 이언적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그는 『심경부주』에 대한 탐구를 매개로 해서 기묘사림들의 후학들과 지적인 결합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이 시기 그는 군주에게 심성수양론의 필요성을 적용하고자 했다. 이는 1539년(중종 34)에 올린 「一綱十目疏」, 1541년(중종 36) 「弘文館上疏」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이언적은 두 상소문을 통해서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곧 천하의 근본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강십목소」를 통해서는 一理로 萬事を 관통할 수 있고, 一心으로서 萬化를 일체 거느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런 까닭에 窮理를 통해 正心을 하게 된다면 저절로 修身, 正家되어 치국, 평천하의 단계로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本源과 正一의 공부를 경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sup>21)</sup> 그리고 「홍문관상소」에서는 중종의 성학이 지극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밖이 아닌 안에서부터 찾아서 戒愼恐懼와 謹獨의 공부를 가할 것을 요청했다.<sup>22)</sup>

이와 같은 이언적의 상소문은 천하국가의 운영을 군주의 心術, 正心 등에서 찾는 군주 일심 성패론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군주 일

18) 정두영, 「朝鮮後期 陽明學의 受容과 政治論」,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2쪽.

19) 『蘇齋集』 卷7, 「晦齋先生集序」, “予嘗在辛丑年間 以書爲贊而禮焉 望儼即溫 親承警效 竊窺有方寸之學 遂將程氏附註書 叩疑不已 仍請存心之要 久之.”

20) 김정신, 「朝鮮前期 士林의 ‘公’ 인식과 君臣共治論 - 조광조, 이언적의 학문정치론 -」, 『學林』 21, 2000 ; 구만옥, 『朝鮮後期 科學思想史 研究(I)』, 혜안, 2004, 95쪽 ; 정재훈, 앞 책(2005), 260~262쪽

21) 『中宗實錄』 권92, 34년 10월 甲申,

22) 『中宗實錄』 권95, 36년 4월 戊午.

심 성패론에 따르면 국가와 사회의 실제 문제가 군주의 마음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은 어디까지나 주경과 공리를 통해서 삼강오상이나 인의예지와 같은 인륜·일용의 이치, 즉 사람이 사람으로 된 까닭(所以然之理)과 사람이면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준칙(所當然之則)에 따져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인간 마음 안에 있는 人欲의 私를 버리고 天理의 공으로 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다시말해 군주 역시 천리의 규제 아래 두고 군주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모든 현실 문제의 근원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sup>23)</sup> 이는 곧 『대학』의 학문론을 반복하는 것이면서도, 치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군주의 심성수양에 포섭해 들어가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생존 기묘사람들의 심성수양론 강조에서 비롯되는 군주일심성패론의 강조는 이른바 성인가학, 즉 성학에서 심성수양론의 성격을 강화시킨 것이었다. 성학이 곧 요·순·우·탕·문·무로 이어지는 16자 심법, 즉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하여 그 중을 잡아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의 전수과정을 의미한다. 16자 심법의 추구는 인심을 극복하고 도심이 주재하는 마음을 형성하여 일체의 행위를 도덕의식, 즉 인륜에 따라 행위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물론 이때 인륜이라는 것은 상하, 준비의 관계인 만큼, 인심을 따름으로 발생하는 신분질서의 혼란을 방지해야 함을 의미한다.<sup>24)</sup> 이는 곧 사회와 반정이라는 지배층 내부의 대립, 지주제 확대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문제를 인륜질서의 해이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지탱할 지배층의 마음공부에 대한 요구를 기묘사회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시켜나간 것이었다.

## 2. 『주자대전』 간행과 서간 중심의 교정

기묘사람들의 복관 이후 지배층의 마음 공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주

23) 金駿錫, 「宋時烈的 世道政治論과 賦稅制度釐正策」, 『朝鮮後期 政治思想史 研究』, 지식산업사, 2003, 251~260쪽.

24) 陳來 지음, 이종란 외 옮김, 앞 책(2002), 261~264쪽.

자의 심성수양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주자대전』 간행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안국이었다. 이 당시 『주자대전』 간행과 관련해서는 선조 대에 유희춘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종조의 명신인 김안국은 박학하고 고사를 잘 알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좋아하며 국사에 마음을 다하여 정신과 힘을 다했습니다. 일찍이 正德 무인년(1518)에 사신으로 북경에 갔을 때 『주자대전』과 『주자어류』, 『이락연원록』 등 여러 성리서들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중략) 돌아와서는 그 책들을 인출하자고 계청했었으나 시행에 이르지 못하고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람들이 몰락했습니다. 김안국도 19년 동안 쫓겨나 있다가 정유년(1537) 겨울에 이르러서 다시 서용되어 조정에 복귀한 후 교서관의 제조가 되자 마침내 이 책들을 인출하여 유포했습니다.<sup>25)</sup>

유희춘의 발언에 따르면 『주자대전』은 김안국에 의해서 1518(중종 13)에 중국에서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간행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기묘사화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537년(중종 32) 재서용된 후 교서관 제조가 되어 인출하기 시작해서 1543년 6월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당시 김안국이 『주자대전』 간행을 재추진한 것은 주자의 심성수양론에 대한 관심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자에 대한 관심은 기묘사화 이전에 『소학』에 담긴 인륜질서를 향촌 사회에 보급하기 위해 『주자중손여씨향약』을 언해하고 향약을 시행하는 것에 비롯되었다. 이때 그는 주자의 향정론 이면에 담긴 심성수양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그가 1518년(중종 13) 11월 북경에서 『주자대전』·『주자어류』와 함께 주자가 자신의 스승인 이통과 문답을 편집한 『연평답문』을 구해온 것을 통해 알 수 있다.<sup>26)</sup> 『연평답문』은 주자가 고심해온 마음의 특질과 수양의 방

25) 『宣祖實錄』 권8, 7년 4월 丁卯.

26) 김안국이 당시 도입한 서적으로는 『어맹혹문』, 『가례의절』, 『전도수언』, 『장자어록』, 『경학이굴』, 『연평답문』, 『호자지언』, 『고표정수』 등이 있다. 『中宗實錄』

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서적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또한 그는 1542년(중종 37) 인쇄할만한 책을 건의하면서 육구연의 『상산집』의 경우에는 심성의 학문을 강론하고 정자와 주자의 가르침을 숭상하는데 참고할 만하다는 이유로 간행할 것을 요청했다.<sup>28)</sup> 이는 생존 기묘사림들의 복관 이후에 분출된 『소학』과 향약 장려, 천거제 실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풍을 교정하고 군주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주자대전』 간행이 이루어진 정황을 반영한다.

이때 김안국은 명에서 賀沈·胡緝의 121권의 친순본 『晦庵先生朱子大全』을 저본으로 해서 목록 2권, 정집 100권, 속집 11권, 별집 10권으로 95책 123권으로 을해자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권수에는 胡緝의 重刊序와 王遂의 續集序, 黃鏞의 別集序가 수록되어 있다.<sup>29)</sup> 그리고 『주자대전』의 발간 부수는 정확하

권34, 13년 11월 戊午.

27) 『연평담문』에 대한 기왕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했다. 이봉규, 「『延平答問』 논의를 통해 본 퇴계학의 지평 - 동아시아 유학사의 맥락과 연관하여, 『동방학지』 144, 2008 ; 오세현, 「주희의 스승 이통을 바라보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선, 『한국사상사학』 58, 2018.

28) 『中宗實錄』 권98, 37년 5월 丁亥.

29) 『朱子大全』은 正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 遺集 2권, 附錄目錄 12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간행년대는 <표 2>와 같다.

<표 2> 남송말~명 중기 『주자대전』 간행 연보

간행년대	편자	책수	비고
1189년(純熙 16)	朱子自篇	前集 11권, 後集 18권	
1198년(慶元 4)	王峴	3권	
1212년(嘉定 5)	朱在(3남)編	88권	
1239년(嘉熙 3)	王埜	正集 100권	
1245년(淳祐 5)	王遂	正集 100권, 續集 10권	
1250년(淳祐 10)	徐幾	正集 100권, 續集 11권	
		正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	閩本
		正集 100권	浙本
1265년(咸淳 원년)	余師魯	正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	
1460년(天順 4)	賀沈·胡緝	正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	天順版
1532년(嘉靖 11)	張大輪·胡岳	正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	嘉靖版

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정부 좌참찬 권벌, 예문관 검열 박승임, 동부승지 권응정, 사간원 정언 민기문 등에게 내사본이 남아 있다.<sup>30)</sup> 김인후 역시 세자시강원 설서로 있으면서 세자인 인종에게 별도로 1부를 하사 받았다고 한다.<sup>31)</sup> 또한 『주자대전』의 간행과 함께 『주자어류』 역시 이 시기에 간행되었다.<sup>32)</sup> 다시말해 주자 사상의 정수가 담긴 『주자대전』·『주자어류』가 모두 간행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김안국본 『주자대전』 간행은 조선에서 주자 문집의 전면적인 확산을 유도했다. 주자의 문집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289년(충렬왕 15)에

\*김문식, 앞의 글(2007), 84~85쪽 ; 최채기, 앞의 논문(2014), 21쪽 ; 최경훈, 앞의 논문(2018), 13~17쪽.

그런데 김안국이 어떠한 판본을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김안국본 『주자대전』의 한 특징은 천순본 서문이 앞에 수록되어 있고, 10행 18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최채기는 민본의 10행 18字 체제를 따랐던 만큼, 민본을 저본으로 해서 천순본의 서명과 서문을 그대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한다(최채기, 앞의 논문(2014), 61쪽). 그에 비해 최경훈은 천순본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김안국본은 천순본을 저본으로 했을 것이라 했다. 그럼에도 천순본의 반엽이 11행 22자로 김안국본과 차이가 있는 만큼, 어떤 판본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최경훈, 앞의 논문(2018), 61쪽).

30) <표 3> 김안국본 『주자대전』 내사본

구분	소장처	권수	기 록
권벌 내사본	충재 권벌 종가	90책	二十二年六月日 內賜議政府左參贊權橙朱子大全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洪(手決)
박승임 내사본	고려대학교 민송문고 (민송 貴73A)	영본 2책	內賜藝文館檢閱朴承任 朱子大全一件除謝恩 都承旨臣洪(手決)
권응정 내사본	일본 蓬左文庫 (166-2)	95책 완질	嘉靖二十二年六月日 內賜承政院同副承旨權應挺朱子大全一件命除謝恩 都承旨臣洪(手決)
민기문 내사본	일본 궁내청 書陵府 (秘 404-73)	94책	嘉靖二十二年六月日 內賜司諫院正言閔起文朱子大全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洪(手決)

31) 『南溪集』 권81, 「弘文館副修撰贈史曹判書諡文靖河西先生金公行狀, “癸卯以博士兼侍講院說書 世子素聞 先生名 於是同德契合, 恩遇甚至, 或臨直廬問難從容而寵 且賜朱子大全一秩 諸寮名公莫敢望焉.”

32) 김문식, 앞의 논문(2011), 69쪽.

안향이 『주자문집』을 초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세종대인 1429년(세종 11)에 안동인 尹岵가 『주문공집』 32권을 진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종 10년 11월 홍문관 부제학 김근사의 건의에서 『주문공집』, 『주자어류』 등이 홍문관에도 유일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종이 김근사의 건의를 수용하여 도감을 설치하고 새롭게 병자자를 만들어 『주자어류』를 간행했으나,<sup>33)</sup> 『주자대전』의 간행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그러다 1543년(중종 37) 『주자대전』 전체가 간행된 것이었다.<sup>34)</sup> 그런까닭에 당시 『주자대전』을 하사받은 권벌은 (“『주자대전』이) 이때 비로소 중국으로부터 왔다”라고 하거나,<sup>35)</sup> 이항 역시도 김안국본을 통해서 비로소 『주자대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sup>36)</sup> 이 김안국본을 저본으로 해서 기대승의 『朱子文錄』과 이항의 『朱子書節要』 등이 간행되었다. 따라서 김안국본 『주자대전』 간행은 주자라는 인간과 사상에 대해 직접 주목하면서 성리학을 연구하는 경향을 확산시키는 주된 계기가 되었다.

다만, 당시 『주자대전』 간행은 보급과 간행이 중심이어서 치밀하게 교정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생존 기묘사립의 일원인 권벌의 교정 기록이 『冲齋集』 권2, 雜著 부분에 남아 있어 주목된다. 그는 1543년 6월에 중종으로부터 『주자대전』을 하사받고 그해 가을부터 이듬해인 1544년 봄까지 『주자대전』 교정에 착수했다.<sup>37)</sup> 이를 <표 1>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1516년(중종 11)에 동활자로 간행된 『주자어류』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일산貴1252-16)은 권23만 남아있는 落帙이며, 半郭 24.1cm×16.8cm에 12行 21字 註雙本으로 되어 있다. 김문식, 앞의 논문(2011) 68쪽.

34) 김문식, 2007, 앞의 글, 84~90쪽.

35) 『冲齋集』 권2, 雜著, 「朱子大全考疑」, “嘉靖癸卯六月 中廟宣賜朱子大全一帙 時大全書自上國始來 先生手自校正 逐卷有短識.”

36) 『退溪集』 권42, 序, “我中宗大王 命書館印出頒行 臣滉於是 始知有是書而求得之 猶未知其爲何等書也”

37) 『冲齋集年譜』, 「冲齋先生年譜」 二十二年癸卯 六月 宣賜朱子大全 ○八月 宣賜大學衍義 ○秋冬 考校朱子大全 ; 二十三年甲辰 春 考校朱子大全.

〈표 1〉 권별의 「주자대전고의」의 출전

순	원문/교정사항	『주자대전』		제목	수신인
		권차	편목		
1	今日季教授見訪 ○季 疑李	권37	書(問答論事)	答鄭景望書1	정경망
2	元豐大臣 當興共事 ○興 當作與	권31	書(汪張呂劉問答)	答張敬夫書13	장식
3	惡之所由消靡 ●靡 疑磨	권31	書(汪張呂劉問答)	答張敬夫書語解	장식
4	橫渠龍安衣冠事 ○安 疑女	권35	書(汪張呂劉問答)	答劉子澄書4	유자징
5	語錄北因再閱 ○北 當作比	권40	書(知舊門人問答)	答何叔京書4	하숙경
6	殊激儒衷 ○儒 恐懦	권36	書(陸陳辯答)	答陳同甫書6	진량
7	不合先寄陳葉二詩 陳止齋葉水心	권36	書(陸陳辯答)	答陳同甫書11	진량
8	伊川語云 侯師正議論 只好隔壁聽 ○正 當作聖	권30	書(汪張呂劉問答)	與張欽夫別紙	장식
9	來云又謂心無時不虛 熹知爲心之本體 ○云 疑當作書 知 疑當作以	권30	書(汪張呂劉問答)	答張欽夫書1	장식
10	降及後世 則心有以爲不可不辨者 ○心 當作必	권30	書(汪張呂劉問答)	與張欽夫論程集改字書	장식
11	豈離乎人物之所受 而別育全體哉? ○育 疑有	권30	書(汪張呂劉問答)	答張欽夫書3	장식
12	謙詆釋迦 ○謙 恐當作兼	권27	書(時事出處)	答詹帥書2	침의
13	協贊明主 ○協 當作協	권27	書(時事出處)	答尤延之書(戊申四月)	우연지
14	中也先考妣之藏 久未克識 ○未 當作未	권91	銘	金紫光祿大夫黃公墓銘	
15	公白之臺 毀林爲薪 ○林 當作材	권92	銘	岳州使君郭公墓銘	
16	文學議論有餘 文通當世之務 ○文通之文 疑又之誤	권81	跋	跋陳了翁與兄書	진료용
17	此問無曉飾相制度者 ○問 疑問	권34	書(汪張呂劉問答)	答呂伯恭書12	여조겸
18	欲興隆興刻板 ○上興 疑與	권34	書(汪張呂劉問答)	答呂伯恭23	여조겸
19	予重不來 ○予 疑子之誤	권34	書(汪張呂劉問答)	答呂伯恭43	여조겸
20	參同所亡甲乙庚辛 ○亡 疑云	권38	書(問答)	答袁機仲書11	원기중
21	唯昔治命 王公是託 ○王當作三	권87	祭文	祭胡籍溪文	호적계
22	孰能知君苦心刻意探討之勤 ○知 疑如	권87	祭文	祭柯國材文	가국재
23	當得有藝而有召者 ○召 疑名	권24	書(時事出處)	與鍾戶部論斷欠經總制錢書	중호부
24	州縣間 合行事 以不必聞之朝廷 ○以疑似	권24	書(時事出處)	與魏元履書1	위원리
25	外則夷虜憑陵 ○虜 當作虜	권28	書(時事出處)	與李誠父書	이성부
26	終不免彼此異同 ○被 恐彼	권26	書(時事出處)	與楊教授書	양원범
27	亟遣此人 專此布稟 ○遣 恐遣	권26	書(時事出處)	與臺端書	대단
28	娶陳氏子齋先生之兄孫 ○子 當作了	권97	行狀	承議郎羅公行狀	

※ 『沖齋集』 권2, 雜著(『文集叢刊』 19책 364면), 「朱子大全考疑」; 굵은 글씨는 『주자대전』 원문이다. ○·● 표시 다음은 교정내용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권별이 교정기를 남겨 놓은 부분은 총 28편으로, 이 중에서 22편이 서간이다. 서간을 『주자대전』 편목에 따라 분류하면 권 24~29 시사출처에서 7편, 권30~35 왕장여류문답에서 10편, 권36 육진변답에서 2편, 권37 문답논사 1편, 권38~39 문답 1편, 권40~64 지구문인문답에서 1편이다. 그가 교정을 가장 많이 본 부분은 주자가 학문적인 동질감을 견지한 汪應辰(1118~1176), 張栻(1133~1180), 呂祖謙(1137~1181), 劉清之(1134~1190)에게 보낸 서간이 수록된 왕장여류문답이다. 주자는 서간을 통해서 왕응진과는 불교에 대한 비판론을 전개했고, 장식과는 경 수양론에 대한 주요 논점을 논의했다. 여조결과는 『근사록』을, 유청지와는 『소학』을 공동작업했다.<sup>38)</sup> 말하자면 권별은 심성수양론의 정수로서 경 수양론의 특성과 그 핵심 텍스트로서 『소학』·『근사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자의 서간을 중시했다고 하겠다.<sup>39)</sup>

38) 이상호, 「주자서절요의 편찬이 퇴계학 성립에 미친 영향」, 『국학연구』 49, 2022, 101~103쪽.

39) 이와 관련해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문집 편찬자들의 구상과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해주셨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별의 『冲齋集』은 조선시대 총 네 차례 간행되었다. 초간본의 초본은 權濬과 權濡가 중심이 되어 1671년 三溪書院에서 2권 1책으로 간행되었다. 다만 현재 초간본은 전해지지 않고 1681년 허목이 쓴 「讀權忠定公逸稿」가 추가된 후쇄본만이 남아 있다. 그 후 1705년 李東完과 權斗經이 초간본에서 빠진 시문들을 모으고 〈交遊錄〉을 추가해서 중간본을 편찬했다. 1752년에 6대손 權萬의 뜻을 이어받은 權蕢이 주변 士人들과 李光庭의 협력을 통해 9권 5책으로 삼간본을 간행했다. 이는 현재 『韓國文集叢刊』 권19에 수록된 『충재집』의 저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간본은 1930년에 10권 6책으로 간행되었다(김기빈, 1991, 『충재집해제』, 한국고전종합 DB). 이 중에서 「주자대전고의」가 최초로 등장하는 판본은 1752년 삼간본이다. 그리고 삼간본의 〈冲齋先生文集年譜〉에는 그 이전의 〈연보〉 내용에 “(武宗正德) 二十二年癸卯 先生六十六歲 六月 宣賜朱子大全 ○八月 宣賜大學衍義 ○秋冬 考校朱子大全”, 즉 『주자대전』과 관련된 구절이 새롭게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주자대전고의」는 조선후기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권별의 후손과 그 주변 사인들의 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까닭에 우선 본고에서는 권별이 주자 서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 이야기한다.

이 점에서 권벌이 『주자대전』 교정을 보면서 보인 관심은 『소학』·『근사록』을 강조하던 기묘사림의 학풍 계승 문제와 연계되어 있었다. 그는 기묘사림들을 계승해서 『근사록』에 대한 짧은 해설인 〈近思錄考疑〉를 작성했다. 이때 그는 『근사록』 爲學에서 정호가 “蠱卦의 象은 군자가 보고서는 백성을 진작하고 덕을 기른다(振民育德)<sup>40)</sup>한 부분에 대해서 “백성을 진작하는 것(振民)은 『대학』의 新民에 해당하는 것이고, 育德은 『대학』의 明明德이다”라고 풀이했다.<sup>41)</sup> 또한 『근사록』 爲學에서 정이가 “옛날의 배우는 자들은 위기지학을 하여 그 종말에는 남을 이루어줌에 이르렀다”<sup>42)</sup>라는 구절을 “明德新민의 일”<sup>43)</sup>이라고 풀이했다. 정리하자면 군자의 일은 덕을 길러 천하의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으로,<sup>44)</sup> 자신을 함양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위기지학을 강조했다고 하겠다.

이는 곧 『소학』과 『대학』의 연관 관계를 긴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된다. 『소학』이 본원을 함양하는 과정이라면, 『대학』은 곧 치국평천하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권벌은 인심은 쉽게 내가 되기 마련이고, 공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에 근본해서 『대학』의 과정까지 관찰시킬 필요를 제시했다.<sup>45)</sup> 그리고 『소학』은 나무를 심을 때 뿌리를 북돋고, 건물을 세울 때 그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라 했다.<sup>46)</sup> 이 점에서 권벌의 『주자대전』

40) 『近思錄集解』 권2, 爲學, “先生曰 蠱之象 君子以 振民六德”

41) 『冲齋集』 권2, 雜著, 〈近思錄考疑〉, “先生曰蠱之象 君子以 振民育德 振民 大學之新民 育德 大學之明明德.”

42) 『近思錄集解』 권2, 爲學, “程子曰 古之學者爲己 其終至於成物”

43) 『冲齋集』 권2, 雜著, 〈近思錄考疑〉, “古之學者爲己 其終至於成物 此便是明明德新民之事也”

44) 『近思錄集解』 권2, 爲學, “朱子曰 振起聳動民觀聽 養育其德也 在己則養德 於天下則濟民 君子之所事 無大於此二者”

45) 『冲齋集』 권1, 〈善始善終策〉, “人心易私而難公 道心難明而易昧 … 大學誠意正心之要 又本於敬”

46) 『明宗實錄』 권1, 명종 즉위년 8월 辛丑. “知經筵事權撥曰 天地之間 人爲最靈 稟其純粹 然必由學問 而後可知古今之事義理之源 而處事應物 皆得其正也. 古之人 八歲入小學 而未見其所學之書 朱子始出之於禮記中 又集古人嘉言善行 以成其編 若力學

에 대한 관심은 기묘사림 이래의 성리학을 곧 위기지학으로 파악하면서, 그 기초로서 『소학』과 『대학』의 연계성을 모색하던 지향<sup>47)</sup>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권벌은 경을 통한 함양과 격물치지를 중시하는 서간을 교정했다. 주자가 유자징에게 이정 이하의 문인들 중에서 劉絢, 李籲, 游酢, 楊時의 학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주경과 치지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서간을 교정했다.<sup>48)</sup> 그리고 진량에게 『소학』을 통해 일용공부에 헌신하겠다고 한 서간을 교정보았다.<sup>49)</sup> 또한 장식에게 유자 학문의 요체로 공리를 제시하면서, 사사물물에 담겨 있는 이치를 분명하게 한 후에 각각의 준칙에 맞게 마음을 발동해야 한다는 서간을 교정했다.<sup>50)</sup> 그리고 불교에서 마음을 밝힌다는 설과 달리 유학의 마음은 羞惡·是非·辭讓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고 한 서간을 교정보았다.<sup>51)</sup> 정리하자면 권벌은 경을 통한 본원 함양 단계로서 경을, 치지의 단계로서 『대학』을 중시하면서, 불교와는 차별되는 유학의 심성수양론을 주자의 글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주자 서간을 통해 주자의 심성수양론 상 정론을 확인하고자 하는 입장은 이황으로 연결된다. 이황은 권벌의 소개로 김안국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언적의 「홍문관상소」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 후 이황은 『주자서절요』 편찬에서 보이듯이, 주자의 심성수양론 상 정론을 확정하고자 했다.<sup>52)</sup> 말하자면 이

則脫然貫通 如植木者培其根 建屋者固其基 凡於處事應物 何難之有

47) 정호훈은 기묘사림의 『소학』 증시문이 가진 특성으로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에 대한 구분, 그리고 『소학』 다음 단계로서 『대학』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호훈, 2014, 『조선의 『소학』』, 소명출판, 106~107쪽.

48) 『朱子大全』 권35, 書, 汪張呂劉問答, 〈答劉子澄書〉, “劉李游楊四公所到固未敢輕矣 … 大抵學問緊要是見處要得透徹 然不自主敬致知上著功夫 亦無入頭處也.”

49) 『朱子大全』 권36, 書, 陸陳辨答, 〈答陳同甫書〉, “只今日用工夫 養病之余 却且收拾身心 從事於古人所謂小學者 以補前日粗疎脫略之咎 蓋亦心庶幾焉 而力或有所未能也”

50) 『朱子大全』 권30, 書, 汪張呂劉問答, 〈答張欽夫書〉, “儒者之學 大要以窮理爲先 蓋凡一物有一理 須先明此 然後心之所發 輕重長短 各有準則.”

51) 『朱子大全』 권30, 書, 呂劉汪張問答, 〈答張欽夫書〉, “釋氏雖自謂惟明一心 然實不識心體 雖云心生萬法 而實心外有法 故無以立天下之大本 而內外之道不備 … 若聖門所謂心 則天序天秩天命天討 惻隱羞惡是非辭讓 莫不該備 而無心外之法”

시기 『주자대전』 간행과 교정은 주자의 1차 문헌을 통해 주자의 사상에 직접 접근해서 정론을 마련하고자 한 학문방법론 정립의 단초가 되었다.

### Ⅲ. 『소학』-『대학』 교육론의 강화와 주자의 서원론 활용

#### 1. 朱陸異論의 제기와 『소학』-『대학』 교육론의 강화

김안국의 『주자대전』 간행은 성리학 내부에서 여타 계열과는 다른 주자의 심성수양론이 가진 특색을 밝히고, 정론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풍을 확산시켰다. 이는 김안국이 『주자대전』 간행 직전인 1540년(중종 35) 10월 출제한 책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자에서 道學의 전함이 끊긴 후에 濂洛에서 다시 일어나 정이·정호가 그 근원을 열었고 주자가 그 전통을 이었다. 당시 배웠던 선비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찬란하게 드러난 자는 누구였는가? 학문이 치우치거나 편벽되거나 스승의 뜻을 잃어버린 자와 종통을 얻어 가장 폐단 없이 전한 자를 말하겠는가? 주자와 같은 시대에 나서 학문이 뛰어난 자가 또한 많은데, 그 중 주자와 같은 자는 누구이며 다른 자는 누구였는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의 실재를 지적하여 말할 수 있는가? 같은 것은 본디 의심할 것이 없지만 다른 것도 또한 취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비록 아는 것이 적고 우매하지만 君師의 책임을 맡아 학문을 일으키고 인재를 육성하여 세상의 학자로 하여금 편벽되고 치우치거나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없이 염락의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데, 그 방도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는가? 諸生이 각각 평소에 講하여 얻은 것을 篇에 쓰면 내 직접 열람하겠다.<sup>52)</sup>

52) 최민규, 「이황의 『주자서절요』 편찬과 사대부 성학론」, 『韓國思想史學』 74, 2023.

53) 『中宗實錄』 권94, 35년 10월 己未, “王若曰 道學自洙泗絕傳之後 復興於濂洛 二程發其源 紫陽紹其緒 當時從學之士 不爲不多 其章章尤著誰歟 學有偏係 失師之旨者

김안국은 공자에서 도학의 전수가 끊긴 후에 정이·정호를 거쳐 주자가 그 전통을 계승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 후 이정과 주자의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자, 스승과 달라진 자, 종통을 계승한 자를 찾을 것을 물었다. 그리고 주자와 같은 시대 학자들 중에서 주자의 사상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 인물, 그 사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가운데서, 다른 것 중에서 취할만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군주인 중종이 학문을 부흥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권면해야 할 정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김안국의 책제는 기묘사림의 복관 이후 확산되고 있었던 『소학』 강조 분위 속에서 士習을 바르게 하기 위한 교학 진흥책이 추진되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었다.<sup>54)</sup> 당시 김안국은 종래 잦은 과거 시행, 상별 위주의 관학 진흥책을 반대했다. 대신에 주자의 과거법에 의거해서 一經을 전습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해 경학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킬 것을 강조하거나,<sup>55)</sup> 덕업과 학술을 갖춘 사유를 선발함으로써 유생들을 권면할 것을 건의했다.<sup>56)</sup> 이와 같이 학술을 권면하여 관학 진흥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유생들의 교육에서 주자 학문의 전수과정과 정통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책제를 작성한 것이었다.

김안국의 책제에 대한 김인후의 답안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sup>57)</sup> 김인후는

與夫最得其宗而傳之無弊者 可歷言之歟 紫陽同時而出 以學名世者亦多 其學與紫陽同者誰 異者誰歟 其所以同 所以異者 可歷指其實而言之歟 其所以同者 固無可疑 而所以異者 亦無可取者耶 予雖寡昧 當君師之任 伊欲興學育材 使世之學者 無偏係異同之見 而一歸於濂洛之正 其道何由乎 諸生其各以平日講而有得者 著之于篇 予將親覽焉 ; 이 책제는 『慕齋集』 권10, 雜著, 策題에 수록되어 있다.

- 54) 신해순, 「중종~명종조의 교학진흥책」, 『史學研究』 58·59, 1999, 792~793쪽.  
 55) 『記言』別集 권26, 〈慕齋金先生行狀〉, “依朱子議 每式年 遞試一經 比中國專經之制 尤詳盡”  
 56) 『中宗實錄』 권91, 34년 8월 戊辰.  
 57) 현재 김인후의 대책문은 『河西先生全集』 권12, 策에 남아 있다. 『문과방목』에 따르면, 이때 김인후는 병과 3등으로 급제했다고 한다.

1519년(중종 14) 4월에 전라도 관찰사 겸 전주부윤으로 부임한 김안국에게 『소학』을 배웠다고 한다. 당시 김안국은 호남에서 『소학』과 향약 시행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sup>58)</sup> 그는 이미 과거 급제 이전부터 김안국과의 사승 관계를 매개로 해서 기묘사림의 후학으로서 자처했다. 그는 1543년(중종 38) 경연에서 기묘사림의 신원과 함께 소학과 향약의 장려를 주장하기도 했다.<sup>59)</sup> 또한 김인후는 인종에게서 『주자대전』을 내시받고 주자의 『대학경연강의』를 뽑아 작성했다. 그런 까닭에 김안국의 질문과 김인후의 대책은 기묘사림의 학풍 계승 노력과 『주자대전』 간행이 가지는 지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우선 김인후는 삼대 이상까지는 성인들이 도를 서로 주고받았으나, 주나라가 쇠한 후에 사문이 쇠퇴하고 공자가 등장해서 자사·맹자로 이어졌고 그러한 명맥이 한나라에서 끊어졌다고 했다. 그런 후에 주돈이·이정 형제를 거쳐서 양시·유작·사랑좌·여대림 등으로 계승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자의 언설을 근거로 해서 이들의 격물에 대한 설, 『중용』에 대한 설은 老佛의 성격을 면하지 못했고, 양시만이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 후 再傳해서 나중언과 이통을 얻어 주자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 후 주자 당대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장식과 여조겸이 주자와 함께 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조겸에 대해서는 사마천의 사기를 긍정하고, 육구연의 頓悟를 중시한 점을 지적했다.<sup>60)</sup>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김인후는 이정에서 나중언과 이통을 거쳐

58) 김인후와 기묘사림 간의 접점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참조했다. 김용근, 앞의 논문, 1994 ; 고영진 지음, 「河西學과 호남사림의 동향」,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59) 『中宗實錄』 권101, 38년 7월 乙丑.

60) 『河西全集』 권12, 「策」, “道學自洙泗絕傳之後 止所以異者亦無可取者歟 蓋自義農而下 三代而上 聖聖授受 同一心法 道明於上 而化行於下 人無不學 學無不正 周之衰也 政教陵夷 斯文將喪 吾夫子有德無位 誦書傳道 空言無施 思孟之沒 言隨以堙 學隨以絕 而漢氏以來 不復有真儒矣 濂溪周子 奮乎百代之下 默契道體 提綱啓鑰 河南二程氏 親受其說 而不傳之緒 得以復續 時則若楊 若游 若謝 若呂 蓋其高弟 而以子朱子之說考之 則格物之論 中庸之說 亦皆或流於支離 或滯於穿鑿 而終不免淫於老佛 求

주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긍정하면서, 주자 당대 육구연의 설에 대해 돈오와 유사하다는 견지에서 비판한 것이었다.

김인후가 육구연을 돈오로 비판하고 『소학』-『대학』 교육론을 심성수양론 상에서의 정론으로 바라보는 것은 주자와 육구연 간의 심성수양론 상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朱陸異論이 본격화되는 것과 연계된다. 주자 이후 남송대에 주자 학문이 가지고 있는 공리와 격물치지로 대표되는 도문학적 원리로 인해 성리학의 실천성이 상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마음에 담긴 도덕성을 체인하는 육구연식의 존덕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주자와 육구연 학설 상의 조화를 추구하거나 동일하다는 朱陸和解論, 朱陸折中論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원대 오징 등으로 연결되어 원 관학 성리학에 대비되는 성리학풍을 구성하고, 나아가서는 명대 양명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sup>61)</sup>

고려 말에는 정이·정호에서 주자로 이어지는 정주 도학을 정통으로 삼은 원 관학 성리학이 도입되었다. 그런 까닭에 권근의 『주역천견록』에서 보이듯이 오징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sup>62)</sup> 그럼에도 마음의 능동성·자율성을 긍정하면서 육구연의 견해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었다.<sup>63)</sup> 이러한 경향은 이언적과 조한보 간의 태극무극논쟁을 거치면서 주자 중심적인 입장 강화로 연결되었다. 다시말해 심성수양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론 상의 차이점을 변별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었다.<sup>64)</sup> 김인후는 주자가 있

其傳之無弊者 龜山差可擬焉 是以 再傳而得豫章 三傳而得延平 以及乎紫陽 則其流派之正 概可見矣 若其南軒之天資絕人 東萊之踐履篤實 蓋與紫陽同其趨者也”

61) 이범학, 「吳澄(1249~1333)思想研究序說－元代 理學과 吳澄－」, 『한국학논총』 30, 2008 ; 이범학, 2010, 「元代 吳澄의 心學과 王陽明의 「朱子晩年定論」」, 『한국학논총』 33.

62) 도현철, 「권근의 불교 비판과 권도 중시의 출처관」, 『한국사상사학』 19, 2002.

63) 김홍경, 『조선초기 관학파의 유학사상』, 한길사, 1996, 129~140쪽.

64) 이와 관련해서 정재훈은 양명학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학이 심학화되어 가던 분위기에서 朱·陸 사이의 논쟁으로 표현되어 본체에 관한 것이 주로 토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재훈, 앞의 책(2005), 201~202쪽.

있기 때문에 공자의 도가 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국에서 왕양명과 육구연의 학풍이 일어나서 정학으로서 주자학이 쇠퇴하고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sup>65)</sup> 이는 조선에서 육구연과 왕수인의 학문을 불교와 유사한 禪學으로 비판하는 것과 연계된다.

김인후는 육구연의 학문을 비판한 후 도심을 확충하는 경이 이치탐구인 궁리의 단계까지 관통됨을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군자는 함양하여 그 근본을 세우고, 窮理格物하여 쓰임(用)에 미처가게 한다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때 그 한 몸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마음이고, 그것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일은 리에 벗어나지 않고 그 리는 마음에 갖추어져 있기에 경은 그 마음을 보존하고 리를 밝히는 것이라 했다.<sup>66)</sup>

이는 『소학』-『대학』 교육론과 연결된다. 주자의 『소학』-『대학』 교육론은 『소학』 공부를 통해 인간에게 인륜으로 실현하도록 구비된 본원으로서 덕성을 함양하면서, 대학공부를 통해 치지의 과정을 통해 정미한 수행능력을 확보해가는 교육 과정의 객관화이다. 주자는 이러한 교육의 구도에 본원을 함양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대학 교육이 진행될 때, 口耳의 학문으로 유희되고,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사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염려했다. 그 치유책으로써 미성년의 단계에서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도리를 몸에 젖어들도록 함양시킴으로써, 대학의 단계에 진입하여 학문이 관념화되고 수단화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주자는 그 방

65) 『河西全集』 附錄 권4, 「年譜」, 二十六年 丁未, “詩曰 天地中間有二人 仲尼元氣紫陽眞 潛心勿向他岐惑 慰此摧頹一病身 先生蓋以書契以來 群聖立極 而及其衰也 無孔子則群聖之道不傳 孔子以後 群賢繼統 而及其晦也 無朱子則孔子之道不明 此孔朱二夫子之事業功烈 所以巍炳乎天地之間 而群聖群賢 無得以尙之”

66) 『河西全集』 권12, 「策」, “臣又聞 古之君子 莫不涵養以立其本 窮格以達其用 存諸中者有主 故應於外者無不通 以之而身可修 以之而家可齊 又推之以及於治 國平天下 無所往而不得其宜焉 然而其所以主宰乎一身者心 而所以能使之爲主宰者敬也 蓋事不外於理 而理實具於心 敬者 所以存心而明理也 故自下學之初 以至於爲聖爲賢”

락을 『소학』에 담아서 修齊治平을 수행하기 위한 본원을 함양시키는 실용의 학문으로 재정립한 것이었다.<sup>67)</sup>

실제로도 김인후는 『효경』·『소학』을 기초로 해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론적인 교육 과정을 중시했고,<sup>68)</sup> 제자 교육에 있어서도 『소학』을 읽고 난 후에 『대학』을 읽힘으로써 주자의 법대로 교육했다고 한다.<sup>69)</sup> 이를 통해 그는 인간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인륜의 도리를 수행하기 위한 성학의 방법론으로서 경의 자세를 확립하고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심성수양론의 정립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sup>70)</sup> 따라서 김인후의 대책문은 『소학』·『대학』 교육론을 주자의 정통론과 연결시켜 심성수양론 차원에서 성학을 형성하려는 흐름을 반영한 글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김인후는 『주자대전』 독서를 통해서 주자의 심성수양론을 기초로 한 정치론을 형성하고자 했다. 그는 세자였던 인종에게 『주자대전』 1질을 하사받아 『주자대전』 연구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는 1549년(명종 4)에 주자가 남송 영종(1194~1224) 대 경연에서 『대학』을 강론한 『주자대전』 권15 부분을 별도로 뽑아서, 『주자경연강의』를 간행하고 「대학강의발」을 작성했다. 그는 「대학강의발」에서 주자의 『대학강의』가 『소학』·『대학』 교육론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주된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그가 명덕의 공부로서 『대학』 교육을 정의하면서, 본원을 함양하여 이치를 궁구하는 근본이 경이고, 그 경은 주자의 『소학』에 담겨 있는 까닭에 반드시 『소학』부터 강해야 한다고 했다.<sup>71)</sup>

67) 이봉규, 「함양론과 교육과정으로 본 조선성리학의 개성」, 『퇴계학보』 128, 2010 114~116쪽.

68) 『河西全集』 권11, 〈孝經刊誤跋〉, “始刊其誤 而又嘗欲作此外傳矣 … 觀其輯小學書也 … 而進之大學 以發其義理”

69) 『河西全集』 附錄 권3, 〈年譜〉, 二十五年 丙午 夏六月孝經刊誤跋, “先生自歸家以後 專心講學 學徒聞風而至者 諄諄施教 必使先讀小學 次讀大學 一從朱文公成法 其教二子 亦以小學 至於十年之久 而不易他書”

70) 금장태, 「河西 金麟厚의 修養論」, 『河西 金麟厚의 思想和 文學 第二輯』, 河西紀念會, 2000.

71) 『河西全集』 권11, 〈大學講義跋〉, “涵養本原 致其精明 以爲窮理之本者 固不出乎敬

말하자면 치인의 단계로 설정되는 『대학』 역시도 본원 함양의 단계이자 거경을 추구하는 『소학』에 포섭될 수 있다는 『소학』-『대학』 단계론적 교육론을 강화하여 제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소학』-『대학』 교육론의 중시는 위기지학으로서 유학, 성리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sup>72)</sup> 위기지학은 『논어』 헌문에 “과거의 학자들은 자신을 위하고 지금의 학자들은 남을 위한다”는 언급에서부터 비롯되어 북송대에 들어서 유학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재차 확인되고, 주자는 유학 전반을 위기지학으로 해석했다. 그는 학문에 있어 자신을 위한다면 모두 진실된 것이고, 남을 위하게 된다면 남을 속이는 것인 만큼, 선이 사라지고 악이 자라난다고 했다. 그 까닭에 주자는 학문을 함에 천리와 사욕의 엄격한 준별을 위한 內外와 義利의 변별이 중요하다고 했다.<sup>73)</sup> 주자는 위기지학의 목표로 기질 변화를 통한 천리의 추구하고<sup>74)</sup> 그러한 천리에서 주어지는 효제로 대변되는 인륜의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익히는 문예의 학문은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위인지학이 되는 것이다.<sup>75)</sup> 말하자면 위기지학의 실현은 삼강오상, 즉 인륜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 문예교육과 결합된 과거의 학문을 이익을 탐하는 위인지학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때 위기지학의 핵심은 『소학』-『대학』에서부터 비롯되는 사서단계론적

之一字 而非夫子小學一書 無以持守堅定 以爲大學之根基”

72) 이 부분은 유권중, 2012, 「위기지학의 개념화 과정」, 『철학탐구』 32 ; 유권중, 2013, 앞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73) 『近思錄集解』 권2, 爲學, “古之學者爲己 欲得之於己也 今之學者爲人 欲見知於人也 說見論語 爲己者 如食之求飽 衣之求溫 溫飽在己 非爲人也 爲人者 但求在外之美觀 非關在我之實用 故學而爲己 則所得者皆實得 學而爲人 則雖或爲善 亦非誠心 況乎志存務外 自爲欺誑 善日消而惡日長矣 朱子曰 爲學 且須分內外義利 便是生死路頭”

74) 『近思錄集解』 권2, 爲學, “爲學大益 在自求變化氣質 不爾皆爲人之弊 卒無所發明 不得見聖人之奧所貴於學 正欲陶鎔氣質 矯正偏駁 不然則非爲己之學”

75) 『近思錄集解』 권6, 家道, “伊川先生曰 弟子之職 力有餘則學文 不修其職而先文 非爲己之學也”

인 교육이다. 주자에 의하면 위기지학의 교과서 체계는 크게 『소학』과 『근사록』, 그리고 『사서장구집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근사록』은 사서로 올라가는 사다리이고 사서는 육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서 이전에 『소학』 공부야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대학』을 통해서야 공부할 규모를 정립하고 『논어』를 통해서야 자신의 근본을 세우고, 다음으로는 『맹자』를 읽어서 그 기상을 살피고, 다음으로 『중용』을 통해 옛 사람의 미묘한 곳을 찾도록 함으로써,<sup>76)</sup> 그러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자신을 절실하게 다듬는 것(切己)이라고 했다.<sup>77)</sup> 말하자면 사서단계론적 교육은 사서육경을 관통하는 의리를 이해함으로써 성인과 같은 인격적 경지에 이르는 장기적 수양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 수양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사대부라면 누구든지 치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자 했다.<sup>78)</sup>

정리하자면 김인후의 활동은 『주자대전』 간행을 전후한 시기에 주자의 『소학』-『대학』 교육론 자체를 위기지학 그 자체로 이해하고 유학의 핵심이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15세기 후반 초기 사람들이 『소학』을 중시하여 순서와 단계를 뛰어넘는 교육, 즉躐等 경계론을 제시하고,<sup>79)</sup> 기묘사림의 단계에 이르러 성리학을 위기지학으로 이해하던 것을 교육과정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서 제시한 것이었다. 이는 곧 당시 도덕적 권위에 입각한 정치운영, 향촌 사회 운영 등을 지향하던 사림, 사족들이 『소학』을 근간으로 한 자신들의 학문을 위기지학으로 천명하고 과거제의 공리적 측면을 논박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었다.<sup>80)</sup> 그런 까닭

76) 『朱子語類』 권14, “某要人先讀大學以定其規模 次讀論語以立其根本 次讀孟子以觀其發越 次讀中庸以求古人之微妙處”

77) 『朱子語類』 권14, “先看大學 次語孟 次中庸 果然下工夫 句句字字 涵泳切己 看得透徹 一生受用不盡”

78) 민병희, 「『사서장구집주』와 사대부 사회의 변화」, 『역사학연구』 53, 2014.

79) 김훈식, 「朝鮮初期의 정치적 변화와 士林派의 등장」, 『한국학논집』 45, 2011, 40쪽.

80) 김정신, 앞 논문, 2018, 110~111쪽.

에 이 시기 『소학』-『대학』 교육론은 위기지학을 사회화하기 위한 실질의 방안 마련과 연결될 소지가 있었다고 하겠다.

## 2. 주자의 서원론 활용과 위기지학의 사회적 토대 마련

『주자대전』 간행은 새로운 도덕적 권위의 근간으로서 위기지학 논의를 사회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敎學機構로서 서원의 건립과도 연계되었다. 중종 대에는 관학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교학진흥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득강에 의해 서원 설치 건의로 이어졌다. 그리고 서원에 대한 관심은 『주자대전』 속 주자의 서원에 대한 기록을 통해 구체화되어, 1543년(중종 38)에 주세붕에 의한 백운동 서원 건립으로 이어지게 된다.<sup>81)</sup>

주세붕은 『주자대전』을 통해서 주자의 서원론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 『주자전서』를 보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웠는데, 신축년, 즉 1541년(중종 36)에 『주자대전』을 친구에게서 빌려보았다고 한다.<sup>82)</sup> 앞에서 보았듯이, 김안국의 『주자대전』 간행이 1543년(중종 38)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세붕은 이미 『주자대전』을 접하면서 주자의 서원 건립 과정, 그 특성에 대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sup>83)</sup>

81)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과 관련된 기왕의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고했다. 윤희면, 「백운동 서원의 설립과 풍기사람」, 『震檀學報』 49, 1980 ; 조준호,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初期 書院의 性格- 竹溪志, 迎鳳志, 吳山志를 中心으로-」, 『韓國學論叢』 33, 2010 ; 김자운,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58, 2014 ; 안다미, 「16~17세기 서원제도 보급 과정」, 『대동문화연구』 109, 2020 ; 임근실, 「16세기 서원지의 출현과 지식의 전개」, 『한국서원학보』 13, 2021.

82) 『武陵雜稿』 권8, 原集, 跋, 〈書晦庵學求聖賢鳶飛魚躍八大字後〉, “猶以未見全書爲恨 辛丑歲 始借得友人全書 今年 又得語類每盥手跪閱洋洋乎如侍几案 親承面教也”

83) 주세붕과 김안국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다만 주세붕은 경상감사 상진의 명으로 김안국의 동생인 김정국의 『성리대전서절요』에 대한 발문을 작성하기도 했다(『武陵雜稿』 권6, 別集, 序, 〈新刊性理節要序〉). 이 점을 미루어볼 때에 주세붕은 직접적인 교류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김안국·김정국 형제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이 점은 주세붕이 서원건립과 관련한 저항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드러난다. 그는 1541년(중종 36) 7월에 풍기 군수로 부임하여 1542년(중종 37) 백운동에 안향의 사당을 건립하고 나아가서 1543년(중종 38)에 안향의 사당 옆에 서원을 세웠다. 그가 서원을 건립할 당시 기근 상황 속에서 향교와는 다른 서원을 건립하려 한 점, 성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선이지 서원 건립과 행적을 본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점, 백운동서원을 건립하면서 조정에 아뢰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배향인인 안향의 학문에 관한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문점들은 종래 풍기 지역에서 사마소와 유향소, 서당 교육 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지방품관, 사람들의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84)</sup>

이와 관련해서 주세붕은 주자 서원론의 취지에 근거해서 서원 건립의 정당성을 제시했다. 그는 남송대에 금의 압박과 흉년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주자가 남강군지사로서 백록동서원을 건립한 이유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삼강과 구법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다. 그리고 교육은 현인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므로 사당을 세워 덕 있는 이를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히 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만큼, 교육은 기근을 막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고 했다. 그리고 안향의 마음 만큼은 주자의 마음과 동일하고, 그러한 주자의 학설은 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이정의 학문 요지인 위기지학에 있다고 했다.<sup>85)</sup> 정리하자면 주세붕은 자신의 건립이 주자 서원론의 요체인 수기·수양을 통해서 삼강오륜의 원칙을 익혀 남에게 혜택을 미치는 위기지학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표방했다.

---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84) 윤희면, 앞의 논문, 1980, 64쪽.

85) 『竹溪志』, 〈竹溪志序〉, “吾觀朱子之爲南康 一年之間 申修白鹿洞書院 … 三綱而九法 敦人之類滅久矣 夫教必自尊賢始 故於始 立廟而尙德 立院而敦學 誠以救急於已亂 救飢也 … 蓋公之學問 雖不及晦翁 其心則晦翁之心也 … 用寓公慕朱之意 其說皆爲己之學 實出於仲尼顏曾思孟兩程之要旨 而與後世爲人之學 其義利內外精粗本末 自有霄壤之判矣”

주자는 1179년 남강군지사로 부임한 이후 백록동서원을 중수하고, 「백록동규」를 통해서 서원 교육의 과제와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서원 교육의 목표로서 오륜을 제시하고, 이 오륜을 배우고 실현하는 순서와 방법으로서 공리와 力行의 학문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런 다음에 「白鹿洞規後敘」에서는 성현의 사람을 가르치고 학문하는 뜻으로서 의리를 강구하는 것을 통한 수신을 근본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남에게 미루어 나가서 치인을 실현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때 그는 사장으로 명성을 얻고 이익을 취하는 태도와 세속의 학문을 경계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학문에 뜻을 지닌 사대부들(有志之士)은 경전 속에 담긴 성현의 남을 가르치는 도리를 체득함으로써, 리의 당연함을 알고 스스로가 그 리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sup>86)</sup>

물론 기왕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주세붕의 서원 운영 실상은 주자의 취지와 달리 과거 준비와 국가 관리 양성을 위한 인재 양성소라는 관학적 기능에 충실한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주세붕은 사당을 세움으로써 덕을 숭상하고(立廟而尙德)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돈독히 할 수 있다(立院而敦學)라는 명분을 강조했다. 또한 생원·진사에게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면서도 과거 초시에 불합격했더라도 향학에 대한 의지가 있고 품행이 바른 유생을 가려 입학할 허용했다.<sup>87)</sup> 특히 입학자격은 주자가 백록동서원에서 과거 응시자를 받아들였던 것을 본받은 것이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주세붕은 과거 합격이라는 교육 효과를 높여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sup>88)</sup> 중국에는 인륜의 원칙을 토대로 향촌 사회를 교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결집처이자 교육장으로서 서원이 활성화되기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세붕은 자신의 서원 건립이 주자의 본의에 부합한다는 점

86) 주자의 「백록동규」에 담긴 서원교육론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했다. 금장태, 『『聖學十圖』와 퇴계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111~114쪽; 윤인숙, 『조선전기의 사림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5, 255~257쪽.

87) 『竹溪志』 권5, 雜錄後, 〈院規〉, “凡入院之士 司馬則如入大學 其次初試入格者 雖非入格 其一心向學有操行而願入者 有司稟于斯文而迎之”

88)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350쪽.

을 『죽계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권1에서 안향을 비롯한 안축, 안보 등의 행록을 만들고 난 후에 주자가 쓴 前賢의 묘정·堂室에 관한 기록을 취해서 「존현록」이라 제목을 붙이고, 학전과 장서에 관한 기록을 취해서 각각 「학전록」·「장서록」이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별도로 「잡록」을 만들어서 주자의 백록동서원의 고사와 시가 중에서 쇠퇴한 풍속을 투텁게 할 만한 것을 잡다하게 발췌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서원을 건립한 것이 주자의 취지에 부합하고, 나아가서 주자의 뜻이 학자들의 대법이 됨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했다.<sup>89)</sup>

이와 같이 주세붕은 주자의 서원 건립 의도에 충실하기 위해 「존현록」, 「학전록」, 「장서록」, 「잡록」 등에 『주자대전』에 나오는 주자 서원 관련 기록들을 수록했다. 이에 인용된 『주자대전』을 <표 2>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90)</sup>

<표 2> 『죽계지』 수록 주자 서원 관련 기록들

구분	주자 서원 관련 기록들(『주자대전』 권수)
권2 尊賢錄	徽州婺源縣學三先生祠(권79), 韶州州學濂溪先生祠記(권79), 德安府應城縣上蔡謝先生祠記(권80), 黃州州學二程先生祠記(권80), 建寧府學遊御史祠記(권77), 建寧府崇安縣學二公祠記(권77), 景行堂記(권79), 江州重建濂溪先生書堂記(권78), 袁州州學三先生祠記(권78), 壯節亭記(권80), 冰玉堂記(권80), 祭屯田劉居士墓文(권80), 名堂室記(권80), 克齋記(권77)
권3 學田錄	建寧府崇安縣學田記(권79), 衡州石鼓書院記(권79), 玉山劉氏義學記(권80)

89) 『竹溪志』 권1, 行錄後, <答黃仲舉書>, “既爲安氏行錄 猶慮傍人之吹毛焉 則又取朱子之記前賢廟亭堂室者 目之曰尊賢錄 記學田及藏書者 目之曰學田錄藏書錄 又爲之雜錄 凡朱子白鹿故事及其平生吟詠與夫嘉言之可以敦厲衰俗者 雜拈而錄之 以見今之所以爲廟院爲學田爲藏書者 無非出於朱子之所向 而其所言又皆爲萬世學者之大法也”

90) 옥영정에 따르면 현재 『죽계지』는 6권 3책본과 3권 1책본, 5권 1책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6권 3책본이 16세기 초기 간본의 특성을 띄고 있고, 영남대, 고려대 민송문고에 남아 있다고 한다(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板本에 관한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31, 2005, 311~312쪽).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 민송문고본을 바탕으로 소수박물관에서 국역한 『죽계지』를 바탕으로 작성했다(안정, 「해제」, 『국역 죽계지』, 소수박물관, 2009, 19쪽).

권4 藏書錄	徽州婺源縣學藏書記, 建寧府建陽縣學藏書記(이상 권78), 同安縣學經史閣上樑文(권80), 刊四經成告先聖文(권86), 跋白鹿洞所藏漢書(권81),
권5 雜錄	白鹿洞牒(권99), 申修白鹿洞書院狀(권20), 白鹿洞成告先聖文, 白鹿洞成告先師文(이상 권86), 跋金谿陸主簿白鹿洞書堂講義後(권81), 白鹿洞書堂策問(권74), 答白鹿長貳(권52), 白鹿洞賦(권1), 講座銘, 西齋銘, 又四齋銘, 學古齋銘, 尊德性齋銘, 敬恕齋銘, 敬恕齋銘, 劉屏山復齋蒙齋二琴銘, 黃子厚琴銘, 紫陽琴銘, 窓銘, 寫照銘, 藏書閣書廚子號銘, 敬齋箴, 調息箴, 六先生畫像贊, 張敬夫畫像讚, 呂伯恭畫像讚, 陳明仲畫像讚, 程正思畫像讚, 書畫像自警, 復卦贊(이상 권85), 尋白鹿洞故址愛其幽邃議復興建感歎, 有作(이상 권7), 和子澄白鹿之句, 次韻四十叔父白鹿之作(이상 권6), 奉酬敬夫, 齋居感興二十首(이상 권5), 詠開窓(이상 권10), 克己, 觀書有感(이상 권2), 春日, 啓蒙(이상 권9), 白鹿洞書院揭示, 滄洲精舍論學者, 又論學者(이상 권74), 小學題辭(권76), 答蔡季通『續集』 권2), 晦庵八大字, 朱子語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주세붕은 晦庵八大字와 朱子語錄을 제외하고 『주자대전』에서 총 58편의 글을 발췌하여 수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주자의 서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논설의 성격에 대해 주세붕은 私慾을 몰아내고 正理를 보존하고 斯道를 붙들고 異端을 물리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점에서 『죽계지』를 주자 서원 운영의 실상을 확인하고 서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종합적인 서적으로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sup>91)</sup>

권2 「존현록」에는 주자가 지은 송대 유학자들의 사당 기문, 정자와 堂室에 대한 기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때 그가 수록한 글에서는 주돈이, 정이·정호, 謝良佐, 劉黻와 같이 성리학의 도통을 계승한 인물들과 정문 제자들, 그리고 지역의 수령, 명사들을 배향한 사당 기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기왕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尊賢이라는 취지 아래 안향을 사묘에 배향해야 하는 정당성을 마련한 것이자, 동시에 사묘를 통해 유생의 교화를 중시하고 서원은 그 부속건물로서 독서와 서적의 보관을 위한 장소로 여긴 서원관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다.<sup>92)</sup> 또한 주자가 齊安의 이정 사당,<sup>93)</sup> 건녕부 승안에 조변과 호안국 사당이 건립된 이유<sup>94)</sup>로 그 지역 출신임을 강조한 글들 수록

91) 『竹溪志』 권1, 行錄後, 〈答黃仲學書〉.  
 92) 정만조, 1997,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93) 『竹溪志』 권2, 尊賢錄, 〈黃州州學二程先生祠記〉  
 94) 『竹溪志』 권2, 尊賢錄, 〈建寧府崇安二公祠記〉

하여, 사당 건립에 있어 지역적 연고성을 중시하는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붕은 주자의 사당기를 통해서 유생들이 본받아야 할 학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주자의 사당 건립 노력에서 주돈이와 이정 관련된 글들을 다수 수록했다. 주돈이와 이정을 배향한 삼선생의 사당과 관련된 기문을 2편, 주돈이 단독은 2편, 이정 형제 단독은 2편을 수록했다. 이러한 글들에 따르면, 주돈이는 「태극도설」을 통해 공맹을 계승해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극복하는 수기치인의 방안이 마련됐고, 정이·정호 형제는 그것을 이어받아 요순의 군주와 백성을 만드는 방법을 확립했다고 한다.<sup>95)</sup> 말하자면 주세붕은 서원의 학생들이 도학의 정통으로서 「태극도설」에 반영되어 있는 리 중심의 사유를 익히고, 리가 보증하는 인륜질서를 익힐 것을 말했다. 이는 이 시기 태극과 무극 등 리에 대한 이론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그 절대성을 고양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지향<sup>96)</sup>을 주자의 구체적인 사회활동과 연계시켜 이해하고자 한 것이었다.

권3 「학전록」에는 주자가 관여한 송대 학교 건립과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된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 「학전록」 속에는 지방관들이 사찰의 토지를 회수하거나, 혹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학교의 학생들이 재원을 마련한 사례들을 수록하고 있다.<sup>97)</sup> 그러면서도 그는 「학전록」 말미의 발문에서 풍기 진사 황빈이 곡식을 기진하여 제향 시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이에 대해 주자 당대에 송안과 옥산 등에 현학과 의학이 건립될 당시에 협조한 조씨와 유씨의 취지와 동일하다고 평가했다.<sup>98)</sup> 이는 곧 주세붕이

95) 『竹溪志』 권4, 尊賢錄, 〈徽州婺源縣學三先生祠〉; 『竹溪志』 권4, 尊賢錄, 〈袁州州學三先生祠記〉

96) 김정신은 사람 계열의 사상적 지향의 특색으로서 리 중심의 사유 강조를 제시하고 있다. 김정신, 「조선전기 훈구·사림의 정치사상 비교」,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97) 『竹溪志』 권3, 學田錄, 〈建寧府崇安縣學田記文〉; 『竹溪志』 권3, 學田錄, 〈衡州石鼓書院記〉, 『竹溪志』 권3, 學田錄, 〈玉山劉氏義學記〉.

98) 『竹溪志』 권4, 學田錄, 〈竹溪志學田錄跋〉.

수령 7사 중 하나인 흥학 방안으로서 서원 건립을 구상하면서,<sup>99)</sup> 주자가 관이 주도하되 민간의 협조를 구한 모델을 이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00)</sup>

권4 「장서록」에는 주자가 현학의 장서현황에 대해 기록한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때 수록된 글들은 과거 공부를 지양하는 책들이 학교에 수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01)</sup> 실제로도 주세붕은 백운동 서원을 창건하면서 사서오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대학연의』, 『통감강목』 및 儒道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책들을 수장하고자 했다고 한다.<sup>102)</sup> 이 중에서 『주자대전』의 경우에는 비록 전집을 완비하지 못하고 70여권만을 갖추는데 그쳤지만, 주자와 관련된 지식을 지방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sup>103)</sup>

권5 「잡록」에는 주자가 창건한 백록동서원에 관한 기록과 함께 주자의 심성수양론과 관련된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자의 서원론에 담긴 핵심 방법론으로 위기지학을 천명하고 경을 통한 본원의 함양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점은 수록하고 있는 주자의 잡들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學古齋銘」에서는 위기지학의 핵심으로 군신 간의 의, 부자 간의 인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sup>104)</sup> 그리고 「敬齋箴」, 「求放心齋銘」, 「尊德性齋銘」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잡들은 모두 『심경』에 수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심경부주』에서는 그 취지에 대해 경을 통한 본원 함양을 통한 심성수양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sup>105)</sup> 말하자면 주세붕은 『심경』과 『심경부주』에 반영되어 있는 경을 통한 본원 함양의 문제를 기초로 『주자대전』 속에서 서원 교육

99)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29~30쪽.

100) 정순목은 주자의 서원 건립에 대해서 民辦官助·官昌民助가 특색이라고 평가했다. 丁淳睦 著, 1990, 『中國書院制度』, 文音社, 51쪽.

101) 『竹溪志』 권4, 藏書錄, 〈建寧府建陽縣學校藏書記〉.

102) 『武陵雜稿』 권5, 〈與安牧使瑋書〉.

103) 『竹溪志』 권4, 〈白雲洞書院藏書錄〉.

104) 『竹溪志』 권5, 雜錄, 〈學古齋銘〉.

105) 『心經附註』 序, “學者須是將敬以直內涵養 直內是本 朱子亦曰 程先生 有功於後學 最是敬之一字 敬者 聖學始終之要也”

과 관련된 기록들을 수록한 것이었다.<sup>106)</sup>

정리하자면 주세붕은 『죽계지』에서 『주자대전』 속에 수록된 위기지학의 장소로서 서원의 이념과 관련된 사항 등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세붕의 『죽계지』에 대해서 주자의 서원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황의 제자인 황준량은 『죽계지』에서 안씨의 사적과 『주자대전』 중의 명언을 분리해서, 후자를 朱書로 구분해서 수록해야 한다고 했다.<sup>107)</sup> 이는 곧 주세붕이 주자의 서원론에 충실한 입장을 표방했음에도, 서원을 사묘에 부수적인 독서처로 간주하고 과거공부를 위한 장소로 활용<sup>108)</sup>되어 주자의 이념과 괴리될 수 있음을 비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죽계지』는 주자 서원론의 본령으로 위기지학론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V. 맺음말

본고는 종종 후반기 『주자대전』 간행의 지적 배경과 그 영향을 기묘사회 이후 생존 기묘사림들의 마음공부론에 대한 관심 고조, 격군의 이론으로서 군주일심성패론의 확산, 그리고 위기지학의 이념으로서 『소학』-『대학』론이 확립되고 그것의 사회적 실현장으로서 서원의 확립을 확인하고자 했다.

106) 다만 주세붕의 『심경』 탐구, 경 수양론에 대한 세밀한 천착은 필요하다. 기왕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주세붕은 『심경』을 토대로 해서 『심도』를 편찬했다. 그는 『심도』를 편찬하면서 경 수양 중심으로 『심경』을 파악하기보다는 일종의 교화서로 이해하고 왕도론이나 치용론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제왕학 교재로 편찬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그의 백운동서원 역시 관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정순우, 「주세붕의 『心圖』 편찬과 그 사상사적 의미」, 『퇴계학보』 123, 2008 ; 김자운, 앞의 논문(2014), 341~342쪽.

107) 『竹溪志』 권1, 行錄後. 〈附黃學正俊良書〉.

108) 정만조 저, 앞의 책(1997), 32쪽.

기묘사화 이후 생존 기묘사림들은 위기지학을 자신들의 학문적 본령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기반으로 심성수양론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김안국이 정민정의 『심경부주』를 검토하거나 박상과 김세필에 의한 『전습록』의 검토가 그것이다. 이들은 마음이 가진 도심과 인심의 분열상에 주목하면서, 인심을 극복하고 도심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론적 천착을 가했던 것이었다. 이러한 심성수양론에 대한 검토는 생존 기묘사림들의 복관 이후 이언적의 「일강십목소」, 「홍문관상소」을 통해 군주일심성패론적인 사유를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군주 일심 성패적 인식의 강화는 성학론에 있어 주자의 체계에 입각한 심성수양론적 의미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주자의 사상 체계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를 낳았다.

주자의 사상체계 전반에 대한 관심은 1543년 김안국 주도의 『주자대전』 간행으로 이어진다. 그는 복관 이후 기묘사화 이전의 현량과, 향약의 시행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배층의 심성 수양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자대전』의 간행을 추진했다. 이때 『주자대전』과 『주자어류』가 모두 간행됨에 따라 조선에서는 주자의 1차 문헌을 통해서 주자의 사상과 학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전이 마련되었다. 당시 『주자대전』을 하사받은 권벌은 주자의 서간을 중심으로 교정을 실시했다. 권벌은 주자의 서간 중에서 경 수양론과 『근사록』·『소학』을 중시하는 내용이 담긴 「여류양장문답」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정을 보았다. 이와 같은 권벌의 교정 기록은 주자의 심성수양론 상 정론을 확인하고자 하는 당시 『주자대전』 주도층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주자대전』 간행이 미친 지적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김안국의 책제와 그에 대한 김인후의 답변이 주목된다. 김인후는 이정에서 나중언과 이통을 거쳐 주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중시하고, 육구연의 학문에 대해 돈오의 설이라고 비판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마음공부를 중시하면서 경 공부가 이치탐구인 궁리의 단계까지 관철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소학』-『대학』 교육론이 바른 공부 방법임을 제시했다. 이후 김인후는 『주

『주자대전』에서 주자가 남송 영종에게 『대학』을 진강한 부분만을 별도로 뽑은 『주자대학강의』를 편찬했다. 그는 『주자대학강의』에서 리 본위론을 근간으로 해서 『소학』의 본원 함양론과 『대학』의 치인론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주자대전』의 간행은 심성수양론에서 주자와 육구연 간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위기지학의 성취를 위한 방안으로 『소학』-『대학』 교육론이 확고하게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위기지학의 실현 기반으로서 주자 서원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간다. 이는 구체적으로 주세붕의 『죽계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주세붕은 백운동 서원을 창립하면서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모범으로 삼았고, 『주자대전』에서 서원과 관련된 기록들을 풍부하게 채록하여 작성했다. 주세붕은 권2 「존현록」에서 유생들이 주돈이에서 정호·정이를 거쳐 주자로 이어지는 『태극도설』을 중심으로 한 학술을 정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권3 「학전록」에서 주자가 서원을 건립하면서 관이 주도하되 민간의 협조를 구한 모델을 이상시한 점, 권4 「장서록」에서 서원 장서의 기준으로 위기지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서적들을 비치해야 한다는 점, 권 5 「잡록」에서는 백록동서원과 관련한 첩, 상, 부, 잡, 시 등을 수록하면서 사대부들의 교화를 위한 학문방법론으로 위기지학, 구방심, 경 등과 관련된 언설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주세붕의 서원론은 외면적으로는 주자의 서원론을 따르면서 실제 운영 상으로는 과거 응시를 위한 서원을 지향했다고 비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계지』는 당시로서는 주자 서원론과 관련된 총괄적인 서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종종 후반기 『주자대전』 간행은 위기지학으로서 성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주자 심성 수양론의 요체로서 『소학』-『대학』 교육론이 재차 확인되고, 나아가서는 그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공간인 서원의 건립과 연결되었다. 이는 곧 16세기 지주전호제의 확산, 사회와 반정이라는 현실문제를 마음과 인성 문제로 해결하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

## 【참고문헌】

### 1. 원전

『中宗實錄』, 『明宗實錄』, 『朱子大全』, 『慕齋集』, 『河西全書』, 『竹溪志』, 『心經附註』, 『近思錄集解』

### 2. 논저

구만옥, 『朝鮮後期 科學思想史 研究(I)』, 혜안, 2004.

윤남한, 『朝鮮時代의 陽明學研究』, 集文堂, 1982.

윤인숙, 『조선 전기의 사람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5.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 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김장태, 「河西 金麟厚의 修養論」, 『河西 金麟厚의 思想과 文學 第二輯』, 財團法人 河西紀念會, 2000.

고영진 지음, 「河西學과 호남사림의 동향」,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김문식, 「조선본 『주자대전』의 간행과 활용」,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

김문식, 「조선본 『朱子語類』의 간행과 활용」, 『史學志』 43, 2011.

김자운,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58, 2014.

김용흠, 「조선전기 勳舊·士林의 갈등과 그 政治思想的 含意」, 『조선 건국과 경국대 전체제의 형성』, 혜안, 2004.

김정신, 「朝鮮前期 士林의 ‘公’ 인식과 君臣共治論- 조광조, 이언적의 학문정치론-」, 『學林』 21, 2000.

김정신, 「16세기 朝鮮의 朱子學 鄉政論 수용과 鄉約- 鄉約의 시행방식과 성격의 分岐를 중심으로-」, 『東方學志』 185, 2018.

김항수, 「16세기 사림의 성리학 이해」, 『韓國史論』 7, 1981.

유권중, 「朱熹의 爲己之學 고찰」, 『철학탐구』 33, 2013.

윤희면, 「백운동 서원의 설립과 풍기사림」, 『震檀學報』 49, 1980.

- 이봉규, 『『심경부주』에 대한 조선성리학의 대응 : 이황과 송시열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12, 1995.
- 이봉규, 「“격군심(格君心)”과 조선의 문치」, 『東方學志』 193, 2020.
- 임근실, 「16세기 서원지의 출현과 지식의 전개」, 『한국서원학보』 13, 2021.
- 신향림, 「16C 전반 양명학의 전래와 수용에 관한 고찰-김세필, 홍인우, 노수신의 양명학 수용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15, 2005.
- 조준호, 「書院志 分析을 통해 본 초기 서원의 성격-죽계지, 영봉지, 오산지를 중심으로-」, 『韓國學論叢』 33, 2010.
- 정두영, 「朝鮮後期 陽明學의 受容과 政治論」,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정만조, 「조선중기 유학의 계보와 봉당정치에의 전개(1)」, 『조선시대사학보』 17, 2001.
- 정순우, 「주세붕의 『心圖』 편찬과 그 사상사적 의미」, 『퇴계학보』 123, 2008.
- 정재훈,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학문과 사상」, 『大丘史學』 149, 2022.
- 지두환, 「16세기 시대적 과제와 율곡의 대응」, 『韓國文化와 思想』 43, 2008.
- 최경훈, 「조선시대 『주자대전』의 간행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76, 2018.
- 최채기, 「한국에서 주자문집 수용 방식」, 『書誌學研究』 60, 2014.
- 미우라 쿠니오 지음, 김영식·이승연 옮김, 『인간 주자』, 창작과 비평사, 1996.
- Wm. 시어도어 드 배리 지음, 표정훈 옮김, 『중국의 '자유' 전통』, 도서출판 이산, 1998.

Abstract

Publication of Juja Daejeon in the Second Half  
of King Jungjong's reign and the theory  
of Juja's Seowon

Choi, min-gyu\*

This paper explores the intellectual background and impact of the publication of Juja Daejeon in the second half of King Jungjong's reign, and further confirms the process of drawing attention to Juja's seowon theory.

To this end, first of all,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ange folk who survived after the strange painting conducted a theoretical inquiry into their own studies as their own academic spirit and the process of expanding interest in the theory of spiritual cultivation. Next, the view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politics is determined by the will of the monarch was expanded, and in the process, it was examined that Kim An-guk's publication of the Juja Daejeon was made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interest in the Juja's academic and political theories. At this time, the interest in the Juja Daejeon was intended to strengthen Daehak's status as a whole stage through the Juja letter, as can be seen through the correctional text of Kwonbeol.

Before and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Juja Daejeon, the academic differences between Juja and Yuk Gu-yeon were clearly recognized, and interest in Sohak-Daehak education theory expanded as a way to achieve the critical geography. This interest in the study of Juja led to the establishment

---

\* Lectur, Yonsei University, mingyui@daum.net

of the seowon. In the early days, Joo Se-bung's ideology of Baekwoon-dong Seowon, which can be said to be a seowon, was reflected in Jukgyeji. The records of the Juja Seowon contained in the Juja Daejeon are reflected in the Jukgyeji. Its characteristics include the content of establishing the succession relationship of the province from Judon to Juja around Taegeukdoseol,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eowon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the crackdown on the disturbed mind as an academic methodology for intellectual education. At that time, Baekwoon-dong Seowon was not thorough in the theory of Juja's seowon, bu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stablished the role and status of the seowon as the basis for the social spread of his own studies.

In other words, the publication of Juja Daejeon in the late Jungjong period was to reconfirm the Sohak-Daehak education theory as the essence of the Juja-Sungyang theory, and furthermore, to prepare for the founding of Seowon as a social space to realize it.

Key word : self-discipline, a theory of the mind of a monarch, Juja Daejeon, Sohak-Daehak education, the theory of Juja's seowon

논문 투고일: 2024. 11. 20 심사 완료일: 2024. 12. 10 게재 확정일: 2024. 12. 13

# 숙종-영조대의 서원·사우 휘철

홍제연\*·고수연\*\*

- I. 머리말
- II. 갑오정식의 제정과 숙종대 서원·사우 휘철
- III. 영조대 서원·사우 휘철의 추이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시대 書院 휘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종대 흥선대원군의 서원 휘철 논의와 전개에 대하여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각 도 관찰사가 대상 서원을 조사하고 예조와 국왕이 결정하여 대거 휘철이 이루어진 것은 숙종대가 처음이었고, 영조대에는 더 큰 규모의 휘철이 있었다. 숙종대와 영조대 서원휘철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소략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종대와 다른 숙종과 영조대의 서원 금령과 휘철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1600년대 초부터 서원은 당파의 지방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인조-효종대에 서원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강력한 서원 통제책은 숙종대에 본격화되었는데, 숙종은 甲午定식을 마련하고, 우선 1714년(숙종 40) 평안도의 서원을 휘철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휘철이 진행되지 않자 1717년 예조판서 민진후 건의로 갑오정식을 재천명하였다. 그 후 계미년(1703년) 이후 허가없이 창건된 서원을 기준으로 1717년 1개도, 1719년 3개도의 해당 서원이 추가로 휘철되었다. 다만, 휘철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노론계 서원이 존치되는 등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다.

서원 금령과 휘철이 실효를 거둔 것은 영조대에 이르러서였다. 봉당의 폐해가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위원

\*\*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부교수

서원 문제와 연결된다는 인식 아래 영조의 서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탕평정국에서 관료사회의 반발도 약화된 상태였다. 강한 금령의 시작은 1738년(영조 14)에 병조판서 박문수가 경상도 안동에서 벌어진 서원을 둘러싼 향전을 알리면서 부터였다. 영조는 이 사건을 빌미로 전국의 서원에 대한 통제를 도모하였다. 먼저 영조 즉위 이후 1738년까지 창건된 도별 서원·사우를 조사하고, 1741년에는 금령의 기준을 숙종 갑오년(1714) 이후로 확정하여 189개소의 서원·사우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창건 시기의 관찰사와 수령, 그리고 주도한 유생들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마련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혔다. 영조대 1741년의 서원 훼철령으로 전국적으로 남설되었던 서원은 일부 정리될 수 있었다.

인조대부터 시작된 서원의 폐단에 관한 논란은 당쟁과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보편타당한 제한 조치가 실행되기 어려웠다. 통제책이 본격화 된 숙종대에도 서안·노론계가 주도한 서원 금령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숙종대 甲午定式은 서원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후 금령의 명확한 근거가 되었다. 영조는 탕평정국을 전개하며 서원 금령을 재정립하고, 1741년 신유대훈과 같은 시기에 서원 훼철령을 내림으로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주제어 : 서원, 사우, 향현사, 영당, 생사당, 갑오정식, 서원금령, 서원훼철, 숙종, 경종, 영조, 민진후, 박문수

## I. 머리말

조선시대 書院은 학문연구와 先賢祭享을 위하여 士族에 의해 지역에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이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지역 사족의 활동과 성격을 대표하는 기구로 존재하다가 고종대 대원군의 서원 훼철을 계기로 역사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서게 된다. 따라서 조선시대 서원 훼철과 관련하여는 주로 고종대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의 논의와 전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sup>1)</sup> 그리고 고종 이전의 훼철 논의라든가 고종대의 서원

1) 김대식, 「고종대 萬東廟와 書院 훼철 논의의 전개」, 『교육사상연구』 30, 2016 ;

휘철령 이후 변화 및 복설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그러나 본격적인 서원 휘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숙종대와 영조대 서원 휘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략한 편이다. 특히 숙종대 서원 휘철에 대하여는 단독 선행연구가 전무하다. 다만 정만조의 「조선후기의 대서원 시책」(1984)에 “1714년(숙종 40) 7월 평안도의 查狀이 올라왔을 때, 하나하나 심의하여 箕子書院 3개소만 남기고 일체 휘철하게 하였다. 이를 ‘甲午定式’이라 한다. 이후 병신처분으로 조사가 한때 중단되었다가, 숙종 43년(1717) 10월 예조판서 민진후의 재촉으로 갑오정식 재천명되면서 제도의 사건명단이 보고되어 주로 왕과 민진후 사이의 심의에 따라 휘치가 결정되었다.”라고 언급되었을뿐 구체적인 휘철시기와 휘철서원 현황 및 성격에 대한 설명은 없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조대 서원 휘철에 대한 단독 연구 역시 「영조 17년의 사원휘철」(정만조, 1987)이 유일하다.<sup>3)</sup> 정만조는 이 논문에서 영조초의 사원대책과 사원휘철 과정을 다루면서 결국 영조 17년의 서원휘철이 탕평론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원휘철 논의는 효종대에 시작되어 숙종·경종·영조조에 이르러도 계속되었고, 그 시기마다 휘철 논의를 주장한 인물과 그 배경이 다르며, 그 논의에 대한 조정의 대책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숙종대 갑오정식

김세윤, 「대원군의 서원 휘철에 대한 일고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박진효, 「홍선대원군의 書院정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안다미, 「私設 논의를 통해 본 서원철폐령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7, 2021 ; 우용재, 「大院君 執政期の 書院撤廢와 成均館 整備計劃」, 『교육사학연구』 2-3, 1990 ; 윤희면,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0, 1999.

2) 김대식, 2014, 「조선 書院 휘철 논의의 전개-인조부터 정조까지」, 『교육사학연구』 24권 1호 ; 이병훈, 「19세기 말 서원 휘철령 이후 대응과 변화-秋溪秋氏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84, 2023 ; 정만조, 「조선후기 대서원시책」,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홍계연, 「충청지역 서원의 복설 추이와 성격」, 『민족문화논총』 85, 2023.

3) 정만조, 「영조 17년의 사원휘철」, 『한국학논총』 9, 국민대, 1987.

직후 보고하지 않고 세운 서원에 대하여는 실제 서원훼철이 있었다. 이후 1714년(숙종 40)부터 1741년(영조 17)까지 또 중복하여 첩설된 서원에 국한하여 다시 영조대 서원을 훼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숙종대 서원 훼철과 영조대 서원훼철 시기와 대상 서원 및 그 성격을 명확히 해야만 숙종-영조대 서원 훼철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숙종대 갑오정식의 제정과 원사훼철 과정 및 서원 현황, 그리고 영조대 훼철서원의 현황과 추이를 검토하여 숙종-영조대 서원·사우 훼철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Ⅱ. 갑오정식의 제정과 숙종대 서원·사우 훼철

### 1. 인조-효종대 서원금령의 논의 시작

서원 건립의 목적과 달리 160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중앙 관료들이 서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였다. 인조대 부터 서원 남설에 관한 논의와 대책이 거론되었는데, 1644년(인조 22) 경상도관찰사 林潭(1596~1652)의 치계가 그것이다. 임담은 경상도의 서원 남설을 알리며 “서원을 창건할 때는 도내의 선비들이 의논한 다음, 감사에게 보고하고 다시 조정에 상주하여 비준을 얻어야만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서원 창건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서원 남설에 대한 조정의 통제가 시작되었다.<sup>4)</sup>

그러나 구체적인 통제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채 효종대에 이르렀고, 1657년(효종 8)에 다시한번 충청도관찰사 徐必遠(1614~1671)은 충청도 내 서원의 실상을 상소하면서 임담이 제기한 서원남설 문제뿐만 아니라 서원 운영에 관

4) 『인조실록』 45권, 인조 22년(1644) 8월 4일(기미).

한 폐단 및 개선책과 나아가 서원 획철까지 제시하였다.

서필원이 제기한 네 가지 폐단은 첫째, 서원의 우월한 위상으로 향교의 권한이 약해졌다. 둘째, 서원에서 백성을 모집해서 保奴로 부리고 군역의 이관을 반대하였다. 셋째, 향사자의 자격문제를 두고 유생들이 다투어 풍속을 해쳤다. 넷째, 서원의 제수마련 때문에 각 군현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필원은 폐단에 대한 개선책으로 서원에서 부린 보노를 모두 군대로 소속시키며, 동일 인물의 중복 제향을 금지하며, 원사를 건립하려면 조정의 승인을 얻어 건립하도록 했다. 또 사액 서원 외의 제수는 관에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sup>5)</sup> 이 뿐만 아니라 서필원은 “서원과 향사 중에서 서원으로 부족한 것은 향사로 강등하고, 향사로 부족한 것은 철거케 하십시오.”라며 남설되어 건립된 서원의 획철을 최초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서원 건립은 “그 행적을 갖추어 입궐하여 아뢰게 한 다음 이를 모당에 하문하여 여러 의견이 일치해야만 허락하며, 마음대로 창립한 자에 있어서는 淫祀로서 논죄하여 죄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sup>6)</sup> 즉 앞으로의 서원 건립은 반드시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제책 실시를 청하였던 것이다. 이는 도학을 내세워 첩설에도 불구하고 사액을 요구한 산림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었다.<sup>7)</sup>

이에 대해 1657년(효종 8) 6월 21일 예조에서는 사액서원 외에 제수는 관에서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서원 건립 전에 조정에 품의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제안하여 서필원의 치계 일부를 받아들였고 효종도 승락하였다.<sup>8)</sup>

그러나 서필원의 개선책과 예조의 결정은 약 보름이 지난 1657년 7월 8일 홍문관 응교 李正英, 부응교 민정중을 비롯한 정태화, 김육 등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홍문관에서는 “편액을 하사받은 서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고을

5)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1657) 6월 21일(임진).

6)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1657) 6월 21일(임진).

7) 정만조, 「조선후기 대서원시책」,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250쪽.

8)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1657) 6월 21일(임진).

의 수령이 어진이를 제사지내는 의식에 돕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 만일 서원이 너무 많이 설립되어 이름만 숭상하고 실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 뒤로 창립되는 것들은 반드시 여쭙게 한 뒤에 허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죄를 다스리는 것도 너무 박하다고 하겠는데 濔祀에 다 비하기까지 하니 어긋난 말이 아니겠습니까.”라며 오히려 “충청도관찰사 서필원은 파직하고 예조의 해당 당상관을 갈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sup>9)</sup>

그러나 예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홍문관 외에 다른 대신들에게 추가로 의논하게 하여 결정할 것을 청하였고 효종도 이에 따랐다.<sup>10)</sup> 이 문제에 대하여 영의정 정태화는 “「지금부터 반드시 조정에 알려 허락을 받은 다음에 새로 서원을 창설하게 한다」는 조목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영돈녕부사 김육은 ‘... (서원을) 옛날처럼 그대로 두되 제향의 물품들은 생도들이 정성껏 준비하게 하고 서원을 수호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각기 자기 집의 종을 내보내 정하도록 하여 고을을 번거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창설하는 곳은 반드시 관찰사로 하여금 보고하여 윤휴를 얻은 뒤에 창설토록 하는 것이 의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sup>11)</sup>

이러한 의견들이 종합되어 최종적으로 서필원의 제안 일부가 수용되어 법적 효력이 있는 수교로 정리되었다. 즉 새롭게 서원이나 향현사를 창건하고자 하는 자는 건립전에 그 행적을 갖추어 반드시 조정에 아뢰어 윤휴를 받은 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sup>12)</sup>

이같은 서원금령 논의는 전국의 모든 서원에 해당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서필원이 충청도관찰사로 있는 동안 올린 장계라는 점에서 특별히 충청도의

9) 『효종실록』 19권, 효종 8년(1657) 7월 8일(기유).

10) 『효종실록』 19권, 효종 8년(1657) 7월 8일(기유).

11) 『효종실록』 19권, 효종 8년(1657) 7월 8일(기유).

12) 『典錄通考(1707)』 「禮典」 下, 〈雜令 受教輯錄〉 “書院·鄉賢祠欲爲創建者, 具其行跡, 必聞朝廷, 蒙許然後, 施行. 順治丁酉(1657)承傳”

상황이 반영되었다. 서필원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한 이들도 충청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인 서인계 인물 민정중·송준길 등이었다.<sup>13)</sup> 1657년(효종 8) 7월 8일 대신들의 의논을 끝으로 서필원의 의견이 일부만 반영되는 것으로 논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달이 지난 1657년 9월 25일 경연 자리에서 송준길과 민정중은 서필원의 장계이야기를 꺼내면서 “서필원이 중복 설립된 서원을 폐기하자고 청한 것은 매우 많습니다. 송나라 주자의 서원과 우리나라의 李滉의 서원도 중복 설립된 곳이 많습니다. 서필원이 근래 서원들의 난잡함을 보고서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오히려 全彭齡·郭詩·정개청서원을 헐어야 합니다”라며 전팽령·곽시·정개청서원 휘철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던 것이다.<sup>14)</sup>

전팽령·곽시 서원은 옥천 三溪書院이고, 정개청 서원은 함평 자산서원으로 모두 남인계 서원이었다. 삼계서원의 경우 앞서 민정중이 부응교로 있던 흥문관에서 서필원의 장계를 비판하고 서필원을 별주자고 상소하면서 “先朝에서 유신 金長生이 올린 소에 전팽령·곽시 등의 이름을 거론하여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조정에서 제사지내지 말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도에서 아직까지 한두 명의 토호에게 저지당해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관찰사가 된 몸으로 왜 공문을 청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라며 서필원이 오히려 三溪書院은 내버려 둔다고 비판 하였다.<sup>15)</sup>

즉 민정중과 송시열은 서필원이 충청도에서 폐단이 있는 서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금령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서필원이 근래 서원의 폐단을 바로 잡고자 금령을 제시했을 것이지만, 폐단은 일부 남인계 서원에 있다고 주장했고 해당서원을 휘철시켰던 것이다. 송준길과 민정중은 충청도 출신의 대표적인 서인계 인물로 다수의 서인계 서원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3) 홍제연, 『충청지역 소론계 서원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67쪽.

14) 『효종실록』 19권, 효종 8년(1657) 9월 25일(갑자).

15) 『효종실록』 19권, 효종 8년(1657) 7월 8일(기유).

요컨대 인조대 경상도관찰사 임담이 서원창건의 통제를 제안했고, 조정이 허락함으로써 서원 금령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령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듯하다. 바로 효종대 충청도관찰사 서필원이 다시 서원 건립 및 운영 개선책과 도내 제향인물 중복서원의 경우 획철까지 제안했던 것이다. 서필원의 문제 제기에도 예조, 홍문관, 대신들간에 당색이 엇보이는 토론이 이어졌으나 서필원이 서원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당색보다는 지방관으로서의 문제 제기로 보인다. 결국 서필원의 제안 중에서 새로운 서원의 창건에 대해서는 건립 전 조정에 품의하지 않을 경우 주동자를 처벌하게 하고 사액서원 외에는 제수를 관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 등 일부만 수용되었다.

## 2. 갑오정식의 제정과 재천명

인조대 경상도관찰사 林潭의 서원창건 통제제안 수용, 효종대 충청도관찰사 徐必遠의 창건 전 조정 품의 및 사액서원만 관에서 제수를 지급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서원 창건 및 운영에 대한 조정의 제한 조치가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대 서원은 더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폐단이 나타났다.

따라서 숙종대에 들어서도 서필원과 같은 주장은 계속되었다. 1694년(숙종 20) 10월 8일 당시 좌의정 朴世采(1631~1695)가 “서원에서 사액을 청하여 사액을 받은 후에 筵에서 祭物을 지급하고, 또 소속된 人丁이 매우 많아서 州·군에 폐단을 끼치는 바가 큼니다 ... 성상께서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거듭 밝히시고, 사액할 때에 세밀하게 택해서 근심이 없도록 해주소서”라며 사액은 보다 엄격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아뢴 것이다.<sup>16)</sup> 이에 대하여 숙종도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선조부터 있었으니, 다시 금하는 것을 거듭 밝히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으며<sup>17)</sup> 이듬해

16) 『서원등록』 숙종 20년(1694) 10월 8일.

에는 첩설서원의 경우 사액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박세채는 한편으로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 가운데에도 특별히 우대해야 마땅한 자가 있으니, 중사한 여러 선현과 크게 이름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라며 중첩이 가능한 서원에 대하여 여지를 남기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여전히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건립한 서원이나 중첩하여 건립한 경우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1703년(숙종 29) 조정에서는 서원을 사사로이 건립하는 경우, 지방 수령을 처벌하고 주도한 유생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서원 금령을 시행하였다. 1704년(숙종 30)에는 박세채가 대명현의 서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논의가 일었고, 1707년(숙종 33) 한 고을에 여러 서원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1707년에 시독관 權詹이 외방에서 생사당 짓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여 조정에서 이를 따랐다.<sup>19)</sup> 또 2년 만인 1709년(숙종 35)에도 지경연사 趙相愚가 각 주현의 생사당 건립금지를 청하였다.<sup>20)</sup> 이에 따라 생사당을 모두 철거하라는 명이 내려졌다.<sup>21)</sup>

이 시기는 당쟁으로 복잡한 정국이었기에 관련 논의에 있어서도 소론·노론·남인 관료들의 대립이 나타났다. 그러나 서원의 남설로 인해 벌어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1713년 9월 25일 예조판서 閔鎭厚(1659~1720)가 “서원의 追후는 소청하여 윤희를 받은 후에 거행해야 하는데, 근래에 품주하지 않고 먼저 추향하는 자가 있으니, 각도에 査問하여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도신·읍재 및 수창한 유생을 논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건의하였고 숙종이 이를 받아들였

17) 『서원등록』 숙종 20년(1694) 10월 8일.

18) 『서원등록』 숙종 20년(1694) 10월 8일.

19) 『숙종실록』 45권, 숙종 33년(1707) 9월 11일(경진).

20) 『숙종실록』 47권, 숙종 35년(1709) 4월 21일(임술).

21)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外方生祀堂, 分付中外, 一切禁斷 康熙己丑(1709)承傳”.

다.<sup>22)</sup> 1713년(숙종 39) 숙종은 서원 첩설의 폐단을 지적하며 금지를 하명하였고,<sup>23)</sup> 예조판서 민진후에게 서원 문제를 전담하게 하였다. 이를 ‘癸巳受教’라 한다. 민진후는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사사로이 건립한 서원에 대한 죄를 물어 관찰사와 현감을 논죄하고 首倡儒生을 3년간 정거하도록 하였고, 앞서 1703년(숙종 29)을 기준 연도로 하여 이해 이후로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창건한 곳을 각 도의 관찰사가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건의하자,<sup>24)</sup> 왕이 이를 따름으로서 비로소 서원 정리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리하여 1714년(숙종 40) 7월에 평안도의 査狀이 올라왔을 때, 계사수교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심의하여 일체 褫絶하였다. 다만 定州의 朱子書院 등 대학자를 모신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의 서원 5개소는 남겨두었다.<sup>25)</sup> 이를 ‘甲午定式’이라 한다. 이같은 숙종 후반기 갑오정식의 단행은 서원의 폐단을 조정하려고 褫絶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첫 번째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바로 영조대에 단행된 대대적인 서원 褫絶 조치의 기준 연도가 되었다.<sup>26)</sup>

그러나 이후 丙申處分으로 조정이 혼란하여 더 이상 다른 도의 조사는 없었다. 이에 3년이나 지난 1717년(숙종 43) 7월 12일 민진후가 “書院은 선왕 조 때에 분란이 일어나는 폐단을 염려하여 반드시 상소하여 허락을 받은 뒤에 창건하라고 명하였습시다. 세월이 오래되어 폐지되었기 때문에 계미년에 또 신칙하라는 명이 있었습시다. 몇 년 전에 평안 감사가 조령이 내려진 이후 창건된 서원의 명단을 移文했기 때문에 모두 褫絶하였는데, 그중 한두 곳을 특별히 그대로 두도록 명하시고 그 뒤에 혹 은혜로운 편액을 내려 주셨습시다. 지금 경상도 암행어사의 별단을 보니, 경상도내에 조령이 내려진 이후 창

22) 『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1713) 9월 25일(기사).

23) 『숙종실록』 54권, 숙종 39년(1713) 7월 21일(병인).

24) 『承政院日記』 479책, 숙종 39년(1713) 7월 30일(을해).

25) 정만조, 앞의 논문, 1997, 259쪽에서 “기자서원 등 3개소를 제외하고 다 褫絶되었”다고 하였으나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1714) 7월 11일(경술) 기사에 의하면 주자서원 등 5개소를 제외하고 다 褫絶한 것이 갑오정식의 시작으로 보인다.

26) 정만조, 앞의 논문, 1997, 259쪽.

건된 서원이 또한 많습니다. ...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여러 道도 필시 이와 같을 것이니, 평안도 외에는 모두 도신으로 하여금 낱낱이 상세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고, 평안도의 예에 따라 존치하고 훼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이것을 왕이 행하라고 하면서 갑오정식이 재천명되었다.<sup>27)</sup>

그해 1717년(숙종 43) 10월 10일 황해도의 훼철대상 서원 명단이 올라오면서 갑오정식은 다시 시행되었다.<sup>28)</sup> 훼치의 기준은 ‘계미년’(1703년)으로 이후에 허가없이 창건된 서원의 훼철을 단행하였다. 숙종은 ‘서원의 폐단이 요즘보다 더 심한적이 없었다.’라며 드디어 조도빈이 “그렇다면 이 뒤로는 文廟에 陞配된 大賢의 경우에도 院宇를 첩설할 수 없다는 것을 항식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1717년 첩설 금지는 恒式으로 정해졌다.<sup>29)</sup> 그리고 이듬해인 1718년(숙종 44)에 또다시 사헌부의 계달에 따라 생사당을 금단하고 혁파하도록 하였다.<sup>30)</sup>

### 3. 숙종 40년~45년 서원·사우 훼철

이처럼 숙종대 서원 훼철은 1714년(숙종 40) 갑오정식을 시작으로 지역별 관찰사의 보고에 의거하여 실제 추진되었다. 즉 숙종대의 서원 훼철의 방식은 관찰사가 조사하여 해당서원에 대한 명단이 보고되면 주로 왕과 예조판서 사이의 심의에 따라 毀置가 결정되었다.<sup>31)</sup> 당시의 심사는 공개적이지 아니라 숙종과 노론계 예조판서 민진후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져 공정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수십 개소에 이르는 송시열 제향 서원이 여전히 훼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점은 당시의 처분이 당파적 색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

27) 『승정원일기』 503책, 숙종 43년(1717) 7월 12일(갑자)

28) 『서원등록』 숙종 43년(1717) 10월 10일.

29) 『숙종실록』 60권, 숙종 43년(1717) 11월 17일(정묘).

30)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1718) 4월 2일(경진).

31)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1714) 7월 11일(경술).

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전 지역 관찰사에게 보고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의 휘철 서원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는 않다. 즉, 평안도·황해도·경기도·경상도·함경도 등 5개 도의 관찰사 보고와 휘철된 서원의 일부 기록만이 남아있다.

〈표 1〉 숙종 '계미년'(1703년) 이후 허가 없이 창건된 서원의 존치 및 휘철현황<sup>32)</sup>

도	조사 연월일	처분	원사	창건시기	제향인물
평안도	1714.7.11.	존치	定州 朱子書院		朱子
			平壤 洪翼漢 書院		洪翼漢
			義州 姜邯贊 祠宇		姜邯贊
			義州 林慶業 祠宇		林慶業
			務安 金權 書院		金權
		휘철	위의 5개소 외에 일체 휘철		
황해도	1717.10.10.	존치	長淵 長淵書院	기축년(1709)	朱子·李珥
경기도	1719. 3.5.	휘철	果川 滄江書院	병신년(1716)	趙涑
경상도	1719. 4.1.	존치	巨濟 盤谷書院	계미년(1703) 이후	宋時烈
			長鬐 竹林書院	계미년(1703) 이후	宋時烈
			星州 柳溪 忠賢祠	계미년(1703) 이후	鄭崑壽 <sup>33)</sup>
			咸安 西山書院	계미년(1703) 이후	李孟專·趙旅·元昊·金時習·成鼎壽·南孝溫
			安陰 星川書院	계미년(1703)	宋浚吉·李翻
		휘철	安東 德峯書院	계미년(1703) 이후	金涌
			安東 伊溪精舍	계미년(1703) 이후	權宇
			順興 丹溪書院	계미년(1703) 이후	金淡
			高靈 雲山書院	계미년(1703) 이후	洪翼漢·朴間·洪師賢·金守雍
			居昌 源泉書院		尹舜學·卞璧·全八顧
			丹成 鄉賢祠		權濤·金湛·李冕·權克亮
			尙州 忠烈祠		權吉·鄭起龍
			淵岳祠		朴彥誠·金彥健·康應哲
			商州 雲溪書院		申碩蕃

32) 평안도 서원의 경우 『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1714) 7월 11일(경술) 기사를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황해도 서원은 『서원등록』 숙종 43년(1717) 10월 10일 기사, 경기도 서원은 『서원등록』 숙종 45년(1719) 3월 5일 기사, 경상도 서원은 『서원등록』 숙종 45년(1719) 4월 1일 기사, 함경도 서원은 『서원등록』 숙종 45년(1719) 9월 15일 기사를 각각 분석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도	조사 연월일	처분	원사	창건시기	제향인물
함경도	1719. 9.15.	존치	安邊 鶴湖 鄉賢祠		李之龜·李慶承·李善承
			吉州 鄉賢祠		許惟禮·許珍·金國信·元忠恕·許誠一
		휘철	茂山 南九萬 祠宇	기축년(1709) 生祠堂 건립 후 사우 건립	南九萬
			茂山 李世華 師友	기축년(1709) 生祠堂 건립 후 사우 건립	李世華

숙종대 서원·사우 휘철의 첫 보고는 1714년(숙종 40) 7월 11일 평안도관찰사의 장계로 계미년(1703년) 금령 이후 건립된 평안도의 서원에 관한 것이었다. 총 몇개가 보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숙종과 민진후 등이 의논한 후 정주의 朱子 서원, 평양의 洪翼漢 서원, 의주의 姜邯贊 사우, 의주의 林慶業 사우, 무안의 金權 서원 5개소만 남기고 나머지 보고된 평안도의 서원은 일체를 휘철시켰다.<sup>34)</sup> 정주의 주자 서원은 대학자를 제향한 서원이므로 갑오정식에서도 존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남아있는 두 번째 보고는 갑오정식 재천명 이후 올라온 황해도도의 휘철대상 서원보고이다. 1717년(숙종 43) 10월 10일 황해도관찰사 李喬岳이 황해도의 해당 서원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1703년 이전 건립된 서원까지 모두 제출하는 오류가 있었다. 이에 민진후가 검토하여 그 중에 금령 이후 건립한 서원은 1709년 건립한 長淵書院 1개소 뿐임을 확인하였다.<sup>35)</sup> 그러나 장연 서원은 휘철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와 이이를 제향한 서원이므로 정주 주자 서원의 예에 따라 보존하여 휘철하지 않고 창건 당시 관찰사와 부사, 건립을 주창한 유생만 징벌하였다.

기록이 남아있는 세번째 보고는 1719년(숙종 45) 3월 5일 前경기도관찰사

33) 『서원등록』에 “鄭壽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星州 柳溪 忠賢祠에 제향된 인물은 “鄭崑壽”이므로 『서원등록』의 오키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鄭崑壽로 정정하여 기술하였다.

34) 『숙종실록』 숙종 40년(1714) 7월 11일(경술).

35) 『서원등록』 숙종 43년(1717) 10월 10일.

金演이 올린 보고였다. 계미년 금령 이후 건립된 경기도의 서원은 趙涑이 제향된 과천 滄江書院 하나로 1716년 건립된 것이었다. 의논끝에 창강서원은 철거되었고, 창건 당시 관찰사와 현감 및 맨 먼저 건립을 주창한 유생을 경기도에서 아뢰도록 하여 죄를 논하게 하였다.<sup>36)</sup>

기록이 남아있는 네번째 보고는 1719년(숙종 45) 4월 1일 경상도관찰사의 보고이다. 경상도의 경우 이미 1718년 경상도 암행어사가 계미년 금령 이후 창건한 서원이 80여 곳에 이른다는 별단이 올라온 상태였다.<sup>37)</sup> 경상도의 휘철 대상서원은 보고에 의하면 80여 곳보다는 훨씬 적은 14개소 였다.

14개소 중 안동의 德峯書院(金涌 배향)·伊溪精舍(權宇 배향), 순흥의 丹溪書院(金淡 배향), 고령의 雲山書院(洪翼漢·朴闇·洪師賢·金守雍 배향), 거창의 源泉書院(尹舜舉·卞璧·全八顧 배향), 상주의 雲溪書院(申碩蕃 배향)은 금령 이후 건립된 서원으로 예조판서 민진후와 숙종이 의논하여 모두 철거하게 하였다.

단성의 鄉賢祠(權濤·金湛·李晁·權克亮 배향), 상주의 忠烈祠(權吉·鄭起龍 배향)·淵岳祠(朴彥誠·金彥健·康應哲 배향) 등 금령이 내려진 이후 건립된 사우의 경우도 민진후와 숙종이 의논하여 일체 철거하였다. 즉 경상도의 휘철 대상 원사 14개 소 중 9개가 휘철된 것이다.

그러나 거제의 盤谷書院과 장기의 竹林書院의 경우 민진후가 위의 두 서원은 금령이 내려진 후에 건립되었으나 조정에서 송시열을 대하는 것이 다른 유현들과는 차별을 두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자 숙종이 두 서원은 존치하라고 하였다. 또한 성주 柳溪에 있는 忠賢祠는 증영의정 鄭崑壽를 배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금령이 내려진 후에 건립되었으나, 새로 위판을 조성하거나 서원을 건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사우에서 이안한 것이라 하여 보존하였다.

상주의 西山書院(金尙容·金尙憲 배향), 안음의 星川書院(宋浚吉·李翻 배향)의 경우도 계미년 이후 사사로이 창건하였으나 숙종이 보존을 명하였다.<sup>38)</sup>

36) 『서원등록』 숙종 45년(1719) 3월 5일.

37) 『서원등록』 숙종 45년(1719) 4월 1일.

38) 『서원등록』 숙종 45년(1719) 4월 1일.

함안의 西山書院(李孟專·趙旅·元昊·金時習·成聃壽·南孝溫 배향), 안음의 忠烈祠(郭稔·趙宗道 배향), 진주의 知足堂書院(趙之瑞 배향)은 계미년 이후에 건립된 것이기는 하나 조정에서 모두 사우를 건립할 것을 허락하고 사액하였으므로 논할 것이 없지만, 장계에서 혼동해서 잘못 수록하였다고 하여 존치시켰다.

즉 경상도의 14개 훼손 대상 서원 중 9개가 최종적으로 훼손된 것이다. 존치된 5개의 서원 중 4개는 송시열·김상용·김상헌·송준길·이상 등 노론계 인물들이 제향된 서원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당시 경상도 지역 서원 훼손은 민진후와 숙종이 노론을 우대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영조대의 서원훼손과 차이를 보인다.

기록에 남아있는 다섯번째 보고는 1719년(숙종 45) 9월 15일 함경도관찰사 金相稷의 보고에 의한 훼손이다. 함경도관찰사의 보고를 당시 예조판서 민진후가 숙종에게 아뢰고 숙종이 결정하는 형태로 훼손이 정해졌다.

우선 안변 鶴湖의 향현사(李之醜·李慶承·李善承 배향)의 경우 민진후가 아뢰기를 “경상도의 향현사를 일체 철거한 명이 있었으므로, 차이를 두기 어려우나, 세 사람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이고,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다른 도와는 다르므로 금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자 숙종이 보존을 명하였다. 즉, 변방에 있는 향현사로 유풍진작을 위해 특별히 존치를 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길주의 향현사(許惟禮·許珍·金國信·元忠恕·許誠一 배향)는 사우를 건립하기 시작한 것이 중첩해서 설립하지 말라는 금령 이전이라고 하여 보존하였다.

이와는 달리 무산의 南九萬 사우<sup>39)</sup>·李世華의 사우는 모두 기축년(1709년)에 生祠堂을 건립하고 그 후에 사우를 건립하였다고 하였고, 정해년(1707년) 이후에 건립된 생사당을 모두 철거하라는 조정의 명이 있었다고 하여 철거하였다.<sup>40)</sup>

39) 무산의 남구만 사우는 이후 1741년 영조대의 훼손 대상 원사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 이후에 제대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40) 『서원등록』 숙종 45년(1719) 9월 15일.

이같은 1714년(숙종 40)~1719년(숙종 45) 서원·사우 훼철에 대해서 재지 사족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즉, 18세기 영남학파를 이끌었던 李戡(1657~1730)가 자손들이 조상을 위해 세운 別祠는 훼철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청한 글을 감영에 올리기도 하였던 것이다.<sup>41)</sup>

### Ⅲ. 영조대 서원·사우 훼철의 추이

#### 1. 경종대 이후 정국의 변화

숙종 재위 기간동안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1720년 경종이 즉위하고, 1721년에는 노론에 의하여 연잉궁이 世弟로 책봉되었다. 노론이 세제의 대리청정으로 경종을 압박하자, 소론은 이것을 불응으로 몰았고, 그 과정에서 노론 4대신(김창집, 이이명, 이진명, 조태채)이 축출되었다. 이후 소론 급진파가 장악한 정계에서 조지점을 서원에 배향하고, 윤선거의 철향을 요구했던 이들에게 유배형을 내리는 등 소론계 인물의 복권이 시도되는 한편 道峰書院에서 송시열을 출향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소론계 서원을 집중적으로 사액하는 동시에 서원의 폐단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다.

1723년(경종 3) 대사성 李眞儒(1669~1730)는 갑오정식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외방의 선비들이 朝命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저럭 넘어갔었다며, 서원을 창건할 때 통문을 돌리지 못하게 조령으로 금지하였으나, 지방 사족들이 연명하여 監營과 兵營 및 각 군현에 도움을 청하는 폐단이 여전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폐단을 막으려면 각營과 고을에서 서원이 요구를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달하니 경종이 이를 따르게 하였다.<sup>42)</sup> 또 1724년(경종 4)에 수찬 李眞洙(1684~1732)가 고을마다 서원이 난립하고 편액을 걸지 않은 곳이 없

41) 『密菴集』 2책, 「爲聞韶金門呈巡營文」.

42) 『서원등록』 경종 3년(1723) 11월 16일.

으며 서원이 선비들의 싸움터가 되므로 윤증의 서원일지라도 중첩 설립은 금해야 한다고 하자 충주·여산·성주·밀양 등에 설립된 윤증의 서원을 획철하게 하였다.<sup>43)</sup> 소론계 관료들이 나서서 윤증의 서원 획철을 주도한 것은 서원 금령의 엄중함을 보이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중앙 정계와 긴밀히 연결된 지방 서원의 창건과 사액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경종의 짧은 재위 기간이 끝나고 1724년에 영조가 즉위하였다. 영조는 숙종대부터 계속된 정치적 갈등을 풀고, 자신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蕩平에 기반한 정국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李光佐, 柳鳳輝, 趙泰億 3정승을 두고 소론 정국을 구성하였다가 노론의 반발 속에서 노론의 의리와 타협하고 결국 이광좌와 조태억의 관작 삭탈을 명하였다.<sup>44)</sup> 다시 노론 정권으로 바뀐 후에도 탕평정국은 유지되었다.

영조는 즉위 전부터 당쟁의 폐해를 처절하게 겪은 경험자였다. 즉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탕평에 힘쓰라는 하교를 내렸고, 1725년(영조 1)에는 붕당의 폐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한탄하며<sup>45)</sup> ‘탕평하는 것은 공이요, 당에 물드는 것은 私’ 라며 강하게 탕평을 논하였다.<sup>46)</sup> 탕평책이 영조의 의도대로 전개될 수 있었던 계기는 1728년의 戊申亂이었다. 무신란을 평정한 이듬해에 辛壬獄事와 관련한 己酉處分을 내리고 노소 聯政의 탕평파에게 주도권을 주면서 왕권이 안정화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노소간의 시비는 계속되다 1740년에 노론 4대신을 신원한다는 결론을 내리며 1741년(영조 17) 辛酉大誥를 반포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때가 바로 서원획철령이 강하게 추진되던 시기였다. 영조 재위기 중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정치적 안정기를 구가하며 서원 금령은 당파를 초월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43) 『경종실록』 경종 4년(1724) 1월 11일(병술).

44) 한지희, 「영조초 붕당론의 변용과 탕평책의 수립」,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433~438쪽.

45) 『영조실록』 영조 1년(1725) 1월 3일(임인).

46) 『영조실록』 영조 1년(1725) 1월 21일(경신).

## 2. 영조대 서원금령의 전개

영조 초까지만 해도 서원 금령은 그 제재가 미미했다. 계속해서 미허가 원사가 건립되었고 갑오정식은 서원과 사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영당·향현사 등은 더욱 규제 없이 세워졌다.<sup>47)</sup> 게다가 국가적으로 노론 4대신의 신원과 함께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의 창건과 사액을 승인하였으며, 송시열 배향 서원에 대한 사액과 賜祭도 계속되었다. 또한 무신란 후에는 반란군을 막은 이들에 대한 포상의 은전으로 사당 건립을 허락하고 있었다.<sup>48)</sup>

1727년(영조 3) 소론계 인사 趙鎭禧가 서원 첩설로 良民의 해가 되니 道學이 높은 사람이라도 서원 하나만 허용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휘철해야 한다고 청하자 영조는 금령 이후 첩설한 서원을 삼남어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였다.<sup>49)</sup> 1년 후 다시 한번 소론계의 검토관 申致謹이 서원 첩설의 폐단을 고하고, 남인계 趙德隣이 서원 제향이 黨論의 소치라고 함에 따라 영조는 이제부터 사액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sup>50)</sup> 그리고 1729년(영조 5)에도 금령 이후에 창건된 서원은 편액을 철거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자, 영조는 유생들이 억울한 마음을 품겠지만, 숙종 때에 명이 내려졌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sup>51)</sup> 그리고 휘철의 기준을 기해년(1719년, 숙종 45)으로 정하여 일부 서원은 실제로 휘철되었다. 대상 서원의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예조당상 宋寅明이 자세히 살피지 않아 남양의 安谷 書院이 휘철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철거되었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금령이 시행된 것은 확실하다.<sup>52)</sup> 이 시기에 서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주

47) 1724년(영조 즉위년)에 충청도 연풍현의 李箕洪 영당에 대한 처리 문제를 거론하며 '영당은 서원이 아니어서 조정의 금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두게 한 것이다(『서원등록』 영조 즉위년 10월 27일).

48) 『서원등록』 영조 13년(1737) 12월 24일.

49) 『영조실록』 영조 3년(1727) 12월 11일(임진).

50) 『영조실록』 영조 4년(1728) 6월 5일(갑신).

51) 『영조실록』 영조 5년(1729) 4월 25일(기해).

로 소론 남인계 관료들인 것은, 노론 주도의 탕평정국에서 지방사회에는 노론계 서원의 수가 늘어나며 정치적인 갈등과 폐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액을 불허 했음에도 청액이 계속되니, 1734년에 영조는 서원의 사액은 ‘不過其文’ 즉 그저 虛文에 지나지 않는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53) 並享의 요청도 윤택하지 않았다. 54)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요구는 이어졌다. 55)

서원의 폐단도 여전하였다. 1736년(영조 12)에 충청도에 良丁御史로 파견되었던 李喆輔가 권세가의 서원에 백성들이 투탁하고 사대부는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관아에서는 감히 묻지 못하는 실태를 알렸다. 56) 이러한 사례는 이미 너무나 뿌리깊은 문제였고 영조의 서원 금령을 촉발시킨 사건은 2년 후에 벌어졌다.

1738년(영조 14) 5월에 병조판서 박문수가 경상도 안동에서 재지사족이 사사로이 서원 건립을 주도하고 있다고 아뢰자, 영조는 ‘을사년(영조 즉위년)’ 이후에 창설한 서원을 조사하여 철폐하라고 하교하였다. 57) 서원 철폐령의 계기가 된 안동 서원의 문제는 중앙의 노론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안동지역 신생 노론이 김상헌의 서원을 창건하려 하는 과정에서 안동의 뿌리깊은 남인 사족이 서원을 부수어버리며 자신들의 입장을 소론 박문수를 통해 조정에 알렸던 사건이었다. 전통적으로 남인의 근거지였던 안동에 노론이 서원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상황이었고, 사족간의 향전이 벌어지면서 이것이 중앙정계의 당쟁으로 비화되어 김상헌 서원의 毀破 문제는 조정 내 노소간 대립을 격화시켰다. 58)

52) 『서원등록』 영조 16년(1740) 5월 13일.

53) 『영조실록』 영조 10년(1734) 6월 13일(정사).

54) 『영조실록』 영조 12년(1736) 9월 29일(경신).

55) 가평의 유생들이 李廷龜를 金堉의 서원에 병향하기를 청하였지만 불허하였다(『영조실록』 영조 12년 9월 29일(경신)).

56) 『영조실록』 영조 12년(1736) 11월 7일(병신).

57) 『영조실록』 영조 14년(1738) 5월 18일(기사) ; 『서원등록』 영조 14년(1738) 5월 18일.

안동의 김상헌 서원을 둘러싼 당파간 갈등은 서원 훼손의 당위성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실제로 적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조는 감사와 수령이 조정에 묻지도 않고 금령을 어긴 것이 매우 한심스럽다며 해당 道臣과 수령을 모두 파직하고, 이 소란을 주도한 유생은 형장을 쳐 멀리 유배를 보내라고 명하였다.<sup>59)</sup> 이 사건이 6월에 벌어졌는데 7월에 사헌부지평 趙重穰이 경상도관찰사 尹陽來의 파직을 청하며, 윤양래가 순흥 백운동서원을 비난했던 일을 들자, 영조는 오히려 영남 유생들의 방자함을 방조한 조중직을 파직하였다.<sup>60)</sup> 서원을 지키는 재지사족과 그들을 비호하는 관료의 관계로 인해 지금까지 서원 금령이 무위로 돌아갔던 것이 이 사건 이후 원칙대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표 2〉 을사년(1724년) 이후 1738년까지 창건된 도별 원사

도	군현	원사	창건시기	제향인물
경상도	봉화	藻溪祠	을사년(1724)	琴梧·任礪
		향현사	정미년(1727)	琴儀·鄭云敬
	성산	晴川書院	기유년(1729)	金宇顒
		延鳳書院	정사년(1737)	李長庚·李兆年·李仁復·李崇仁·李稷
		道川書院	경술년(1730)	裊尙龍
		雲岩書院	갑인년(1734)	崔恒慶
	울산	鄉賢祠	병진년(1736)	李藝
	상주	竹林祠	병진년(1736)	成灋 ※서당에서 사당이 된 사례
		松岩祠	병진년(1736)	廉行儉 ※서당에서 사당이 된 사례
	영덕	新安影堂	을묘년(1735)	朱子·宋時烈
경주	雲泉祠	임자년(1732)	李彥适·權德麟	
충청도	음성	南延年사당	경술년(1730)	南延年
	은진	사당	병진년(1736)	成三問·楊應春
강원도	정선	風岩書院	병진년(1736)	李穡·金麟厚
	영월	八賢祠	임자년(1732)	金時習·南孝溫·趙旅·元昊·李孟專·成珮壽·權節·鄭保
함경도	영흥	朴淳사당	을사년 이후	朴淳

58)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59) 『서원등록』 영조 14년(1738) 6월 23일.

60) 『영조실록』 영조 14년(1738) 7월 28일(무인).

영조의 명에 따라 각 道와 府에서 을사년(1724년) 이후 창건된 서원을 정리한 계본을 올렸는데, 강원도·경기도·개성부·황해도·평안도에는 해당되는 원사가 없다고 하였고, 전라도의 장계는 유실된 것이 이듬해에 확인되었다.<sup>61)</sup> 전라도를 제외하고 을사년 이후 14년간 창건된 원사는 16개소로, 서원 5개, 사우 9개, 향현사 1개였다.

1738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관계된 관료와 사족을 처분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충청도관찰사가 하명도 없이 관계 수령을 파출하고, 일을 주도한 유생은 3년간 과거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여 조정에서 충청도관찰사의 추고를 논의하기까지 한 것이다.<sup>62)</sup>

1740년(영조 16) 10월에 파주 坡山書院에 成守琮를 추향하겠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문제는 파주 유생들이 이미 성수종의 위패를 서원에 봉안해 놓고 사후에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일단, 특별히 허가하였지만 1741년 2월에 예조판서 閔應朱가 사액서원에 먼저 추향한 다음 조정에 알린 것은 부당하다고 나서면서 향후 같은 일에 대해서는 도신과 수령, 유생을 모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로 하였다. 파산서원 또한 이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sup>63)</sup>

이때까지도 서원 금령의 강제성은 미흡했다. 군현 수령은 지방 통치를 위하여 재지사족의 요구에 부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관계자 처벌이 원칙대로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있었다. 1741년(영조 17) 3월 경상도관찰사 鄭益河가 임진왜란과 무신란의 충절인을 제향하는 사우에 대해 면세지를 지급할 것을 청한 일이 있었다.<sup>64)</sup> 영조는 원사 건립을 금지하도록 한 상황에서 경상도관찰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금령을 어긴 서원에 대한 지원 요구를 하였으니 엄중하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sup>65)</sup> 관찰

61) 『서원등록』 영조 15년(1739) 2월 8일.

62) 『서원등록』 영조 14년(1738) 7월 29일.

63) 『서원등록』 영조 16년(1740) 10월 17일~영조 17년(1741) 3월.

64)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3월 4일(기사).

65)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3월 11일.

사조차 금령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서원 정책의 추진은 1741년 7월 함경도관찰사 박문수의 상소에서 비롯되었다. 이 상소는 관찰사인 본인이 함경도 각 고을 선비들이 北靑 老德書院에 모여 李光佐를 從享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박문수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하고 勘斷해 달라하니, 곧 박문수를 추고하고 주도한 유생을 정거하였다.<sup>66)</sup> 이어서 영조는 서원금령의 규정을 다시 상고하게 하고 법령이 해이해진 것은 원칙을 자꾸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숙종 40년에 내려졌던 첩설금령을 어긴 서원을 모두 찾아 철거하고 창건 당시의 지방관을 찾아 문책하며 앞장서서 건립을 주도한 유생은 정거하도록 명하였다.<sup>67)</sup>

### 3. 영조 17년 서원금령의 시행

서원이 남설되면서 발생한 폐단을 요약하면, 서원의 강학기능이 쇠퇴하고 지방사회에서 서원이 봉당 기지화되었으며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인조대부터의 서원금령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중앙 관료집단의 정치활동이 서원을 통해 지방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파의 세력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쟁을 통제하여야만 서원 금령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영조는 탕평책의 추진을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탕평파를 구축해 나갔는데, 초기에는 소론계 인사가 중심이 되었지만 점차 노론의 의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결정적으로 영조가 세제 시절에 겪었던 辛壬土禍의 문제를 처리하며 1740년(영조 16)에 노론 4대신을 신원하고 소론을 무고로 판정한 庚申處分에 이어 1741년(영조 17) 辛酉大訓을 반포함으로써 탕평파의 외연을 넓

66)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3월 26일(신묘).

67)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4월 8일.

했다. 따라서 1740년~1741년은 탕평의 목적인 봉당체제 와해가 어느 정도 실현된 중요한 시기였고 서원철폐령이 조정 내에서 큰 반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

1741년(영조 17) 함경도관찰사 박문수의 상소 이후, 서원금령을 어긴 자들에 대한 論罪의 규정을 재확인하였다. 즉, 갑오년(1714, 숙종 40) 이후 허가 없이 창건된 원사는 모두 철거하고 사액서원에 허가없이 추향을 한 경우 논죄대상이 되었다. 당초 미사액서원의 추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향후 사액받지 않은 원사에 임의대로 소급 배향하는 일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변경하였다.<sup>68)</sup> 이 일에 관계된 도신은 파직, 수령은 치죄, 주도한 유생은 5년간 과거 응시 자격 정지로 정하였다. 또, 차후로는 조정에 품의하지 않고 원사를 건립하거나 추향하면 도신은 치죄, 수령은 고신 3등의 율을 시행하고, 주도한 유생은 유배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팔도와 兩都에 통지되었다.<sup>69)</sup>

이제, 각도에서는 해당되는 서원·사우를 조사해 장계를 올리게 되었는데 원사의 범위에는 서원과 사우 뿐만 아니라 영당과 생사당·世德祠·鄉賢祠·精舍·里社도 구별없이 훼손 대상으로 정하였다.<sup>70)</sup> 이 중에서 특히 세덕사는 엄중히 징계해야만 재지사족이 4대 봉사를 지킬 것이라고 보았다.<sup>71)</sup> 철폐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영의정 김재로는 자신도 향현사가 금령의 대상인지 몰랐으니 지방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영당은 각 집안에서 당을 설치해 봉안하던 것이라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지만, 영조는 그것을 나누어 볼 수 없고 일체 논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sup>72)</sup>

생사당은 지역에 부임해 온 관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기리기 위하여 세

68)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6월 10일.

69)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4월 4일~11일.

70)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6월 10일(계묘).

71)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8월 1일(계사).

72)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5월 28일.

우는 사당으로, 관리를 현창하는 문화적 산물이었다. 생사당은 운영 비용이 과중하여 민간에 폐해가 컸으므로 조선 전기 성종대부터 찬반 논의가 있을 정도였지만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었다. 생사당은 ‘외방에 명예를 바라는 고질적 폐단’<sup>73)</sup>으로 여겨지다 1741년의 서원 금령 대상에 포함되었다. 영의정 김재로가 생사당의 경우는 수령과 감사에 대한 논죄가 과하다고 고하여 원사와 달리 창건 당시의 관계자 성명을 기록하지 않았다.<sup>74)</sup>

혜철 대상 중 논란이 되었던 것은 箕子·孔子·朱子 등 聖人を 모신 서원이었다. 기사 영당 중 갑오년 이후 건립된 황해도 재령의 영당은 철거하고 영정은 평양 송인전으로 옮겼다. 공자의 서원 또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철거하되 영정은 향교에 봉안하고 위패는 땅에 묻게 하였으며 주자의 서원은 先朝에서 특별히 그대로 두라고 명한 서원을 제외하고, 영정은 다른 주자 서원이나 향교에 옮겨 봉안하도록 하였다.<sup>75)</sup>

서원 혜철령에 대해 성균관 유생들이 임금의 前旨를 회수하기를 바랐다는 소회를 적어 올리고,<sup>76)</sup> 폐단이 있는 서원만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상소가 따르기도 했지만, 영조는 서원 철폐가 옛 전지를 따른 것<sup>77)</sup>이라며 반발을 달래는 한편 때로는 ‘나이가 어려 알지 못하는 유생들이 선현을 위한다고 칭탁하면서 협잡을 부린다’라고 엄하게 나무라며 상소를 올린 유생의 과거 응시 자격을 정지시키는 무거운 징벌을 내리기도 하였다.<sup>78)</sup> 서원 철폐와 함께 관계된 지방관을 파직함에 따라 곧 대규모 인사이동이 뒤따른 가운데<sup>79)</sup> 주요 인사는 몇 개월만에 급히 재서용 되었다.<sup>80)</sup>

73) 『숙종실록』 숙종 24년(1698) 10월 6일(정미).

74)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6월 10일, 다만 평안도만 관계된 수령·감사가 표기되었다.

75)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6월 3일(병신).

76)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7월 3일(을축).

77)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5월 18일(신사), 교리 李天輔의 상소.

78)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6월 14일.

79)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7월 28일(경인).

서원 금령은 엄하게 행해졌고<sup>81)</sup> 표면적으로 조정의 관리 중에서 훼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1741년 11월에 대사간 韓師得은 훼손 기준이 된 갑오년 이전에도 이미 문제 있는 원사가 많았으니 그 또한 훼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더욱 강력한 금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sup>82)</sup> 각 도 관찰사가 올린 장계에 의하여 금령을 어긴 원사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1741년 각 도별 훼손대상 서원·사우<sup>83)</sup>

도	군현	서원 사우	영당	향현사 세덕사	생사당	유애사	정사 리사	계
강원도	13	6	3	2	6	-	-	17
황해도	12	2	5	2	11	-	-	20
경기도 <sup>84)</sup>	5	1	5	-	2	-	-	8
평안도	17	8	1	2	17	-	-	28
함경도	10	5	3	1	4	-	-	13
경상도	33	17	4	5	17	1	8	52
충청도	20	10	3	7	3	-	-	23
전라도	19	16	3	1	4	4	-	28
계	129	65	27	20	64	5	8	189

각 도에서 장계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체되는 지역과, 금령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채 오류가 있는 목록을 보낸 경우에는 감사를 추고하였다. 경기도의 장계 가운데 사액과 미사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창건 연대도 정확하

80)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8월 20일(임자). 趙顯命을 우의정으로, 金興慶과 兪拓基를 판중추로 삼았다.

81)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8월 17일(기유).

82) 한사득은 일찍이 봉당의 폐단을 논하여 영조의 신임을 받았고 집안의 당색은 소론계였다.

83) 『서원등록』 게재 순이다.

84) 경기도 양주의 南乙珍 사당과 趙光祖 제향 서원은 금령 반포 전의 미사액서원으로, 별도 논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표의 수치에서는 제외하였다.

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sup>85)</sup> 충청도는 연도가 잘못 기재되고 관찰사와 현감의 이름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경기도와 충청도는 다시 돌려보내 수정을 지시하였다.<sup>86)</sup> 연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상고하여 재검토하였고, 만약 철거 대상이 아닌 경우 다시 품의하여 왕명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휘철되는 원사는 전부 철거하고 재목과 기와의 수를 확인해 지방관에게 넘기게 함으로서 다시 제향이 재개될 가능성을 불식시켰다.

영조 17년에 금령을 위배한 것으로 확인된 원사는 총 189개소로 남설을 제지하기 위한 의지가 드러났다. 경상도가 가장 많은 총 52개소이고, 경기도가 8개소로 가장 적었다. 경상도는 워낙 땅이 넓고 인구도 많았으므로 대상 원사의 수가 많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精舍와 里社까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경상도관찰사 沈聖希가 정사·리사·孝社 등 다양한 명칭이 있어 탐문해 보니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서원과 같으므로 모두 기록하였다고 밝힌 것을 보면 경상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였다.<sup>87)</sup>

평안도에서는 생사당이 17개소인 것이 주목된다. 특히 1개의 생사당에 여러 사람을 소급하여 봉안하고 있어 봉안된 인물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평안도의 장계에서만 생사당에 관계된 현감과 관찰사의 이름이 기재된 것도 특징이다. 평양의 이러한 문화에 대해 1735년(영조 11)에 생사당의 폐단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조판서 宋寅明 등이 평안도관찰사는 지위가 높아 조정으로 복귀하면 병조나 이조의 판서가 되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아첨하기 위하여 벌인 것이라고 하며 평양 지역의 고질적인 폐단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였다.<sup>88)</sup>

전라도는 서원과 사우의 비중이 높는데, 숙종 갑오년 이후 노소분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소론계 서원이 세워지고 이를 압박하는 노론계 서원이 창건되었기 때문이다.

85)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7월 4일.

86)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8월 3일.

87)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8월 15일.

88) 『승정원일기』 영조 11년(1735) 1월 10일(신사).

이렇게 각 도에서 금령을 위배하였다고 조사하여 올린 대상 원사는 당색과 무관하였고 관계자 처벌이 시행되었으므로 금령은 효과를 보였다. 이후 영조 말기까지 청액과 창건 요구는 물론 추배 요청도 불허되었다. 그러나 휘철된 서원의 복설 시도가 일부 허가되었는데 1760년(영조 36) 영의정 김상로의 건의에 따라 회복된 서산 聖巖書院<sup>89)</sup>은 ‘갑오년 이후 미사액’ 서원이 아닌, 사액서원이었는데도 휘철대상 목록에 섞여 들어간 실수라는 명분이었다.<sup>90)</sup> 또, 향현사와 세덕사 등 문중 제향 시설은 확실히 철거된 듯 하나 재지사족이 향론으로 세우고 여러 문중이 관여되어 있는 원사는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금령을 피해 선대를 제항하려는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문중 내에서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도 보인다.<sup>91)</sup> 이제 각 서원은 기존의 기능에 큰 변화가 생기며 문중화되고, 중앙 정치와 무관한 지역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영조대 후반부터 서원은 정치적 성격보다는 문중 추송 활동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sup>92)</sup>

#### IV. 맺음말

1600년대 초부터 서원은 당파의 지방 거점으로 기능하며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국왕의 입장에서 서원폐단을 막아 민생을 구하고 당쟁의 본산으로 전락한 서원에 강한 제재를 취해야 했지만, 재지적 기반을 가진 양반관료의 반발을 막기는 어려웠다. 인조-효종대 서원 금령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휘철과 같은 보다 강력한 서원 통제책은 숙종대에 본격화되었다. 특히 갑오정식(1714년) 이후 수십개 서원·사우가 휘철되었다고 하나 실제 휘철

89) 1741년에는 ‘柳淑 金弘郁 書院’으로 기재되었다.

90) 『영조실록』 96권, 영조 36년(1760) 9월 7일(무신).

91) 1773년경 충청도 보은 山仰祠에 모셔져 있던 宋康錫을 따로 사당에 제항하려 하자 金履安(1722~1791)은 금령을 범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의 간찰을 종계 김이현에게 보냈다(『三山齋集』 권3, 「答從弟誠道」).

92)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2008.

된 원사의 현황이 그 기준이 파악되지 않아 재검토가 절실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숙종대 휘철된 서원의 명단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있어 그 현황과 추이 및 기준,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갑오정식이 있던 해에 평안도의 서원이 휘철되었으나 더 이상의 다른 도의 휘철이 진행되지 않자 1717년(숙종 43) 민진후 건의로 숙종은 갑오정식을 재천명하였다. 남아있는 기록에 의거하면 그 이후 1717년 10월 1개도, 1719년 3개도의 해당 서원이 추가적으로 휘철되었다. 휘철 기준은 “계미년(1703년) 이후 허가없이 창건된 서원”을 휘철하는 것이었다. 숙종대 휘철된 원사의 목록을 일부지만 본 논문에서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첫째, 노론계 인물들이 제향된 서원의 경우 휘철기준에 해당해도 존치시켰다. 또한 주자 제향서원의 경우 역시 존치시켰다. 그리고 국경을 연한 변방지역의 서원·사우 역시 유풍진작의 이유로 휘철을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보면 당시 서원휘철을 주도했던 민진후와 숙종이 노론을 우대한 특별조치 볼 수 있다. 정책이 추진되는 시기 정권을 장악한 이들을 고려한 불완전한 금령이었던 것이다.

서원 금령이 실효를 거둔 것은 영조대에 이르러서였다. 붕당의 폐해가 곧 서원의 폐단이라는 인식에 따라 영조의 서원 휘철령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탕평정국에서 관료사회의 반발도 약화된 상태였다. 영조 초기에는 노론 4대신의 신원과 무신란의 영향으로 관계자의 제향을 위한 원사 창건이 묵인되고, 노론이 주도하는 정국에서 송시열 서원의 사액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1727년(영조 3)부터 간헐적으로 등장한 소론계의 서원금령 요구에 의해 1729년에 갑오정식을 지키지 않은 서원의 편액을 철거하라는 명을 내렸고, 실제로 몇몇 서원은 휘철되었다. 또한 이때부터 청액과 병향의 요청도 불허하였다.

보다 강한 금령의 시작은 1738년(영조 14)에 병조판서 박문수가 경상도 안동에서 벌어진 서원을 둘러싼 향전을 알리면서 부터였다. 이 사건은 남인 주류의 영남에서 노론계 서원이 세워지며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당파간 갈등이 조정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영조는 이를 단일 사건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전국의 서원에 대한 통제를 도모하였다. 먼저 영조 즉위 이후

1738년까지 창건된 도별 원사의 현황을 조사하고, 1741년에는 금령의 기준을 숙종 갑오년 이후로 확정하여 189개소의 원사를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서원·사우 뿐만 아니라 영당·향현사·유애사·정사·생사당 등 선현을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시설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리고 창건시기의 도 관찰사와 현감, 그리고 주도한 유생의 이름을 확인해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마련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서원 금령과 다른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혔다.

1741년의 서원 획철령으로 많은 원사를 철거하고, 허기없이 추향된 인물은 철향 조치되어 전국적으로 남설되었던 서원은 일부 정리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유생들의 반대 상소가 몇 번 있었지만, 관료층은 대체로 금령에 협조적이었다. 이후 영조 말기까지 잔존한 서원에 대한 치제와 책자 보급 등의 관리만 이루어졌다. 다만, 1741년의 서원금령 대상에 잘못 들어가 피해를 본 서원을 회복한 사례가 확인된다.<sup>93)</sup>

인조대부터 시작된 서원의 폐단에 관한 논란은 당쟁과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보편타당한 제한 조치가 실행되기 어려웠다. 통제책이 본격화 된 숙종대에도 주로 정권을 장악했던 서인-노론계가 주도한 서원 금령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숙종대에 정리된 갑오정식은 서원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후 금령의 명확한 근거가 되었다. 영조는 탕평정국을 전개하며 서원 금령을 재정립하고, 1741년 신유대훈과 같은 시기에 서원 획철령을 내림으로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100여년간의 서원 금령의 변화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서원의 폐단에 대한 문제 제기과 엄격한 금령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들이 주로 비노론계였다는 것이다. 노론계도 동참하는 듯 하지만, 자과 서원에만 관대한 입장을 보였고, 영조대에 노론 주도의 탕평정국에서도 박문수 등 소론계 관료가 획철령을 이끌어내는 동안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이었다. 시기별 서원 금령과 관계된 인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93) 『영조실록』 영조 36년(1760) 9월 7일(무신).

〈참고자료〉 영조 17년 각도 휘철 원사<sup>94)</sup>

도	군현	대상 원사
강원도	영월	金時習 등 사당, 任舜元 생사당, 權益淳 생사당
	정선	이색 등 제향 서원, 鄭有說 사당
	회양	金鑣圭 사당
	춘천	金昌協 서원
	강릉	南九萬 사당
	횡성	鄭述 趙澐 趙正立 鄭崑壽 향현사
	양양	俞晦一 향현사
	원주	朱子影堂
	평강	朱子影堂
	울진	宋時烈 영당
	평창	목사 崔昌敏 생사당
	이천	金始煥 생사당, 趙倓 생사당
고성	朴弼琦 생사당	
황해도	재령	箕子影堂
	옹진	幕洞書院, 전부사 李玪 생사당
	문화	柳車達 서원
	황주	李宅仁 향현사, 목사 李誠躋 생사당, 목사 具聖弼 생사당
	해주	朴汝龍 향현사
	안악	河演 영당
	율성	李洛 영당
	송화	宋時烈 영당, 權尙夏 영당
	신천	李敏躋 생사당
	배천	曹命教 생사당, 尹滄 생사당
	금천	洪重疇 생사당
	곡산	金樛 생사당
재령	崔昌億 생사당, 李道顯 생사당, 沈得賢 생사당	
경기도	양주 <sup>95)</sup>	李喜朝 영당
	파주	坡山書院, 黃禧 영당, 朴世采 영당
	여주	宋時烈 영당
	남양	洪洞 3형제 영당, 俞拓基 생사당
	포천	趙明謙 생사당
평안도	평양	李世白 생사당(4인 소급봉안), 閔維重 생사당(2인 소급봉안), 尹世綏 생사당(3인 소급봉안)
	증화	義烈祠, 李謙 사당, 李東郁 생사당, 具聖益 영당

94) 『서원등록』 영조 17년(1741) 7월 11일~9월 14일.

도	군현	대상 원사
	안주	金鎭男 서원, 李沆 생사당(2인 소급봉안)
	박천	韓翼文·南延年 사당
	기산	李正英 생사당
	정천	李喜朝 사당, 閔聖徽 생사당(3인 소급봉안)
	용천	忠烈祠, 尹憲柱 생사당
	영변	玄德秀·尹居衡 사당, 李挺周 생사당, 趙明翼 생사당, 洪重疇 생사당
	태천	金麟祥·白志訥 사당
	구성	許穎 향현사
	삭주	金翼虎 향현사
	상원	柳重茂 생사당(1인 소급)
	영유	吳命峻 생사당(1인 소급)
	자산	趙益徵 생사당
	성천	崔昌演 생사당(3인 소급봉안)
	순천	金浩 생사당
	순안	趙斗壽 생사당
함경도	온성	申陞 사당
	무산	南九萬 영당
	북청	老德書院
	영흥	龍江書院
	경성	華谷書院, 李穡 영당
	덕원	朱子影堂
	명천	사당(吳珀 崔渭 玄應鵬 董召南 金大成 金秀男)
	종성	향현사(韓世襄 崔慎, 金漢喆 생사당, 李普昱 생사당)
	회령	李光佐 생사당
길주	李汝迪 생사당	
경상도	대구	愍忠祠, 遺愛祠, 兪拓基 생사당, 李峽 생사당
	안동	洛濱書院, 玉溪書院
	상주	竹林鄉賢祠, 伊溪孝社, 甌淵忠烈祠
	경주	雲泉鄉賢祠, 丹丘社祠, 趙明謙 생사당
	성산	道川書院, 世德祠, 雲岩鄉賢祠, 竹溪影堂
	영해	仁山書院
	순흥	九峯精舍, 崇報祠
	신안	忠烈祠
	진주	尹基慶 생사당
	울산	崔鎮漢 생사당
	합천	龍川書院, 李秉泰 생사당, 雲溪祠宇
	영덕	新安影堂

도	군현	대상 원사
	김해	忠烈祠
	함안	道林書院, 安道里社, 山足影堂
	예안	烏山精舍
	예천	廣川精舍
	하양	李敬臣 생사당
	고성	崑義書院
	양산	李滄 생사당
	군위	閔鎭綱 생사당
	밀양	趙彥臣 생사당
	봉화	향현사, 蕩溪精舍
	의성	玉川精舍
	현풍	趙鎭泰 생사당
	비안	白川精舍
	문경	鄭錫範 생사당
	경산	沈壽俊 생사당, 柳愈 생사당
	홍해	松溪影堂
	칠곡	泗陽書院
	신녕	徐命五 생사당
	영천	滄洲里社
	청도	尹鳳九 생사당, 沈鐸 생사당
의흥	華岑書院	
충청도	서천	宋錫後 향현사
	은진	成三問 楊應春 사당
	청양	李義吉 향현사
	음성	南延年 사당
	진천	李公升 李挺 서원
	은양	宋浚吉 宋時烈 權尙夏 영당
	회덕	趙憲 宋浚吉 宋時烈 서원
	괴산	李泰壽 향현사
	한산	權楨 영당
	연풍	鄭誥 영당
	청주	松泉書院(李濟臣, 崔錫鼎, 李寅嫻 추향)
	서산	柳淑 金弘郁 서원
	회덕	宋奎濂 사당
	니산	李必泰 향현사, 孔子書院(걸리사)
	보은	金自粹 具壽福 崔壽臧 사당, 春秋祠
황간	世德祠(朴英 朴孝誠 朴詳 朴祐 朴淳 朴以龍 朴應勳 朴希聖 朴希喆 朴事	

도	군현	대상 원사
		三 朴惟棟 제향)
	충원	세덕사(金自粹 金世弼 金礎 金嶷 金鼎鉉)
	공주	세덕사(林椿 林蘭秀 林穆), 전관찰사 洪重夏 생사당
	영동	전현감 李秉鼎 생사당
	홍산	전현감 생사당(趙最壽 申思建 曹命宰)
전라도	금산	龍江書院, 礪溪書院, 山泉齋書院, 吉再 영당
	영광	栢山書院
	능주	竹樹書院
	강진	錦峯書院
	임피	鳳巖書院
	합평	安汝諧 사당
	무주	尹宣學 尹拯 曹漢英 朴長遠 朴世堂 사당, 朱子 影堂
	일신	李燾 사당, 金冲漢 사당
	무안	林象德 사당, 權宏 생사당
	홍덕	吳俊 사당, 黃載重 사당
	창평	朴以寬 朴以洪 사당
	보성	孫尙隆 사당
	고산	金廷望 향현사, 兪寂基 생사당
	광주	鄭守忠 영당
	진주	具聖弼 생사당
	여산	申命式 생사당
	남평	宋柄翼 李顯應 유애사, 成至善 유애사
	옥구	李健命 趙泰采 유애사
홍덕	柳星河 朴宗發 유애사	

95) 南乙珍사당과 趙光祖서원은 금령 반포 전의 미사액서원으로, 별도 논의 요구

## 【참고문헌】

### 1. 원전

『書院謄錄』, 『仁祖實錄』, 『孝宗實錄』, 『肅宗實錄』, 『景宗實錄』,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典錄通考(1707)』, 『新補受教輯錄(1743)』, 『三山齋集』, 『密菴集』

### 2. 논저

김대식, 「조선 書院 樞軸 논의의 전개-인조부터 정조까지」, 『교육사학연구』 24권 1호, 2014.

김대식, 「고종대 萬東廟와 書院 樞軸 논의의 전개」, 『교육사상연구』 30, 2016.

김병우, 「大院君 政權의 權力基盤과 改革政策」,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세운, 「대원군의 서원 樞軸에 대한 일고찰」,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박진효, 「홍선대원군의 書院정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안다미, 「私設 논의를 통해 본 서원철폐령의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7, 2021.

우용제, 「大院君 執政期の 書院撤廢와 成均館 整備計劃」, 『교육사학연구』 2-3, 1990.

윤희면, 「고종대의 서원 철폐와 양반 유림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10, 1999.

이병훈, 「19세기 말 서원 樞軸령 이후 대응과 변화- 秋溪秋氏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84, 2023.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이정우, 「조선후기 內浦지역 서원 사우의 건립과 운영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7, 역사문화학회, 2004.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보일, 「大院君(李昉)의 對書院政策에 관한 研究」,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한지희, 「영조초 봉당론의 변용과 탕평책의 수립」, 『국학연구』 31, 한국국학진흥원, 2016.

홍제연, 「충청지역 서원의 복설 추이와 성격」, 『민족문화논총』 85, 2023.

홍제연, 『충청지역 소론계 서원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Abstract

## A Study on the Demolition of Seowon during the Sukjong and Yeongjo Periods of the Joseon Dynasty

Hong, Je-Yeon\*·Ko, Soo-Yeon\*\*

Research on the abolishment of seowon (private Confucian academ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has mainly focused on the discussions and developments during King Gojong's reign, particularly under Heungseon Daewongun. However, it was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that large-scale demolitions were first implemented through decisions made jointly by the king and his officials. Even more seowon were dismantl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Despi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seowon policy during the Sukjong-Yeongjo period, scholarly research on the topic remains limited.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seowon policies of that era.

From the early 1600s, seowon increasingly became strongholds for political factions, causing numerous issues. As a result, discussions on restricting seowon began during the reigns of King Injo and King Hyojong, but it was during King Sukjong's reign that systematic control measures were fully implemented. In 1714 (the Gapo year), Sukjong established a regulatory framework and ordered the demolition of seowon in Pyeongan Province. In

---

\* Senior Resercher, Chungcheongnam-do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 [iota@naver.com](mailto:iota@naver.com)

\*\* Professor in the Faculty of Liberal Arts Convergence at U1 University  
/ [gosity@u1.ac.kr](mailto:gosity@u1.ac.kr)

1717, he issued an order to dismantle seowon that had been built without official permission after 1703 (Gyemi year). However, seowon affiliated with the Noron faction were left untouched, revealing that political considerations influenced these decisions.

It was only during King Yeongjo's reign that seowon policy began to yield tangible effects. Through his policy of impartial governance (Tangpyeongchaek), Yeongjo suppressed bureaucratic resistance and enforced a stronger ban on seowon. In 1738, Park Mun-su reported factional conflicts (hyangjeon) occurring at a seowon in Andong, Gyeongsang Province. Using this incident as a pretext, Yeongjo attempted to reassert national control over seowon. In 1741, he set the standard for prohibition based on the year 1714 and identified 189 seowon and related shrines. Officials who had been involved in their establishment—including provincial governors, local magistrates, and leading Confucian scholars—were subject to punishment. As a result, the widespread and uncontrolled establishment of seowon across the country was partially curtailed.

Controversies surrounding seowon had been linked to factional strife since King Injo's reign, which made it difficult to implement universal restrictions. Although Sukjong's efforts were limited in effectiveness, his establishment of clear standards laid the foundation for Yeongjo's policies, which eventually produced definitive outcomes.

Key word : Seowon, a Local sage's shrine[鄉賢祠], shrines for living persons[生祠堂], Gapo Regulation, Sukjong, Gyeongjong, Yeongjo, Min Jin-hu, Park Mun-su

논문 투고일: 2025. 05. 15 심사 완료일: 2025. 06. 05 게재 확정일: 2025. 06. 09

## 영조와 정조의 서원 賜祭와 도산서원

이 재 현\*

- I. 머리말
- II. 영조와 정조의 서원사제
- III. 호조 대의 도산서원 사제와 입지 강화
- IV. 정조 대의 도산서원 사제와 위상 확립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영조와 정조대 도산서원 내려진 사제를 통해 그들의 왕권강화책과 그 행위가 도산서원이라는 공간 및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것이다. 사제는 개인의 묘사나 사당, 서원 등에 시행되었고, 특히 서원이 사액을 받을 때는 으레 사제가 시행되었다. 다만 사액을 제외하고 사제가 시행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행사였으며, 특히 영조 대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영조는 화양서원과 자운서원 등에 사제를 시행하였고, 영남에서는 도산서원에 대해 사제를 시행하였다. 정조는 서원에 대한 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의리론을 관철시키는 요소로 서원에 대해 사제를 시행하였다.

도산서원은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이었으나, 영남 내에서의 입지는 시기별로 달랐다. 도산서원의 주축을 이루는 예안 사족은 인조반정 이후 퇴계학파 내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였고, 도산서원의 위상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영조가 도학의 대한 존숭 차원에서 서원 사제를 시행하고 영남지역에서는 도산서원을 선택하면서, 도산서원은 영남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정조는 남인을 복권 시켜 우호세력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런 위한 조치 중에 도산서원 사제도 포함되었다. 특히 정조는 도산서원에서 사제와 별도로 별시를 시행

---

\* 울산대학교 강사

하였고, 이 행사는 이후 영남남인은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를 통해 정조의 의도에 부합하였다. 정조가 도산서원에서 행한 일련의 행사는 존현을 넘어 영남남인을 임오의리에 참여시키려는 의도였다. 이것은 후에 영남남인들이 사도세자와 정조에 대한 의리를 주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주제어 : 영조 정조 사제陽祭 도산서원 영남남인

## I. 머리말

임금이 제문과 제물을 내려 망자를 제사지내는 의례인 賜祭는 功臣, 忠信, 先賢, 孝子, 烈婦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의례가 시행되는 공간은 개인의 묘소나, 사당, 서원 등이 있었다. 서원은 賜額을 받을 때 으레 사제가 시행되었다. 최초의 서원이자 최초의 사액사원인 소수서원에 院額이 내려질 때 함께 사제를 한 것이 그 기원이다. 사액 외의 경우에는 해 도통 관련 大賢을 모신 서원, 충절 인사를 봉향하는 사당, 위상이 높은 인물의 추향, 능행 때 연로에 위치한 원사, 특정 인물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서원에 사제가 내려졌다.<sup>1)</sup> 다만 서원에 대한 사제는 사액 당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게 시행되었고, 영조 이후인 18~19세기에 집중되었다.<sup>2)</sup> 이를 통해 서원에 대한 사제가 대단히 이례적이며 임금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慶尙道 禮安에 있는 陶山書院은 영조 대 이후 가장 사제를 많이 받은 서원이었다. 조선후기 陶山書院은 嶺南 내 퇴계학파의 본산으로 영남남인을 영도

1)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10, 한국서원학회, 2020, 209쪽.

2)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10, 한국서원학회, 2020, 209쪽. 이에 따르면 실록에 수록된 선액을 제외한 사제 사례는 18곳 30건에 불과하다.

하는 위치에 있었다. 퇴계 이황은 15세기 중반 서원이 막 건립되던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였다. 그의 사후 제자들은 이황이 강학하던 禮安의 도산서당의 뒤편에 李滉(退溪, 1501~1570)을 주향으로 한 도산서원을 창건하였다. 이후 동향의 고제인 趙穆(月川, 1524~1606)만이 도산서원에 종향되었다. 예안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소읍이나, 퇴계 이황의 출현과 그의 제자들의 존재로 인해 읍세와 관계없이 위상이 높았고, 도산서원의 위상이 그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영남에서 도산서원의 위상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다. 도산서원은 서원의 기본적 기능인 강학과 제향을 지속하면서, 퇴계 관련 선행사업에 있어서는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영남남인들의 공론 형성에 발의처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향촌사회의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확연하게 상실되었다. 상황이 반전되는 시기는 18세기 중반 이후였다. 이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조정의 賜祭였다.

도산서원에 대한 致祭는 모두 9회에 걸쳐 있었다. 연도는 1575년(선조 8), 1576년(선조 1), 1733년(영조 9), 1756년(영조 32), 1781년(정조 5), 1792년(정조 16), 1816년(순조 16), 1840년(헌종 6), 1854년(철종 5)이다. 이 외에 1785년(정조 9), 1796년(정조 20), 1864년(고종 1)에는 이황의 가묘에 대한 치제도 있었다. 선조 연간의 치제는 서원이 사액 될 때와 이황이 '文純' 시호를 받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150년 이상 관련 행사가 없다가, 18세기 중엽 영조 연간 이후 서원과 가묘에 대한 치제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와 치제가 일정한 연관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도산서원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3)</sup> 도산서원의 정치·사회적 위상에 관해서는 차

3)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소장된 도산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도서를 편찬하였다.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사회』, 새물결, 2014 : 『조선 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장섭과 이병훈이 조선후기에 걸쳐 그 변화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sup>4)</sup> 또 19세기 사회 변화에 따라 서원의 위상이 하락하는 모습에 대한 연구도 있다.<sup>5)</sup> 한편 도산서원 운영의 핵심인 원장직 구성에 관해서는 우인수의 연구가 있으며,<sup>6)</sup> 채광수는 도산서원의 치체례 과정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sup>7)</sup>

치제에 대한 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도산서원의 치체일기를 주로 활용하였다. 1733년의 치제에 대해서는 「致祭日記」가 1781년과 1792년의 치제는 「賜祭日記」가 남아있다. 1756년의 경우 사제문과 교지가 있다. 또 가묘에 대한 치제는 1785년은 사제문만 남아 있고, 1796년의 치제에 대해서는 「賜祭時日記」와 「賴村致祭時日記」가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18세기 영·정조 연간에 집중된 도산서원 사제의 의미를 영남남인의 정치활동의 과정속에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우선 영·정조 연간의 서원 사제의 사례와 정치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영조와 정조는 왕권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요소를 활용하였는데, 서원 사제도 그 일환이었다. 본고에서는 영·정조 연간에 시행된 서원 사제의 사례를 살펴보고 특정 서원에 대한 사제에 담긴 왕의 의도를 알아보았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영·정조 연간에 있었던 도산서원 사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산서원은 영남의 대표서원이자 예안의 首書院이었다. 도산서원의 부침은 예안 사족들의 입지와 연관이 있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도산서원의 위상 강

4) 차장섭, 「陶山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과 位相」, 『歷史教育論集』 54, 역사교육학회, 2015 ; 이병훈,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大東漢文學』 67, 대동한문학회, 2021.

5) 이수환, 「도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1884년 <서류사변시 일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1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 정진영, 「도산서원, 또 하나의 하늘」,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6)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7)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10, 한국서원학회, 2020.

화는 단순히 예안 사족들의 입지 강화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영남남인 정치적 열망과 관계가 있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안동지역 남인과의 관계이다. 安東은 대읍으로 영남남인의 거점이고, 이황을 주향으로 한 虎溪書院이 소재하였다. 이들은 영남남인로서 같이 활동하였지만, 영남 내의 정치적·학문적 입지와 관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벌이기도 하였다. 도산서원 치제 당시에도 갈등과 협력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도산서원 치제를 이러한 맥락 안에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도산서원의 치제가 가지는 의미를 18세기 영남남인의 정치 활동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영조와 정조의 서원사제

서원은 현인을 모신 곳으로 서원에 대한 존숭은 尊賢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서원의 치제는 바로 존명의리와 예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취해진 조치였다.<sup>8)</sup> 영조는 자신이 도통의 계승자이자, 국왕과 스승이 일치하는 삼대의 군주상을 회복하여 '君師'가 되기를 자청하였다. 정조 또한 이 뜻을 이어 받아 자신이 군사를 실현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sup>9)</sup> 그럼에도 영조와 정조는 서원의 사제를 통해 '도통'을 존숭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서원은 조선후기 붕당의 거점이었다. 숙종 대 이후 환국을 통해 붕당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특히 경종 대의 신임옥사는 왕통의 정당성 문제로 연계되었다. 붕당은 학문적 대립을 넘어 왕통과 관련된 '忠'·'逆'의 의리문제로 전환되었고, 서원의 배향된 인물은 곧 붕당의 핵심인물이자 의리의 표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인물을 배향한 서원에 대한 사액·사제는 임금이 직접 의리론에 개입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 두 가지 경향성이 영조 대 이후

8)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85~88 쪽.

9)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45~53쪽.

서원에 대한 사제가 늘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영조는 즉위 이후 화양서원에 처음으로 사제하였다.<sup>10)</sup> 영조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毅宗의 어필을 보고는 송시열이 尊周한 성의에 감명을 받아서 화양서원에 사제를 명령하였다.<sup>11)</sup> 전형적인 존명의리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행하여진 서원에 대한 사제이다. 또 한편으로는 을사환국 이후 노론 우위 정국에서 송시열에 대한 현창을 통해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조치였다. 이미 10월에 송시열을 배향한 충청도 黃澗의 冷泉書院에 사액과 사제가 있었다.<sup>12)</sup> 화양서원은 사제는 사액과 관계없이 내려진 것으로, 존주의리를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송시열의 통해 노론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조치였다.

한편 1731년(영조 7)의 자운서원에 대한 사제는 존주의리보다는 도통에 관계된 조치였다. 영조는 경연에서 『聖學輯要』를 강학한 뒤 책을 칭찬하여 이이가 배향된 과주 紫雲書院의 사제를 명령하였다.<sup>13)</sup> 영조는 1760년에도 경연에서 『성학집요』를 강학하고 해주 石潭書院의 사제를 명령하였다.<sup>14)</sup> 『성학집요』의 제왕학은 군주를 사대부의 논리의 실현자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사대부의 논리를 따라야하는 존재로 규정한 것이었다. 영조 후반부터 『君師論』이 강화되면서 聖學의 교재는 정조 연간 尊君이 강조된 『大學類義』가 사용되었다.<sup>15)</sup> 영조는 군사론을 주장하였지만, 아직 경연에서 『성학집요』를 이용하면서 존현의 의리를 드러내는 조치로 이이의 서원에 사제를 명령하였다. 영조 본인이 직접 서원을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 몫시 싫어하는 곳으로 표현하면서도 사제를 통해 의도를 드러내었다.

정조는 서원에 대한 사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정조는 즉위 후 송시열에 대한 현창을 통해 노론을 안심시키고 왕권강화를 추진하였다. 그

10) 『영조실록』 권9, 영조 2년 1월 1일 갑오.

11) 『영조실록』 권8, 영조 1년 12월 15일 무인.

12) 『영조실록』 권8, 영조 1년 10월 7일 신미.

13) 『영조실록』 권30, 영조 7년 12월 28일 정사.

14) 『영조실록』 권95, 영조 36년 2월 29일 갑진.

15) 정재훈, 『조선 국왕의 상징』, 2018, 현암사, 239~242쪽.

구체적인 조치로 孝宗 廟庭에 대한 추배, 회양서원 사제, 대로사에 대한 사액과 사제 등이 있었다. 정조는 송시열에 대한 현창을 통해 그를 경학과 의리에 뛰어난 인물로 비정하고, 그가 매진한 요체가 결국 국왕에 대한 충성으로 귀결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sup>16)</sup> 노론의 정통성에 대한 인정과 그들의 국왕에 대한 충성을 동시에 얻내 려고 한 것이다.

노론의 도통에 대한 존중으로 이이가 배향된 서원에서의 치제도 계속되었다. 파주의 자운서원과 해주의 紹賢書院이 그 대상이었다. 이외에 성수침과 성혼이 배향된 파주의 坡山書院에도 사제가 있었다. 특히 정조는 영남의 남인계 서원에 대한 사제도 시행하였다. 영조가 도산서원에만 사제한 것과는 달리 정조는 후술할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대한 동시 사제를 명령하였다. 또 김우옹을 제향한 성주의 청천서원과 장현광을 제향한 인동의 동락서원에 대한 사제도 명령하였다. 이 중 청천서원은 사액서원이 아니었다. 당시 청천서원에 사액 청원에 대해 정조는 함부로 시행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지만, 김우옹이 이황이 제자이면서, 그가 지은 『續綱目』을 서연에서 진강했다는 인연으로 사제를 명령하였다. 이어 장현광은 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며 동시에 사제를 명령하였다.<sup>17)</sup> 서원에 대한 사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 조치는 남인을 고취시키려는 정조의 의도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과천 四忠書院에 대한 사제는 의리론과 연관이 깊었다. 본래 신임옥사 당시 사사된 노론 4대신을 배향한 사충서원은 을사환국(1725)으로 세워졌다가 정미환국(1727)으로 훼손되었다. 이후 을해옥사(1755)로 소론이 전면적으로 실각하고 노론 중심이 국정운영이 시작되자 사충서원이 복원되었다. 서원은 1756년(영조 32)에 복원되었고, 사액과 사제가 있었다. 사제는 성대하게 진행되었고, 이것은 4대신에 대한 평가가 ‘忠’의 관점에서 정론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어 정조 대에도 사충서원에 대한 사제가 계속되었다. 1781년(정조 5)

16) 정조 연간 송시열 현창사업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박성순, 「正祖의 宋時烈 顯彰과 王權 強化論」, 『韓國史研究』 141, 韓國史研究會, 2008, 참조.

17) 『정조실록』 권19, 정조 9년 2월 10일 경인.

에는 영조의 세계 책봉 1주갑을 맞아 사제가 있었고, 1791년(정조 15)과 1797년(정조 21)에는 顯隆園 園行 과정에서 사제가 있었다. 이것은 영조를 추념하면서 신임의리의 계승을 천명하는 행위였다.<sup>18)</sup> 한편 정조는 영조의 신임의리와 사도세자의 신임의리를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임오의리를 재천명하려고 했다.<sup>19)</sup> 영조의 세계책봉을 계기로 사충서원에 사제하고 현릉원 행차길에 굳이 사제를 하는 것은 정조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영·정조 연간의 서원 사제 사례는 도통 연원의 인물에 대한 존승을 통해 해당 봉당에 尊賢을 표시하고, 또 의리 문제에 대한 국왕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원 사제가 사액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된 것을 고려한다면, 몇 차례의 사제가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정조 연간에 도산서원에 내려진 사제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Ⅲ. 영조 대의 도산서원 사제와 입지 강화

도산서원은 이황의 본향에 건립된 서원으로 곧 남인의 본산으로 기능하였다. 영남 일대에 이황을 주향으로 한 서원이 건립되기는 했지만, 도산서원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600년(선조 33)에는 『退溪集』이 도산서원에서 간행되었다. 당시 조목을 비롯한 예안 지역의 사족(월천계)은 퇴계집 간행을 둘러싸고 柳成龍(西厓, 1542~1607)을 비롯한 안동 지역의 사족(서에게)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것이 도산서원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은 곧 예안 지역 사족이 이황 사후 적통 논쟁에서 우위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이 무렵 도산서원의 위상은 1610년(광해군 2) 영남의 五賢從祀疏가 도산서원 원장 金坪(1563~1617)

18) 사충서원의 건립과 훼손 및 복설, 사제에 대해서는 이경동, 「조선후기 사충서원(四忠書院)의 건립과 운영」, 『韓國書院學報』 15, 한국서원학회, 2022, 참조.

19)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을 疏頭로 하여 올려졌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하지만 월천계가 적통 논쟁을 확립하기 위해 광해군 대에 조목의 도산서원 추향을 시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월천계의 조목 추향 시도는 안동 및 滎川 사족들의 반발에 직면하였다. 그러자 월천계의 상당수는 당시 집권세력인 大北에 접근하였다. 결국 타읍 사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지원 덕분에 1614년에 월천계는 조목을 도산서원에 추향하는 데에 성공하였다.<sup>21)</sup> 이것은 도리어 되게 적통을 둘러싼 제자들의 분기를 가속화시켰다. 안동에서는 서에게와 학봉계가 협력하여 이황이 주향인 여강서원에 류성룡과 金誠一(鶴峰, 1538~1593)을 습향하였다.<sup>22)</sup>

이어서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대북과 연계되었던 월천계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도산서원 원장이던 李有道(三栢堂, 1565~1626)가 경상감사 元鑣(1566~1629)에 의해 杖斃된 사건이다.<sup>23)</sup> 인조 연간 이후 도산서원은 도내 공론의 집결처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안뿐만 아니라 영남남인 내에서 안동지역의 사족의 주도권도 상실되었다. 17세기 중엽 영남남인 내 주도권은 상주·성주 지역의 사족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상황은 17세기 후반 李玄逸(葛庵, 1627~1704)이 등장하면서 재편되었다. 그는 己巳換局 이후 山林으로 조정에 진출했지만, 甲戌換局으로 실각하였다. 갑술환국으로 유배된 이현일은 말년에 안동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출사 이후 말년까지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sup>24)</sup> 갑술환국 이후 영남남인은 중앙 정

20) 김령, 『계암일록』 1610년 5월 27일, 28일. 『광해군일기』 30권, 2년 6월 14일 정해.

21) 조목의 종향문제에 대해서는 李尙賢,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亨論議: 17세기 嶺南土族 動向의 一端」, 『북악사론』 7, 북악사학회, 2001.

22) 金鶴洙,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 17세기 초반의 廟亭論議를 중심으로 -」,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韓國社會研究會, 1998.

23)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鄭萬祚, 「仁祖4年 陶山院長 李有道 致斃事 논란」, 『韓國學論叢』 26, 국민대학교 한국사 연구소, 2003.

24) 이현일은 정계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학수, 「葛庵 李玄逸 研究」,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계에서 몰락했지만, 영남남인은 이현일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도산서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갑술환국 무렵 이후 18세기 중반까지 안동의 수서원인 호계서원의 원장은 이현일의 제자 및 재전 제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sup>25)</sup> 도산서원은 1700년경 무렵까지 예안 외 지역의 인사가 원장이 되지 않았다. 18세기에는 운영 방식이 바뀌는데 18세기 100년간 전체 원장 역임자가 159명인데, 예안이 90명, 예안 외 지역이 66명, 미상이 3명이었다. 예안 외 지역의 66명 중 안동이 28명이고, 순흥과 영주가 10명, 기타는 1~2명 내외이다.<sup>26)</sup> 또한 호계서원과 같이 이현일의 제자들이 주축이었다.

도산서원의 원장 구성변화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활로의 모색이었다. 주변 지역의 명망가를 영입하여 외풍을 줄이고 우호세력을 늘려 저변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도산서원 원장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덕분이었다.<sup>27)</sup> 그 결과 주로 안동권의 이현일 문인을 중심으로 원장 자리가 개방되었다. 일종의 호계서원과의 동기화 현상이라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예안 사족의 입지 유지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안동 일대의 사족만 영입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안동권 인물도 아니고 이현일 문인도 아닌 명망가가 필요했는데, 1733년(영조 9)에 원장을 역임한 權相(淸臺, 1679~1759)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큰 변수가 등장하였으니, 1728년(영조 4)의 무신란이다. 갑술환국 이후로 영남남인은 중앙정계의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이현일의 문인들의 경우 경종 연간에는 두 차례의 이현일

25)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虎溪書院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131~136쪽.

26)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111쪽.

27)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103~104쪽.

에 신원 상소운동을 전개하였다. 1724년 영조 즉위 이후에는 몇몇 문인들이 이현일의 신원을 주장하다가 당론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sup>28)</sup> 이들이 이현일의 신원에 집착한 이유는 그의 신원이 기사년의 역당 혐의와 엮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신란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안동 지역 사족의 동향에만 국한하면, 안동의 사족들은 경상도 지역 반란의 주모자인 정희량(鄭希亮, ?~1728)과 인척관계로 얽혀 있었다. 정희량은 鄭蘊(桐溪, 1569~1641)의 후손으로 그의 형인 鄭纘儒가 柳雲龍의 후손인 柳後光의 사위였다. 후에 안동에서는 노론들이 이때의 주모자를 ‘무신사적(戊申四賊)’으로 지명하고 鄉案에서 삭제시켰는데, 權槩(屏谷, 1672~1749), 金敏行(1673~1737), 柳夢瑞(吾廬, 1680~1750), 權德秀(通軒, 1672~1759) 등 4인이었다. 이 중 류몽서가 류후광의 아들이며, 이들은 모두 안동 지역의 남인 인사들과 모두 학맥 및 혼맥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sup>29)</sup> 또 모두 이현일의 문인이며, 권구는 이현일의 아들로 이휘일에게 出系한 李穡(梧村, 1648~1685)의 사위였다. 또 1720년에 도산서원의 원장을 한 鄭重元은 정희량의 父였다. 즉 안동과 예안 일대의 사족은 사실 정희량에 의해 무신란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그 중 권구는 영조에게 직접 국문을 받았다.<sup>30)</sup> 이들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조가 안동 지역에 아량을 보여 영남 전체를 적으로 돌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영조가 관대한 조치를 한 배경 중 하나는 안동 지역의 사족들이 반란 소식을 들은 직후 柳升鉉(慵窩, 1680~1746)을 대장, 權萬(江左, 1688~1749)을 부장으로 하는 의병이 창설했기 때문이었다. 영조는 의병을 창의한 이들 및 이현일의 아들이자 유력인사인 李穡(密菴, 1657~1730) 등에게 벼슬을 제수해

28) 나학천의 상소. 『영조실록』 권2, 즉위년 11월 19일 기미; 조덕린의 상소 『영조실록』 권8, 1년 10월 20일 갑신.

29) 권구, 김민행, 류몽서, 권덕수의 자세한 혼맥은 趙峻皓, 「17~18세기 英陽地方 漢陽趙氏의 門中研究-士族家門의 確立과 變遷의 한 事例」, 『北岳史論』 4, 北岳史學會, 1997, 194~195쪽.

30) 『承政院日記』 659책, 영조 4년 4월 12일 임진.

이들을 위무하였다. 이 외에도 朴文秀(耆隱, 1691~1756)에게 모든 죄를 불문에 붙인다는 諭書를 내려 안동향교에서 士人을 모아 읽게 하였고,<sup>31)</sup> 무신란에 안동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칭찬하기도 하였다.<sup>32)</sup>

안동의 사족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이재는 1728년에 도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하고 이듬해 호계서원의 원장직을 수행하였다. 70대의 이재가 원장직을 수행한 것은 지역의 민심 수습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무신란 이후 안동을 중심으로한 영남남인의 입지는 오히려 나아졌다. 영조는 몇몇 인사를 등용시켜 자신이 이들에게 우호적임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도산서원을 비롯한 예안은 몇몇 인사들이 직접 연루되어 국문을 받은 안동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인 1733년 도산서원에 대한 사제가 있었다.

영조는 2년 전인 1731년에 자운서원에 대한 사제를 시행하였다. 영조는 즉위 초 화양서원에 대한 사제는 송시열의 준주론에 대한 존숭의 차원이었다. 반면 이이에 대한 사제는 『성학집요』를 통한 도학에 대한 존숭의 의미로 이루어졌다. 도산서원에 대한 사제도 자운서원의 경우와 비슷한 맥락에서 실현되었다.

당시 사관이던 金漢喆(可軒, 1701~1759)은 실록 봉안과 포쇄를 위해 태백 사사고를 방문한 뒤 안동 일대를 방문하고 영조에게 보고하였다.<sup>33)</sup> 김한철은 안동과 예안은 이황의 유품이 남아 아직도 지키고 있으며, 또 예안에는 고택과 도산서원이 있다고 하며 영남 사람들이 사제를 바라니 자운서원의 예에 따라 하기를 청하였다. 대신인 李匡輔 및 尹得和, 吳瑗도 김한철의 이야기에 동의하였다. 영조는 도산서원에 사제하고 고택과 서원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라고 명령하였다. 김한철은 또 『退陶言行錄』이 간행되었으며, 『성학집요』 보

31) 『영조실록』 권17, 4년 4월 24일 갑진.

32) 영조의 안동 지방에 대한 자세한 조치는 이육,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韓國史學報』 42, 高麗史學會, 2011, 156~160쪽.

33) 『승정원일기』 768책, 영조 9년 11월 19일

았듯이 봐주기를 청하였다. 영조는 이 역시 허락하여 감영에게 『퇴도언행록』을 인출하여 올리라고 명령하였다. 영조의 조치는 무신란 이후 일련의 영남 우대 조치 중 방점을 찍는 것이었다. 수찬 鄭亨復을 사제관으로 파견되어 약 1달 뒤인 12월 17일에 도산서원에서 고유제가 있었다. 이때 영남인사 700여 명이 운집하였다.<sup>34)</sup>

그런데 이 당시 『언행록』을 둘러싸고 예안과 안동 사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언행록』은 원래 이현일의 문인인 權斗經(蒼雪齋, 1654~1725)이 편찬하였다. 권두경은 안동 출신으로 1714년(숙종 40)과 1717년에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또 이황의 문인록인 『陶山及門諸賢錄』은 초본인 『溪門弟子錄』도 작성하였다. 그런데 두 책 모두 오류가 있다며 권두경의 포본에 대해 예안 사족들이 반발하였다. 김한철은 『언행록』을 영조에게 두 고을의 판본은 약간 상세하고 간략한 차이는 있으나 대의는 같다고 보고하였다.<sup>35)</sup> 그러나 두 고을의 사족들을 편찬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권상일은 「범례」에 오류가 많아 갈등이 있다고 하였다.

1733년에 도산서원의 원장이 된 권상일은 『언행록』의 오류를 바로잡고 안동, 예안 고을을 중재하기 위해 골몰하였다. 그는 10월 8일에 도산서원을 방문하여 사무를 보면서 『언행록』의 개정을 위해 안동의 향교와 서원에 통문을 보내는 일을 논의하였다.<sup>36)</sup> 그는 예안과 안동 일대를 유람한 후 상주에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김한철이 방문하고 조정에 건의가 이루어졌다. 11월 19일에 결정된 도산서원의 사제는 12월 6일에 도산서원에 알려졌고, 권상일은 10일에 도산서원에 도착하였다.

도산서원에서는 영조가 乙覽할 『언행록』을 13일에 간행하여, 다음날 관에

34) 「치제일기」, 1733년 12월 17일. 권상일은 800여 명이 모였다고 하였다.

35) 이때 도산서원 치제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안동 사족들의 의견을 들어준 김한철은 후에 노론 강경파로 활동하였다. 특히 1737년에는 영남남인의 대표이던 조덕린을 공격하였다. 김한철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문식, 「18세기 金漢喆의 인론 활동」, 『韓國思想과 文化』 31, 韓國思想文化學會, 2005.

36) 권상일, 『청대일기』, 1733년 10월 8일.

보냈다. 예안 사족들은 김한철이 영조에게 전달할 때는 안동 사족들의 청탁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예람할 것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편찬하였다. 권상일은 이 판본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이미 간행한 데다가 사족 간의 갈등이 계속되어 모두를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하였다. 이들은 제향을 지내는 당일 아침까지 갈등을 벌였다. 권상일은 겨우 조정할 수 있었다고 했으나,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다.<sup>37)</sup>

『언행록』을 둘러싼 논쟁은 퇴계의 적통을 둘러싸고 갈등이 영남내에서 언제나 잠재함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들은 통합된 재야세력이었고, 영조는 자신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우군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었다. 영남에서 난이 일어났음에도 도산서원에서 자운서원에서의 예와 같이 사제가 시행된 것은 이황에 대한 존숭을 통해 영남남인들을 고무하려는 영조의 의지였다.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현일의 문인인 金聖鐸(舜山, 1684~1747)을 중심으로 안동 지역 인물들이 출사하면서 영남남인 내에서 안동지역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영조의 조치가 지역내에서는 주도권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1737년(영조 13) 김성탁이 스승인 이현일을 비호하다가 유배되고, 趙德麟(玉川, 1658~1737)이 무신란의 배후자로 지목되어 유배됨으로써, 영남남인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사실상 안동지역 남인은 영조 연간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영남남인 전체적으로도 정치적 침체가 계속되었다.

안동지역에서는 성장한 노론 세력이 김상헌을 배향한 鶴洞書院을 건립하려다가 남인과의 마찰을 빚었다.<sup>38)</sup> 노론은 경상감사와 안동부사, 예안현감의

37) 권상일, 『청대일기』, 1733년 12월 13일, 12월 17일.

38) 이 사건은 남인의 본거지인 안동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론이 서원 건립을 둘러싸고 대결을 벌인 것으로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주요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鄭萬祚, 「英祖 14년의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金炯秀, 「1738년(영조 14년) 安東 鶴東서원의 置廢와 지방관의 역할-法城日記를 중심으로」, 『嶺南學』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회파

지원을 받았지만, 끝내 서원의 건립에 실패하였다. 노론의 요구로 무신사적에 대한 유별이 시행되었고, 안동의 수서원인 호계서원의 원장을 1740년~1742년까지 안동부사가 역임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남인들은 끝까지 김상헌 제향서원의 건립을 저지하였다. 도산서원은 이러한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남남인의 침체와는 별개로 그동안 공론의 중심이던 호계서원의 약화는 도산서원의 위상이 강화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1756년의 사제는 이황의 후손 이세택이 상소에 이황이 편찬한 『聖賢道學淵源』을 부쳐 올리면서 이루어졌다. 영조는 『성현도학연원』과 『聖學十圖』에 서문을 친제하고, 감영에서 간행하여 올리게 하였다.<sup>39)</sup> 전날에는 이세택에게 이황의 적손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등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황의 본손과 도산서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듬해 부수찬 李錫祥이 파견되어 1756년 1월 22일에 이황과 조목에게 사제하였다. 이때는 사제문만 남아있고 일기가 남아있지 않아 행사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권상일은 경사이자 행운이기는 하지만 날씨가 급박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 많은 유생이 모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sup>40)</sup> 여하튼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서원 사제가 도산서원에서만 두 차례 거행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1750년대는 영남남인이 완전히 침체한 시기였다. 이때 영조의 지우를 입은 영남남인 출신 관료는 尙州의 권상일과 龍宮의 鄭玉(牛川, 1694~1760)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산서원의 사제는 영남남인을 위무하려는 영조의 의도가 잘 보여진 것이다. 그리고 영조의 조치는 영남 내에서 도산서원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켰다.

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71, 한국사연구회, 2015 ;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 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조선시대사학회, 2015.

39) 『영조실록』 권86, 영조 31년 12월 14일 계축.

40) 권상일, 『청대일기』, 1756년 1월 17일.

#### IV. 정조 대의 도산서원 사제와 위상 확립

정조 대에도 여전히 영남남인의 중심은 안동지역의 남인이었다. 이들은 주로 李象靖(大山, 1711~1781)의 문인이었고, 자신들의 학통이 이황-김성일-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진다고 여겼다. 정조는 1788년(정조 12) 이후 영남남인 인사들을 본격적으로 기여하였다. 그 중심에는 안동지역 영남남인이 있었으나, 공간적으로는 도산서원이 중심이 되었다.

정조 대에는 1781년(정조 5), 1792년에 도산서원의 사제가 있었다. 그 중 1781년의 경우는 남인이 본격적으로 출사하기 전의 일이었다. 즉 영남남인을 본격적으로 등용하기 전에 도산서원을 통해 그들을 고무하고 선현을 숭상하는 뜻을 보여주었다. 특기할 것은 두 번 모두 도산서원과 慶州의 玉山書院에 동시에 사제하게 한 것이다.

1781년에 정조는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사제하게 하였다. 정조는 즉위 후 화양서원에 사제하였고,<sup>41)</sup> 같은 해 1월에 사충서원에 사제하였다.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치제 할 때 화양서원의 예와 같이 할 것을 지시하였다. 경주의 옥산서원은 李彦迪을 배향한 곳으로 영조는 도산서원과 비슷하게 이언적의 후손을 調用하고 옥산서원의 경치를 그려오도록 명령한 적이 있었다.<sup>42)</sup> 정조 역시 사제를 시행하면서 두 곳의 그림을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오게 하였다. 화양서원의 사례를 따르고 그림을 그려오게 하는 것은 영조의 전례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이 사제가 사충서원에 대한 사제 직후에 시행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보았듯 사충서원에 대한 사제는 신임의리를 계승하면서도 임오의리를 재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다. 정조는 임오의리를 재구축하는데 영남남인을 활용할 포석을 그들이 조정에 출사하기도 전에 미리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옥산서원을 사제 대상에 추

41)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8월 23일 임술.

42) 『영조실록』 권102, 영조 39년(1763) 8월 25일 기유.

가하여 영남에서 褒崇하는 범위를 늘려 더 많은 유생들을 포섭하였다. 이후 1784년(정조 9)에 있었던 청천서원과 동락서원에 대한 사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조정에서는 좌부승지 李養鼎(1739~?)이 파견되어 1781년 5월 18일에 옥산서원에서 사제가 있었고, 5월 22일에 도산서원에 사제하였다. 이때 도산서원의 원장은 李龜應(1729~1789)으로 이황의 8세 嗣孫이었다. 행사를 총괄한 도집례는 李世源(1721~1788)은 이황의 7세손(의인파)로 1788년에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집사는 주로 근방에 사는 본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원에서 경상감영의 관문을 받은 게 5월 1일이므로 행사 일정이 촉박하자 지역을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행사일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제향 당일에는 2,500여 명이 운집하였다.<sup>43)</sup>

정조 즉위 직후 안동에서는 李道顯(溪村, 1726~1776) 부자가 임오년 역적의 처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사형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sup>44)</sup> 이 상소는 안동 남인의 조정에 대한 탐색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sup>45)</sup> 이들이 처형되고 안동은 10년간 大都護府에서 縣으로 강등되었다.<sup>46)</sup> 이러한 시기에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대한 사제는 영남남인들을 고무시키는 일이었다. 사제 전인 3월에는 영남남인을 대표하는 이상정을 형조참의에 제수하였다. 정조는 그가 영남에서 많은 제자를 길렀기 때문에 임금이 명성을 듣고 조정에 부른 것이라 하였다.<sup>47)</sup> 이상정의 등용이 단순한 학자 개인의 등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정은 사직소를 올리며 출사하지 않다가, 그해 12월에 졸하였다. 이상정 사후에도 정조는 그를 崔興源(百弗庵, 1705~1786)과 함께 영남의 대표적인 명사로 언급하였고, 이상정의 동생 李光鏞(小山, 1714~1789)의 발탁

43) 「치제일기」, 1781년 5월 22일.

44) 『정조실록』 권2, 즉위년 8월 6일 을사.

45)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184~189쪽.

46) 『정조실록』 권2, 즉위년 8월 19일 무오.

47) 『정조실록』 권11, 5년 3월 8일 신사.

도 언급하였다.<sup>48)</sup> 하지만 본격적인 출사는 계기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산서원의 사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남남인이 본격적으로 등용되는 계기는 1788년에 『戊申倡義錄』이 올려지면서부터이다. 무신란 1주갑을 맞아 정조는 무신란 진압에 참여했으나 공이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조는 소론·남인을 많이 포상하였는데, 체제공은 남인 중 류승현과 권만을 추천하였다.<sup>49)</sup> 이들은 당시 안동의병장과 부장이었다. 두 사람이 추증되자 영남남인들은 이 기회에 당시 창의했던 모든 인물에 대한 포상 및 신원을 받으려고 하였다. 이진동을 소수로 하여 포김성탁 및 조덕린·황익재의 신원 요구하는 상소를 올림과 동시에 영남 북부지역 13개 읍에서 창의한 명부인 『무신창의록』을 동봉하여 진달하였다. 이진동은 7년 전 사제 시 도산서원 재임이었다.

승정원의 거부로 상소를 봉입시키지 못한 이들은 정조가 孝昌園에 거동하는 틈을 타 上言에 성공하였고,<sup>50)</sup> 정조의 특명으로 상소를 받아들이고 『무신창의록』을 읽었다. 정조는 이진동을 직접 인견하여 『무신창의록』을 경상도로 가져가 인쇄할 것과 조덕린과 황익재를 죄적에서 뺄 것을 하교하였다.<sup>51)</sup> 또 정조는 『무신창의록』을 읽고 영남이 반역향이 아님을 천명하였다.<sup>52)</sup> 이것은 영남이 무신란의 역적이라는 혐의를 한꺼번에 벗게 한 획기적인 조치였다.<sup>53)</sup>

노론은 영남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였는데, 특히 조덕린의 신원을 결사반대하였다. 급기야 영의정 金致仁(古亭, 1716~1790)이 사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론은 무신란의 역당을 용서하면 신임의리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는데, 정조는 자신의 조치가 1755년(영조 31) 이후 조덕린을 용서하려

48) 『정조실록』 권15, 7년 2월 19일 경진.

49) 『정조실록』 권25, 12년 4월 5일 정유.

50) 『戊申疏廳日錄』 1788년 11월 5일.

51) 『정조실록』 권26, 12년 11월 8일 병인.

52) 『정조실록』 권26, 12년 11월 11일 기사. 김문식, 「영남 남인에 대한 조치」,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433~435쪽.

53) 김문식, 「영남 남인에 대한 조치」,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2007, 433~435쪽.

했던 영조의 뜻을 이은 것으로, 신임의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였다.<sup>54)</sup> 창의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무신창의록』은 당시에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덕린의 復官을 정조 끝까지 유지해 줌으로써 안동남인들은 자신들의 족쇄 중 하나인 ‘무신년의 逆鄉’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sup>55)</sup> 이에 정조 대 후반 영남남인들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1792년의 사제가 있었다.

1792년 정조는 1781년처럼 각신 李晩秀를 보내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사제하게 하였다. 원래 명령은 이만수가 경주에 가서 신라 시조를 모신 崇德殿에 제사지내고, 또 신라왕릉을 봉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주에 있는 옥산서원에 사제도 함께 명령했다. 여기에 덧붙여 옥산서원에 사제하는 데 도산서원에는 사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함께 사제하고 이와 함께 別試까지 치를 것도 명령하였다.<sup>56)</sup>

이만수는 옥산서원에 사제한 이후 23일에 도산서원에 도착하였고, 24일에 제향을 올렸다. 이어서 다음날에 별시를 치렀다. 과장은 서원 앞 낙동강 건너편의 모래사장에 설치되었다. 과거에 응시한 자는 7,228명, 거둔 시권이 3,632장, 구경한 인물은 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만수가 가지고 온 시권은 정조가 직접 고열하여 상주의 姜世白(皓隣, 1748~1824)과 안동의 金熙洛(故寔軒, 1761~1803)을 합격시켰다. 이어서 試士한 사실을 책자로 발간하여 간행하고, 입격 유생과 도내 열읍에 반포하며, 판본은 도산서원에서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sup>57)</sup> 이렇게 만들어진 간행본이 『嶠南實興錄』이다. 또 과장이 설치되었던 곳에는 試士壇을 만들어 채제공이 지은 명문으로 試士壇碑를 세웠다.<sup>58)</sup>

이때 도산서원 원장은 金台翼(書巢, 1736~1801)인데, 그는 광산김씨로 예

54) 『정조실록』 권26, 12년 12월 3일 경인.

55)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537~538쪽.

56) 『정조실록』 권34, 16년 3월 2일 신미.

57) 『정조실록』 권34, 16년 4월 4일 임인.

58)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542쪽.

안 오천 출신이다. 1788년에도 원장을 역임하였다. 행사를 총괄한 도집례는 權思浩(西場, 1733~1806)로 권두경이 후손으로 안동 유곡 출신이다. 이때의 집사 분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1781년에 비해서 외지인이 집사로 많이 분정 되었다. 이 행사 역시 3월 3일에 정조의 명령이 있었고, 3월 8일에 예안에서 관문을 접수하였다. 관문 접수에서 행사까지 부로가 보름 밖에 기간이 없었지만, 별시 소식 덕분에 영남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집사 분정도 지역 배려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집사자 중에서 이상정의 문인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이상정의 제자 및 재전제자들은 정조 연간 이후 안동 지역의 인사가 영남남인의 중추세력이 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 준다.

정조의 배려에 영남남인은 바로 부응하였다. 18세기 영남남인의 가장 큰 정치적 행사인 嶺南萬人疏는 바로 두 달 뒤인 윤4월에 진행되었다. 남인들은 李塈(俛庵, 1739~1811)가 소수로 하여 10,057명이 서명한 만인소를 진달하였다. 발단은 정언 柳星漢이 상소에서 정조가 경연을 열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sup>59)</sup> 정조는 사도세자가 경연에서 무함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경연을 멀리하였다. 이는 사실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태도를 공격한 것이었다.<sup>60)</sup> 이어서 尹九宗이 景宗을 비하하다가 국문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sup>61)</sup> 정조는 류성한의 일은 불문에 부쳤지만, 윤구종에게는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청남계는 이에 맞춰 임오화변의 재평가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였다.<sup>62)</sup>

류성한의 상소 소식은 영남에 알려지자 영남남인들은 윤4월 13일에 안동의 삼계서원에서 道會를 열어 류성한 탄핵소가 발의하였다.<sup>63)</sup> 이들은 발의 내용을 도내에 통문을 돌렸는데, 통문을 돌린 후 회답이 오기도 전인 윤4월

59) 『정조실록』 권34, 16년 4월 18일 병진.

60) 이욱, 「사도세자 관련 만인소의 정치적 의미」, 『南道文化研究』 3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8, 178~179쪽.

61) 『정조실록』 권34, 16년 윤4월 10일 을축; 윤4월 13일 정묘; 윤4월 14일 무진.

62) 최성환, 『영·정조대 당쟁정치와 군신이리』, 신구문화사, 2020, 364쪽.

63) 이 소행의 과정은 소수인 李塈의 『俛庵集』 別集 上 「壬子日記 疏議錄」에 실려 있다.

17일에 서울로 출발하였다. 이렇게 만인소가 빨리 진행된 것은 이것이 중앙 정계와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영남남인들은 이 상소가 채제공의 지휘 덕분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즉 정조의 의도를 간파한 채제공이 영남 남인들에게 사도세자 신원과 관련한 상소를 올리도록 주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64)</sup> 특히 정조 즉위 당시 이도현 부자가 사도세자 문제로 처형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정과의 연계 없이 사도세자 신원소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류성한의 상소는 도산별시가 시행된 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영남남인을 정치적 사건에 이용하려는 구상은 이미 있었고, 이 때문에 도산서원의 사제와 별시가 시행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사실 영남남인은 임오의리와 관계가 없었다. 앞서 보았듯 그들은 임오화변이 벌어진 1762년에는 완전한 재야세력이어서 조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몇몇 인사들이 출사하여 宦路를 수행하고 있었고, 특히 도산서원이 있는 예안을 비롯한 안동 중심의 인사들은 더욱 배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도세자에게 반역하거나 충성을 다할 인물이 조정에 의미있는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영조 연간 이후 도산서원에 대한 사제는 尊賢의 의미로 기능하였고, 제향된 이황과 조목은 16세기 인물로 봉당과도 관련이 없었다. 1792년에 정조가 도산서원에서 행한 조치는 조정의 의리론에 영남남인들도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정조는 재야에서 자신의 임오의리를 지지해 줄 세력으로 영남남인을 발탁하였다. 도산서원의 사제와 이에 따른 별시로 정조의 배려를 확인한 영남남인들은 재야에서 정조의 의리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한 영남남인은 주로 안동·예안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이상정 문인들이었다. 이들은 사제와 별시 과정에서 임원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또 도산별시에서 발탁 두명 중 김희락은 이상정의 문인이었다.

64) 이육, 「사도세자 관련 만인소의 정치적 의미」, 『南道文化研究』 3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8, 180~181쪽.

이후 만인소 과정에서 영남에서 출발한 배소유는 14인이었는데, 이 중 7명이 이상정의 문인이었다. 소수인 이우는 이상정의 조카이며, 만인소 초기 단계에서 조정과 영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金翰東(臥隱, 1740~1811)은 역시 이상정의 문인으로 김희락의 일족이었다.

영남 출신 초계문신도 이상정의 문인이었다. 정조 연간에 초계문신으로 발탁된 이들은 143명인데,<sup>65)</sup> 이 중 영남 출신은 단 5명이다. 안동 출신인 柳台佐(鶴棲, 1763~1837)와 김희락, 金熙周(葛川, 1760~1830)와 의성의 李義發(雲谷, 1768~1749), 경주의 崔璧(質菴, 1762~1813)이다. 류이좌는 하회 출신으로 류성룡의 후손이며,<sup>66)</sup> 해주 출신인 김희락과 김희주는 이상정 문인으로 김한동과 一族이었다. 이희발은 의성 산운 출신의 영천이씨로 서예·여헌문인인 李民寅(紫巖, 1573~1649)의 6대손이다. 이희발은 경주의 鄭東弼(南窩, 1740~1820)에게 수학하였는데, 정동필은 이상정의 문인록인 「고산급문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최흥원과 이상정에게 수학했다고 한다. 애초에 이민환의 손자 중 4명이 이현일 문인이었다. 최벽은 이상정의 동생 이광정의 문인이었다. 즉 정조 연간의 영남 출신 초계문신은 직·간접적으로 이상정의 문하에 있었다. 이들 외에 정조는 류성룡의 종손인 柳相祚(逸愚, 1763~1838)를 수찬에서 동부승지로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 이 조치는 정조가 영남 명현의 후손을 등용하는 가운데 특히 류성룡을 우대하면서 있었던 것이었다. 이들은 영조 연간의 류관현, 류정원, 김경렬과는 달리 당상 이상에 모두 진출하였다. 세도 정권하에서 존재한 영남남인의 정치적 토대는 이들을 통해 만들어졌다.

도산서원에 대한 사제와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정조의 임오의리에 영남남인이 참가할 명분을 제공해 주었다. 그 후 정조 연간 출사하는 영남남인의 실체는 안동 지역의 이상정 문인이었다. 다만 안동 사족과 예안 사족은 이

65) 정상준,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교육사학연구』 30-2, 2020, 108쪽.

66) 류이좌의 초계문신 활동은 김문식,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東洋學』 7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19.

황의 적통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된 존재는 아니었고, 영남남인의 주류인 이상정 문인도 예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한편 상징적 공간으로서 도산서원은 더욱 중요해졌다. 서원 사제는 봉당을 막론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사제를 받은 서원이 전국에 18곳에 불과하였고, 이황을 주향으로 한 서원 중에서는 도산서원 만이 유일하였다. 도산서원은 영남학파를 상징하는 공간이면서 정조의 임오의리를 계승한 공간이었다. 이후 19세기에 안동의 호계서원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도산서원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1796년(정조 20)에는 정조의 명령으로 이황의 祠版에 대한 사제가 이었다. 가묘에 대한 사제는 1785년에도 시행된 적이 있었다. 그 전해 이황의 숙부인 李瀼가 시호를 받았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이황의 가묘에도 사제하게 하였다. 1796년의 경우가 특별한 것은 사판에 대한 사제가 서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황의 嗣孫인 李志淳(省流亭, 1762~1807)은 7월 19일 정사에서 평안도 永柔縣令에 말망으로 제수되었다.<sup>67)</sup> 그는 辭朝외 署經을 면제받고 바로 임지로 부임하였다. 이어서 9월에 예안의 본가에 사람을 보내 사판을 영유로 옮겨가려고 하였다. 이 행차가 서울을 지나자 소식을 들은 정조가 사제를 명하면서 이황의 사판에 대한 사제가 이루어졌다.

이지순은 행차를 조용하고 간편하게 할 것을 청했고, 본향에서도 그 취지를 살려 이동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4일에 신주를 받들고 영유로 출발하였는데, 유생은 7명이 담당하여 출발하였고, 본손 수십 명과 및 고을 사람 십여 명이 본가에서 배송하였다. 이들은 안동, 예천을 거쳐 조령을 넘는 길을 택하였는데,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영남지역에서는 가는 곳마다 수십 명이 나와서 이들을 전송하고, 참배하였다. 9월 12일에 송파나루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반촌으로 건너가 치제를 실행하였다.

67) 이하는 「領村致祭時日記」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정조는 9월 6일에 신주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제를 명령하였다. 또 성균관 유생들이 한강을 건널 때 부터 祗迎할 것을 지시하였다. 영남인들은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인사들로 집사를 분정하였다. 집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역할	성 명	기 타
都執禮	승지 金翰東	
執禮	유학 李重祖	
修掃有司	진 장령 李鎭宅, 유학 李儒默, 琴宗烈	
守奉官	金魯範	
鋪陳	章陵令 洪夔, 유학 成啓直, 裴顯良, 부정자 李英發	이영발은 이희발로 개명
接賓	가감역 李樹仁, 전직 李志容, 도사 李5瑛, 유학 李致榮, 裴顯明, 崔柱昇	
日記	부정자 柳台佐, 金熙洛, 정랑 金熙周	
時到	감찰 李秉烈, 진사 朴時源, 생원 李用正, 유학 李徽延, 金濟運, 주서 崔仁簡	

13일 당일에 행사를 진행할 때는 집사는 다음과 같다.

역 할	성 명
禮官	승지 金翰東
典祀官	예빈시직장 金魯正
大祝	교서관박사 李夢龍
齋郎	상의원별제 洪章輔
祝	이조정랑 金熙周
贊引	假引儀 黃稔

모두 영남출신의 남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기남인들의 도움도 있었는데, 호조판서 李時秀가 부조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1792년 치제 당시 제관 이만수의 형이다.

그런데 정조는 사관이 지나갈 때 時任, 原任, 閣臣, 抄散文臣은 모두 참배하

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좌의정 채제공과 우의정 윤시동을 비롯한 백관이 와서 치제에 참여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 정조는 원근문까지 행차하여 지영과 陪祭에 참석한 명단을 바치라는 전교를 내렸다. 이에 참배한 인원은 채제공을 비롯한 관료 235명, 관학 유생 134명, 기타 유학 402명이었다. 관료는 봉당에 관계없이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성균관에서 남대문으로 이동하여 영유로 출발하였다. 이때 역시 백관이 동행하였고, 성균관 유생들은 모화관에서 전송하였다. 관료는 채제공을 비롯하여 50명이 참석하였고, 관학 유생은 32명, 기타 유학 123명이었다. 관료들의 참배는 봉당과 관계 없이 이황을 도학의 종통으로 인정하라는 명령이었다. 이후 영유까지 가는 동안 비슷한 행사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개성과 황주, 평양에서 큰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차는 22일에 영유에 도착하였다.

이것은 도산서원에 대한 사제는 아니지만, 정조가 이황의 추송을 통해 영남남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조는 화양서원 사제, 여주의 大老祠 창설 등으로 송시열을 추송하는 조치를 즉위 이래 시행하였다. 정조가 굳이 지나가는 祠版에 대해서 치제한 것은 여러 봉당을 조율하는 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송시열에 대한 추송과 동등하게 볼 수는 없지만, 영남남인은 충분히 감동할 만한 일이었다.

정조 말년의 중앙 정계에서 영남남인은 청남에 결탁한 주변부 세력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영남남인은 근기남인과의 정치적 제휴를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몇몇 인물이 출사해 있었지만, 주로 영남남인은 재야에서 청남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다. 영남남인은 정치적 입지란 왕의 관심과 근기 남인, 특히 채제공의 지원 속에서나 자리 잡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sup>68)</sup> 그럼에도 이들은 임오의리의 계승을 표방하며 조정의 한 편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도산서원에 대한 사제가 그 계기가 되었다. 정조가 사제를 통해

68) 김성우,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1,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03쪽.

이루려 했던 의도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도산서원의 위상 또한 강화되었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18세기 도산서원에서 있었던 사제를 통해 그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서원에 대한 사제는 사액할 때를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영조 이후였다. 영조와 정조는 서원에 대한 사제를 통해 존주의리와 존현의식을 드러내었다. 또 의리와 관계된 인물이 배향된 서원에 대한 사제를 시행하여 의리론을 강화시켰다. 이는 당쟁이 격화되고 서원이 붕당의 근간을 이루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왕은 서원의 사제로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며 왕권강화라는 목적을 수행하려 하였다.

영남에서 그 대상이 된 것은 도산서원이었다. 도산서원의 사제는 조선 중기 이후 9차례 있었는데, 사액과 당시의 두 차례를 제외하면 7차례가 영조 이후에 집중되었다. 영·정조 연간에 사액 때를 제외하고 따로 사제를 받은 서원은 영남에서는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을 비롯하여 청천서원과 동락서원이 있었다. 도산서원은 이황이 주향으로 된 서원 중 유일하게 사제를 받았다. 도산서원이 이황과 영남학파의 본산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하지만 도산서원의 위상은 설립 이후 일정하지 않았다. 17세기 초 도산서원의 주축을 이루는 월천계 예안 사족은 인조반정으로 퇴계학과 내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이것은 도산서원의 위상과 직결되었고, 17세기 중반 이후 도산서원은 도내 공론의 주도처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영남 내에서 안동 지역의 사족의 주도권은 기사환국 전후로 복권되었다. 이 주도권은 갑술환국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무신란 당시 주요 인사들이 반란 수뇌부와 연결되면서 안동 지역 사족들은 영조와 노론의 의혹을

떨쳐 낼 수 없었다. 그러나 무신란 직후 영조의 배려 조치로 안동 지역의 남인들은 오히려 조정에 등용될 수 있었다. 사액 이후 도산서원에 대한 첫 번째 사제는 이 무렵에 시행되었다. 이것은 영남남인의 학문적 적통은 안동 지역의 사족들이 차지하였지만, 공간적 상징성은 예안의 도산서원이 가져왔음을 의미하였다. 이후 안동 지역 남인들이 조정에서 축출됨으로써 도산서원의 위상은 역설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1756년(영조 32) 도산서원 치제는 강화된 도산서원의 위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조 대는 남인이 복권되는 시기였다. 정조는 즉위 후 화양서원에 사제하고, 대로사를 설립하였는데, 1781년(정조 5)에 화양서원과 같은 예로 예안의 도산서원과 경주의 옥산서원에 사제하였다. 이후 1792년(정조 16)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사제하고, 도산서원에서 별시가 시행되었다. 영남남인을 크게 고무시키는 이 행사에 영남남인은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를 통해 정조의 의도에 부합하였다. 정조 대의 영남남인은 중앙정계에서 청남에 결탁한 주변부 세력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도산서원과 이황의 가묘에 행한 일련의 행사는 준현을 넘어 영남남인을 임오의리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영남남인들은 정조의 우호적 조치에 고무되었고, 재야에서 사도세자의 신원을 표명하였다. 후에 영남남인들은 사도세자와 정조에 대한 의리를 주장하는 배경은 이때부터 형성되었다.

※ 부록

〈부록 1〉 1700~30년 도산서원 원장 명단

년도	성명	본관	거주지	관력	학맥	비고
1706	李杲	진성	예안	전군수		
1707	權斗寅	안동	안동	전현감 진사	갈암문인	1703년 호계서원 원장
	金世鎬	의성	안동	전도사문과		1699년 호계서원 원장
1708	金燁	광산	예안	진사		
1709	金世鎬					1707년 원장
1710	金純義	광산	예안			
	李稽	진성	예안	통덕랑		
1711	李再昌	진성	예안	진사		
1712	金世鎬					1707년, 1709년 원장
	李守約	진성	예안	봉직랑		이영도 현손
1713	李適意	경주	영주	전 지평 문과		
	金翰國	광산	예안			
1714	金鏞	광산	예안			
	權斗經	안동	안동	전 정언 문과	갈암문인	1710년 호계서원 원장
1715	金昌錫	의성	안동	전 정언 문과	갈암문인	1700년 호계서원 원장
1716	金重國	광산	예안			
1717	金侃	풍산	안동	전 정랑 문과	갈암문인	1702년 호계서원 원장
	權斗經		안동			1714년 원장
1718	洪相民	부계	함창	전 주부 생원		
1719	李再昌	진성	예안	생원		
1720	鄭重元	초계	안음	전참봉		정은 후손, 정희량 부
	權斗紀	안동	안동	전지평	갈암문인	
1721	柳敬時	전주	안동	전도사	갈암문인	1727, 1730년 호계서원 원장
	李守約					1712년 원장
1722	李再昌	진성	예안	생원		
	羅學川	수성	榮川	전부사	갈암문인	1723년 호계서원 원장
	安鍊石	순흥	안동	전현감	갈암문인	
	李守謙	진성	예안	전봉사		이황 6세 종손
	金I +政	풍산	榮川	전도사		
1723	李守約					1721년 원장
1724	李集	진성	예안	전현감		
1725	李濼	여주	예천	전찰방	갈암문인	
1726	李浹	연안	안동	전참봉	갈암문인	이만부 숙부

년도	성명	본관	거주지	관력	학맥	비고
1727	李守謙					1722년 원장
1728	李集					1724년 원장
	成世珽	창녕	榮川		갈암문인	성문하 자. 성이성 손
	李栽	재령	안동	전주부	갈암문인	1729년 호계서원 원장
1730	李文標	진성	예안	전현감		
	成世頊	창녕	榮川	전현감		성세정 제
1731	張后相	인동	영주	전 군수 문과		
1732	柳聖和	풍산	안동	전 현감		
	金岱	광산	예안	통덕랑		
1733	權相一	안동	상주	전 장령 문과		

〈부록 2〉 1781년 도산서원 치제시 집사분정

역할	성명	비고
都執禮	李世源	이황 7세손(의인파). 1778년 도산서원 원장
日記有司	李龜祐 李汝榦 李頤淳 金處福	안동 풍산 신앙 거주. 이황 9세손(종파). 생원.
時到有司	李祥煥 李師觀 金瑞玉 琴宗潤 許懋 李晚淳	
奉香	李天燮	
奉爐	李鼎宇	
司罇	李頤淳 金宗壽	일기유사 김성일 9세 사손.
奠爵	李綸	이해 7세손
辦陳設	李學培 金良佐 李宗淳 李養正	
奉香	成彥極	
奉爐	金瑞吉	김응조 현손
司罇	李會淳 柳冕祚	
奠爵	李龜福	이황 8세손(의인파)

역할	성명	비 고
辦陳設	丁協祖 李世胤 李龜祐 李永運	이황 7세손(계상)
內庭通喝[唱]	金瑩 李龜錫	이황 8세손(의인파)
外庭通喝[唱]	權賁來 李鍾淳 李龜裕 金是權	이황 9세손(종파) 이황 8세손(심촌파) 김령 6세손. 김시찬 제.

## 【참고문헌】

### 1. 원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致祭日記」(1733), 「賜祭日記」(1781, 1792), 「賜祭時日記」(1796), 「頓村致祭時日記」(1796)

### 2. 논저

김문식,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신구문화사, 2020.  
한국국학진흥원 편,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한국국학진흥원 편, 『조선 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한국국학진흥원 편,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 새물결, 2014.  
한국국학진흥원 편, 『조선후기 서원의 위상-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새물결, 2015.  
한국국학진흥원 편, 『일기로 보는 도산서원』 3, 동아에드컴, 2024.

김문식, 「18세기 金漢喆의 언론 활동」, 『韓國思想과 文化』 31, 韓國思想文化學會, 2005.  
\_\_\_\_\_,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東洋學』 7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2019.  
김성우, 「정조 대 영남 남인의 중앙 정계 진출과 좌절」, 『다산학』 21,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김영나, 「16~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虎溪書院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金鶴洙, 「廬江書院과 嶺南學統-17세기 초반의 廟亭論議를 중심으로-」.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韓國社會研究會, 1998.  
\_\_\_\_\_, 「葛庵 李玄逸 研究」,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金炯秀, 「1738년(영조 14년) 安東 鶴東서원의 置廢와 지방관의 역할-法城日記를 중심으로」, 『嶺南學』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 박성순, 「正祖의 宋時烈 顯彰과 王權 強化論」, 『韓國史研究』 141, 韓國史研究會, 2008, 참조.
-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退溪學과 儒敎文化』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李尙賢, 「月川 趙穆의 陶山書院 從亭論議: 17세기 嶺南土族 動向의 一端」, 『북악사론』 7, 북악사학회, 2001.
- 이경동, 「조선후기 사충서원(四忠書院)의 건립과 운영」, 『韓國書院學報』 15, 한국서원학회, 2022.
- 이병훈,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大東漢文學』 67, 대동한문학회, 2021.
- 이우,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韓國史學報』 42, 高麗史學會, 2011.
- \_\_\_\_\_, 「사도세자 관련 만인소의 정치적 의미」, 『南道文化研究』 3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8.
- 鄭萬祚, 「仁祖4年 陶山院長 李有道 致斃事 논란」, 『韓國學論叢』 26, 국민대학교 한국사 연구소, 2003.
- 趙峻皓, 「17~18세기 英陽地方 漢陽趙氏의 門中研究-土族家門의 確立과 變遷의 한事例」, 『北岳史論』 4, 北岳史學會, 1997.
- 정상준, 「정조 대 초계문신의 문과급제경로 분석」, 『교육사학연구』 30-2, 2020.
- 정진영, 「18세기 영남 노론의 존재형태-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과 휘파를 통해본 '새로운 세력'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171, 한국사연구회, 2015.
- \_\_\_\_\_,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조선시대사학회, 2015.
- 차장섭, 「陶山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과 位相」, 『歷史敎育論集』 54, 역사교육학회, 2015.
-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10, 한국서원학회, 2020.

中文抄錄

## 英祖和正祖的书院 賜祭和陶山书院

李財欽\*

本文通过分析英祖和正祖时代在道山书院所举行的祭祀仪式，探讨了他们的加强王权策略以及这些行为对道山书院和地方社区产生的影响。祭祀通常在个人的墓地、祠堂和书院等地方进行，尤其是在书院得到圣旨时，祭祀仪式通常都会进行。然而，也有一些情况是没有圣旨的情况下举行祭祀，这些情况被视为非常特别的事件，并且特别是在英祖时代之后才开始实施。英祖在花阳书院、慈云书院等地举行祭祀仪式，并在英南地区选择了道山书院来举行祭祀。正祖则更积极地利用书院的祭祀仪式，作为推行自己的忠诚论的手段，因此在道山书院举行了祭祀。

道山书院是英南地区代表性的书院，但它在不同历史时期的地位有所变化。道山书院的主力—例安士族，在仁祖反正后失去了在退溪学派中的主导地位，导致道山书院的地位也有所下降。然而，英祖在尊重学术的层面上实施书院祭祀，并选择了道山书院，这使得道山书院成为英南的象征性空间。

正祖试图恢复南人的地位，将他们作为自己的支持力量。为此，正祖在多项措施中也包括了道山书院的祭祀仪式。特别是正祖在道山书院举行了祭祀和别试，而这一活动后来通过万民疏得到了英南南人的支持，与正祖的意图相符。正祖在道山书院举行的一系列活动，除了尊崇先贤外，还意图让英南南人参与到国政之中，特别是在壬午之变中，这为英南南人后来宣称自己忠于世子思道和正祖打下了基础。

关键词：英祖 正祖 賜祭 陶山书院 岭南南人

논문 투고일: 2025. 05. 16 심사 완료일: 2025. 06. 05 게재 확정일: 2025. 06. 09

\* 蔚山大学校 講師



- 후보



## 1. 주요 연혁

2024. 12. 30. : 한국서원학보 제19호 간행  
2025. 02. 15. : 2025년 한국서원학회 동계 워크숍  
2025. 04. 12. : 한국서원학회 4월 연구발표회  
2025. 04. 25. ~ 04. 26. : 조선시대사학회·한국서원학회·조선사연구회·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교육연구단 공동 개최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 연구의 새로운 모색> 연합학술회의  
2025. 05. 31. : 한국서원학회 5월 연구발표회

## 2. 활동

- 2025년 4월 연구발표회
  - 발표 ① : 서간문을 통해 본 창석 이준의 교유관계
    - 발표자 : 이선영(경북대학교)
    - 토론자 : 김성희(국사편찬위원회)
  - 발표 ② 18세기 도산서원 賜祭와 의미
    - 발표자 : 이재현(경북대학교)
    - 토론자 : 임근실(단국대학교)
- 2025년 4월 조선시대사학회·한국서원학회·조선사연구회·경북대학교 사학과 BK21교육연구단 공동 개최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 연구의 새로운 모색> 연합학술회의
  - 기조 강연 : 한국 서원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발표자 : 이수환(영남대 명예교수, 전 한국서원학회 회장)
  - 발표 ① 한강학의 호서 확장과 지식 문화 환류 - 공촌 동약과 죽림서원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② 서원의 정치학- 단종 복위 이후 사육신 배향 서원의 건립과 사액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이경동(공주대학교)

발표 ③ 18~19세기 영천 용계서원과 벽진이씨 가문의 생육신 추송활동을

- 발표자 : 이광우(영남대학교)

발표 ④ 18세기 경화사족의 속사 교육

- 발표자 : 김충현(한국국학진흥원)

발표 ⑤ 17세기 대구지역 교육기구의 재건과 운영- 관학과 사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발표자 : 김정운(경북대학교)

발표 ⑥ 조선후기 합천 향교의 전담 운영

- 발표자 : 박 범(공주대학교)

발표 ⑦ 조선후기 함평향교의 청금유생과 함평사족의 정치적 동향

- 발표자 : 나영훈(목포대학교)

발표 ⑧ 18~19세기 경상도 관찰사의 향교 운영과 관리

- 발표자 : 설현지(경북대학교)

발표 ⑨ 성종대 교생의 위상과 향교 개선책

- 발표자 : 신동훈(동국대학교)

종합토론

- 좌 장: 정재훈(경북대학교)

- 토론자: 송양섭(고려대학교), 김성우(대구한의대학교), 조성산(성균관대학교), 김의환(충북대학교), 유현재(경상국립대학교)

■ 2025년 5월 연구발표회

발표 ① : 이익의 도산서원 방문과 성호 예학

- 발표자 : 이병유(한국국학진흥원)
  - 토론자 : 김우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발표 ② 조선후기 충청지역 소론계 서원 연구
- 발표자 :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 토론자 : 이동인(원광대학교)

### 3.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1) 2월 임원회의

- 일시: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12~14시
- 장소: 정읍 무성서원 인근
- 안건
  - (1) 4월 연구발표회 발표자, 토론자 선정
  - (2) 7월 하북대학교 공동개최 학술대회 프로그램 준비 논의

#### 2) 3월 임원회의

- 일시: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18~19시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 안건
  - (1)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 및 프로그램 준비 논의
  - (2) 한중서원학회 국제학술회의 한·중·일측 발표자 및 기조강연 발표자 선정 논의
  - (3) 학술회의 장소 섭외(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

#### 3) 5월 임원회의

- 일시: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19~20시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 안건

- (1) 도산서원 창건 450주년 기념 학술회의 참여 관련 회의
- (2) 5월 연구발표회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4) 5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일시: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13~14시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 안건
  - (1) 『한국서원학보』 제20호 원고 모집 현황 점검
  - (2) 『한국서원학보』 제20호 심사자 선정 논의
  - (3) 편집 규정 수정

5) 6월 편집회의

- 일시: 2025년 6월 5일 목요일 17~19시
-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 안건
  - (1) 『한국서원학보』 제20호 심사 결과 수합 및 향후 간행 일정 논의

## 회 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이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

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 제3장 재정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

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sup>1</sup>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가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 관계인[미성년자·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만 투고를 인정한다. <개정 2021.3.15.>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 (A,A,C):수정 후 게재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 <개정 2018.12.15.>

###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개정 2018.12.15.>

###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1매당 2,500원)를 부과한다.

###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준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4) 온라인 투고시 시스템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동의>에 서명하면,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5>

5) 공동논문의 경우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논문접수신청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3.15>

#### 제11조(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 배제 요청)

논문 투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개정 2021.3.15>

- ① 논문 투고자는 특정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 요청시 그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시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단, 사유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요청인의 성명, 소속 및 배제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고,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인물의 배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3자를 논문 심사자로 선정한다.

#### 부 칙

-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

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瑣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sup>1)</sup>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sup>2)</sup>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41~42쪽.

정만조, 앞의 책, 2012, 22쪽.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17쪽.

정순우, 앞의 논문, 2013a, 213쪽.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7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150~153쪽.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 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③ 주저자는 논문 투고시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논문에서의 역할, 기여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신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경우 19세를 초과한 성인이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21.3.15.>

####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제7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3.15.>

###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8기 임원명단(2024.3~2026.2)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수환
회 장	: 김학수(한중연)
부 회 장	: 이근호(충남대)
총무이사	: 김정운(경북대)
편집이사	: 김충현(한국국학진흥원), 김수경(상지대)
재무이사	: 윤해민(건국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한국국학진흥원),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부산가톨릭대), 김대식(경인교육대),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최석기(경상대), 배창현(울산대), 임근실(단국대), 신채용(국민대), 이치역(공주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식(송실대), 백광렬(서울대), 신정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김연수(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이사	: 이병훈(한국국학진흥원), 김지운(공주대), 임근실(단국대), 박소영(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채광수(영남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왕무(경기대) / 전라·제주 김봉곤(원광대), 박정민(전북대) / 경상 정재훈(경북대), 이남옥(한국국학진흥원) / 충청 김의환(충북대),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보이사	: 김순한(영남대)
총무간사	: 권지은(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간사	: 김진홍(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근호(역사, 충남대)
편집위원	: 등흥피(역사, 중국 호남대), 정수환(역사, 금오공대), 정우락(문학, 경북대), 조준호(역사, 경기도박물관), 정재훈(역사, 경북대), 어강석(문학, 충북대), 이치역(철학, 공주대), 김지운(교육사, 공주대), 김봉곤(역사, 원광대)
편집이사	: 김충현(한국국학진흥원), 김수경(상지대)
편집간사	: 김진홍(한중연)

중신회원(2006~2025)

강대걸, 권오영, 김덕현, 김문택, 김순환, 김정자, 김의환, 김자운, 김학수, 박종배, 안상천, 이병갑, 이병훈, 이상해, 이수환, 이우진, 이해준, 정만조, 정수환, 정순우, 조준호, 김정운, 김충현

韓國書院學報 제20호

값 15,000원

인쇄일 2025년 06월 23일  
발행일 2025년 06월 30일  
발행인 김학수  
발행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전화 031-730-8840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김학수(한국서원학회)  
KB국민은행 673601-04-074420  
제작 도서출판 온샘(02-6338-1608)

ISSN 2234-8603